HTUS

2023
호남신학대학교요람



◉ 호남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콘서바토리
일반과정, 신학교육원

◉ 호남신학대학교 개설 학위과정

신학과(신학사 : Th. B.)
사회복지상담학과(문학사 : B. A.)
음악학과(음악학사 : B. M.)
대학원(Th. M./Th. D.)
신학대학원(M. Div.)
교회음악대학원(M. M.)
기독교상담대학원(M. A.)
사회복지대학원(M.S.W.)

◉ 호남신학대학교 자매결연대학교_교외

이태리 프레스코발디(G.Frescobaldi) 음악대학
볼리비아 기독교대학교(Universidad Cristiana de Bolivia)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미국 하워드대학교(Howard University)
이태리 레 만프레디(Re Manfredi) 음악원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Moscow Presbyterian Theological Academy)
미국 칼슨-뉴먼대학(Carson-Newman College)
인도네시아 Sekolah Tinggi Reformed Injili Indonesia
캐나다 Knox College
대만옥산신학교(Yu-Sh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미국 Georgia Christian University
필리핀 Evangelical Mission College
몽골 Union Bible Theological College
인도네시아 Abdiel Theological Seminary
캄보디아 Sereisaophoan Christian University
미국 애틀란타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미국 Biola Universit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
인도네시아 대사명신학대학교
헝가리 데브레첸 개혁신학대학교(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인도네시아 STT HKBP(개혁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최 흥 진

Faith
Learning
Service

세계로 미래로 열린 대학교육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으로 국가와 사회,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장 인사말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의해 1955년 호남신학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내외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우리 대학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94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며, 교회 선교와 세계 선교에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성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본교를 이 한권으로 집약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는 안내서가 될 줄 믿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낯선 길로 들어설 때 길 안내가 되는 나침반처럼 수학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는 소중한 자료이기를 바랍니다.

본 요람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연혁에서 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시설 및 학과를 소개하는 교과과정과 학생생활, 장학, 도서관등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요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직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차고 알찬 캠퍼스 생활로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TUS 호남신학대학교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 호남신학대학교의 교육목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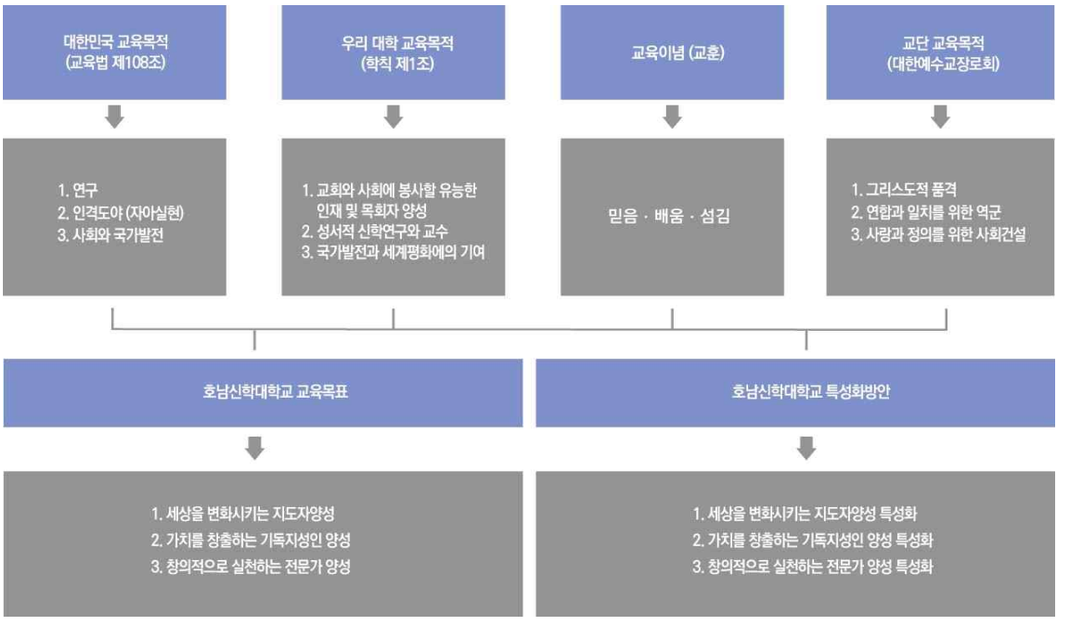

○ 가치체계도



호남신학대학교 역대 이사장

중앙성경학교 이사장
호남성경학교 이사장
나 빈 선 목사
Robert K. Robinson



호남신학원 1대 이사장
호남신학교 2대 이사장
주 형 옥 목사



호남신학교 3대 이사장
나 덕 환 목사



4대 이사장
장로회호남신학교 1대 이사장
부 명 광 목사
George Thompson Brow



2대 이사장
조 요 셉 목사
Joseph Baron Hopper



3대 이사장
황 호 은 목사



4대 이사장
정 길 재 목사



5대 이사장
조 영 기 목사



6대 이사장
장 중 식 목사



7대 이사장
정 현 성 목사



8대 이사장
정 채 관 목사



9대 이사장
정 해 동 목사



10대 이사장
백 종 대 목사



11, 12대 이사장
김 유 수 목사



13대 이사장
김 재 영 목사



14대 이사장
고 훈 목사



15대 이사장
고 만 호 목사



16대 이사장
주 계 옥 목사



17대 이사장
임 준 태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역대 총장

중앙성경학교 1대 교장
김 아 열 목사
B. A. Cumming



2대 교장,
호남성경학원장
호남신학원원장
호남신학교 1대 교장
부 명 광 목사
George Thompson Brown



호남신학교 2대교장
김 형 모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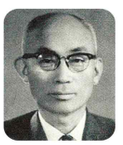

장로회호남신학교 3대 교장
인 도 아 목사
Dwight 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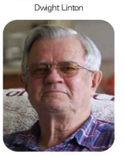

4대 교장
맹 용 길 목사



5대 교장
이 희 철 목사



장로회호남신학교 6대 교장
호남신학대학 1대 학장
호남신학대학교 1- 3대 총장
황 승 룡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4, 5대 총장
차 종 순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6대 총장
노 영 상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7,8대총장
최 흥 진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발자취

1955. 04. 07. 중앙성경학교 개설
1956. 09. 호남성경학원으로 개명
1961. 04. 11. 호남신학원 개원
1963. 05. 21. 호남신학교로 명칭 변경
1972. 02. 16. 장로회호남신학교 설립 인가
1984. 01. 20. 정규 4년제 학력인정교 지정
1989. 10. 27. 호남신학대학으로 개편 인가
1991. 09. 15. 총회직영신학대학으로 인준
1992. 04. 01. 호남신학대학교로 개편 인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시설

호남신학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술 및 학습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각 강좌당 그 내용에 따라 강의, 세미나, 토론, 시청각교육, 협동강의(Team Teaching), 선교현장교육, 현장실습(목회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며 도서관, 언어교육원, 멀티미디어실, 시청각실, 연주홀, 피아노연습실, 합창실 등 내실있는 교육 지원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학생회와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매년 학술지 발행, 설교대회, 학생음악발표회, 합창경연대회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건훈련을 위한 예배, 특별신앙수련회, 성경공부 등을 비롯하여 어학강좌, 음악 개인레슨, 동호인모임 등 다양한 과외 프로그램들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교내외 학술 프로그램

연구소 / 심포지움 / 신앙사경회 / 학술강연회 / 종교개혁제 / Weekly Recital / 전공별연주회 / 신입생음악회 / 콘서트콰이어연주회 / 정기연주회 / 호신학생음악콩쿠르

멀티미디어 교육장

교육정보화의 현장인 멀티미디어실은 정보통신 관련 정규과목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교육매체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교환학생제도

전공학문의 보다 심도있는 훈련과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실시되는 해외교환학생제도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의 자매결연에 의해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1년 동안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학과 부실기제도

전공실기와 상이한 전공의 음악과정 이수를 통해 교육의 폭을 넓히고 전공실기를 보조하며 전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전공과목 이외 타전공 및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Vocal Coach 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학사 및 군종 장교

학사장교는 본 대학 졸업예정자로 장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 모병계를 통해 접수하고 합격된 사람은 12주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관하여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군종장교는 1학년 재학 중에 신청하여 시험을 통해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다.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병적관리되며, 소정의 이수과정을 거쳐 목사자격을 취득한 후 군종장교로 임관한다.

도서관

국내 최고 수준의 신학도서관을 지향하는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은 재학생과 교수들의 학문연구활동과 지역 목회자들의 정보센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신학부문의 내실있는 도서들과 음악학 부문의 다양한 자료들과 사회복지상담분야의 새로운 자료들이 이 지역 신학교사들이 이 지역 신학교육의 심장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갖추어지고 있다.

학생경건실천제도

신학대학교로서 학문과 경건훈련 및 교회실천훈련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개인신앙지도의 의미와 장차 교회지도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에 적합한 과정이다. 경건예배, 신앙수련회를 통해 실천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복수전공제도

복수전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전공 복합학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LAB미디실

재학생들의 음악실습실로 미디작곡과 재즈피아노 실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전산정보원

학내의 교육정보를 맡아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재학생들이 정보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호신정보 네트워크 관리, 교육매체개발,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는 교계 차원의 정보화 노력에 협력하며 지역 및 지역교회들의 정보화, 목회자 정보교육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부설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는 대학생활과 대학원생활 중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을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지 발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해석학연구소

성서신학이나 이론신학과정에서 성서주석학의 기본지식으로서 객관주의적 인식론과 역사주의, 선험적 주체성의 철학적 관념론으로서 해석학을 극복하고 정신과학의 철학적 해석, 사회과학적 해석학으로 신학교육의 기본교육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전문신학대학으로서 철학적, 신학적 논문 및 연구물 제작의 학문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다.

역사와 신학연구소

역사와 신학연구소는 대학의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윤리학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소로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기독교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연구하고 있다.

농어촌선교연구소

본 연구소는 도시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을 통하여 여름철이면 "농어촌 교회 어린이 초청 무료 여름성경캠프"를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농어촌 교회 어린이 초청 서울 나들이" 행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 농산물 도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회 국내선교부와 도시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신학대학원 안에 〈농어촌선교현장과 생명목회〉라는 팀티칭(team teaching)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수시 개최하는 한편으로, 봄철과 가을철의 농번기 때에는 학생들과 함께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무료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소는 매학기 농어촌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시무하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서 농어촌교회를 평생 정주(定住) 목회의 장으로 삼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생복지시설

학생회관

본 대학 학생활동을 지원하는 학생회관은 학술 및 교육복지 시설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짧은 동선으로 연결하여 효과적인 시간과 공간활용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본 대학 학생활동은 학부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 총여학우회, 대의원회, 각 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와 대학원생들의 대표기구인 원우회, 대학원 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과 식당

재학생들의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 신앙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는 경건훈련과 학문생활의 도장으로서 생활관을 운용하고 있다. 신학교육과 목회자 사역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학문적 교육적 훈련이 요구되는 신학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집중적인 신앙수련이 필요하며 이는 신학의 학문적 탐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아울러 경건훈련과 병행하여 기초적인 실천목회 훈련이기도 한다.

높은 수혜율을 자랑하는 다양한 장학제도

호남신학대학교의 장학제도는 그 수혜범위가 폭넓고 다양하며 우수한 인재들의 유치와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입학성적에 따른 신입생장학금, 성적우수자를 위한 성적장학금이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봉사와 근로를 통한 장학금과 극빈자를 위한 장학금, 각 노회 단체들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또한 재학 중 각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교회반주자, 성가대 지도자, 독창자, 교회교육지도자 등의 유급봉사 목회실습을 통한 학비보조 및 생활비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비보조를 돕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 1:7상)

캠퍼스 안내

① 선교관_1

옛 선교사 사택으로 지금은 외부 선교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⑨ 선교사묘역

호남선교에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묘원이 선지동산 위에 자리잡고 있다.



⑮ 본관

본교의 상징적인 본관은 강의실과 교수실, 행정실, 오방 목향 영성관 등이 있다.





② 선교관_2

옛 선교사 사택으로 지금은 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로 사용되고 있다.



③ 선교관_3

옛 선교사 사택으로 지금은 외부 게스트룸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도서관

국내 최고 수준의 신학도서관을 지향하는 도서관은 내실있는 도서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으며 5층은 교수 연구동이다.





⑪ 예음홀

200여석 규모로 연주회, 합창, 예배실로 쓰이고 있다.

⑧ 시청각실

첨단장비와 고급 오디오 시설을 갖추고 음악인의 예술적 소양을 높임은 물론 교회음악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⑰기숙사

기숙사는 총150실로 약 3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게스룸도 마련되어 있다.

⑦ 보건진료실

건강상담, 예방활동, 응급 · 구급진료를 위해 자체 운영되며, 기독교병원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⑯ 명성홀

300여석 규모로 각종 세미나 및 학생활동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



⑩ 대강당

모든 행사와 입학식 및 졸업식장으로 쓰인다. 평상시에는 예배실로 쓰인다.



⑥ 운동센터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내탁구장, 체력단련실, 태권도장 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 멀티미디어 교육장

컴퓨터 관련 정규 과목들의 수업에 사용되고 있다



⑫ 음악관

강의실, 합창실, 레슨실, 연습실, 악기실, 예음홀 등 교회음악의 지도자 및 연주자를 양성하는 산실이다.



⑬ 학생회관

학생활동을 지원하며,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원우회, 대학원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⑭ 정문

교문은 한글의 "신" 으로 "믿음" 을 상징하고 있다.

호남신학대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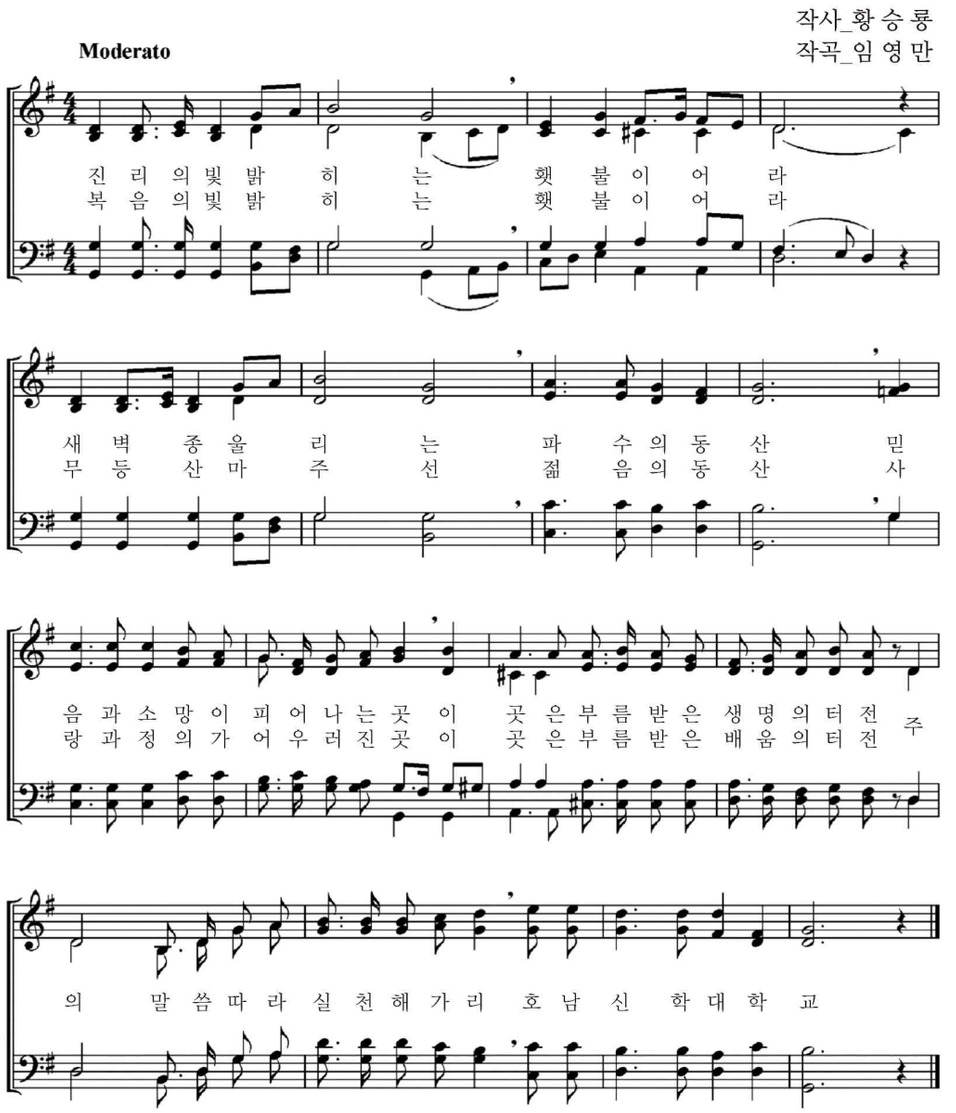
작사_황승룡
작곡_임영만
Moderato
진 리 의 빛 밝 히 는 횃 불 이 어 라
복 음 의 빛 밝 히 는 횃 불 이 어 라
새 벽 종 울 리 는 파 수 의 동 산 믿
무 등 산 마 주 선 젊 음 의 동 산 사
음 과 소 망 이 피 어 나 는 곳 이 곳 은 부 름 받 은 생 명 의 터 전 주
랑 과 정 의 가 어 우 러 진 곳 이 곳 은 부 름 받 은 배 움 의 터 전
의 말 씀 따 라 실 천 해 가 리 호 남 신 학 대 학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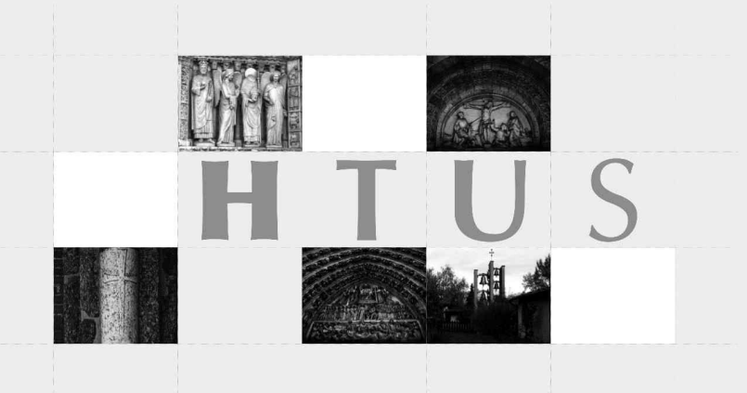

Contents_목차

인사말씀

연혁 ····· 25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 31

이사회 임원명단 ····· 48

역대이사장 ····· 48

대학조직

기구표 ····· 50

역대 총 · 학교장 ····· 51

행정기구 주요보직 ····· 51

부속 · 부설 기관장 ····· 52

지도교수 ····· 53

위원회 ····· 54

교직원

전임교원 ····· 58

직원 ····· 69

학칙 및 내규

대학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 71

학사에 관한 내규 ····· 8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구 교과목 개설 규정) ····· 85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 88
성적관리에 관한 규정 ····· 91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 92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에 관한 규정 ····· 94
성경종합고사에 관한 규정 ····· 96
연주실습 과목 중 W.R(Weekly Recital) 운영에 관한 규정 ····· 97
음악학과 교환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 ····· 98
음악학과 미졸업자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 99
편입생의 학점관리 규정 ····· 100
영어능력 인정시험에 관한규정 ····· 101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 102
전과에 관한 규정 ····· 104
음악학과 전공 이동에 관한 규정 ····· 105
음악학과 학생 행사 참석에 관한 규정 ····· 105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106
대학공정관리위원회규정 ····· 107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 108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규정 ····· 109
국내외 학생교류에 따른 학점인정 규정 ····· 110
교납금 납입 징수 규정 ····· 111

신학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 ····· 112
신학대학원 운영내규 ····· 118
전국신학대학교(KAATS)대학원 학점 교환제 실시규정 ····· 120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해외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 ····· 122

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 123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 126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144

교회음악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학칙 ····· 148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시행세칙 및 규정 ····· 154

상담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학칙 ····· 160

사회복지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 167

교과과정 및 교과목 해설

교양(선택)분야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 174

교양(선택)분야 교육과정 ····· 175

교양분야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 177

교양(선택)분야 학기별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 179

신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 181

신학과 주간 교육과정표 ····· 182

신학과 야간 교육과정표 ····· 183

신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 184

신학과 주간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 185

신학과 야간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 186

사회복지상담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 187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과정표 ····· 188
사회복지상담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 189
사회복지상담학과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 190
음악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 191
음악학과 교육과정표 ····· 192
음악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 195
음악학과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 196
신학대학원 교육과정표 ····· 199
대학원 교육과정표 ····· 203
상담대학원 교육과정표 ····· 206
교회음악대학원 교육과정표 ····· 207
사회복지대학원 교육과정표 ····· 208
음악학과 실기과제곡 ····· 209
대학 교과목 해설 ····· 221
신학대학원 교과목 해설 ····· 248
상담대학원 교과목 해설 ····· 258
대학원 교과목 해설 ····· 260
교회음악대학원 교과목 해설 ····· 277
사회복지대학원 교과목 해설 ····· 282
호남신학대학교 박물관 규정 ····· 285

학생실천규정

신학대학(학부) 학생실천 규정 ····· 289
신학대학원 학생실천 규정 ····· 291

학생생활

학생증 발급 ····· 294

학생신상카드 ····· 294
증명서 발급 ····· 294
학생후생 ····· 295
부직알선 ····· 295
게시물과 광고 ····· 295
국가장학금 ····· 296
학자금대출 ····· 297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출) ····· 297
국가근로장학 ····· 298

병사

학생 병사업무 안내 ····· 301
학사 및 군종장교 입영안내 ····· 302

장학

장학위원회 구성 ····· 305
장학금지급 규정 ····· 305

도서관

도서관 운영규정 ····· 312

생활관

호남신학대학교 사생회 회칙 ····· 320

학생활동(학부)

총학생회 조직표 ····· 324

총학생회 회칙 ····· 325

신학과 학생회 회칙 ····· 331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회칙 ····· 335

음악학과 학생회 회칙 ····· 339

동아리 연합회 회칙 ····· 343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 349

신학과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 350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 351

음악학과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 352

총여학우회 선거시행세칙 ····· 353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 354

학생활동(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원우회 조직표 ····· 356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 357

원우회 선거 시행세칙 ····· 365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회칙 ····· 367

호신선교센터정관(신학대학원) ····· 370

호신선교센터정관(학부) ·····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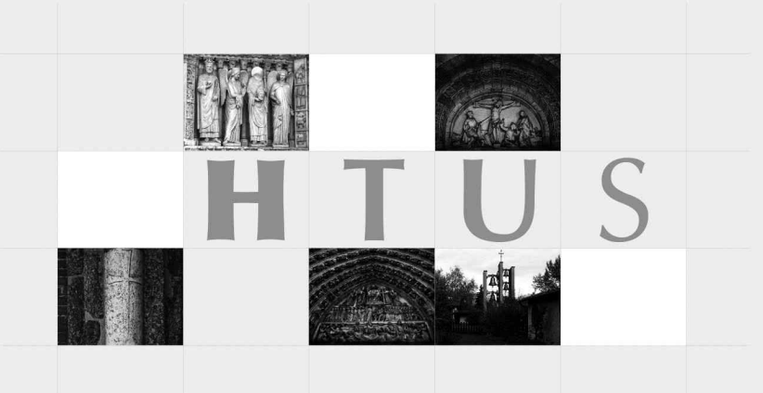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약사

연표

연 혁

1. 약 사

1955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의해 호남지역의 농어촌 교회 교역자 양성을 위해 광주권에 개설된 호남성경학교는 농촌 교역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61년 호남성경학원, 광주야간신학교, 그리고 순천매산신학교등 세 학교가 통합되어 호남신학원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1963년에 호남신학교로 개칭되고, 1972년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인가를 받았다. 1984년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되었다. 1988년에는 교회음악과를 증설하고 1990년에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 1992년에는 종합대학교로 교육부 인가를 받았다. 1995년에는 신학대학원 인가, 1996년과 1997년에는 대학원 증과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상담학과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 대학교의 주요 연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 표

[1950년대 ~1980년대]

1955.03.01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대한민국 서남부의 중심지인 광주권에 농어촌교회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호남성경학교를 개설하다.

1960.04.01 호남 선교 협의회에서 농촌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호남신학원을 설립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1960.09.23 호남신학원 설립안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에 제출되어 인준을 받다.

1961.01.10 호남지방 10개 노회 대표 10명과 선교회 각 지방 대표 5명으로 이사회가 조직되어(이사장에 라덕환 목사) 이사회 정관을 제정하고 호남성경학원과 광주 야간신학교 그리고 순천매산신학교등 3개교가 통합하여 호남신학원이라 칭하고 전호남성경학원장 부명광(George Thompson Brown) 박사를 초대 원장으로 선임하다.

1961.04.11 호남신학원이 광주시 백운동 511번지 소재(전 호남성경학원) 교사에서 개원, 부명광 박사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다.

1961.09.2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에서 본원 제3학년 졸업자가 장로회신학대학 전수과 제4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다.

1963.05.21 “호남신학원”을 “호남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다.

1964.12.01 장로회신학대학의 학제 개편에 따라 우리 신학교 3년 졸업생이 장로회신학대학 부설 신학원에 2년간 수학하고 목사고시에 응시 할 수 있게 되다.

1965.09.17 광주시 백운동 소재 우리 신학교 구내에 로이스터 기념도서관 석조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예배를 드리다.

1966.09.2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1회 총회에서 우리 신학교가 4년제 신학교로 인가되어 장로회신학대학 부설 신학원에서 1년간 수학 후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게 되다.

1967.05.04 부명광 박사가 미국 남장로교선교회 극동 총무로 전임됨에 따라 김형모 박사가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다.

1967.09.20 광주시 백운동 511번지에 본교 기숙사를 신축하고 준공예배를 드리다.

1971.01.18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의 설립 허가를 받고 초대 이사장에 부명광 박사가 취임하다.

1972.02.1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장로회호남신학교”의 설립을 인가 받다.

1973.03.01 제2대 이사장에 조요섭(Joseph Baron Hopper) 목사가 취임하다.

1973.06.12 김형모 박사를 교장직 사면과 동시에 명예교장으로 추대하고 인도아(Thomas Dwight Linton) 목사가 교장 서리직을 맡다.

1974.03.05 인도아 목사가 제3대 교장으로 취임하다.

1975.09.26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와 교계, 각 기관, 독지가, 본교 동문등의 후원으로 광주시 양림동 108번지에 교사(지하 1, 2, 3층)를 신축(건평 954평)하고 봉헌예배를 드리다.

1976.03.01 장로회호남신학교 위치변경 인가를 받아 광주시 양림동 108번지로 이전하다.

1978.08.03 인도아 목사는 임기만료 퇴임하고 오천근 목사가 교장서리직을 맡다.

1979.08.03 제4대 교장으로 맹용길 박사가 취임하다.

1980.11.26 학생모집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되다.

1981.05.02 건설부 고시로 본교 부지가 학교 지구로 시설 결정되어 체육장(654평)을 확장하다.

1981.07.07 맹용길 박사는 1981. 2. 28 교장직을 사임하고 이희철 목사가 제5대 교장으로 취임하다.

1981.12.02 교육부로부터 신학과 야간부(모집정원 40명) 신설 승인 받다.

1982.06.08 이희철 목사는 1982. 4. 6 교장직을 사임하고 제6대 교장으로 황승룡 목사가 취임하다.

1982.06.24 제3대 이사장에 황호은 목사가 취임하다.

1984.01.20 1984학년도부터 입학하여 졸업한 자는 교육법시행령 제 8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다.

1984.11.26 교사(강당, 강의실, 도서관)를 증축(건평 417평)하고 준공예배를 드리다.

1986.11.27 교사(본관, 생활관, 식당, 취사장)를 증축(건평 341평)하고 준공예배를 드리다.

1987.03.31 제4대 이사장에 정길재 목사가 취임하다.

1987.12.09 교회음악과 증과(모집정원 30명)를 승인 받다.

1988.12.20 호남신학대학으로 개편 계획을 승인 받다.

1989.03.13 음악관을 신축(건평 644평)하고 준공예배를 드리다.

1989.09.01 이태리 프레스코발디(G. Frescobaldi) 음악대학과 음악예술 활동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발표회와 연주회를 개최하고 교수.학생 및 학술정보를 교환하게 되다.

1989.10.27 호남신학대학으로 개편 인가 받다.

[1990년대]

1990.03.01 호남신학대학 초대 학장에 황승룡 박사가 취임하다.

1990.10.16 교회음악과 학생정원 20명을 증원 받다.

1991.02.05 교원자격 검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중등학교2급(종교) 정교사)를 승인 받다.

1991.09.1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6회 총회에서 본 대학이 총회 직영신학대학으로 인준 받다.

1992.04.01 호남신학대학교로 개편인가를 받고, 초대 총장에 황승룡 박사가 취임하다.

1992.04.28 볼리비아 기독교대학교(Universidad Cristiana De Bolivea)와 자매결연을 맺다.

1994.06.07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와 자매결연을 맺다.

1994.10.04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본관 신축 기공예배를 드리다.

1995.03.13 목회신학연구원 목회학석사(M. Min.) 과정을 개설하다.

1995.05. 미국 하워드대학 신학부(Howard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와 공동으로 목회학박사(D.

Min.) 과정을 개설하다.

1995.06.12 제5대 이사장에 조영기 목사가 취임하다.

1995.10.18 교육부로부터 대학원(Th. M.), 신학대학원(M. Div.), 목회대학원(Th. M.M.) 신설을 승인 받다.

1996.04.01 호남신학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황승룡 박사가 취임하다.

1996.10.31 호남신학대학교 본관(5,319.6㎡) 준공예배를 드리다.

1996.11.02 교육부로부터 교회음악대학원(M. M.) 신설을 승인 받다.

1997.07.10 교육부로부터 교육여건 우수대학(사립대학 10개 대학)으로 선정 받다.

1997.08.22 제6대 이사장에 장중식 목사가 취임하다.

1997.10.25 교육부로부터 특수대학원 정원(교회음악대학원 20명, 목회대학원 25명, 신학대학원 120명)을 조정 받다.

1997.11.05 교회음악과를 음악학과로 학과명칭 변경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다.

1998.02.12 레 만뜨레디 음악원과 자매결연을 맺다.

1998.07.23 미국 테네시주의 칼슨-뉴먼대학(Carson-Newman College)과 자매결연을 맺다.

1998.08.14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Moscow Presbyterian Theological Academy)과 자매결연을 맺다.

1999.02.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대학종합평가 인정결과 교육영역 최우수대학, 재정경영영역 우수대학으로 인정받다.

1999.03.08 기독교 상담연구원, 호신 Conservatory를 개원하다.

1999.07.05 제7대 이사장으로 정현성 목사가 취임하다.

1999.10.15 도서관 신축 및 음악관 증축 기공예식을 드리다.

1999.11.02 교육부로부터 대학원 신학박사과정(Th. D.)과 기독교상담대학원(M. A.) 신설 승인을 받다.

1999.12.27 미국 남침례교회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소유 부동산(대지 479.7 평, 건물 3동 279.6 평)을 매입하다.

[2000년대]

2000.02.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대학원 종합평가 5개 영역중 4개영역에서 우수대학원으로 선정되다.

2000.04.01 제3대 총장으로 황승룡박사가 취임하다.

2000.05.30 영남신학대학과 자매결연을 맺다.

2000.11.21 도서관(2,951.90㎡) 준공예배를 드리다.

2001.07.2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회전문대학원(석사, 박사)과정의 설립을 인가 받다.

2001.08.22 인도네시아 Sekolah Theologi Reformed Injili Indonesia과 자매결연을 맺다.

2002.02.08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교양교육평가에서 종합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여건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2002.02.19 제8대 이사장으로 정채관 목사 취임하다.

2003.04.03 캐나다 Knox College와 자매결연을 맺다.

2003.07.05 제9대 이사장으로 정해동 목사가 취임하다.

2004.02. 기독교상담대학원과 미국 Blanton-Peale Institute와 자매결연을 맺다.

2004.02.24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다.

2004.02.27 사회복지상담학과를 신설하다

2004.04.01 황승룡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다.
2004.06.01 제4대 총장으로 차종순박사가 취임하다.
2004.09.24 여수시와 본교의 계약에 의거 『손양원 목사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연구』(애양원 포함) 최종보고서를 완성 제출하다.
2005.04.19 총회의 인준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로변경하다.
2005.05.17 개교 50주년 기념예식을 갖다.
2006.03.22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10대 이사장으로 백종대 목사가 취임하다.
2007.03.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학문분야(음악학)평가 5개 영역 중 4개영역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다.
2007.07.01 대만 옥산신학교(Yu-Sh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와 자매결연을 맺다.
2007.07.05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 11대 이사장으로 김유수 목사가 취임하다.
2008.05.23 광주광역시와 본교의 계약에 의거 『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완성 제출하다.
2008.09.10 제5대 총장으로 차종순 박사가 취임하다.
2009.04.06 기숙사 신축 기공예식을 드리다.

[2010년대]

2010.03.24 미국 Georgia Christian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맺다.
2010.04.29 필리핀 Evangelical Mission College와 자매결연을 맺다.
2010.04.12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기공식을 드리다.
2010.08.31 생활관 봉헌예식을 드리다.
2010.09.18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 12대 이사장으로 김유수 목사가 취임하다.
2011.02.08 부명광(George Thompson Brown)박사를 명예신학박사 1호로 추대하다.
2011.02.18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 13대 이사장으로 김재영 목사가 취임하다.
2011.05.17 양림동 선교동산조성사업(1차)준공기념식을 드리다.
2012.02.14 강종희 장로, 고훈 목사, 남정규 목사를 명예신학박사로 추대하다.
2012.08.26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 14대 이사장으로 고훈 목사가 취임하다.
2012.09.10 제6대 총장에 노영상박사가 취임하다.
2013.03.18 교회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장로리더십 아카데미,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평생교육원에 개설하다.
2013.09.12 몽골 Union Bible Theological College (몽골연합신학대학)와 MOU 체결하다.
2013.10.08 안영로 목사, 정현성 목사를 명예신학박사로 추대하다.
2013.10.29 인도네시아 Abdiel Theological Seminary와 자매결연을 맺다.
2013.11.02-03 WCC의 GETI 참가자 200여명이 본교에 방문하여 본교와 광주지역을 소개받고 지역교회를 순방하다.
2013.11.28 갈릴리성서지리문화연구원을 설립하다.
2013.12.03 재학생의 학구열을 고취와 우수한 인재 지원을 목적으로 "호남신학대학교 장학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박찬환 장로가 취임하다.
2014.02.06 캄보디아 Sereisaophoan Christian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맺다.
2014.03.20 미국 애틀란타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와 자매결연을 맺다.

2014.04.30 미국 Biola University와 MOU 체결하다.

2014.07.07 신학교육 전반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목회자 72 명으로 구성된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교육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유수 목사가 취임하다.

2014.08.01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와 MOU 체결하다.

2014.09.29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 15대 이사장으로 고만호 목사가 취임하다.

2014.11.25 융합인지상담복지연구소 설립

2014.12.01 인도네시아 대사명신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2014.12.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평가 에서 '인증 '을 획득하다.

2015.02.10 헝가리 데브레첸 개혁신학대학교(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맺다.

2015.04.13 개교 60주년 기념 예배 및 호신 23기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대회

2015.04.16 황승룡 명예총장, 김유수 목사, 정인수 목사를 명예신학박사로 추대하다.

2015.05.04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원봉사 발대식을 갖다.

2015.05.12 총회지정 한국기독교사적지정식을 갖다.

2015.10.20-22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대학교 (University of Edinburgh) 데이비드 퍼거슨 (David A. S. Fergusson) 학장과 브라이언 스탠리 (Brian Stanley) 교수,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마이클 교회 (St. Michael’s Parish Church)의 담임목사인 스튜워트 길란 (Stewart Gillan) 을 초청하여 “존 로스 서거 백주년 기념 강연 : 스코틀랜드 신학에서 본 존 녹스와 존 로스” 라는 주제로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다

2015.10.24 노영상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제 22대 회장에 선출되다

2016.03.18 노영상 총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제51대 회장에 취임하다.

2016.04.07 멕시코 장로교신학대학과 MOU 체결 하다.

2016.04.12 개교 61주년 기념예배 및 호신 24기 홈커밍대회를 갖다.

2016.06.16 인도네시아의 STT HKBP(개혁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와 재매결연을 맺다.

2016.07.15 사회복지대학원(M.S.W.) 신설 하다.

2016.09.10 제7대 총장 최흥진박사가 취임하다.

2017.06.17 캐나다 Knox College와 협약을 체결하다.

2018.05.02 기독교상담대학원을 상담대학원으로 대학원명을 변경하다.

2018.05.24 루마니아 파르티움 기독대학교(Partium Christian University)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협약(Erasmus+ Program)을 체결하다..

2018.09.29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16대 이사장으로 주계옥 목사가 취임하다.

2019.09.11 슬로바키아 요나스 셀리 대학교, 개혁신학부(University J.Selye, Reformed Theological Faculty, Komarno-Slovakia)와 자매결연을 맺다.

2020.08.25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17대 이사장으로 임준태 목사가 취임하다.

2020.09.10 제8대 총장 최흥진박사가 취임하다.

2021.12.2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교환학생 교류

2022.06.13. 성서영성대학원 신설

2023.01.04. Principal, Sabah Theological Seminary와 MOU를 체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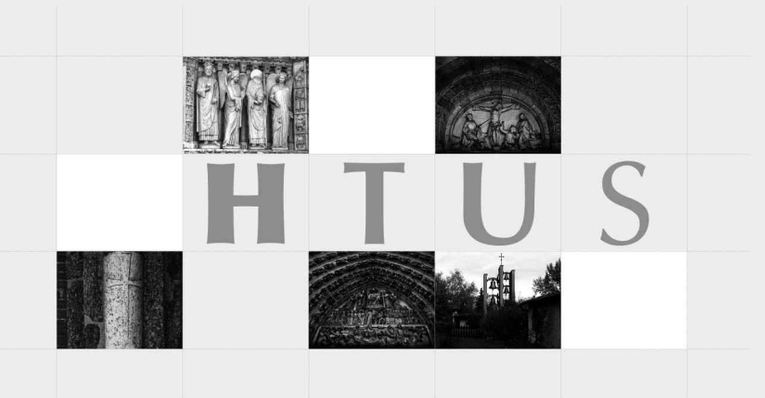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이사회 임원명단

역대 이사장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남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장로회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통재산 중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 보고와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 ~ 제17조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 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개방 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 이사 또는 개방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에 대하여서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사립학교법」 제54조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1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등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제31조의 4(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5(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②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31조의 7(평의원회 운영 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 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장로회 총회 등)에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36조 (임면)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당연히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고 가르치는자.

⑥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⑦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복수 추천자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교수 이하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정년)
3. 조교수 2년(1차)
4. 조교수 5년(2차)

⑧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⑨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대학교의 장이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초빙·겸임, 특임교원 등)

①총장은 명예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특임교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초빙·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6조의 3(교원인사규정)

①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②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37조 (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의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의 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해당된 때
10. 국가・공공 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11. 제32조에 근거한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휴직이 필요한 주요 보직에 임명된 때
12.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39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3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관련 직무 수행 종료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말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8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⑨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

제43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의원면직의 제한)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명예퇴직)

교직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대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①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

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을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 정상 참작,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관할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는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7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

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임시직제외)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된 자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2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부참여) 내지 6급(주사)으로 보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대 학 교

제73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대학원장)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5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실천처, 문헌정보처, 사무처를 둔다.

②처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부참여) 내지 6급(주사) 직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의 2(팀제)

①대학교의 각 실·처 및 필요한 기관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팀장 및 수석팀장은 총장이 직원 중에서 보한다.

③팀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의 3(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호남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②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 (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78조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79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1개의 중앙지 또는 1개의 지방지 신문에 공고한다.

제8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죠지 탐슨 브라운	1921. 4. 30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1
이 사	나 덕 환	1904. 4. 7	4	전남 순천시 장천동 182
이 사	강 문 호	1909. 3. 9	4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05
이 사	김 영 서	1909. 4. 7	4	충남 예산군 예산읍 3909-4
이 사	김 윤 식	1901. 5. 28	4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가 233-2
이 사	로베길전 라빈손	1919. 7. 5	4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
이 사	호미티이거보	1932. 12. 11	4	전북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이 공 선	1925. 8. 15	4	전북 군산시 영화동 21
이 사	이 귀 동	1910. 8. 20	2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18
이 사	토마스 두와이 린톤	1922. 12. 4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0-2
이 사	정 정 모	1931. 10. 27	2	전북 김제군 죽산명 옥성리 445
이 사	김 형 모	1906. 4. 4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6
이 사	장 동 진	1925. 4. 8	2	광주광역시 임동 100
이 사	이 상 구	1921. 1. 18	2	충남 천안시 오룡동 18
이 사	이 근 택	1900. 6. 7	2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34
감 사	박 홍 기	1916. 11. 12	2	전남 순천시 풍덕동 926-1
감 사	강 해 성	1919. 10. 15	1	광주광역시 학동 1구 631-16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1월 18일(인가)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장로회 호남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호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장로회 호남신학교는 199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을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5.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3급	1명
7급	1명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35명
일반직 계	17명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기술직계	7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계	11명
6등급	1명
7등급	2명
8등급	2명
9등급	2명
10등급	4명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재산관리)

정관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선임방법)

정관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 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

강북	1인	강남	1인
중부	1인	동부	1인
서부	3인	동문회	1인
유지이사 2인		개방이사 4인	
총장	1인		
계	15인		

제5조 (직원직무설치)

이사회에서는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임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8인
2. 재정업무위원 7인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본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사회 임원명단

구분	성명	직분	임기	노회/교회	파송기관	교육경력
이사장	임준태	목사	2020.08.26.-2024.08.25.	광주노회/하남교회	개방이사	
이사	이전호	목사	2022.11.13.-2026.11.12.	서울서노회/충신교회	유지이사	교육
이사	황세형	목사	2022.11.13.-2026.11.12.	전북/전주시온성교회	유지이사	
이사	서진선	목사	2023.03.14.-2027.03.13	광주동/예향교회	총동문회 파송	
이사	문성욱	목사	2023.03.14.-2027.03.13	서울서북/일산명성	교단파송(강북)	
이사	신은수	목사	2023.03.14.-2027.03.13	광주동/열린교회	교단파송(서부)	
이사	정창환	목사	2023.03.14.-2027.03.13	군산/군산신흥	교단파송(서부)	
이사	권오선	목사	2020.06.18.-2024.06.17	용천노회/예안교회	교단파송(중부)	교육
이사	이봉석	장로	2020.06.18.-2024.06.17	경동노회/경주중앙	교단파송(동부)	교육
이사	최상민	목사	2020.06.18.-2024.06.17	순서노회/영송교회	교단파송(서부)	교육
이사	최원준	목사	2020.06.18.-2024.06.17	안양노회/안양제일교회	교단파송(서울강남)	교육
이사	곽군용	목사	2020.08.26.-2024.08.25.	목포노회/양동제일교회	개방이사	
이사	남택률	목사	2020.08.26.-2024.08.25.	전남노회/유일교회	개방이사	
이사	류철배	목사	2020.08.26.-2024.08.25.	용천노회/보배로운교회	개방이사	
이사	최흥진	목사	2020.09.10.-2024.09.09.	광주동노회/호남신학대학교	당연직(총장)	교육
감사1	남근우	장로	2021.04.23-2023.04.22	전남/광주영락교회	교단감사	
감사2	최봉윤	장로	2021.04.23-2023.04.22	광주/화정교회	개방감사	

역대 이사장

구분	성명	비고
1대	부명광 선교사	
2대	조요셉 선교사	
3대	황호은 목사	
4대	정길재 목사	
5대	조영기 목사	
6대	장중식 목사	
7대	정현성 목사	
8대	정채관 목사	
9대	정해동 목사	
10대	백종대 목사	
11대	김유수 목사	
12대	김유수 목사	
13대	김재영 목사	
14대	고훈 목사	
15대	고만호 목사	
16대	주계옥 목사	
17대	임준태 목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기구표

역대 총학교장 명단

행정기구임원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

각종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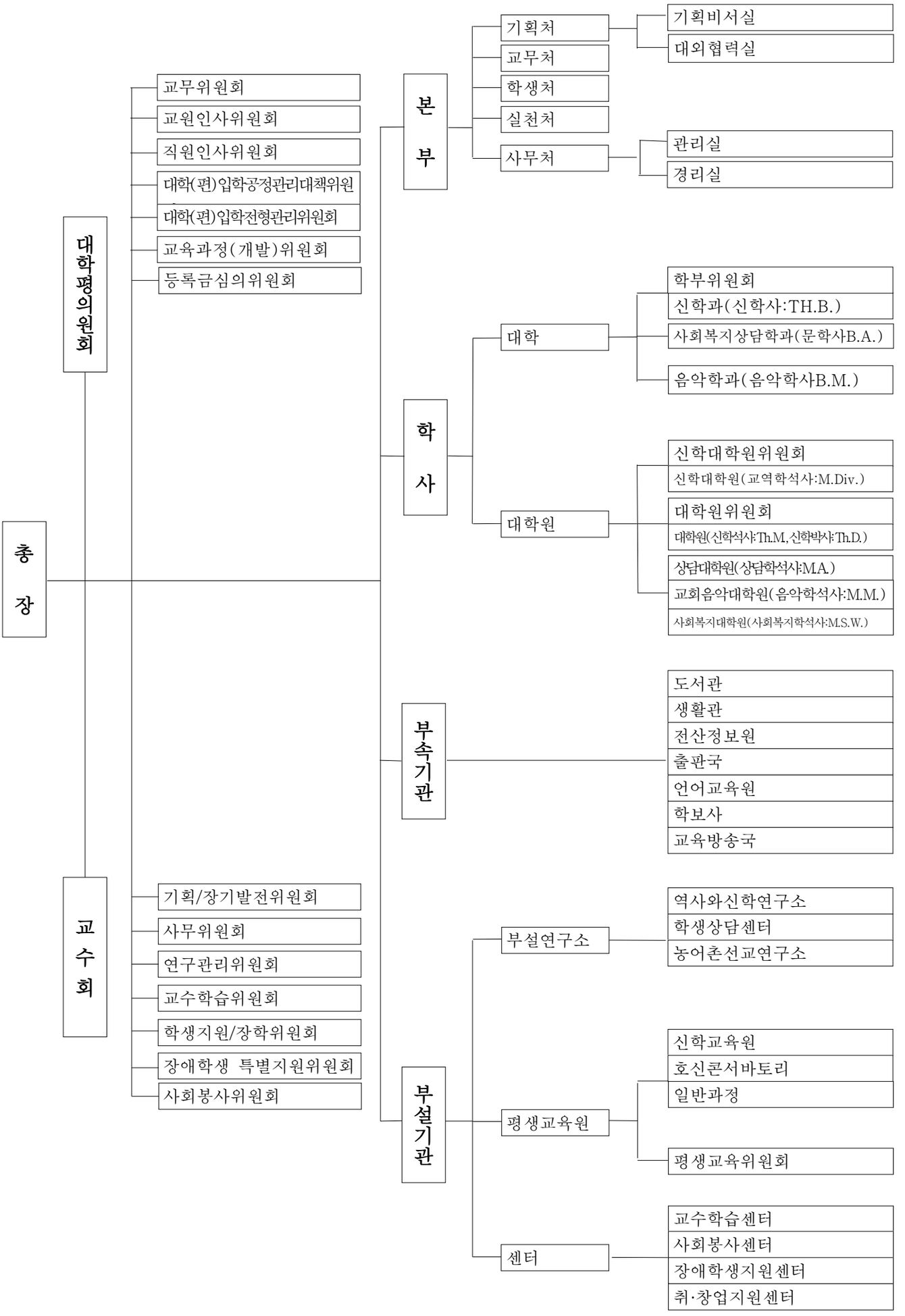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대학(편)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
대학(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수회
기획/장기발전위원회
사무위원회
연구관리위원회
교수학습위원회
학생지원/장학위원회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본부
기획처
기획비서실
대외협력실
교무처
학생처
실천처
사무처
관리실
경리실
학사
대학
학부위원회
신학과(신학사:TH.B.)
사회복지상담학과(문학사B.A.)
음악학과(음악학사B.M.)
대학원
신학대학원위원회
신학대학원(교역학석사:M.Div.)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신학석사:Th.M,신학박사:Th.D.)
상담대학원(상담학석사:MA.)
교회음악대학원(음악학석사:M.M.)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M.S.W.)
부속기관
도서관
생활관
전산정보원
출판국
언어교육원
학보사
교육방송국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역사와신학연구소
학생상담센터
농어촌선교연구소
평생교육원
신학교육원
호신콘서바토리
일반과정
평생교육위원회
센터
교수학습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역대 총 · 학교장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1955.03.01~1961.01.09	호남성경학교 설립
2 부명광 (George Thompson Brown)	1961.01.10~1967.05.03	호남신학원 초대원장
3 김형모	1967.05.04~1973.06.11	2대 호남신학교장
4 인도아 (Tomas Dwight Linton)	1974.03.05~1978.08.02	3대 교장
5 맹용길	1979.08.03~1981.02.28	4대 교장
6 이희철	1981.07.07~1982.06.07	5대 교장
7 황승룡	1982.06.08~1990.02.28	6대 교장
8 황승룡	1990.03.01~1992.03.31	호남신학대학 초대학장
9 황승룡	1992.04.01~1996.03.31	호남신학대학교 1대 총장
10 황승룡	1996.04.01~2000.03.31	호남신학대학교 2대 총장
11 황승룡	2000.04.01~2000.03.31	호남신학대학교 3대 총장
12 차종순	2004.06.01~2008.05.31	호남신학대학교 4대 총장
13 최흥진	2008.06.01~2008.09.09	총장직무대행
14 차종순	2008.09.10~2012.09.09	호남신학대학교 5대 총장
15 노영상	2012.09.10~2016.09.09	호남신학대학교 6대 총장
16 최흥진	2016.09.10~2020.09.09	호남신학대학교 7대 총장
17 최흥진	2020.09.10~2024.09.09	호남신학대학교 8대 총장

행정기구 주요보직

보직명	성명
총장	최흥진
대학원장	황민효
신대원장	황민효
기획처장	조용현
교무처장	박일연
학생처장	서재덕
실천처장	박흥용
사무처장	송인동

부속 · 부설 기관장

부속기관	도서관장	박용범
	생활관장 전산정보원장	서재덕
	언어교육원장	송인동
	교육방송국/학보사 주간	박종화
부설연구소	역사와 신학연구소장	홍지훈
	학생상담센터장	서재덕
	농어촌선교연구소장	강성열

학과장 · 기타

학과장 및 기타	신학과장	박흥용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이종익
	음악학과장	박수용
	상담대학원장	박일연
	교회음악대학원장	박수용
부속교육기관장	평생교육원장	오오현
	콘서바토리원장	박응수
기타	신학이해주간 및 출판국장	박용범
	취창업지원센터장	조영석
	교수학습센터장	박흥용
	사회봉사센터장	조영석

2023학년도 지도교수

학과	학년	주간	야간
신학과	1학년	**박홍용**	
	2학년	**김충환**	
	3학년	**김병모**	
	4학년	**황민효**	**조용현**
음악학과	1학년	**박수용**	
	2학년	**박종화**	
	3학년	**황양숙**	
	4학년	**박수용**	
사회복지상담학과	1학년	**이종익**	
	2학년	**오오현**	
	3학년	**박일연**	
	4학년	**이성곤**	
신학대학원	1학년	**홍지훈**	강성열(지도) 최승기(멘토)
	2학년	**이준섭**	
	3학년	**서재덕**	

호남신학대학교 위원회 배정표

2023년 3월 1일 기준

번호	위원회명	위원장	담당업무	위 원	실 무
1	교무위원회	총장	학교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대외협력의 주요 사항	총장, 신대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음악학과장, 사무처장, 실천처장, 교수학습센터장 (9)	부속실
2	장기발전기획 위원회	기획처장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논의, 기획 관련 제반 사항 및 자체평가 기획관리	기획처장, 신대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홍지훈, 박수용, 박종화, 이성곤 (9)	기획실장
3	인사위원회	교원인사 위원회/ 신대원장	교수초빙, 승진, 재임용 심사, 교원평가	신대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음악학과장, 학생처장, 최승기 (7) * 신임 교수 채용 및 승진 업무, 해당 파트 선임교수 동석	사무처장
		직원인사 위원회/ 사무처장	직원초빙, 승진, 근태 평가 심사	사무처장, 신대원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부처장, 교무실장, 문헌정보실장 (7) * 채용 및 연관 부서 실장 동석	사무부처장
4	신학대학원(대학원)위원회	신대원장(대학원장)	신대원 및 대학원 교무, 학생 업무	신대원장(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실천처장, 김병모 (5)	교무실장 신대원 및 대학원 담당
5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	교회음악대학원장	교회음악대학원 교무, 학생 업무	교회음악대학원장, 황양숙, 박종화, 콘서바토리원장, 조창후 (5)	교무실장 대학원 담당
6	상담대학원위원회	상담대학원장	상담대학원 교무, 학생 업무	상담대학원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도서관장, 이성곤, 학생상담센터장 (5)	
7	사회복지대학원위원회	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 교무, 학생 업무	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도서관장, 이성곤, 학생상담센터장 (5)	
8	학부위원회	교무처장	학부 교무, 학생, 입학, 장학(장학위원회가 겸임), 경건, 생활관	교무처장, 신학과장, 음악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생활관장 (5)	교무실장 학부 담당
9	학생지원위원회/ 장학위원회 겸직	학생처장	각 과정의 학생 업무, 장학 업무 등	학생처장, 신대원장, 기획처장, 신학과장, 음악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6)	학생처 담당
10	사무위원회	사무처장	구매, 입찰, 시설, 용역, 임대관리, 행정관리, 주차관리, 전산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부처장, 전산실장, 교무실장, 박종화 (7)	사무부처장
11	연구관리위원회	연구관리처장	연구지원, 관리규정, 도서관, 박물관, 언어교육원, 학보사, 방송국, 연구소의 역할을 겸함	연구관리처장, 기획처장, 언어교육원장, 음악학과장, 도서관장, 홍지훈, 김병모 (7)	연구관리 담당자
12	대학(편)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교무처장	입시 및 입학 관리	교무처장, 신대원장, 신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음악학과장, 송인동, 이준섭 (7)	교무실장
13	대학(편)입학공정 관리위원회	학생처장	입학공정 관리	학생처장, 도서관장, 기획처장, 강성열, 김충환 (5)	교무실장
14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교무처장	대학입학전형관련 자체 영향평가	교무처장, 신대원장, 신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음악학과장, 오오현, 외부위원 1인 (7)	교무실장
15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처장	등록금 심의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학생대표 3인, 외부전문가 2인(조인선, 김현준) (8)	학생처 담당
16	교육과정위원회	교무처장	교과과정 편성 및 개편 심의	교무처장, 이준섭, 최명희, 오오현, 이성곤, 황양숙 (6)	교무실장
17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장	도서관 관련 업무 전반(도서관 관련 운영, 제규정, 발전계획 등)	도서관장, 사무처장, 연구관리처장, 최승기, 강성열 (5)	문헌정보실장
18	사회봉사위원회	사회봉사센터장	사회봉사관련 업무 전반	사회봉사센터장, 신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음악학과장, 생활관장, 교무처장, 교수학습센터장 (7)	학생처 담당
19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지원 센터장	장애학생 지원업무 전반	장애학생지원센터장(학생상담센터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신대원장, 신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음악학과장 (7)	학생상담센터 담당
20	소수집단학생 특별지원위원회	학생상담 센터장	소수집단학생 지원업무 전반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신대원장, 신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음악학과장 (7)	학생상담센터 담당
21	대학평의원회	기획처장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조교 1인, 학생 2인(총학생회장, 원우회장), 동문회장, 김태호 목사, 전종찬 목사, 이양수 목사 (12)	기획실장
22	기금운용심의회	총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총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경리실장, 학생2인(총학생회장,원우회장), 외부인사1인(조인선) (9)	기획실장
23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기획처장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처장, 사무처장(부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4)	기획실장
24	학술진흥 및 연구윤리위원회	교무처장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자의 연구 윤리 확립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관리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음악학과장(7)	교무처 연구담당

* 총장은 각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배석할 수 있다.

소위원회

1. 신입생모집소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위원: 신학대학원장(대학원장), 신학과장, 음악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5)

2.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기획위원: 기획처장, 홍지훈, 음악학과장, 교수학습센터장, 박종화 (5)
- 자체평가연구위원: 대학이념 및 경영(조용현), 교육(서재덕, 이성곤), 교직원(송인동),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황민효), 대학성과 및 사회적책무(박일연) (6)
- 자체평가실무위원: 대학이념 및 경영(오선근), 교육(서현주), 교직원(한수지),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이경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책무(전재민) (5)

※ 연구위원, 실무위원 수시 임명

3. 대학구조개혁 TF
- 연구위원: 자체평가연구위원과 겸임 및 관련 부서장
- 실무위원: 자체평가실무위원과 겸임 및 관련 부서 직원

4. 예배소위원회
위원장: 실천처장, 위원: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 이재호, 황양숙 (5)

5. 교수학습위원회
위원장: 교수학습센터장, 위원: 교무처장, 신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음악학과장, 오오현(책임연구원), 최명희(책임연구원) (7)
(교수학습위원회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와 겸함. 원격수업 관련시 총학생회장, 원우회장이 위원으로 참석)
※ 교수학습센터는 원격교육지원센터를 겸함

6. 정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위원: 신학대학원장, 기획처장, 음악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5)

7.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
- 당연직 위원: 학생처장(위원장), 학생상담센터장
- 임명직 위원: 피해자 신분과 사안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3인과 학생 위원 1인
- 간사: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8. 강사 및 객원교원 초빙 심사위원회
-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
- 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심사위원회: 교무처장(위원장) 외 2인 이상
- 음악학과 심사위원회: 음악학과장(위원장) 외 2인 이상

※ 다른 인사위원들과 초빙 해당 파트 교수들도 참여할 수 있음

9.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위원: 신학대학원장, 신학과장, 음악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교수학습센터장, 송인동, 오오현 (8)

10. 교직원 운영 TF
위원장: 교원인사위원장(신학대학원장), 위원: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음악학과장, 법인국장(간사) (6)

11. 발전계획 수립 TF
위원장: 기획처장, 위원: 학생처장, 교수학습센터장, 기획실장, 교무실장 (5)

12.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총장, 위원: 송인동, 오선근, 이경원, 서현주 (5)

13. 정년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승기, 위원: 김충환, 황양숙 (3), 서기: 교원인사위원회 서기(송인동)

14. 교원해외활동규정수립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서기: 기획처장, 위원: 사무처장, 음악학과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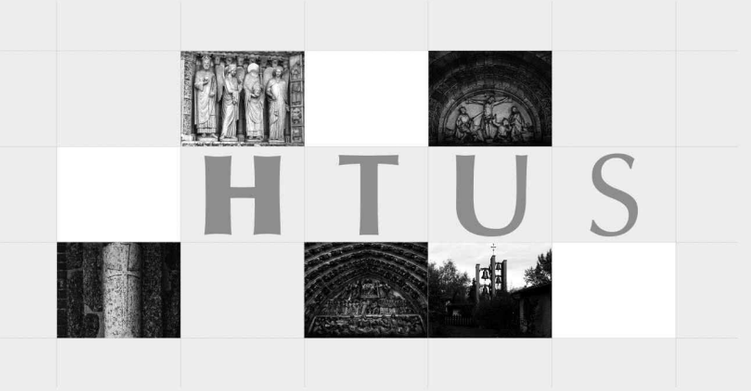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전임교원

직　원

교 원

총장

최흥진 교수「신약학」

전남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Yale university & Divinity School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Th.D.)
(062)650-1608
choihj@htus.ac.kr

신학과 / 성서신학

강성열 교수「구약학」

서울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Th.D.)
(062)650-1611
http://iloveoti.com, sykang@htus.ac.kr

조용현 교수「구약학」

연세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
미국 Drew University(M.A.)
미국 Brite Divinity School at TCU(Ph.D.)
(062)650-1601
yhcho@htus.ac.kr

서재덕 교수「구약학」

장로회신학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Universität Jena(Dr.theol.)
(062)650-1613
jaeduckseo@htus.ac.kr

김병모 교수「신약학」

한양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M.A.)
독일 Heidelberg 대학교 (Dr.theol)
(062)650-668
kimbm@htus.ac.kr

박흥용 교수「신약학」

전남대학교(B.A.)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Th.M.)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Th.D.)
(062)650-1647
paninny@hanmail.net

신학과 / 이론신학

홍지훈 교수「역사신학」

연세대학교(B.E.)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Bonn 대학교(Dr.Theol)
(062)650-1606
jhhong@htus.ac.kr

이준섭 교수「역사신학」

호남신학대학교(B.A.)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Dr.Theol)
(062)650-1636
junsebi@htus.ac.kr

최상도 교수「역사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Divinity School(M.Th.)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Divinity School(Ph.D.)
s.d.choi@htus.ac.kr

신재식 교수「조직신학」

서울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Drew 대학교 Theological School(S.T.M.)
미국 Drew 대학교(Ph.D.)
(062)650-1612
jshin@htus.ac.kr

황민효 교수「조직신학」

전남대학교(B.A.)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M.Div.)
미국 Union- PSCE(Ph.D.)
(062)650-1637
minhyo@htus.ac.kr

최유진 교수「조직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Th.M.)
미국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Ph.D.)
(062)650-1647
yjc99@htus.ac.kr>

박용범 교수「기독교윤리학」

서울대학교(B.S.)
미국 Rutgers University 박사과정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Boston 대학교 School of Theology(S.T.M.)
미국 Boston 대학교 School of Theology 기독교윤리학 박사(Ph.D.)
미국 New York Thelolgical Seminary 겸임교수 역임
한남대,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 객원교수 역임
(062)650-1516
ybpark@htus.ac.kr

김형민 명예교수「기독교윤리학」

건국대학교(B.A.)
한신대학교(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독일 퀠른 대학교 철학부 수학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Dr.Theol)
(062)650-1604
hmkim@htus.ac.kr

황승룡 명예총장「조직신학」

조선대학교(B.E.)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Th.D.)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연구
미국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연구
미국 San Fransico Theological Seminary객원교수
세계교회목회연구원(World Church Ministry Institute)교수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 객원교수
syhwang@htus.ac.kr

차종순 명예총장「역사신학」

전남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Th.M.)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Th.D.)
cscha@htus.ac.kr

신학과 / 실천신학

이선이 교수「선교신학」

서울대학교(B.S.)
장로회신학대학교 (M.Div.)
미국 FCTS(D.Min.)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Th.M.,Th.D.)
(062)650-1602(O)
sylee@htus.ac.kr

김동선 명예교수「기독교사회윤리·선교신학」

외국어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영국 The University of Edinburgh(Ph.D.)
고기교회 담임목사 역임
(062)650-1614
dskim@htus.ac.kr

김충환 교수「예배학」

숭실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Universitat Regensburg(Ph.D.)
(062)650-1613
chkim@htus.ac.kr

최승기 교수「영성학」

서울대학교(B.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Th.M.)
캐나다 Regis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Dip. in Spiritual Direction)
캐나다 Knox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Th.D.)
(062)650-1633
sgchoi@htus.ac.kr

조한상 교수「영성학」

동국대학교(B.C.)
서강대학교 대학원(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MATS)
미국 시카고 3개신학대학원(D.Min)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Th.D.)
부산장신대학교 초빙교수, 조교수, 외래교수 역임
(062)650-1646
chohs114@htus.ac.kr

최명희 교수「기독교교육학」

연세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M.A.)
미국 San-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M.Div.)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062)650-1649
mhcedu@htus.ac.kr

신학과 / 교양

송인동 교수「영어」

전남대학교(B.A.)
전남대학교 대학원(M.A.)
전남대학교 대학원(Ph.D.)
영국 Bell College 영어교육 연수

(062)650-1607
is@htus.ac.kr

양소영 교수「영어」

이화여자대학교(B.A.)
서강대학교 대학원(M.A.)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Ph.D.)
(062)650-1643
syyang@htus.ac.kr

음악학과 / 피아노

구재향 교수「피아노」

서울대학교(B.M.)
미국 llllinois(M.M.)
미국 Cincinnati 대학교 (D.M.A.)
미국 Cincinnati 대학교 (Artist Diploma)
(062)650-1622
kooj@htus.ac.kr

한정숙 명예교수「피아노」

전남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M.A.)
미국 Emory 대학교 수학
전남대학교 강사 역임

음악학과 / 성악

조창후 교수「성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독일 ESSEN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명지홀리콰이어 음악감독 겸 지휘
동덕여대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출강
한국국제크리스천아트스쿨의 교장
(062)650-1628
musiker1970@htus.ac.kr

강양은 명예교수「성악」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M.A)
ltalia Freschbald 음악원 성악코스 수료
미국 인디애나 음악대학 오페라 과정 수료

임해철 명예교수「성악」

연세대학교(B.M.)
이태리 Santa Cecilia Conservatorio(Diploma)
연세대 강사 역임
(062)650-1624
hclim@htus.ac.kr

신은정 교수「성악」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석사)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아카데미(Diploma)
이탈리아 Re Manfredi 국제음악아카데미 (Diploma)
sejmezzo@htus.ac.kr

음악학과 / 오르간

황양숙 교수「오르간」

이화여자대학교(B.M.)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M.A)
미국 Manhattan School of Music(M.M)
미국 Manhattan School of Music(Professional Studies)
미국 Manhattan School of Music(D.M.A)박사과정 이수
(062)650-1623
yshwang@htus.ac.kr

음악학과 / 실용음악

박수용 교수「색소폰」

미국 New York 대학교 (B.A.)
미국 New York 대학교 (M.A.)
미국 Five Town College 박사과정 (D.M.A.)이수
(062)650-1625
yardbird72@htus.ac.kr

박종화 교수「재즈피아노」

미국 New School (B.A.)
미국 New York 대학교 (M.A.)
(062)650-1621
jong0130@htus.ac.kr

최영미 교수「재즈 작곡, 재즈 피아노」

네델란드 Royal Conservatoire The Hague 재즈 작곡 Master
네델란드 Royal Conservatoire The Hague 재즈 피아노 Bachelor
네델란드 Royal Conservatoire The Hague 작곡 Bachelor
이탈리아 시에나 재즈 음악학교 재즈 피아노 Certificated
(062)650-1624
choicemuzik@htus.ac.kr

황태용 교수「작곡이론」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작곡과
광신대학교 음악대학원 작곡과
(062)650-1629
wooda65@htus.ac.kr

음악학과 / 이론

임영만 명예교수「교회음악이론」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M.M.E.)
미국 Louisiana Baptist Univ.종교음악박사(D.S.M hon.)
ymlim@htus.ac.kr

음악학과 / 교육행정

박응수 석좌교수「성악」

서울신학대학교
이태리 Cesena "B. Maderna" 국립음악원(Diploma)
이태리 Pescara 고등음악원(Diploma)
이태리 Pesaro "Citta di Pesaro" 아카데미(Diploma)
목포대, 서울신학대, 협성대, 한림연예예술고 강사 역임
여수오페라단 단장
(062)650-1619
holypark@htus.ac.kr

사회복지상담학과 / 목회상담학

오오현 교수「목회상담학」

호남신학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Blanton Peale 상담대학원 수료
순천대학교 대학원(M.A.)
계명대학교 대학원(Ph.D.)
용전교회 담임목사 역임
(062)650-1663
ohy1015@htus.ac.kr, ohy1015@hanmail.net

이재호 교수「목회상담학」

서강대학교(B.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Drew University(S.T.M.)
미국 Drew University(Ph.D.)
장로회신학대 평신도교육원, 서울여대대학원 강사 역임
(062)650-1641
jaeho_l@htus.ac.kr

조경미 교수「상담학」

조선대학교(B.A.)
조선대학교 대학원(M.A.)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M.A.)
목포대학교 대학원(Ph.D.)
미국 ACADCI COLLEGE(Ph.D.)
미국 Blanton-Peale Graduate Institute & Counseling Center 수료
(062)650-1617
hsh2506@htus.ac.kr
hsh2506@hanmail.net

김진영 명예교수「목회상담학」

중앙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Drew University 신학교 목회학과 상담전공(S.T.M.) 수료
미국 Drew University 대학원 졸업(M.Phil.)
미국 Drew University 대학원 졸업(Ph.D.)
(062)650-1662
atom@htus.ac.kr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회복지학

박일연 교수「사회복지학」

한일장신대학교(B.A.)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M.A.)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Ph.D.)
전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수료)
순천 청암대, 남부대 교수역임
(062)650-1669
ncmr12@htus.ac.kr

이성곤 교수「사회복지학」

전북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숭실대학교 (M.S.W)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Ph.D.)
062-650-1638(O)
bogmi@htus.ac.kr

박신향 교수「영성지도」

연세대학교(B.S.N.)
미국 San-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Dip. in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MA. in Religion and Psychology)
미국 San-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M.Div.)
미국 Together in the Mystery(Dip. of the Art of Supervising Spiritual Directors)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Th. D.영성신학)
650-1615(O)
pshfragrance@htus.ac.kr

이종익 교수「사회복지학」

학력 숭실대학교(B.A)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M.A.)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사회복지학 Ph.D.)
(062)650-1642
lewing@htus.ac.kr

조영석 교수「사회복지 실천」

학력 호남신학대학교(B.A)
학력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vi)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목회상담학 석사 (Th.M)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교육심리학)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중독재활복지학 Ph.D.)
(062)650-1644
openmind@htus.ac.kr

직 원

부 서	직 위	성 명	비 고
기획비서실	기획비서실장(6급)	오선근	기획・대외협력업무(법인국장・사무부처장 겸)
교무실	교무실장(6급)	서현주	학부 업무
	과장(6급)	전재민	대학원 업무
	실원(무기계약직)	이은실	교무행정 보조
	실원(정년연봉제)	고세정	학생처, 실천처 업무
사무처	사무처장(교수)	송인동	사무처장 업무
관리실	사무부처장(6급)	오선근	사무처 관리 업무
	실원(기능직9급)	박하웅	관리행정 보조(영선)
경리실	실원(정년연봉제)	이미정	경리(출납・예결산) 업무
	실원(정년연봉제)	한수지	경리(급여・등록금) 업무
	실원(정년연봉제)	나현정	영양사
문헌정보실	문헌정보실장(6급. 사서)	이은경	사서업무(수서・편목), 부속실업무
	차장(5급)	윤재권	관리업무(대출・시설관리)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센터장(교수)	이성곤	교수학습센터 업무
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장(교수)	조영석	취창업지원센터 업무, 사회봉사센터장 겸
생활관	생활관장(교수)	서재덕	생활관장 업무
전산실	전산실장(7급)	이경원	전산 업무
평생교육원	콘서바토리원장(교수)	박응수	콘서바토리원장 업무, 평생교육실장 겸
학생상담센터	연구원(교수)	조경미	학생상담센터 업무
기타	야간경비(계약직)	정충호 이승철	야간 경비(생활관 등)
	청소・조리(식당)		외주 계약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및 내규

- 대학
- 신학대학원
- 대학원
- 교회음악대학원
- 기독교상담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민주교육의 이념에 따라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서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양성과 목회자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별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각 학과의 **2023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비 고
인문사회	**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35명** 34명	
예 능	음악학과	50명	
합계		119명	

제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학년 .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방학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도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3조 에 따라 1학점당 15시간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7조 (임시휴업)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입학(전·편입학·재입학 포함)

제8조 (입학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학자격)

① 모든 입학지원자는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② 제 1학년 입학지원자는 신학과의 경우 세례 받고 당회장 추천을 받은자,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는 당회장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입학지원자가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자격이 실효된다.

제10조 (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개강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편입학 자격)

① 본 대학교 각 학과의 제2,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전급학년 이상을 수료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전적(출신)대학교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본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편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 편입학자의 선발은 각 학과에 따라 필기, 면접, 실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당회장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입학시험)

① 신입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면접고사, 실기고사를 병과하여 이를 사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별고사의 성적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학별 고사(논술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 (위원회)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들을 둔다.

제13조의3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각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두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부형 기타 인으로서 학생의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보증인이 부재 시는 부보증인이 대신하여 전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보증인 또는 부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6조 (휴학절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과 함께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의 지도를 받은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휴학사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①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②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③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④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17조 (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재학기간 중 휴학기간은 1년 단위로 5회 이내로 한다.

②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4.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의2 (학사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연속하여 2회 또는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8에 해당한 자.

제5장 교과의 이수

제21조 (교과목 구분)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교양과목의 학점 배점기준은 전체 과목의 30%로 하되, 학과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일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제22조 (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교과 단위 이수)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체육과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24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수업시간표는 각 학과에서 매학기 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시작 전까지 공고한다.

제25조 (수강신청)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그 학기의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6학점이며, 1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단 복수전공 이수중인자에 한하여 2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7조 (졸업 및 학점)

① 졸업을 위해서는 8학기 이상의 등록과 필수학점을 포함 한 130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이 필요하다.

②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3학년 98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8조 (졸업 및 학위)

①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졸업 논문, 시험, 연주 등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전공에 대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과 - 신학사
2. 음악학과 - 음악학사
3. 사회복지상담학과 - 문학사

제29조 (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1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3. 해당학과의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제30조 (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학칙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한다.

제31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은 이수케 한다.

제32조 (학년 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학년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 (시험)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각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시 또는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학사경고)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8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성적 평가등급)

① 학업성적은 출석성적,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수	비 고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D^+	1.5	65 - 69	
D	1.0	60 - 64	

② D학점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계산하여 급제하며 평점으로 계산한다.

③ 일단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한다.

⑤ 제 1항의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성적, 출석성적 등의 반영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출석의무)

①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당 결석일수가 소정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다.

③ 각 교과목별 결석 허용한계는 그 학기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결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의2 (결석초과로 인한 과목낙제)

① 제3조(출석의무)에서 정한 결석허용 한계를 초과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성적을 과목낙제(F) 처리한다.

② 모든 학생은 자신의 교과목별 결석회수를 기록 보관하여 결석한계 초과로 인한 과목낙제에 항시 유의해야 한다.

제37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성적은 평점 4.0이상이 될 수 없다.

제38조 (재수강신청)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해당학기 이수과목의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제39조 (부전공)

전공학과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그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재학 당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 이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 (복수전공)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수전공(제2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2개의 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전과)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출, 전입학과의 운영실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점은행제

제42조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며,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규율 . 포상 . 징계

제43조 (규율)

학생은 기독신자로서 신앙의 성장에 힘쓰고 경건 단정한 생활태도를 잃지 않으며 전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이고 따로 정하는 교칙을 준수하며 장래 교회 및 국가, 인류사회에 성실한 봉사자와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4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① 총장은 학칙을 어기고 그 본분에 어긋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한다.

1.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불량한 자.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이단사이비 종파에 소속되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5.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교수회 또는 징계 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장 학생활동

제46조 (학생회의 설치 및 승인)

① 학풍을 쇄신하고 신앙을 배양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호남신학대학교 학생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재해시에는 학생회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47조 (회비의 납부)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기타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④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49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1조 (활동사전 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회에 있어서 시설물의 이용 시에는 7일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의2 (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대학 내에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2조 (간행물의 지도와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재·편입학 금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9장 납 입 금

제54조 (납입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5조 (납입규정)

모든 납입금은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6조 (징계학생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학기간이 1학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57조 (납입금의 반납불가)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장 장 학 금

제58조 (장학금의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9조 (근로실습장학금)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C)이상을 얻은 자로 학비 부담능력이 어려운 학생에게 근로 실습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 (장학세칙)

총장은 장학 규정에 관한 세칙을 따로 정한다.

제11장 특 별 생

제61조 (외국인학생)

외국인 특별학생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공개강좌

제62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는 전도, 실업, 교양 등의 향상 또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논리와 그 응용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교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등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강 때마다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63조 (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장 직 제

제64조 (직제)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4장 교 수 회

제65조 (교수회 설치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그 밖의 사람도 참가시킬 수 있다.

제66조 (교수회의 소집)

① 교수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의는 제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장 부속기관 · 부설기관

제68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 부속기관으로서 도서관, 생활관, 출판국, 학보사, 교육방송국을 둔다.

② 본 대학교 부설기관으로서 부설연구소와 평생교육원을 둔다.

③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학도서관의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자체평가

제69조 (목적)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70조 (규정)

자체평가 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장 장애학생 지원

제71조 (인정 및 적용)

①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한 자(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관련법에 따라 지원한다.

제72조 (위원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30조에 근거하여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3조 (재학 연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 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74조 (학점등록제)

① 장애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수를 기준으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학점등록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제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 (휴학 기간 특례)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본 개정학칙은 199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학칙에 준한다. 다만, 종전 학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3. 본 개정학칙은 199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학칙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학칙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학칙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학칙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학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개정 학칙은 2021학년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 학칙은 2021학년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1조 등록과 수강신청

1)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일체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2)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배부된 강의계획서와 강의 시간표를 참작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함으로 이루어진다.
3) 학생은 매 학기 자기 학년의 필수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과목을 'F'학점을 받았을 경우 졸업 전에 필히 재수강하여야 한다.
4)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과목 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5) 수강과목 철회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과목 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철회(수강삭제)가 가능하며 다른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 수강 과목 철회가 불가능하다.
   ① 수강과목 철회시 신청학점이 최저학점 미만이 될 경우
   ② 수강철회시 수강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이 폐강이 되는 경우(계절학기 동일 적용)
   ③ 학점등록자가 수강 과목 철회로 인해 납부한 수업료의 금액이 달라질 경우
   (단,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
6)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치 않는다.
7) 등록한 학기에 이유 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당해 학기의 등록 회수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또한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된다.
8) 수강 신청 과목을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을 지나서 포기하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로 처리된다.
9) 동일 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10) 4학년은 각 학과에서 규정된 교양 및 전공 과목의 학점 취득 상황을 파악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시험과 성적

1) 학생이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시험 허가원을 시험 개시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고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 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단, 추가 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은 B학점 이상 얻지 못한다.
   ①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병역 관계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①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 과목 성적
   ②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③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학점
3) 성적정정은 정해진 성적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산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다음 학기 개강 2주일 이내에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과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학업 성적 평균치 산출방법은 가중 평균 산출 방법에 의한다.

5) 과목평점이 D+, D, F일 경우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6)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상대평가기준: A(30%), B(40%), C~F(30%)
② 실기, 실습 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이하인 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위 점수의 %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하위 점수로 양도 할 수 있으나 하위점수의 %를 상위 점수로 양도 할 수 없다.

제3조 학점 등록

1)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학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점 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 학점 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부, 신대원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 그 외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4조 휴학 및 복학

1)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 원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미제출자는 제적이 된다.
2) 복학 자는 휴학할 당시 납부한 납입금을 복학 당해 학기 납입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 대체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복학 자는 학기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며 다음 학기까지 휴학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교무처에 휴학 연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휴학 기간 중에 군 복무로 입대할 경우에는 군 입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5) 군 입대 휴학을 인정하는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으로 한한다. 단, 직업군인(장교 및 하사관 등)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병역의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병사 휴학시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입대한 경우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은 인정 학점 C+를 주겠으나 출석일수가 미달일 때는 복학할 때 재등록하여야 한다.
7)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심각한 신체상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의사가 발행하는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미등록자는 휴학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제대 복학

1) 납입금 등록을 마치고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 중에 휴학한 자가 동일 학기에 복학할 때는 휴학 당시의 납입금

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등록금 대체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편입 및 재입학

1) 재입학은 원적 학적과 동일 학년 이하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2) 일반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학을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성적증명서,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학적부 앞면 증명서, 서약서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 경우 일반 재입학자는 재입학금을 요한다. 재입학금은 해당 연도의 신입생의 입학금과 동액으로 한다.
3) 편입학 및 일반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품행 및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석이 있어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4)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기를 뛰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5) 제1학년 학생으로서 제1학기에 제적된 자는 제2학기에 재입학할 수 없다.
6) 편입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학력 및 자격증서에서 허위가 나타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7) 편입생의 학점 인정은 편입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의한다.

제7조 교과목 개설

1) 학과목 개설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① 주간 전공 선택 과목은 수강신청 학생수가 전임교원은 5명 이상, 그 외 비전임교원은 10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된다.
② 주간 교양 선택 과목은 수강신청 학생수가 교원 구분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일 경우 개설된다.
③ 야간 모든 선택과목은 수강신청 학생수가 교원 구분에 상관없이 5명 이상일 경우 개설된다.
④ 단, 음악학과 전공별 선택 과목은 수강 신청 가능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전임교원 과목은 25% 이상, 비전임교원 과목은 50%이상일 경우 개설된다.
⑤ 선택과목의 수강학생의 정원은 5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가 요청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이외의 교과목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목개설규정을 따른다.

제8조 증명발급

교무처에서 발급되는 국문·영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재학증명서 ②재적증명서 ③수료증명서 ④졸업증명서 ⑤성적증명서이며, 학생과에서 발급되는 증명은 ①학생증 ②통학증이다. 위 제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2일 이내(영문은 4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9조 성적열람과 이의 신청

1) 매 학기 성적은 소정 기일 내에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동안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거쳐 하자가 있을 때에 정정할 수 있다.
2) 학업 성적표는 졸업시까지 보관하고 성적을 열람코자 할 때는 일반증명발급 신청절차에 준한다.
3) 졸업반 학생에게는 학년초에 기일을 정하며 특별히 학점 열람 기간을 허용한다.
4) 성적열람시 강의평가 및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교과 과정의 시행을 위한 경과 조치 내용

1) 교육과정상 필수인 과목 중 미취득한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학년, 개설학기, 개설학점, 이수구분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전공과목으로 대체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내 예배, 행사 참석

학생은 정해진 예배시간이나 교내 행사, 소풍, 신앙 수련회 및 공개 강좌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 받는다.

제 12조 계절학기

1)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별도학기로 처리하며 졸업학점 및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된다. 또한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선발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학점당 강의시간은 1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타대학 계절학기 학점까지 포함하여 7학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절학기 수강료 및 폐강 기준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4년 2월 28일 이전 재적생에 대하여는 본 내규에 불구하고 구학칙에 의한다.
3) 본 내규는 199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내규는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내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내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내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구 교과목개설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5장 등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배정)

① 교양교과목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초교과목을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편성하되 교양선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그 영역별로 교과목을 적절히 배분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전공영역별로 학술적 연구와 직업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편성하되 교과목 성격은 이론, 이론+실습·실기, 실습·실기로 적절히 배분 편성한다.

③ 동일교과목을 2학기 이상 개설할 때에는 이수순위를 Ⅰ, Ⅱ, Ⅲ, Ⅳ로 표시한다.

④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편성·개설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이수구분별 학점배점, 편성기준, 교과목 성격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⑥ 복수전공의 필수과목은 해당학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

제 4 조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율학습, 타 학교 등의 학점인정, 특별평가 등의 학점단위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학과의 이수구분별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2013학번까지>

학과	교양학점		전공학점		자유선택 학점(E)	졸업학점 (A+B+C+D+E)
	필수(A)	선택(B)	필수(C)	선택(D)		
신학과(주)	32	12	24	24	48	140
신학과(야)	28	12	24	24	52	140
사회복지상담학과	25	0	72	0	43	140
음악학과	20	0	72	0	48	140

<2014학번부터>

학과	적용학번	교양학점		전공학점		자유선택 학점(E)	졸업학점 (A+B+C+D+E)
		필수(A)	선택(B)	필수(C)	선택(D)		
신학과 (주,야)	2014~2017	17	24	16	40	33	130
	2018~	17	24	18	40	31	130
사회복지 상담학과	2014~2017	11	24	24	55	16	130
	2018~	14	24	24	60	8	130
음악학과	2014~2015	14	24	24	55	13	130
	2016~2017	12	24	36	52	6	130
	2018~	12	24	48	36	10	130

* 필수과목의 경우 교육과정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적용학번의 필수학점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본인학년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회복지상담학과의 경우 학과에서 지정한 자격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⑤ 각 학과별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재수강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필수과목이 폐지 및 변경되었을 때는 신교육과정의 유사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⑥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5 조 (실천평가)

졸업에 필요한 학과별 실천평가 Pass 학기 여부는 학생실천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논문 및 연주회)

신학과의 경우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음악학과의 경우는 반드시 졸업연주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등)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과 편입학 후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편입생의 학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교육과정 적용)

① 신입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편입학 및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은 그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졸업학점은 입학당시의 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 9 조 (교육과정 개편)

① 교양 교육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각 학과장(교양파트장 포함)과 협의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공 교육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과장이 학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교무처에 제출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육과정 개편안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기한 내에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개강 교과목 확정)

각 학과장은 교육과정에 의한 학년별 개강 교과목을 학기별로 지정된 기한 내에 학과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학점의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12 조 (교과이수 등)

졸업 및 이수에 관한 학점취득이나 편입학 재입학 전입학 복학 등의 교과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5장과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13 조 (기타사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목 개설)

교과목 개설은 각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수회의를 거쳐 개설한다.

제3조 (담당교수 배정)

① 담당교수는 각 학과에서 배정하며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대학과 대학원을 합하여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최대시수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용 예외과목은 제외한다.

교원구분	책임시수	최대가능시수
총장	2	**제한없음**
보직교수	8	15
일반교수	9	인문-15, 예능-20

* 비전임교원은 해당 교원규정에 따른다.

③ 당해학기 책임시수가 미달된 전임교원이 있는 학과(전공)에서는 겸임교원 및 강사를 위촉할 수 없다. 책임시수가 부족한 교원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담당교수 배정시 해당교원은 책임시수에 부족한 시수를 포함한다.

제4조 (교원 타교출강)

① 전임교원은 우리 대학의 수업 및 학생지도를 우선으로 하여 가급적 타교 출강을 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학기 개강 전에 '타대학 출강 동의요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타교 출강을 위하여 우리대학의 수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강의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학사정보시스템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수강신청 시작 전에 공고하여, 학생들이 교육목적이나 내용 등을 사전에 열람하여 수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의계획서에는 강의목표, 주별 강의내용, 학업성취 평가방법, 강의방법, 강의교재, 과제물,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강의시간 배정)

① 해당학년의 필수과목 강의시간과 선택과목 강의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한다.

② 교수별 대학과 대학원 담당 강의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임교원은 주 3일 이상 강의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학과에서는 매학기 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시작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 (분반과 합반)

① 분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과목은 교과목 특성상 분반이 필요한 경우 각 학과에서 교과목 개설시 분반을 요청하여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수회의를 통해 승인한다.

2. 선택과목은 수강인원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동의하에 분반 할 수 있다. 단, 분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전에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반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분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합반에 대한 기준은 교과목 특성상 합반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과 담당교수의 동의하에 합반할

수 있다.

제8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강의계획서와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수할 교과목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학점은 재수강 학점을 포함하여 기준학점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	1학년~3학년		4학년	
	최저학점	최대학점	최저학점	최대학점
2013학번까지	18	21(복수전공 24)	10	21(복수전공 24)
2014학번부터	16	19(복수전공 22)	10	19(복수전공 22)

④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⑤ 재수강은 기 취득한 과목평점이 D+, D, F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지 된 필수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해 준 유사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⑥ 동일과목은 재수강을 제외하고 중복 수강이 불가하며,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과목특성상 수강인원 제한이 필요할 경우 담당교수의 요청을 받아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⑧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는 수강신청 전에 해당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과목 철회)

① 수강과목 철회는 매학기 수강과목 철회기간에 '수강과목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과목 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철회가 가능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 수강과목 철회가 불가능하다.

1. 수강과목 철회시 신청학점이 최저학점 미만이 될 경우
2. 수강과목 철회시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이 폐강이 되는 경우(계절학기 동일 적용)
3. 학점등록자가 수강과목 철회로 인해 납부한 수업료의 금액이 달라질 경우
   (단,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

② 수강과목 철회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없으며, 포기하고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로 처리된다.

제10조 (폐강)

① 수강신청 결과 수강신청 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폐강한다.

1. 주간 전공선택 과목: 전임교원 - 5명 미만, 그 외 비전임교원 - 10명 미만
2. 주간 교양선택 과목: 교원 구분에 상관없이 10명 미만
3. 야간 모든 선택 과목: 교원 구분에 상관없이 5명 미만

   단, 음악학과 전공별 선택 과목은 수강신청 가능 학생수를 기준으로 전임교원 과목은 25% 미만, 비전임교원 과목은 50%미만일 경우 폐강함

② 선택과목의 수강학생의 정원은 50명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교수가 요청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1조 (출석관리)

①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통해 출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교무처에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3회 이상 장기결석자가 있을 경우 교무처에 학생 재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결석한 학생이 교무처 확인이 있는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휴강 및 보강)

① 공휴일, 공무출장, 개인사정에 의한 휴강 등 모든 휴강은 사전에 '휴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강은 독서주간에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존 수업시간을 피해 보강할 수 있다.

③ 보강할 때는 출석부에 보강일자를 정확히 기입하고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

① 시험기간은 총 수업시수(15주)에 포함되므로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시험관리 및 감독은 담당교수가 직접(조교만 감독하는 것은 지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F'처리 한다.

③ 담당교과목의 수강생 중 장애학생(3급 이상자)이 있는 경우 강의보조자료 제공, 과제물 제출, 시험지 편의제공, 성적평가시 감안, 칠판판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성적)

성적처리, 성적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은 성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강의평가)

① 강의평가 시기 및 방법은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열람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한다.

② 강의평가 대상은 팀티칭, 경건회, 대학생활(신학생활), 신학과 생활 관련, 전공실기, 앙상블, 사회봉사, Pass-Non Pass의 8개 범주의 과목들을 제외한 모든 개설 교과목으로 한다.

③ 강의평가 항목은 강의성격(이론, 실습, 이론 및 실습)에 따라 교수방법과 수업내용에 대하여 평가 항목을 정하여 개별 평가한다.

④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는 다음과 같다.

1.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
2.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매학기 상위자와 하위자를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상위자: 과목별 평균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하위자: 강의개선이 필요한 교원(과목별 수업평가 3.6[5.0만점] 이하)은 하위자컨설팅 프로그램을 의무로 수강하여야 한다.
3. 강의 담당 교원은 강의평가 결과를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비전임교원은 해당 학과장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수업 환경 개선과 비전임교원 추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강의평가 결과는 동일교수의 동일과목(코드)일 경우에 전년도에 한하여 강의계획서 열람시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5.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만족도조사)

교육만족도조사는 재학생의 경우 2학기 성적열람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실시하고 교수학습센터에서 관리한다.

제17조 (강의료 지급)

①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료는 주당 책임시수를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며 최대시수까지 지급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경우 해당 교원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성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활한 성적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적처리)

① 담당교수는 학기초 안내한 '강의계획서'에 기재한 '학업성취 평가방법'에 맞게 성적을 부여하여 성적 입력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는 출석, 시험, 과제물 평가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0-59	-	-	-

*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취득을 P, 미취득을 NP로 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전공실기, 현장실습과목과 수강인원 20명 이하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 상대평가 기준은 A(30%), B(45%), C~F(25%)이며 상위 점수의 %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하위 점수로 양도 할 수 있으나 하위점수의 %를 상위 점수로 양도 할 수 없다.

⑤ 출결사항은 10%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이상 결석시 출석일수 미달로 'F'처리 한다.

⑥ 성적열람 후 제출된 성적단표에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 천재지변, 전염병 등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무위원회를 거쳐 교수회의 보고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성적평가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 (성적열람 및 정정)

① 성적열람은 학생들이 성적열람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성적열람기간에 연락받을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며 학생들의 이의신청시 착오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합당할 경우 성적단표 제출 전에 성적정정을 하여야 한다.

③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청원서'와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 승인 후 정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수강)

① 재수강은 기 취득한 과목평점이 D+, D, F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강 된 필수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해 준 유사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횟수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제5조 (성적우수자)

성적우수자에게는 학과별로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조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관리)

① 학사경고와 학습부진 대상

1. 학사경고자는 학칙 제34조(학사경고)에 의거 학기말 평점평균이 1.8 미만인 학생으로 한다.
2. 학습부진자는 학사경고 예방 차원에서 학기말 평점평균 1.8 이상 2.2 미만인 학생으로 한다.

②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명단통보

1.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을 확정하는 교수회의에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명단을 올려 멘토교수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확정 후 관련부서에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명단을 통보한다.

2.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성적조회시 일정기간동안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지도 안내문'이 별도의 화면으로 조회되도록 한다.

③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지도

1. 교무처는 학사경고 횟수와 멘토교수를 기재한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지도 안내문'를 가정으로 발송하여 멘토교수 상담을 유도하고 가정에서의 학생지도를 요청한다.

2. 관련부서(교수학습센터와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교무처에서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명단을 받아 학생들이 학습법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지원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각종 학습프로그램에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멘토교수는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를 상담하여 학업부진의 이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를 한다.

4. 해당 학과장은 수강신청기간에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들이 수강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사후 처리

1. 멘토교수와 해당 학과장은 학사경고자와 학습부진자 상담 및 지도 후 매 회 상담 및 지도 내용을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는 상담 및 지도 결과를 관리한다.

2. 관련부서(교수학습센터와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한다.

제7조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

시험 및 성적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5년을 보존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학사관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교무처와 해당학과는 아래와 같이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를 하여야 한다.

① 교무처는 부모가 담당하는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안내시 해당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는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원에게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와 소속 학과는 선택 및 교양 교과목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분반 구성시 타 분반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신고)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①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 소속 학과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

시험 및 성적관리와 관련된 자료 보존은「성적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6조 (위반시 제재조치)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위 사항을 위반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회피·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피"는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배제"는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는 배우자, 형제, 자녀, 친인척(4촌 이내) 및 지인 등을 포함한 모든 지인 중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회피를 위한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관련 부서에 회피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배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인 경우
2. 회피 자진신고 받은 내용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입학관련 부서는 회피 대상자가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전체에게 공문을 통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회피 대상자는 '대학입학관련 회피 자진 신고서'를 입학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제 대상자 확인)

각종 서류 또는 시스템(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제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처리)

① 회피 대상자와 배제 대상자는 해당 응시생이 지원한 입학관련 업무에서 제외된다.

②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지 않고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입학관련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7조(위반자 처리)

제3조에 의한 회피·배제 대상 교직원이 본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거나 응시생의 합격에 기여한 경우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

▣ 교직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연락처	연구실 (사무실)	
직급			휴대전화	

▣ 지원자 인적 사항

모집시기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회피사유	※회피 자진 신고 대상 참고		

위와 같은 사유로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편입학, □추가) 모집과 관련된 입학관련 업무로부터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_____(서명 또는 인)

호남신학대학교총장 귀하

<회피 자진 신고 대상>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경종합고사에 관한 규정

제1장 목적과 졸업과의 관계

제1조

본 고사는 학생들의 성경지식을 함양시키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단한 성경 연구의 습관을 길러줌으로 본교의 성경 중심의 교육방침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고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합격할 때까지 졸업이 보류된다.

제2장 시행방침

제3조

본 고사는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본 고사는 2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한다.

제5조

본 고사는 재학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매년 응시할 수 있으며 재학중 1회만 합격하면 된다.

제6조

본 고사의 채점은 구약, 신약 각각 100점 만점에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되며,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3장 출제 및 채점

제7조

본 고사의 출제와 **채점은** 총장이 지정하는 본 대학 교수들이 담당하며 출제, 채점, 감독, 준비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본 고사 문제는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하여 출제하되 그 비율은 구약 50%, 신약 50%로 한다.

제4장 고시공고

제9조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사 시행 1개월 전에 대학 게시판에 공고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주실습 과목 중 W.R.(Weekly Recital) 운영에 관한 규정

모든 전공 공통 적용

1.2,3학년 학생은 매학기 1회 연주하며 1,4학년 학생은 출석만 한다.
2,3학년 학생은 연주와 출석으로, 1,4학년 학생은 출석100%로 한다.

2.복장은 연주복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자의 경우 흰색 브라우스에 검정 긴치마, 실용음악- 흰색상의, 검정하의)

3.연주실습의 성적은 W.R.(Weekly Recital)과 마스터 클래스 출석으로 한다.
출석은 W.R 와 마스터 클래스를 포함한다.
결석은 3회까지는 Pass로 인정되나 4회부터는 Non Pass로 한다.
(지각3회는 결석 1회에 해당한다.)
2,3학년의 경우 연주와 출석 모두 Pass하여야 한다.

4.정해진 제출일까지 곡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각 1회로 한다.

5.연주 전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고 발생시는 전공 교수와 학과장의 협의하에 연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출석체크는 출석카드 또는 지정좌석 체크로 할 수 있다.
출석카드의 경우 연주 시작 10분 전부터 정각까지만 배부하며, 연주 후 3층 예음홀에서 제출한다.
지정좌석의 경우 연주 시작 10분 전부터 정각까지는 출석, 시작 이후 10분까지는 지각처리 한다.

7.매회 전임교수가 교대로 지도한다.

실용음악 전공 적용

드럼을 제외한 모든 악기는 솔로이거나 듀오로만 연주해야 한다.
드럼은 악기 특성상 트리오까지 가능
모든 연주는 4분 이상해야하며 반드시 자기 Solo가 포함되어야 한다.
- 카피곡일 경우는 카피연주 후 자기 Solo 2코러스이상 연주하여야 한다.
모든 연주자는 연주하기 전에 간단한 곡 소개 및 반주자 소개를 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음악학과 교환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

교환학생 지원

1. 지원 자격

(1) 전(全)학기의 성적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2) 2학년 학생으로서 3학년에 진급 할 학생

(3) 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지원

11월말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한다.(양식은 교무처 비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교환학생 선발

1. 교환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1) 학생선발은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한다.

(2)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원: 총장, 교무처장, 해당과 전임이상 교수

(3) 회의는 1월 초 2학기 성적 사정이 완료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선발규정

(1) 교환학생 수는 2명으로 한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성적 사정에 의해 선발한다.

전(全)학기의 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①전공 실기 성적 평균 (100점 만점)

②1항을 제외한 모든 점수의 과목당 점수에 의한 평균 (100점 만점)

1항과 2항의 합산점수를 근거로 사정한다.

(3) 위항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된 학생의 파견 적격 여부를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교환 학생 파견

1. 파견 기간: 1년으로 한다.

2. 파견: 지원해의 익년도 6월 말에 파견한다.

예 ; 2015년 11월 말에 지원하여 2016년 1월초에 선발통고 받은 학생은 2016년 6월 말에 파견

3. 학점

(1) 교환 기간 동안의 본 대학 학점은 A(90점)로 처리하며 신청 학점은 최소학점로 한다.

단, 졸업사정에서 교환 학생은 성적 우수자에서 제외한다.

(2) 1항의 실행을 위하여 교환 학생은 다음 사항을 필히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귀교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미 엄수 시에는 교환기간 동안의 본교 학점 결손 보충을 인정치 않는다.

가. 전공 실기

자매 대학의 교육 과정에 의거 교환기간 중의 모든 지도 과정을 이수함과 아울러 해당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어학연수

교환학생 해당지역의 어학 코스를 9개월 이상 등록 출석하여야 한다.

4. 등록금 납부
(1) 본 대학의 등록금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자매대학의 등록금은 자매결연에 준한 그 액수를 자매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음악학과 미졸업자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가.8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과목들에 대한 이중 수강신청을 허용한다.
1) 전공실기 Ⅰ 전공실기 Ⅲ 전공실기 Ⅴ 전공실기 Ⅶ
2) 전공실기 Ⅱ 전공실기 Ⅳ 전공실기 Ⅵ 전공실기 Ⅷ
3) 합창 Ⅰ 합창 Ⅲ 합창 Ⅴ 합창 Ⅶ
4) 합창 Ⅱ 합창 Ⅳ 합창 Ⅵ 합창 Ⅷ
5) 연주실습 Ⅰ 연주실습 Ⅲ 연주실습 Ⅴ 연주실습 Ⅶ
6) 연주실습 Ⅱ 연주실습 Ⅳ 연주실습 Ⅵ 연주실습 Ⅷ
나. 전공을 두 학기 신청할 경우 한 학기에 가능하도록 하고 두 학기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입생의 학점관리 규정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학칙 제31조에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Ⅰ. 공통

1. 학점 인정과 취득해야 할 학점

학 년 구분	학점인정	취득해야 할 학점	졸업학점
2학년 편입	33	9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3학년 편입	65	65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다만, 전적대학에서 학점 인정 미달인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부족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동일과목을 2회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선 취득한 학점만 학점으로 인정한다.

3.실천평가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Ⅱ.신학과

1.취득한 교과목(졸업을 위해 필수적인 과목들)

2학년: 교양필수+전공필수+교양선택(12학점)+전공선택(40학점)+자유선택=98학점

3학년: 전공필수+전공선택(40학점)+자유선택=65학점

2.1학년 전공필수인 구약통독과 신약통독을 이수하여야 한다.

Ⅲ.사회복지상담학과

1.전공학과 및 유사전공학과를 전공한 편입생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따른다.

전공학과 및 유사관련학과(사회복지사 자격증 제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4학기 동안 사회복지전공과목을 6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사회복지상담을 전공하지 아니한 편입생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따른다.

사회복지자격 필수과목 총 1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상담과목 중 상담학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Ⅳ. 음악학과

1.편입 전에 이수한 과목에 대한 본 대학교의 학점인정 및 면제는 과의 심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편입한 학년을 포함 졸업까지의 모든 학기에 개설된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및 면제는 허락 않는다.

나) 과목명이 유사한 과목에 대한 심사는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이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2015학번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영어능력 인증 규정

1. 본교 재학생은 교수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영어능력 인증 점수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다.
2. 이 개정안은 2014학년도 입학생, 편입생부터 적용된다.
3. 2002~2013학년도 입학생(2004~2013학년도 편입생)중 이수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지정된 대체과목으로 이수한다.

▣ 영어능력 인증 점수

0. 공통사항

① 학생은 시험기반 인증(외부시험)과 학점기반 인증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인증 점수(또는 학점)는 최저점 이상으로 하되 권장 점수를 넘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1. 시험 인증

인증 권장선 - TOEIC 600점, CBT TOEFL 180점, iBT 64점, TEPS 500점**(개정TEPS 268)**

인증 최저선 - TOEIC 270점, CBT TOEFL 66점, iBT 20점, TEPS 210점**(개정TEPS 118)**

2. 학점 인증

인증 권장선 : 3.5(B+) 이상　　인증 하한선 : 1.0(D)

* 다음 과목들을 이수하고 그 합산평점에 따라 인증 받는다.

이수 구분	신학과 (주간)	신학과 (야간)	사회복지 상담학과	음악학과	편입학			
					신학과 (주간)	신학과 (야간)	사회복지 상담학과	음악학과
필수	대학영어1~2	대학영어1~2	대학영어1~2	대학영어1~2	-	-	-	-
선택	대학영어3~4 중 택 1	대학영어3~4 실용영어1~4 중 택 1	대학영어3~4 중 택 1	대학영어3~4 중 택 1	대학영어3~4 중 택 1	-	-	대학영어3~4 중 택 1
	실용영어1~4 중 택 1	-	실용영어1~4 중 택 1	실용영어1~4 중 택 1	실용영어1~4 중 택 1	-	실용영어1~4 중 택 1	실용영어1~4 중 택 1
과목수	4	3	4	4	2	0	1	2

* 과목명의 홀수는 1학기, 짝수는 2학기 개설 과목을 뜻함.

3. 기존 재학생 대체과목

- 신학과: 영어 5~8, 초급영어 1~2 -> 대학영어 3~4, 영어회화 1~4 -> 실용영어 1~4
- 사회복지상담학과: 영어회화 1~4 -> 실용영어 1~4
- 음악학과: 영어와문화 1~2, 영어회화 1~2 -> 실용영어 3~4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폐지한다.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복수전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전공 복합학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며 학칙 제40조에 관련하여 복수전공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복수전공 이수라 함은 당초전공(제1전공) 이외의 전공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함을 말한다.

제3조 (이수의 제한)

① 복수전공은 본교에 설치된 전 학과 내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학과 특성에 따라 복수전공학과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과한 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제4조 (신청자격)

① 2005학년도 이후 입학한 본 대학 학생 중 35학점 이상(편입생의 경우 18학점 이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33학점 이상(2016학년도 이후 편입생은 16학점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수전공을 허가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초전공(제1전공)에서 소정의 교양과정과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로 전 교과목 평점 평균이 2.5(C+)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음악학과로의 복수전공은 음악학과에서 정한 실기 능력 검증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수강자는 실습비 (실기지도 강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허용인원)

각 학과별 복수전공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인원 및 선발 방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청시기 및 절차)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편입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이후 매학기**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소정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한다.

제7조 (학점이수)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당초전공(제1전공)의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 및 졸업에 필요한 전공인정학점을 3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학과 교과목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신학과 복수전공자는 성경종합고사를 Pass 해야 하고, 음악학과 복수전공자는 졸업연주를 해야 한다.

제8조 (중복학점 인정)

당초전공(제1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 이수와 학점을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단, 졸업학점 계산에 있어서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취소)

① 복수전공을 취소하거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졸업학기 전까지 소정의 「복수전공 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하면 복수전공 취득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교양학점 이수로 처리하고 당초전공(제1전공)만 인정한다.

제10조 (이수인정 신청)

① 복수전공 신청자 중 복수전공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졸업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복수전공 이수확인 신청서」에 이수한 복수전공 교과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복수전공 이수과목의 평점 평균이 2.5 (C+)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 (학위 수여)

①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당초전공(제1전공) 졸업시 당초전공(제1전공) 및 복수전공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 신청자는 졸업하기 전까지 당초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미충족시에는 졸업을 불허하고, 당초전공(제1전공)의 졸업 요건 충족시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보류한다.

③ 복수전공 신청자가 당초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8학기 수료자로서 당초전공(제1전공)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복수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연기원」을 졸업학기 종료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졸업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1전공 학위만 수여한다.
2. 당초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8학기 이상 등록자로서 복수전공으로 인하여 졸업이 연기된 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졸업을 원할 경우에는 졸업을 원하는 학기 종료 전까지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격자 처리)

① 복수전공 이수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의 평점 평균이 2.5(C+) 미만인 경우에는 이수 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제13조 (학적기록)

① 복수전공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사항을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당초전공(제1전공) 과 복수전공의 학적부 기록순서는 당초전공, 복수전공의 순으로 한다.

제14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과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에 의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전과라 함은 본교 내에서 소속 학과의 변경을 말한다.

제3조 (허용범위)

①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입학과 입학정원의 60% 범위내 에서 전출, 전입학과의 운영실정을 고려하여 전과를 허용한다.

제4조 (신청자격)

①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1학기(16학점 이상) 또는 1학년(33학점 이상), 단 편입생은 한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②전과는 전입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시기 및 절차)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 개시 전부터 2학년 1학기(편입생은 3학년 2학기)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전과 신청서」를 멘토교수, 전출, 전입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선발)

전과희망 인원이 전입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 한다.

제7조 (등록)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학점이수)

전과된 학생은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충족해야 하며,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9조 (학적기록)

전출학과와 전입학과를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10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음악학과 전공 이동에 관한 규정

1회에 한하여 (2학년으로 진급 전, 3학년 진급 전 특별한 사유발생 시) 전공의 이동 신청을 허용하며 정해진 기간에 기존 전공 및 이동 희망 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과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이를 허가한다.

음악학과 학생 행사 참석에 관한 규정

1.행사의 필수 참석 여부는 학과 교수 회의에서 정한다.
2.모든 학생은 필수 참석 행사를 모두 출석하여야 한다.
3.결석의 사유가 있는 학생은 행사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결석에 의한 감점은 당해 학기의 전공실기 점수에 적용한다.
5.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
20%이상~30%미만 - 2점
30%이상~50%미만 - 4점
50%이상 - 6점
※ 소수점 이하는 모두 1로 산정한다.
(例, 5번 행사의 경우 30%는 1.5로서 2로 계산)

부 칙

1.본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 · 실험고사 및 교직적성 · 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 · 분석 · 영향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특별법 제 16조 3호에 따라 자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외부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지 고교 교사 등)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향평가의 진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3.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제7조 (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 (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 13조의 2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수행한다.

1.입학시험 부정방지대책 수립

2.입학전형 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입학전형의 자체 감사 실시

5.기타 신입생 선발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 13조의 2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의 전반적인 시행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입학관리처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입학 전형계획의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3.입학 적격자 선발 기준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4.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과 성적부여 등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 후 당해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자) 중 취업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제3조 (절차)

① 조기취업자로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취업 후 2주 이내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의 승인이 완료되면 교무처에서 학점인정 허가원을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허가원을 확인 후 출석 및 성적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에게 제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기말에 계속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4조 (제출서류)

① 학점인정 청원서(본교양식)

② 수강신청확인서(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③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 명시하여 2회 제출(신청서 제출시, 학기말)

④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5조 (학점인정)

출석, 성적평가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대체과제, 시험, 보강 등 기타방법으로 지도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한다.

단, 담당교수가 제시하는 과제 등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6조 (인정제외)

현장실습교과목, 사회봉사활동 교과목과 학점교류로 이수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제7조 (신청취소)

① 학기 중 중도 퇴직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학점인정 취소원과 경력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재직기간 내에 학점인정 과제를 이행한 사항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외 학생교류에 따른 학점인정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 타대학과 학생 교류에 따른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점인정 타대학의 범위)

본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

제3조 (교류형태)

① 방학 중 특별 개설 강좌의 수강에 따른 학점교류

② 학기 중 특정 교과목 수강에 따른 학점교류

③ 기타 협약의 따른 학점교류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타대학 개설강좌 수강에 따른 학점교류 신청자격은 한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여야 한다.

② 타대학 개설강좌 수강을 원할 경우 교무처에 신청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대학에 추천하여 해당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③ 타대학생이 본 대학의 개설강좌 수강을 원할 경우 해당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본대학에 신청하고 본대학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제5조 (학점인정)

①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졸업학점에도 포함한다.

② 본대학에서 이수한 타대학 학생의 교과목 학점과 성적은 수업 종료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6조 (의무)

① 학생교류 선발 학생은 교류대학에서 학점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본대학은 국외교류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류기간 중 본대학과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과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학칙과 관계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교납금 납입 징수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교납금을 납입 징수하는데 있어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학적변동"이라 함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휴학, 복학, 전과, 퇴학 및 제적, 졸업, 추가졸업, 대학원 수학년한 만료, 기타 등으로 학적을 보유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등록금"이라 함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③ "등록"이라 함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책정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공통 적용한다.

제 4조(징수금액의 결정)
① 등록금의 징수금액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징수금액을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금의 세목별 징수액은 정하지 아니하고 총액만을 가결정하여 징수하고 추후 확정 정산할 수 있다.

제 5조(등록금의 징수기일)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해당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 6조(분납 및 납부연기)
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은 등록금의 분납 및 납부연기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당해학기에 한하여 분납 및 납부연기 할 수 없다.
③ 분할납부 횟수와 방법은 교육부의 지침에 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7조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교납금)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정해진 교납금에 대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복학한 학생의 교납금)
① 대학으로부터 정학처분을 받은 자가 정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할 때는 정학당시 학기의 공납금 징수에 관계없이 공납금 전액을 징수한다.
② 징집영장을 받고 입영키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군에서 제대하여 복학할 때는 휴학 당시 학기의 수업료로 대체한다.
③ 가정형편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했던 학생이 복학할 때는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업료, 입학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기타공납금은 전액 징수한다.

제 9조 (교납금의 반환)
①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② 분납신청에 의해, 일부 분납금을 납부하고 휴학(일반·질병) 할 때에는 그 분납금 전액을 반환하여주고, 일부를 대체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신학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입각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을 바르고 깊게 연구하고 교역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며 신학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 (과정) 본 신학대학원에는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4조 (학과 및 정원) 본 신학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학과 - 주간 65명, 야간 20명

성서영성학과 - 20명

제5조 (수업) 본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주간과 야간과 계절제 수업으로 할 수 있다.

제2 장 입학(전·편입학 포함)

제6조 (입학시기) 본 신학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본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단, 신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본 교단 소속노회장의 추천서(타 교단 소속은 해당 교단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①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③ 외국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④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자.

⑤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

제8조 (편입)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타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업 받은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본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9조 (교원학생) 본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은 본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서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3장 수업연한·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제11조 (수업연한)

① 본 신학대학원의 신학과의 수업연한은 6학기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신학대학원 성서영성학과의 수업연한은 4학기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이수과목) 본 신학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취득학점)

① 본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은 한 학기(15주)동안 12주 이상 출석해야 하고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며, 최소 1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진급할 수 있다.

② 본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은 10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본 대학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은 8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본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편입하는 학생은 6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④ 본 신학대학원 성서영성학과 학생은 한 학기(15주)동안 12주 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며, 최소 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본 신학대학원 성서영성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14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장 등록·휴학·복학 및 재입학

제15조 (등록절차)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등록절차는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으로 끝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학점등록)

① 신학과

1) 6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수가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등록이 아닌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2) 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점보충이나 수학을 위해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3)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4) 학점 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6분의 1의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3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서영성학과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7조 (휴학원 제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입대휴학 :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입대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 1통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고사 종료 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자는 중간고사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으로 평가한다.

② 일반휴학 : 가정형편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및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18조 (휴학, 복학자 등록)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19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재입학) ①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재입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제적 전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5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21조 (공개강좌) 신학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생)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본 교단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속노회장 추천을 받은 자로 본 신학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학대학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수업시킨다.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 (외국인 학생) 학력과 신앙을 구비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생 및 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한다.

제6장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제25조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강의계획서와 강의시간표를 참작하여 수강신청한다.

제26조 (신청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변경 기간에 교수의 허락을 받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동일과목 중복 수강금지) 과락 이외에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만일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때에는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28조 (불신청 이수) 수강신청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해당과목의 교수가 그 성적을 제출했어도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성적은 F로 처리된다.

제29조 (성적평가)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 및 출석, 과제물, 예습 등의 종합평가에 의해 산출된다.

제30조 (성적평가 등급) 학업성적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	4.5	95 ~ 100
A	4.0	90 ~ 94
B +	3.5	85 ~ 89
B	3.0	80 ~ 84
C +	2.5	75 ~ 79
C	2.0	70 ~ 74
D +	1.5	65 ~ 69
D	1.0	60 ~ 64
F	0.0	0 ~ 59
P	불 계	합 격
NP	불 계	불 합 격

제31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추가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에게 한하여 다음 학기 초에 실시하되 성적취득은 B+ 이하로 한다.

제32조 (성적 이의 신청) 취득학점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기 초 지정기간 내에 성적 이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성적의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 이의 신청은 학점이 나오지 않은 경우와 부당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제7장 종합시험과 목회실습

제33조 (종합시험)

① 입학시험 시의 성경성적이 60점 이하인 신학과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진급 및 졸업을 할 수 있다.

1. 실시시기 : 1학년 1학기 말, 1학년 2학기 말, 2학년 1학기 말(최종시험)
   2학년 2학기말, (재시험)
2. 합격선 :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 졸업반 진급하기 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자는 진급할 수 없다.
4.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 처리

가.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는 1년간 휴학하여야 한다.

나.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이때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시험에 불합격되거나 미응시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② 학칙에서 정하는 취득학점(30학점)을 완료한 성서영성학과 학생 중

1. 성서주해 전공 학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대로 주해원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 5월 말, 11월 말
   2) 제출자료
      (1) 2편(구약 1편, 신약 1편)의 주해원고
      (2) 소정의 심사료
   3) 심사기준
      (1) 주해원고

(2) 주해원고 내용의 적절성 (본문주해 및 적용)

4) 심사방법: 심사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P(합격) 또는 NP(불합격)으로 기록한다.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점수로 한다.

5) 심사가 통과된 후 수정 보완된 주해원고 2편의 최종본(구약 1편, 신약 1편)을 제출한다.

2. 영성지도 전공 학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대로 종합성찰보고서와 영성지도확인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 5월 말, 11월 말

2) 제출자료

(1) 종합성찰보고서, 영성지도확인서

(2) 소정의 심사료

3) 심사기준

(1) 이론과 실천 경험이 통합된 종합성찰보고서와 영성지도확인서

(2) 내용의 적절성 (자기 성찰 및 영성지도에 대한 이해)

4) 심사방법: 심사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P(합격) 또는 NP(불합격)으로 기록한다.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점수로 한다.

5) 심사가 통과된 후 수정 보완된 종합성찰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한다.

제34조 (목회실습) 본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은 다음과 같이 목회실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목회실천(카드 제출): 2, 3학년 1, 2학기에 목회실천을 실행하고 카드를 제출하여 학점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신학계속추천서) 신학과 1,2학년 학생은 2학기 말에 노회의 신학계속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학년 진급을 할 수 있다.

제8장 학위논문과 학위수여

제36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① 신학대학원의 신학과의 과정을 수료하고 3학년 1학기까지 논문작성법을 수강해야 2학기에 졸업논문 제출자격이 부여된다.

② 성서영성학과의 영성지도 전공은 3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해야 4학기에 졸업논문 제출자격이 부여된다.

제37조 (논문절차) 논문계획서 및 논문개요를 제출하여 지도받은 후, 최종 학위논문원고를 기간내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임한다.

제38조 (논문제출기한) ① 신학과의 논문제출 기일은 11월 말까지로 한다. ② 성서영성학과의 영성지도 전공의 논문제출 기일은 5월 말과 11월 말까지로 한다.

제39조 (논문형식) 본 대학 석사학위 논문 형식에 준한다.

제40조 (학위수여)

① 신학과 학생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와 신학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교역학석사(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한다.

② 성서영성학과의 성서주해 전공 학생과 영성지도 전공 학생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각각 주해원고 심사와 종합성찰보고서와 영성지도확인서 심사를 통과한 후 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와 신학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문학석사(Master of Arts) 학위를 수여한다.

제9장 장학금, 연구비 보조

제41조 (장학금, 연구비)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 (장학생 및 학생징계) ①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당해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신

학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학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10장 신학대학원 위원회

제43조 (조직) 신학대학원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위원회를 두며, 신학대학원장이 이를 통할한다.

제44조 (신학대학원 위원회) ① 신학대학원에 신학대학원 위원회를 둔다.

② 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위원은 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5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 (위원회 기능) 신학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교수회를 거쳐 결정한다.

①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신학대학원의 제규칙, 내규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신학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남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9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 13조 졸업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따른다. (구 학칙 제 13조 2항 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10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본 대학교 졸업생은 8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 학칙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학대학원 운영 내규

제1조 (선택필수)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생은 필수과목 중 최대 15학점까지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Bo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함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계절학기 학점)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학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장학사정에서 제외된다(학부와 신대원 신학과 공통). 따라서 계절학기 학점을 이수한 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할 때 계절학기 학점을 뺀 채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4조 (히브리어와 헬라어 학점) 본 대학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신학과 출신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학점을 이미 취득한자 중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는 본 신학대학원 신학과 1학년에 한하여 학점신청이 가능하다. 단, 졸업 최저학점인 88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학점취득 및 선택과목이수)

① 신학과

1) 졸업학점은 100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신학과 출신은 본 대학 출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여 히브리어 4학점과 헬라어 4학점을 제외한 88학점으로 한다
2) 본 대학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신학과 출신중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졸업을 위해서는 선택과목 2:2:3 비율에 기초하여 성서신학/이론신학/실천신학 과목을 각각 2과목, 2과목 3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성서영성학과

1) 졸업학점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졸업을 위해서는 성서주해 전공의 경우 성서신학/인접학을 각각 8과목, 3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영성지도 전공의 경우 영성학(영성지도)/인접학을 각각 7과목, 3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12회기 이상의 정규적인 영성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재수강) 필수과목을 제 학기에 수강하지 못했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른 학년도에 재수강하려는 자가 시간표가 중복되어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와 상의해서 해결토록 한다. 이는 오직 신학과 3학년에 한해 적용가능하며 반드시 학년지도교수와 신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졸업논문 신청)

① 2011학년도부터 신학과는 졸업논문을 3학점 전공선택으로 하며 논문작성법 강의를 이수한 신학과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정금액의 졸업논문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서영성학과의 영성지도 전공은 졸업논문을 6학점 전공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졸업논문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졸업논문 지도)

① 신대원 신학과 졸업논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문지도교수와 의논 후 논문 제목과 연구계획서를 신대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0매 정도로 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후 4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지도확인서, 학교자동화 서식파일에 맞는 논문 완성본 1부를 신대원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 논문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② 성서영성학과의 영성지도 전공 졸업논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문지도교수와 의논 후 논문 제목과 연구계획서를 신대원 성서영성학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논문은 본 대학교 논문작성법을 따르며 A4 50매 이상으로 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신학대학원 위원회에 논문 심사신청서, 심사용 논문 원고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는 본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중 제6장 학위청구논문의 지도와 심사를 준용한다. 심사 위원은 외부 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는 3인으로 구성한다. 논문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최종 원고를 제출함으로써 논문학점을 취득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후 4회 이상 지도교수

의 논문지도를 받았다는 논문지도확인서, 학교논문의 양식에 맞는 논문 완성본 1부(Hard Bound), 그리고 도서관 d-collection 탑재 확인서를 신대원 성서영성학과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 논문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부 칙

1. 본 운영내규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내규는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운영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대학원 학점 교환제 실시 규정

제1조 (목적)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의 대학원(석사과정) 간에 학점 교환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①각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매 학기당 원칙적으로 교환과목은 1과목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과목은 2년제 석사과정의 경우 총 2과목, 3년제 석사과정의 경우 총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기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학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④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한다

⑤교과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 2통과 사유서 1통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⑦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수강 대학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⑧타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에 납부하는 수강료 납부금 이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⑨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수강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제3조 (수강신청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다.

①이 제도에 의해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려는 대학원 학생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원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교환제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에 수강할 수 있다.

②수강을 결정했을 경우 소속 대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발급 받아 수강할 과목을 기재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한다

③수강학과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소속대학원에 변경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 학점교환 가능학교

1)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2)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3)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4) 한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6)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7)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8)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9)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10) 협성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11) 호서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12) 강남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13)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4)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15)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16)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17)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18)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 평택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20) 한남대학교 대학원
21) 한일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22)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해외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해외 대학 파송 교환학생에 대한 선정 및 파송 절차와 해외 대학에서의 학점 취득 및 그에 대한 본교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관장) 본 업무는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해외 대학과의 교섭과 지정) 교환학생을 파송할 해외 대학들을 물색하여 상호학생교환의 조건과 절차들을 논의한 후,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파송 지정학교를 선정한다.

제4조 (교환학생의 선정공고 및 결정) 교환학생은 파송 지정학교 선정 후에 파송할 수 있는 바, 1학기 파송을 위해서는 그 전년도 9월 중순 이전에 공고하여, 신학대학원위원회 결의를 거쳐 9월 말에 결정하며, 파송할 해외 대학에 10월 안으로 통보한다. 2학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전 1학기 3월 중순 이내에 공고하여, 3월 말 이전에 결정하며, 4월 중 대상 학교에 통보한다.

제5조 (교환학생 선발) 교환학생의 자격기준과 선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 선발대상자는 본 대학원에 최소한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어권 대학의 교환 학생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TOEFL 성적이 IBT 79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학교의 선정요건에 따라 이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아 불가피한 경우에는 TOEFL 성적과 전 학기까지의 성적평점 ×10을 합산하여 등위를 정한다. 만일 대상 학교가 여럿일 경우에는 복수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대상 학생을 정한다.
3. 또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6조 (교환학생의 학점인정) 교환학생은 유학 중 해외대학에서 학점을 등록하여 수업에 열심히 임하여야 한다. 또한 유학시에 취득한 학점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제7조 (교환학생으로 재학 시의 생활비) 교환학생으로서 재학할 시의 기숙사비 및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유학수속, 왕복여비 등의 경비도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교환학생의 해외에서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교환학생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참조규약) 본교를 통해 파송된 교환학생의 경우, 유학 중 파송대학의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유학기간을 마친 후엔 필히 귀국하여야 한다. 본 규약을 어길 시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0조 (부칙) 1.본 규정은 9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민주교육의 이념에 따라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설치)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 (과정별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그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신학과 : 25명
2. 박사과정 신학전공 및 목회학전공 : 4명

제 2 장 입 학

제4조 (입학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입학 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신학대학원 졸업자(M.Div.) 및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목회연구과정(2년제) 졸업자의 경우 청강생제도를 이용하여 M. Div. 교육과정에서 입학 전 6학점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로 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① 신학전공

가. 신학대학원(M.Div.)과 대학원(Th.M.) 혹은 신학관련(M.A.,M.Miss.)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목회학전공

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교육부 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자 포함) 및 석사(Th.M.,M.A,Th.M.M,Th.M.C,M.M.,M.Div.) 학위를 취득한 자.

나. 목회경력 3년이 넘은 자

제6조 (입학 전형)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본 대학원이 공고하는 면접고사를 통해 입학자격을 획득한다.

제7조 (교원 학생) 본 대학에 근무하는 전임 교원 및 직원(조교 제외)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 기간 동안 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재입학) 본 대학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원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허락하고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9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서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 3 장 수업연한, 과목, 학점 및 수료

제 10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 수업은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1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수업시기) 본 대학원의 수업 시기는 상시 주간에 하고 야간 수업과 계절수업을 행하지 아니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에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한다.

제13조 (타 대학원 학점 인정) 본 대학원과 협정 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 될 수 있다.

제14조 (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 전에 대학원장이 공포한다. 일단 결정된 시간표는 학기 도중에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선수과목)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보고서) 학생은 지도 교수가 지정하는 특수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 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과정 이수학점) 학생이 과정 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과정 의무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과정 의무 이수학점은 시행세칙이 정한 24학점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과 학점은 30학점(학위논문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나.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박사과정
   가. 과정 의무 이수학점은 시행세칙이 정한 48학점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과 학점은 57학점(학위논문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학점 취득 제한)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제외한다.

제19조 (수료 및 학위증서)

1.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2. 과정 의무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수학연한 2년이 경과한 후 재학연한 4년 이내에, 박사과정의 경우 수학연한 3년이 경과한 후 재학연한 8년 이내에 한하여 수료생으로 관리한다.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3. 과정 의무이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 4 장 공개강좌, 연수생 및 외국인 학생

제20조 (공개강좌) 본 대학원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들을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 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을 개강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21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5 장 장학금

제22조 (장학금) 대학원 학생의 학업과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규정은 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6 장 학생 준칙

제23조 (학생 준칙) 본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본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며 대학원장의 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4조 (제적 사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칙 또는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 7 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25조 (직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 외 전공별 1인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26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 위원은 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7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특히 규정된 직무 외에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재규정, 내규 등 학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9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정족)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30조 (준용 규정) 학년, 학기, 휴업일, 휴학, 퇴학, 성적, 납입금, 상벌, 기타 본 학칙에 특히 규정된 것 이외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21학번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전공)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신학전공에 다음과 같은 세부전공을 두며 박사학위과정의 목회학전공은 단일 전공으로 한다.

1. 구약학 2. 신약학 3. 역사신학 4. 조직신학 5. 기독교윤리학
6. 예배와 설교 7. 기독교교육학 8. 목회상담학 9. 선교신학 10. 영성학

제2조 (각 전공의 입학정원)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25명,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은 4명이다.

제3조 (전공 당 전체 학생수) 석사과정의 각 전공 당 전체 학생 수는 최대 10명을 원칙으로 하고 박사과정의 각 전공 당 전체 학생 수는 최대 5명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5조 (입학자격)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자여야 하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신학대학원 졸업자(M.Div.) 및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① 신학전공

가. 신학대학원(M.Div.)과 대학원(Th.M.) 혹은 신학관련(M.A.,M.Miss.)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목회학전공

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교육부 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자 포함) 및 석사(Th.M.,M.A.,Th.M.M.,Th.M.C.,M.M.,M.Div.) 학위를 취득한 자.

나. 목회경력 3년이 넘은 자

제6조 (입학지원서류)

1. 석사과정(Th. M..)

① 정시전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 및 신학대학원)	각1부
3. 성적증명서(대학 및 신학대학원)	각1부
4. 면접고사표(본교 소정양식)	1부

② 특별전형

1.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추가서류 없음.
2. 우수졸업논문 특별전형: 졸업논문 1부.

2. 박사과정

① 신학전공(Th. D.)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졸업·성적증명서(대학,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다. 최종학위등록증 사본(대학원)	1부
라.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1부
마. 논문(대학원학위논문 혹은 기타 학술논문)	1부
사. 이력서	1부
아. 연구계획서(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계획쓰기)	1부
자. 면접고사표(본교 소정양식)	1부
차. TOEFL(TOEIC, TEPS)성적표 사본	1부

② 목회학전공(Th.D. in Ministry)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졸업·성적증명서(대학, 석사)	각 1부
다. 목회경력증명서(노회발행)	1부
마. 당회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바. 이력서(본교 소정양식)	1부
사. 연구계획서	1부
아. 면접고사표(소정양식)	1부

제7조(입학전형)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본 대학원이 공고하는 면접고사를 통해 입학 자격을 획득한다.

제8조(외국인 학생 입학)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의 결의를 통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제9조(등록)

1.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학점등록,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2.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전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학등록과 재입학 시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3. 수업년한 동안에는 학기등록(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업년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수업년한 동안에도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과정 의무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10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입대나 질병 등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학기 시작 3주 이후에 휴학을 하면 당해 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6.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7. 가정형편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및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 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8.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11조(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와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학기시작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2.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자동 제적처리 된다.
3.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일로부터 3주전까지 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적 및 자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자
3. 석사과정은 재학년한인 4년, 박사과정은 재학년한인 8년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정한 자
5.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13조(재입학)

1.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사정상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원서를 입학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재입학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동일 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경과로 인한 학사경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4조(재입학생 취득학점의 인정) 재입학 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15조(재입학생의 재학년한) 재입학생의 재학년한은 제적 전의 재학년수와 재입학 후의 재학년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4 장 교과과정, 수강신청, 성적관리

제16조(교과과정과 필수 선택 과목의 결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박사과정은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57학점으로 한다.
2. 학기별 대학원 교과과정은 전공분야 교수들의 논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3. 졸업을 위해 석사과정은 최소 4개의 순수한 자기 전공과목과 영역별 전공 안에서(순수한 자기 전공과목은 제외) 2개의 과목,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은 영역별 전공 밖의 다른 전공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박사과정의 신학전공은 최소 8개의 순수한 자기 전공과목과 영역별 전공 안에서(순수한 자기 전공과목은 제외) 4개의 과목, 그리고 나머지 4과목은 영역별 전공 밖의 다른 전공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석사(박사)과정의 마지막2(4)과목은 자신의 영역별 전공 안에서 들어도 무방하다. 이에 있어 과목들은 각 전공 교수들의 의결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논문 외에 졸업을 위해 취득해야 할 석사과정의 24학점, 박사과정의 48학점을 과정 의무이수학점이라고 한다.
4. 박사과정의 신학전공은 전공/영역전공/일반선택 학점 취득에 있어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전체 16과목 중에서 3년 동안 8과목의 범위 안에서 신학석사과정(Th. M.)과의 통합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한다.

5. 박사과정의 목회학 전공은 매학기 필수과목 1강좌를 수강하여야 하며 나머지 과목은 기존의 박사과정 개설과목들 중에서 선택하되, 목회학 전공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과목교수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석사과정의 수강은 기존의 신학 전공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7조(개설과목) 각 과정의 개설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석사과정(Th.M.)

구분	전공명	과목명	
성서신학	구 약 학	이스라엘의 고대사	성문서주석
		지혜문서	예언서주석
		구약원전	구약신학세미나
		이스라엘종교사연구	묵시문학연구
	신 약 학	바울신학	신약배경사
		공관복음	신약신학
		신약원전강독(1학년)	
		요한신학	
이론신학	역사신학	영지주의연구	한국교회사
		반이단신학자연구	
		교회사연구방법론	
		종교개혁사연구	후기중세신학연구
	조직신학	현대기독론세미나	신학과 과학의 대화
		성령론세미나	근대신학세미나
		현대신학세미나	과정신학세미나
		교회론	신정론 연구
		현대철학적 신학연구	신학적 해석학
			종말론 연구
	기독교 윤리학	신학윤리 세미나	세계종교와 기독교윤리세미나
		기독교사회윤리세미나	생명, 생태윤리 세미나
		성서윤리세미나	결혼과 성윤리 세미나
		철학적윤리(정기철)	정치와 법윤리 세미나
			경제와 기업윤리 세미나
실천신학	예배와 설교	복음적 예배연구	
		예배신학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예전의 역사	설교의 역사 연구
		교회력과 성서일과	설교자 연구
		성례전 연구 I	수사학과 설교
		예배의 재구성	
	기독교 교육학	교육목회	기독교육과 커리큘럼
		기독교교육 사상사	기독교교육론
		기독교교육 심리학	기독교교육과 문화
		현대 기독교교육학자 연구	기독교교육방법론
	목회상담학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개인감독지도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격이론과 발달심리
		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	
		현대심리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선교 신학	하나님의선교	선교현장연구(Th.D.와 연계)
		에큐메닉스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신학
		현대선교신학	
	영성학	개혁교회의 영성	토마스 머튼의 영성
		한국 기독교 영성	기도의 심리학
		기독교 영성학 입문	영성과 기도
		신비주의 연구	영적지도
			영성과 역사
	공통과목	실천신학개론, 예배와 실천, 상담과 실천, 교육과 실천, 영성과 실천	

2. 박사과정(Th. D.)

가. 성서신학

구 약 학	신 약 학
구약과 고대 근동 종교	공관복음서 연구
구약신학 방법론	바울 서신 연구
성서 아람어	신약성서 원문 연구
예언신학 연구	신약학 세미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요한복음서 연구
구약과 유대교	공동서신 연구
구약성서 해석사	교리서신 연구
구약성서와 한국문화	구약과 신약
구약신학의 주제별 연구	누가문서 연구
성서 고고학 세미나	마가복음 주석
시편 주석	목회서신 연구
예레미야 연구	신약성서 신학
오경 연구	신약성서와 윤리
우가릿 문헌 연구	역사적 예수 연구
잠언 연구	영지주의와 신약성서
출애굽기 주석	요한계시록 연구
역대기 연구	중간사 연구
레위기의 신학	초기 교부들의 성서해석
묵시문학	쿰란문서
구약과 신약	히브리서 연구
외경·위경 연구	

나. 이론신학

역 사 신 학	조 직 신 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 선교사	생태신학	기독교윤리학 방법론 연구
어거스틴 연구	신학방법론	자연법과 인권사상 세미나
종교개혁사 연구	현대기독론	종교개혁자의 윤리사상 연구
중세신학 사상사	현대 신비주의 연구	책임윤리와 미래윤리 세미나
한국교회사 연구	현대인간론 세미나	최근 기독교 윤리학의 동향 연구
고대교부 신학사상사	개혁신학	결혼과 성윤리 세미나
근세 교회사 연구	과정신학 세미나	경제와 기업윤리 세미나
기독교 이단사 연구	기독교 역사연구 방법론	계몽철학과 신학윤리 세미나
동방 교회사 연구	성령론 세미나	교회와 국가 세미나
마르틴 루터의 신학	역사와 종말	변증법적 신학의 윤리 연구
수도원 운동사 연구	종교다원주의 세미나	본 훼퍼의 윤리 연구
요한 칼빈의 신학	현대교회론	자유주의 신학의 윤리 연구
종교개혁 급진주의 연구	현대신정론 연구	타종교와 기독교윤리 연구
현대교회사 연구	Barth 신학세미나	현대 영미 기독교윤리 연구
호남 교회사 연구	Moltmann 신학세미나	
	Schleiermacher 신학세미나	
	Tillich 신학세미나	

다. 실천신학

예배와 설교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예배) 개신교 예배 예배신학세미나 예배신학과 적용 예배의 역사와 신학 성례전연구 II 성직임명과 안수 교회와 예배 워십 에방겔리즘 (설교) 설교신학 한국교회설교사세미나 설교의 역사 세미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설교 작성법 연구 설교와 교회력연구 설교와 문학 설교형태연구	성인 기독교교육학 사회화와 변형화 교육론 인간발달과 기독교교육 공동체와 기독교교육 가정과 기독교교육 교회와 기독교교육 학교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세미나 종교심리학 기독교교육과 심리이론 기독교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개혁신앙과 기독독교교육	목회상담 세미나 개인감독 지도 집단감독 지도 집단상담 결혼과 가족상담 목회상담 실습 상담연구 방법론 정신분석치료 위기상담 대상관계 이론과 상담 청소년 상담 이상심리학 상담과 영성
선교신학	영성학	공통과목
복음주의 선교신학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에큐메니칼 운동사 민족통일과 한국교회 제3세계 선교신학 선교현장실습(Th. M.과 연계) 선교와 복음의 상황화 성서와 선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사회선교	개혁교회의 영적지도 포스트 모던이즘과 영성 기독교영성사 토나스 머튼의 영성학 아빌라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신학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신비주의와 신비가들 관상기도의 이해와 실제 희망의 영성 기독교와 타종교의 영성의 비교연구 한국 기독교 영성 모델 연구	실천신학개론 예배와 실천 상담과 실천 교육과 실천 영성과 실천

제18조(학과목의 개설) 각 전공분야의 주임교수는 학과목 개설신청서와 수업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강의 담당 교수는 강의 내용, 강의 교재와 부교재 및 참고 도서 목록, 성적 평가 방법 및 강의 진행 방법 등이 포함된 수업 계획서를 직전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19조(선수과목) 전공교수들은 논의를 통해 각 전공의 선수과목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1. 학생은 등록금 납입 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은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되, 주임교수와 대학원위원장의 확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이 때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의 과목도 수강신청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 과정에 석사과정은 2과목 박사과정은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규정을 어겨 초과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하는 과목은 수강신청 카드의 말미과목부터 한다.

제21조(수업)

1. 수업은 한 학기에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수강신청한 과목은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실격이 되어 F처리된다.
3. 타 대학원(본 대학의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제외] 포함)생도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제22조(전공변경)

1. 석사과정으로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2.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2학기 또는 3학기 등록예정자로서(논문학기 예정자는 제외), 대학원 개강일로부터 1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전공변경 신청자는 변경 이전 전공교수와 변경 이후 전공교수 모두의 동의를 얻 은 후, 전공변경 신청서와 변경 전후 전공교수 동의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4. 전공변경 인원은 매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전공변경 신청자가 5% 제한 선을 넘을 경우에는 선발고사를 실시하거나 재학 중의 성적순위에 근거하여 해당자를 결정할 수 있다.
6. 재학연한(4년)은 변경 전 이수 학기를 포함한다.
7. 전공변경이 허락된 자는 새 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단, 변경 전에 이수한 과목은 졸업학점 체제(4-2-2)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8. 전공변경 신청자는 제출서류(전공변경신청서, 전공변경사유서, 성적증명서, 전공 변경 전·후지도교수 승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

1. 수강과목의 취소,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2. 수강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수강을 취소할 과목의 담당교수로부터 확인을 받고 정정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3.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처리 한다.

제24조(성적)

1.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2.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보고된 성적은 일람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학적부에 기록된다.
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동학생에게 해당학기 종료의 2주일 전(1학기는 8월 10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성적을 확정하되 B+학점 이하만을 줄 수 있다.
5. 위 4항이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F처리된다.
6.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균에 가산한다.
7. 학점취득은 B이상으로 하며 성적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다.

점수	등급	평점
95점 이상	A+	4.5
90점 이상 95점 미만	A	4.0
85점 이상 90점 미만	B+	3.5
80점 이상 85점 미만	B	3.0
80점 미만	F	0.0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제 5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25 조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35조 1항과 관련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영어, 독일어 중 택일
2. 입학시나 학기 중 TOEFL 520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성적 취득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3. 종합시험: 전공 2과목과 인접 1과목

제26조(석사과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학기 전까지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는 외국어 시험은 4월, 7월, 10, 1월과, 종합시험은 과정이수가 끝나는 학기말로 한다.

제27조(석사과정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한 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자

제28조(석사과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재시험) 외국어 시험이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재시험의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박사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

제35조 2항과 관련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목회학전공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면제한다.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 과목 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하며, 대학원위원회는 과목과 출제교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 현대 외국어시험: 모든 학생은 영어시험과 제2외국어 시험(독일어, 불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입학시나 학기 중 TOEFL 52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영어성적 취득자는 영어시험이 면제되며, 제2외국어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2. 고전어시험
   가. 라틴어시험: (역사신학 전공자만 해당)
   나. 히브리어시험: (구약학 전공자만 해당)
   다. 헬라어시험: (신약학 전공자만 해당)
3. 종합필기시험: 전공분야에서 5과목으로 하되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이론 또는 방법론: 주요 이론의 역사와 근간이 되는 주제(거시적 관점)
   (2) 인물: 주요 인물 연구 (자신의 전공과 논문 주제와 일치되는 인물)
   (3) 주제, 이슈, 실천: 이론신학은 주제나 이슈를 다루고, 실천신학은 현장학습이나 경험적 연구에 관련한 현장 연구
   (4) 기타 전공에 따라 결정하는 과목
4. 종합구술시험: 비전공분야에서 3과목으로 하되, 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대학원위원회는 시험 담당 교수를 배정한다.

제30조(박사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기) 외국어시험은 논문학기 전까지 합격하여야 하며, 외국어시험과 종합필기시험은 4월, 7월, 10월, 1월 중에 시행한다. 종합구술시험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

한다.

제31조(박사과정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1. 외국어 시험: 박사과정에서 첫 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자
2. 종합필기시험: 6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고 과정의무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통과한 자.
3. 종합구술시험: 종합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자.

제32조(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제33조(박사과정 종합시험 재시험)

1. 종합필기시험
   가. 전응시과목 중 3과목 이상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3과목 이상을 합격한 경우에는 낙제한 과목만을 재 응시 할 수 있다.
   나. 재시험의 기회는 2회에 한한다. 단, 재 응시 시기는 합격 발표일로부터 한 학기 후로 정한다.
2. 종합구술시험
   가. 1과목 이내의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과목만 그 학기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나. 2과목 이상의 불합격자는 전 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34조(수험료)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하고 관련 시험에 출제, 채점, 감독 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장 학위청구논문의 지도와 심사

제3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Th. M.)
   가. 4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나. 과정의무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및 종합시험 시험에 합격한 자
   라. 논문 계획서의 인준을 받고 한 학기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은 자
   마.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과정(Th. D.)
   가. 6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나. 과정의무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험에 합격한 자(목회학 전공은 제외)
   라. 논문계획서의 인준을 받고 두 학기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은 자
   마.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36조(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

1. 두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는 지도 교수를 배정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청원을 고려하여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3.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제37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원을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38조(논문계획서)

1. 석사과정은 3학기 초, 박사과정은 5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논문 계획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논문계획서를 심사 후 승인하고 부심을 선정한다.

제39조(학위청구논문 작성)

1.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묶는다. 외국어로 작성하도록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논문을 한글로 쓴 경우에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각주는 본문하단에 게재하고 각주 번호는 각 장별로 한다.
3. 논문은 본 대학교 논문작성법을 따르며 석사과정은 A4 50매 이상, 박사과정은 A4 150매 이상으로 한다. 단 목회학전공 박사과정의 경우 A4 100매 이상으로 한다.
4. 논문 작성중인 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고 소정양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위논문심사신청 및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제34조)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대학원위원회에 논문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1조(학위청구논문 원고제출) 논문심사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다음 절차를 따라 학위청구논문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형식심사용 논문 원고를 1부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2.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논문심사 1개월 전까지 논문심사용 원고를 석사과정은 3부 박사과정은 5부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3. 형식심사와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구술심사용 논문원고를 석사과정은 3부, 박사과정은 5부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2조(학위논문심사위원)

1. 형식심사위원은 1명으로 하고 대학원위원회가 선정한다.
2.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 3명과 구술심사위원 3명으로 하고,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각 5명으로 하며 대학원위원회가 선정한다.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되며 구술심사위원이 된다. 구술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외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 자격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타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4. 논문심사위원과 구술심사위원은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 교수로 구성하며 가능한 한 석사과정 은 1명 박사과정은 2명의 심사위원을 타 대학에서 위촉한다.
5. 논문심사위원과 구술심사위원들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논문심사교수와 구술심사교수를 동일하게 한다.

제43조(논문심사 방법)

1. 학위논문심사는 “형식심사”, “논문심사”, “구술심사”로 한다.
2. 형식심사의 합격 여부는 형식심사위원이 결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주심과 부심들)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적절성과 창의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4.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구술심사를 실시한다.
5. 구술심사에서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6. 구술심사의 합격으로 학위논문의 최종 합격이 확정된다.
7. 구술심사용 원고를 2월 졸업을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8월 졸업을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8. 학위논문의 최종합격은 2월 졸업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10일, 8월 졸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6월 10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제44조(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심사(형식심사, 논문심사, 구술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다시 작성,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한지 1년이 경과하 지 않은 심사과정은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제45조(논문 최종본 제출)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하여 하드커버 석사 5부, 박사 5부와 디콜렉션에 원고파일을 탑재한 후 학위논문 윤리 준수 확인서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기는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당해 연도 7월 17일까지로 한다.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표제지
2. 속표지
3. 인준서
4. 목차
5. 본문
6. 참고문헌
7.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논문 초록
9. 그 밖에 본 대학교가 정하는 논문작성법과 학위논문 제출 양식에 따른다.

제47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48조(장학금) 본 대학원생의 연구와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대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8 장 부칙

1.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시행세칙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단,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와 대학원 위원회의 지도 하에 제16조 3항, 제26조, 제27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1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단, 경과조치로서 2001학년도 입학생도 이에 준하여 지도한다.
5.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와 대학원 위원회의 지도하에 제16조 3항, 제17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6.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적용한다.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한 학생도 이에 준한다.
7.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3년 12월 13일부터 학번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 적용한다.
8.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9.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10.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11.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12.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6.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학위논문제출양식

(서식 1 :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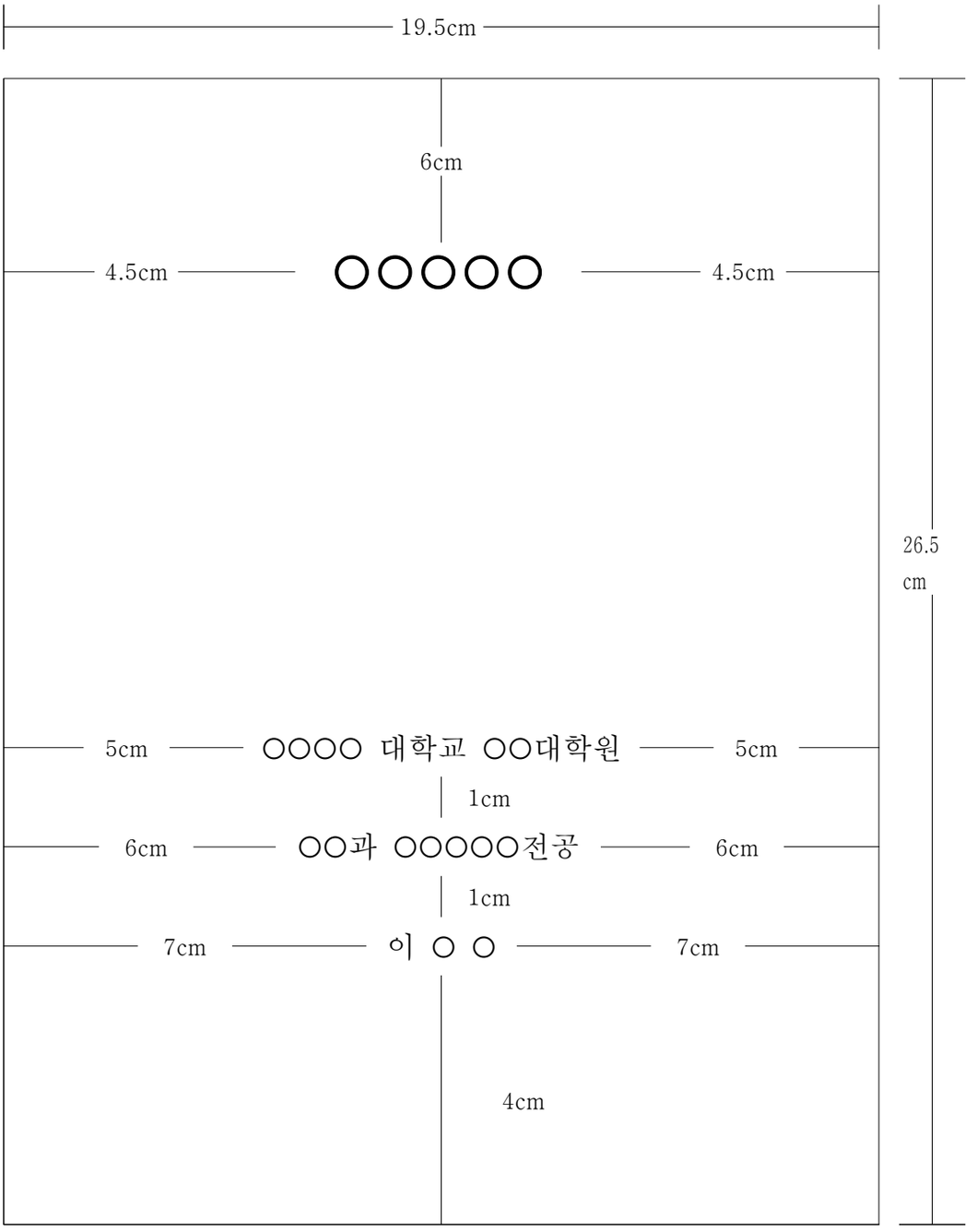

(서식 2 :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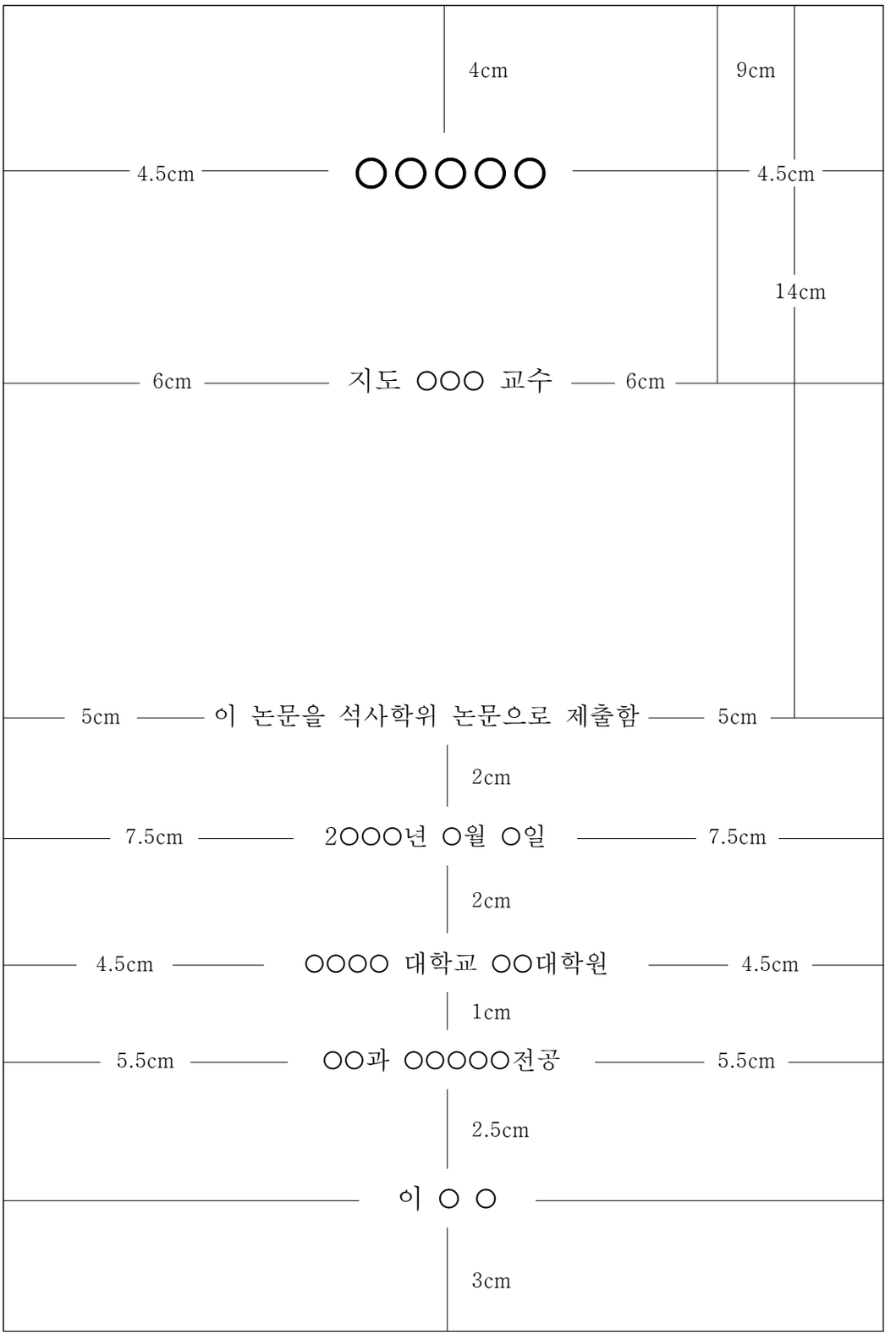
4cm
9cm
4.5cm
○○○○○
4.5cm
14cm
6cm
지도 ○○○ 교수
6cm
5cm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5cm
2cm
7.5cm
2○○○년 ○월 ○일
7.5cm
2cm
4.5cm
○○○○ 대학교 ○○대학원
4.5cm
1cm
5.5cm
○○과 ○○○○○전공
5.5cm
2.5cm
이 ○ ○
3cm

(서식 3 : 인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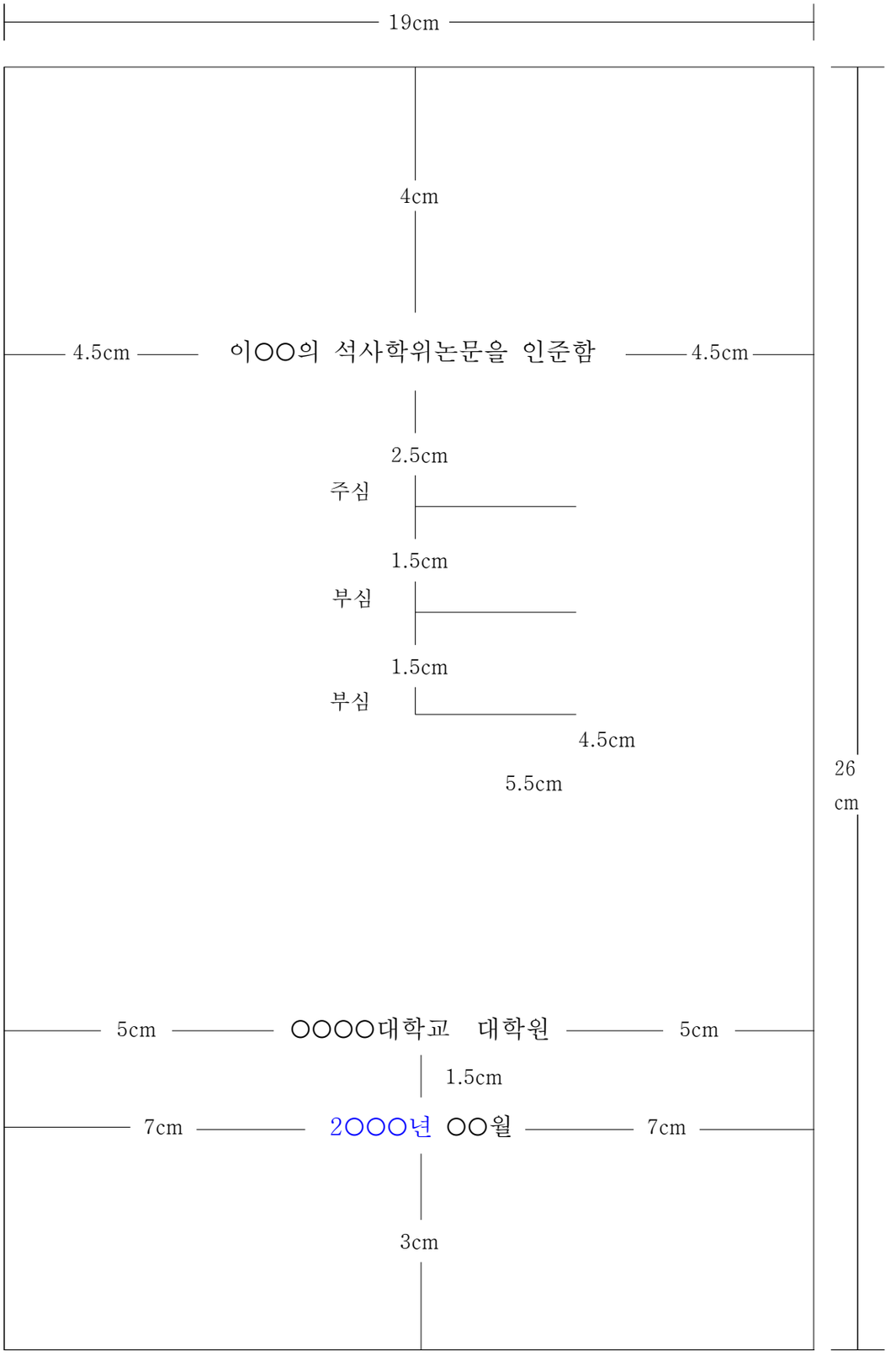
19cm
4cm
4.5cm
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4.5cm
2.5cm
주심
1.5cm
부심
1.5cm
부심
4.5cm
5.5cm
26
cm
5cm
○○○○대학교 대학원
5cm
1.5cm
7cm
2○○○년 ○○월
7cm
3cm

(서식 4 : 사사)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식 5 : 학위기)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_____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다.

1.석사과정

가.신학석사(Th.M.) : 신학 전공

2.박사과정

가.신학박사(Th.D. 신학 전공, Th.D. in Ministry 목회학 전공)

나.명예박사(D.D.)

제3조 (학위수여 자격)

학위수여를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석사과정

가.과정의무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나.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박사과정

가.과정의무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험에 합격한 자(목회학 전공은 제외)

다.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3.명예박사학위

가.국내 또는 국외에서 기독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교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으로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4조 (학위수여)

각 과정별 모든 요건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명예박사의 경우에는 3조 3항에 의함)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소정의 학위를 별지 서식(서식 1,2,3)에 의한 학위기로써 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③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 학위기)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신학석사(Th.M.)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합니다.

논문: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신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학위)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서식 2 : 학위기)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신학박사(Th.D.)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합니다.

논문: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학위)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서식 3 : 학위기)

명예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그 공적을 인정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학위) 인

※ 특정한 공헌이 있는 경우 이를 적시 한다.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조와 제108조에 의거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교수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가로서의 지도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 (과정) 본 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공개강좌 제도를 둘 수 있다.

제4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전공별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회음악학과 - 12명

제5조 (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며 전공별로 행한다.

제2장 입 학

제6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자격을 인정한 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전형방법)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실기 및 필답시험 : 전공실기, 음악사

② 면접 : 음악가로서의 능력, 적성, 인격 심사.

제9조 (외국인의 입학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 2%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서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3장 수업,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

제11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의무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회음악이론분야를 포함해서 필수, 선택, 전공실기 과목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4학기를 1주기로 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공별 교과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취득학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문화예술사자격취득을 위해 학부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별도로 한다.

제15조 (이수단위) ①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재수강, 복학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사자격취득을 위해 학부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별도로 한다.

② 학점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학점교류)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의 타 대학원 과목을 당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공동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개설과목의 경우 4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장 휴학 · 제적 · 퇴학 · 복학 및 재입학

제19조 (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가정형편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및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 주 이 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20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때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제21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 학기초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3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연한 이내에 학점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제적자 또는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생의 지도 및 장학금

제24조 (학칙준수) 대학원학생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과 본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며, 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5조 (장학금) 본 대학원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제26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보다 신속 광범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수업, 모집인원, 수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실비에 한하여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외국어시험·졸업연주 및 학위논문

제27조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

① 응시자격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시험일 1주일 전까지 신청한자로 한다.

② 시험시기 :년 4회 실시한다. (3, 6, 9,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응시료 :시험에 응시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합격판정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⑤ 채 점 :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음악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의 수준, 내용 및 시간 : 외국어시험은 영어에 한하며, 시험의 수준은 전공분야의 해당 외국어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독해력을 평가하는 번역문제를 주로 하며, 시험시간은 90분으로 한다.

⑦ 재시험 : 불합격한 자는 차기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28조 (졸업연주 및 논문 선택) 2학기를 수료하고서 졸업연주와 논문제출 중 학생의 신청을 받아 2학기 전공실기 점수 등을 근거로 전공 주임 교수의 지도하에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9조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연구계획서와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논문 지도교수 선정)논문의 지도교수와 2인의 부심은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1조 (논문 제출 및 절차) 학위 청구 논문의 제출 및 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과정을 따라야하며 이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논문의 판정) 논문의 판정은 주심과 부심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33조 (졸업연주)

① 자격 : 3학기 이상을 수료한자에 한한다

② 심사 : 심사는 전공실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며, Pass는 80점(B학점) 이상

이여야 한다.

③ 연주시간 : 연주시간은 50분 이상으로 한다.
④ 재수강 : 졸업연주의 재수강은 공개 연주회를 재실시하지 않고 전공실기 Ⅳ를 재수강토록 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34조 (학위수여)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을 거친 자는 음악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35조 (학위기)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제9장 직제와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

제36조 (직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 이외에 전공별 1인의 지도주임교수를 둔다.
제37조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원에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38조 (위원의 임기)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위원회의기능)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그 안을 교수회의에 상정한다.
1. 학생의 입학, 수학 및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대학원 또는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0조 (위원회의소집 및 회의) ①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41조 (대학원 운영 규정) 대학원 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기 타

제42조 (초빙교수) 본 대학원은 교육협조기관으로부터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자를 초빙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43조 (준용) 본 대학원의 학기, 수업일수, 등록, 시험, 상벌 기타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남신학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199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번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음악학석사(M.M.)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합니다.

200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학위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음악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200 년 월 일

호 남 신 학 대 학 교 총 장 학위

학위등록번호 : 호신대(석)제 호

교회음악대학원 시행세칙 및 규정

제1조 (입시내규)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1. 특별전형

가. 세례를 받은 자로 각 항에 해당되는 자

1)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전공실기과목 평균이 80점 이상인자

2) 학부와 동일 전공자 - 학부 성악 전공자는 성악 전공으로, 학부 피아노 전공자는 피아노 및 피아노 반주전공으로 학부 오르간 전공자는 오르간 전공으로, 학부 지휘 또는 작곡전공자는 합창지휘 전공으로 학부 음악전공자는 실용음악 및 발성교정 전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전공이 다른 경우에는 정시전형에 응시해야 한다.

3) 목회자나 찬양지도자로서 교회음악전공자

나. 각 전공별 인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미달된 전공이 있을 경우 특별전형의 정원 범위 내에서 타전공이 정원수를 초과 할 수 있다.

피아노	2명	**발성교정**	1명
피아노반주	1명	**합창지휘**	1명
오르간	1명	**관현악**	1명
성 악	1명	**실용음악**	2명

다. (나)항 정원에 의한 사정 결과 총 합격자의 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시는 탈락자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순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사정하며 이 경우 2항의 정한 전공별 정원은 이를 무시한다.

라. 정규 4년제 대학 편입생의 경우 동일전공 수학 기간의 전공실기 성적만을 산출한다.

마. 전형 방법

서류심사(학부 전공실기 과목 성적) 90% + 구술 면접고사 10%

2. 정시전형

가. 세례를 받은 자로 각 항에 해당되는 자

1)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1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자격을 인정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시전형 기간에 지원자 미달 시 특별전형 자격이 있는 자가 지원할 경우 특별전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나. 응시자가 정원 이상일 경우 최종 합격자의 수는 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각 전공별 인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미달된 전공이 있을 경우 정시전형의 정원 범위 내에서 타전공이 정원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정시전형의 정원은 아래 정원에서 특별전 선발한 인원수를 제하고 남은 수로 한다.)

교회음악	2명	**발성교정**	1명
피 아 노	1명	**합창지휘**	2명

피아노반주	1명	관 현 악	1명
오 르 간	2명	실용음악	2명
성 악	2명		

라. 전형 방법

음악사 15% + 전공실기 80% + 면접 5%

마. 실기 과제곡

전 공	실 기 과 제 곡
교 회 음 악	① 성악 자유곡 1곡(성가곡 또는 찬송가) 또는 악기연주 자유곡 1곡(악기에 제한 없음) ② 시창(코오르 위붕겐 6도 음정까지)
피 아 노	① 바로크 작품 ② 고전작품 소나타(전악장) ③ 낭만 작품 ④ 현대 작품 위 ①②③④ 4곡 중 2곡
피아노 반주	① 피아노 독주곡 : Beethoven Sonata 빠른 한악장 ② 반주곡 ㉠ 오페라 아리아 : Mi Chiamano Mimi(La Boheme, G. Puccini) ㉡ 독일가곡 : 두 곡 중 1곡 Auf dem wasser zu signen Op. 72, Fr. Schubert Er, der Herrlichste von allen Op. 42, No. 2, R. Schumann ㉢ 기악곡 : Violin and Piano sonata No. 7 in c minor, Op. 30, L.v. Beethoven ③ 초견(성악, 기악곡)
오 르 간	① 바하 작품 중 1곡 ② 낭만 작품 중 1곡
성 악	①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② 오라토리오 아리아 중 1곡 ③ 영 · 불 · 이 · 독 가곡중 1곡
발 성 교 정	성악 또는 보컬 자유곡 1곡
합 창 지 휘	① 지휘실기 ② 시창 · 청음
실 용 음 악	자유곡 2곡 (MR 및 Bass, Drum 반주자 대동 가능)
관 현 악	자유곡 1곡

- 모든 연주는 외워서 한다.(오르간 제외)
- 성악곡은 원어로 불러야 한다.(교회음악전공 제외)
- 성악반주자는 본인(수험생)이 동반하여야 한다.
- 지휘실기곡은 음악학과 사무실에서 배부하며 실기시험때 합창단은 본대학에서 준비함

바. 교회음악 전공 응시자 제외한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음악전공을 제 2지망으로 하며, 전공실기 점수 70점미만을 취득할 경우 교회음악 제 2지망 응시자로 간주하여 사정한다.

사. (바)의 사정 결과 총 합격자의 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시는 탈락자 모두를 대상으로 종합 성적순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사정하며 이 경우 (다)항의 정한 전공별 정원은 이를 무시한다.

제2조 (전공변경)

1. 전공의 변경은 피아노 전공과 피아노반주 전공, 성악 전공 혹은 실용 보컬 전공과 발성교정 전공, 실용음악 전공의 상호변경에 한한다.
2. 전공의 변경은 첫학기 중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3. 전공변경 신청자는 실기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전공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실기과제곡)

1. 전공실기 시험시간 : 매 학기 15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공실기 시험일자 : 실기고사는 대학원 학기말고사 1주일 전에 실시하며, 중간고사는 생략한다. 단. 합창지휘, 피아노반주, 교회음악 전공의 경우는 전공의 특성상 평소 실기 수업에 대한 평가로 전공실기 시험을 대신 할 수 있다.
3. 진급시험 : 2학기 전공실기시험은 진급시험으로 20분 이상 공개연주로 진행되어진다. (모든 전공에 해당한다.)

○ 오르간 · 피아노 전공

오르간 전공과 피아노 전공은 자유곡으로 15분 이상 연주

○ 성 악 전공

학기	실 기 과 제 곡
1학기	▪가곡 1곡 ▪Oratorio, Misa, Motet, Cantata Aria중 1곡 ▪Opera Aria 1곡 ※ 1학기에는 Opera 1곡을 가곡 2곡으로 대신 할 수 있음
2학기	20분 상당의 연주시간으로 10분씩 2 Stage로 나누어서 연주 ※ 1학기 실기 과제곡과 중복 가능함
3학기	1학기와 동일 ※ 단, Opera Aria는 가곡으로 대신 할 수 없음 1·2학기 실기 과제곡과 중복 할 수 없음

- 졸업연주곡은 1.2.3학기 실기 과제곡과 중복 가능함
- 대학원 성악실기 반주자는 본 대학 또는 본 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음 (Oratrio. Missa, Motet, Cantata 등의 ㅁ갬sms 악보를 보고 연주 할 수 있음.)

○ 실용음악 전공

- 진급시험이외의 실기 과제곡은 실용음악 필수 Jazz Standard 200곡 중 1곡 선택 자유곡 1곡, 총 2곡을 연주한다.

제4조 (전공실기 시험에 관한 규정)

1. 전공실기 시험일자: 실기고사는 대학원 학기말고사 1주일 전에 실시하며, 중간고사는 생략한다. 단, 교회음악전공·합창지휘전공·반주전공의 경우는 전공의 특성상 평소 실기 수업에 대한 평가로 전공실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2. 시험시간: 시험시간은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3. 곡목제출: 실기시험 곡목제출은 시험일 1주일 전까지로 한다.
4. 심사위원: 실기시험 심사위원은 대학원 교수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음악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대학원생 지도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교수진으로 한정한다.
5. 채점방법: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자기 제자도 채점한다.
6. 합산방법: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cut함을 원칙으로 한다.
7. 2학기 전공실기 시험: 2학기 전공실기 시험은 졸업연주와 논문선택의 기준이 되는 자격시험으로서 연주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8. 전공실기IV
   ① 졸업연주는 전공실기IV의 시험을 대신하며, 졸업연주 취득 점수를 전공실기IV의 점수로 대체한다.
   ② 마지막 학기 때 졸업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공실기IV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③ 논문을 선택한 학생의 전공실기IV 시험은 따로 실시하며, 그 과제곡은 3학기 과제곡에 준하여 전공별로 임의 실시한다.
9. 재시험: 재시험은 실기시험응시자 중 'C'학점 이하인 자와 타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등) 사유에 의한 불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고사 점수는 재시험 취득점수에서 5%를 감한 점수로 한다. 단, 타당한 경우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미 응시자는 F 학점으로 한다.
10. 불 응시자: 위의 9번 항이 전공실기 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고사의 실기 성적으로 한다.
11. 임의사항: 고사진행 중 임의결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2. 기　타: 고사의 모든 운영은 전공 주임교수에 의해 진행한다.

제5조 (전공실기 지도교수 및 배정과 변경에 관한 규정)

1. 본 대학 교수진을 대학원 교수진으로 동일시한다.
2. 대학원 강의만을 위한 강사를 인정한다.
3. 입학 시 1, 2, 3 지망을 받아 임의 선정한다.(강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
4. 지도교수 변경은 3학기 진급 시 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변경은 현 지도교수와 본인이 원하는 지도교수 그리고 전공주임교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지도 관리에 의한다.

제6조 (렛슨에 관한 규정)

전공실기 렛슨은 주1회 실시하며, 주2회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실험 실습비를 내고 수강할 수 있다. 단, 오르간의 경우 1학기 수강생 중 학부에서 오르간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주2회 레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7조 (가을학기 입학생의 수강신청 및 전공실기 과정)

가을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가을학기 전공실기를 전공실기II가 아닌 전공실기I로 수강토록하며 전공실기 Ⅰ.Ⅱ.Ⅲ.Ⅳ 순으로 수강한다.
단, 실기 이외의 모든 과목은 Ⅱ.Ⅰ.Ⅳ Ⅲ으로 수강한다.

제8조 (졸업 연주회 인쇄물에 관한 규정)

다음의 문구를 포스터와 프로그램에 반드시 넣도록 한다.
이 연주회는 석사 과정 이수를 위한 필수 과정임
주최 -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제9조 (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

1. 석사학위논문 제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학위청구논문 제목 허가를 받고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

1)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은 교회음악대학원장과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의논하여 배정하되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의 교수진 중에서 배정한다.

3) 2학기(16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3학기 초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 하에 논문계획서를 첨부한 가제목(proposed title)과 함께 지도교수의 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는다.

다. 논문제목 허가: 3학기(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에게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서 3학기 말에 논문제목을 허가한다.

라. 학위논문의 작성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되 한문이나 원어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 )속에 묶는다.

2)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은 본 교회음악대학원이 지정하는 A4 컴퓨터용지 (double space) 60매 이상으로 한다.

3) 논문은 횡서(橫書)로 작성한다.

4) 각주(脚註)는 본문하단에 기재하고 각주번호는 각 장별로 한다.

5) 참고문헌목록은 국문은 가나다순으로,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마. 학위논문의 구비사항: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2) 인준서

3) 목차 4)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본문 6) 참고문헌

7)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바. 논문원고 제출 및 시기: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제출은 1학기는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10월 중순까지 1부를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심사

가. 논문심사신청: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소정양식)

2) 정서한 논문원고 3부를 작성하여

3)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 제1학기는 5월초 까지, 2학기는 11월초 까지 기일 엄수하여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나. 논문심사비: 학위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논문학기의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한다

다. 논문심사위원 배정

1) 논문심사위원은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하며, 교회음악대학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배정에 규정한 지도교수와 같이 하며,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라. 논문심사의 방법

1) 논문심사는 “논문심사” 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되 “논문심사”는 논문 제출자의 출석 없이 하며“구술시험”은 논문 제출자를 출석시켜 행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창의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3)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의 부본, 역본, 표본 기타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합격을 결정한다.

5) 학위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교회음악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논문의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바. 논문의 최종본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교회음악대학원이 정한 출판학위논문의 체제에 규정에 따라 출판하고 하드카바 10부를 제출한다.

제10조 (대학원 행사에 관한 규정)

대학원 자체 정기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 대학원 연주회 : 클래스 발표회, 전공별 연주회, 합동 연주회, 앙상블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실시한다.
3. 학술대회 등 각종 세미나 실시

제 11조 (수험료 및 수당지급)

외국어시험에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하고 졸업연주 심사비를 부과한다. 외국어시험과 졸업연주 심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호남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조와 제108조에 의거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교수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지도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호남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 (과정) 본 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공개강좌 제도를 둘 수 있고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상담학과 - 25 명

제5조 (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한다.

제2장 입 학

제6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월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전형방법)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면접 : 경력, 내신 성적, 면접

제9조 (외국인의 입학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서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3장 수업,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

제11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의무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수과목) 본 대학원의 학생은 과정 이수를 위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논문 6학점 포함)
제14조 (이수단위) ①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학점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학점교류)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의 타 대학원 과목을 당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공동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단, 공동개설과목의 경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4장 등록 · 휴학 · 제적 · 퇴학 · 복학 및 재입학

제18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가정형편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및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19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5년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20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 학기초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2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병역의무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재학기간 경과 학사 경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락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연한 이내에 학점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고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5장 학생의 지도 및 장학금

제23조 (학칙준수) 대학원학생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과 본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며, 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4조 (장학금) 본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와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장학금지급)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대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6장 공개강좌

제26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보다 신속 광범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수업, 모집인원, 수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실비에 한하여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7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제28조 (외국어시험 시기) 외국어시험은 논문학기 전까지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제29조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이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0조 (외국어시험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각각 2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의 시기는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학위논문의 제출과 심사

제31조 (지도교수의 승인)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연구계획서와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논문 지도교수 선정)논문의 지도교수와 2인의 부심은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3조 (논문의 판정) 논문의 판정은 주심과 부심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34조 (논문 심사비) 학위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논문학기의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석사학위논문제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졸업학점이상 취득예정자(당학기 포함)
2. 전 과정 평점이 B(3.0) 이상인 자
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제목 허가를 받고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

1.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상담대학원장과 각전공별 주임교수가 의논하여 배정하되 상담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의 교수진 중에서 배정한다.

3. 2학기(18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3학기초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계획서를 첨부한 가제목(proposed title)과 함께 지도교수의 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는다.

③ 논문제목 허가 : 3학기(24학점)이상 취득예정자에게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 3학기말에 논문제목을 허가한다.

④ 학위논문의 작성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되 한문이나 원어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 ) 속에 묶는다.
2.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은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A4용지
(double space)로 60매 이상으로 한다.
3. 논문은 횡서(橫書)로 작성한다.
4. 각주(脚註)는 본문하단에 기재하고 각주번호는 각 장별로 한다.
5. 참고문헌목록은 국문은 가나다순으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⑤ 학위논문의 구비사항 :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2. 인준서
3. 목차 4.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본문 6. 참고문헌
7.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⑥ 심사용 논문원고 제출 및 시기 :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제출은 1학기는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10월 중순까지 1부를 상담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신청 :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소정양식)
2. 정서한 논문원고 3부를 작성하여
3.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 제1학기는 5월초까지, 2학기는 11월초까지 기일 엄수하여 기독상담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논문 심사위원 배정

1. 논문심사위원은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하며, 상담대학
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배정에 규정한 지도교수와 같이 하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⑨ 논문심사의 방법

1. 논문심사는 대학원에 준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창의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3.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의 부본, 역본, 표본 기타자료를 제출 케 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합격을 결정한다.
5. 구술심사의 합격으로 학위 논문의 최종합격이 확정된다.
6. 학위논문의 최종합격은 2월 졸업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10일, 8월 졸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6월 10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⑩ 논문의 재심사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⑪ 논문의 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상담대학원이 정한 출판학위논문의 체제의 규정에 따라 출판하고 하드카바 5부, 원고가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정보공개동의서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기는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1월 15일

경, 8월 졸업 예정자는 당해연도 7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장 학위수여

제36조 (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나,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합격자에게 상담학석사 학위를 수여 한다.
제37조 (학위기)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제10장 직제와 상담대학원위원회

제38조 (직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 이외에 1인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39조 (상담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원에 상담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상담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상담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0조 (위원의 임기) 상담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1조 (위원회의기능) 상담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학생의 입학, 수학 및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대학원 또는 상담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칙,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2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상담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담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대학원 운영 규정)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기 타

제44조 (초빙교수) 본 대학원은 교육협조기관으로부터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 자를 초빙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 (준용) 본 대학원의 학기, 수업일수, 등록, 시험, 상벌 기타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남신학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 (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학칙은 2019학번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상담학과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상담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 :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장 학위

위의 인정에 의하여 상담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호 남 신 학 대 학 교 총 장 학위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호남신대 (석)제 호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조와 제108조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학습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 (과정) 본 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공개강좌 제도를 둘 수 있다.
제4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학과 - 9명
제5조 (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과 야간에 실시한다.

제2장 입 학

제6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①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월 졸업예정자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전형방법)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 및 면접으로 한다.
제9조 (외국인의 입학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학생정원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서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3장 수업,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

제11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의무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수과목) 본 대학원의 학생은 과정 이수를 위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논문 6학점 포함)

제14조 (이수단위) ①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학점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학점교류)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의 타 대학원 과목을 당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공동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단, 공동개설과목의 경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4장 등록 · 휴학 · 제적 · 퇴학 · 복학 및 재입학

제18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가정형편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및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19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5년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20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 학기초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2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병역의무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재학기간 경과 학사 경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락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연한 이내에 학점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고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5장 학생의 지도 및 장학금

제23조 (학칙준수) 대학원학생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과 본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며, 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4조 (장학금) 본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와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장학금지급)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대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6장 공개강좌

제26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수업, 모집인원, 수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실비에 한하여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7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제28조 (외국어시험 시기) 외국어시험은 논문학기 전까지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제29조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이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0조 (외국어시험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각각 2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의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학위논문의 제출과 심사

제31조 (지도교수의 승인)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연구계획서와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논문 지도교수 선정)논문의 지도교수와 2인의 부심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3조 (논문의 판정) 논문의 판정은 주심과 부심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34조 (논문 심사비) 학위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논문학기의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석사학위논문제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졸업학점이상 취득예정자(당학기 포함)
2. 전 과정 평점이 B(3.0) 이상인 자
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제목 허가를 받고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

1.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의논하여 배정하되 사회복지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의 교수진 중에서 배정한다.
3. 2학기(18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3학기 초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계획서를 첨부한 가제목(proposed title)과 함께 지도교수의 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는다.

③ 논문제목 허가 : 3학기(24학점)이상 취득예정자에게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3학기말에 논문제목을 허가한다.

④ 학위논문의 작성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되 한문이나 원어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 ) 속에 묶는다.
2.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은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A4용지
(double space)로 60매 이상으로 한다.

3. 논문은 횡서(橫書)로 작성한다.

4. 각주(脚註)는 본문하단에 기재하고 각주번호는 각 장별로 한다.

5. 참고문헌목록은 국문은 가나다순으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⑤ 학위논문의 구비사항 :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2. 인준서

3. 목차 4.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본문 6. 참고문헌

7.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⑥ 심사용 논문원고 제출 및 시기 :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제출은 1학기는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10월 중순까지 1부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신청 :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소정양식)

2. 정서한 논문원고 3부를 작성하여

3.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 제1학기는 5월초까지, 2학기는 11월초까지 기일 엄수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논문 심사위원 배정

1.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하며, 사회복지대학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배정에 규정한 지도교수와 같이 하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⑨ 논문심사의 방법

1. 논문심사는 대학원에 준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창의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3.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의 부본, 역본, 표본 기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합격을 결정한다.

5. 구술심사의 합격으로 학위 논문의 최종합격이 확정된다.

6. 학위논문의 최종합격은 2월 졸업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10일, 8월 졸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6월 10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⑩ 논문의 재심사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⑪ 논문의 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대학원이 정한 출판학위논문의 체제의 규정에 따라 출판하고 하드카바 5부, 원고가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정보공개동의서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기는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 연도 1월 15일경, 8월 졸업 예정자는 당해 연도 7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장 학위수여

제36조 (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과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4학기를 등록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외국어시험과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를 수여 한다.

제37조 (학위기)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제10장 직제와 사회복지대학원위원회

제37조 (직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 이외에 1인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38조 (사회복지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39조 (위원의 임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위원회의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학생의 입학, 수학 및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칙,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1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대학원 운영 규정)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기 타

제43조 (초빙교수) 본 대학원은 교육협조기관으로부터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 자를 초빙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44조 (준용) 본 대학원의 학기, 수업일수, 등록, 시험, 상벌 기타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남신학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번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사회복지학과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사회복지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 :

년 월 일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학위

위의 인정에 의하여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호 남 신 학 대 학 교 총 장 학위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호남신대 (석)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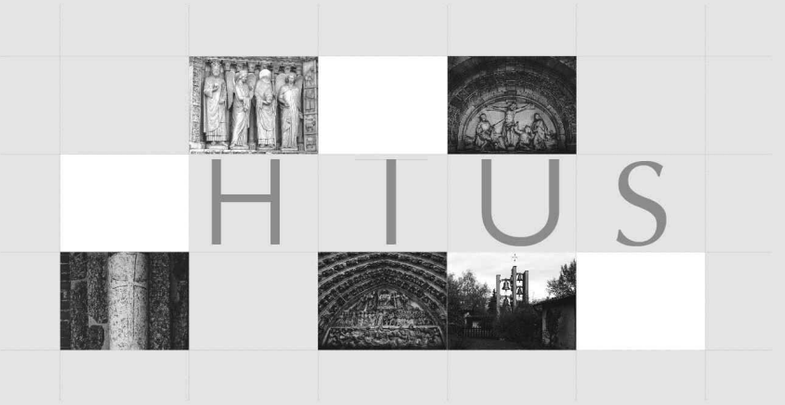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교과과정 및 교과목 해설

교양교육과정(교양선택 과목) Pool
교양선택 교육과정표
신학과 주간 필수 교육과정표
신학과 야간 필수 교육과정표
신학과 주간 교육과정표
신학과 야간 교육과정표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과정표
음악학과 교육과정표
신학대학원 교육과정표
음악학과 실기과제곡
대학 교과목 해설
신학대학원 교과목 해설
기독교상담대학원 교과목 해설
대학원 교과목 해설
교회음악대학원 교과목 해설
사회복지대학원 교과목 해설
박물관 규정

교양(선택)분야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인재상	교육목표(영역)	핵심역량	내용	과목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인재	인문학적 인격형성	인간과 사회, 세상에 관한 이해를 통해, 인간 삶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격 향상을 도모한다.	* 세계 역사 이해 * 기독교 역사 이해 * 동·서양 철학과 사상 이해 * 동·서양 문화와 기독교 문화 이해 * 동·서양 문학과 한국 문학, 기독교 문학 이해 * 세계 종교와 기독교 이해 * 과학과 종교 이해 * 미래시대의 종교 의미와 역할 이해 * 미래시대의 인간이해(추가) * 기후 위기 시대의 생명과 생태 이해	문학의 세계, 영화와 서사, 기독교 문학으로의 여행, 기독교고전과 역사, 기독교신앙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소설, 역사로 본 한국, 중세철학이야기, 동양 철학과 사상, 종교와 과학, 현대 사회와 종교,사회학 들여다보기, 인간심리의 이해, 생명과 생태, 경제와 세계, 생활과 법률, 미디어로 세상읽기, 소통을 통한 인간이해, 여성학, 인권과 윤리, 기독교신학과 세계문화, 기독교와 문화, 역사와 신학, 청소년 현장멘토링Ⅰ,Ⅱ, 미래시대의 종교와 윤리, 인공지능시대의 인간이해, 미래시대의 영성, 기후위기시대의 교회, 공적신앙과 기독교윤리
	융합적 대(對) 사회적 인격 형성	전인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한다.	* 사회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 실천 *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상담이론과 실제를 통한 인간관계 이해 *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함양 * 사회와 가정에서의 섬김	사회복지개론, 여성과 사회, 기독교 사회복지론, 가정생활교육, 특수아동의이해, 사회복지와 상담, 미디어리터러시와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문화 다양성, 다문화사회와 상담, 사회복지상담과 홍보마케팅, *사회봉사Ⅰ,Ⅱ(각 1)
	심미적 인격 형성	문화와 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여 심미적 인격 형성을 도모한다.	* 음악(클래식, 대중음악, 기독교음악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과 향유 능력 함양 * 음악을 통한 소통과 치유 능력 함양 * 미디어 활용 능력 함양 * IT 기술을 활용한 음악적 능력 함양 * 미술을 통한 문화 이해 증진 * 연주활동을 통한 연주능력 증진과 심미적 정서 함양	한국음악의 이해(2), 아름다운 목소리(2), 음악치료학Ⅰ,Ⅱ(각 2), 음악 심리학(3), 음악치료기술(3), 한국음악의 이해(2), 교회음향의 실제(2) 미술을 통한 문화 읽기(3), 음악의 이해(2), 찬송과 예배(2) 컴퓨터 음악의 이해Ⅰ,Ⅱ (각 2) *합창Ⅰ,Ⅱ(각 1), *예배와 찬양Ⅰ,Ⅱ
	정보융합과 창의적 소통능력 배양	창의적 정보융합 능력과 다차원적 소통능력을 기른다.	* 창의적 정보융합 능력에 기반한 소통능력 배양 * 외국어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능 습득 제고 * 언어 학습을 매개로 한 지식과 리더십 확장 * 글로벌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국제적 이해 제고	이태리어(2,주간), 실용영어Ⅰ,Ⅱ,Ⅲ,Ⅳ, 학문적 글쓰기, 언어와 화법 디지털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Ⅰ, Ⅱ(각 2) *독일어Ⅰ,Ⅱ(각 2,주간), *영어스피치(2, 1학기 야, 2학기 주), *문화스토리텔링(1학기 주, 2학기 야), *글로벌문화와 영어Ⅰ,Ⅱ,Ⅲ,Ⅳ(각 2)- Ⅲ,Ⅳ의 경우 야간 격년 개설

* 외부지원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교양(선택)분야 교육과정

주간

영역	2021-1(16)	2021-2(16)	2022-1(15)	2022-2(16)
인문학적 인격형성	미디어로 세상읽기(3) 영화와 서사(3) 미래시대의 영성(3) *청소년 현장멘토링Ⅰ(3(1,P/NP))	역사와 신학(3) 기후위기시대의 교회(3) 사회학 들여다보기(3) 기독교 문학으로의 여행(3) *청소년 현장멘토링Ⅱ(3(1,P/NP))	역사로 본 한국(3) 기독교와 문화(3) 인간심리이해(3) 미래시대의 종교와 윤리(3) *청소년 현장멘토링Ⅰ(3(1,P/NP))	경제와 세계(3) 현대 사회와 종교(3) 기독교신앙의 역사(3) *청소년현장멘토링Ⅱ(3(1,P/NP))
융합적 대(對) 사회적 인격 형성	기독교 사회복지론(3)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3) 사회복지와 인권(3) *사회봉사Ⅰ(1)	가정생활교육(3) 다문화사회와 상담(3) *사회봉사Ⅱ(1)	미디어리터러시와 사회복지상담(3) 사회복지상담과 홍보마케팅(3) *사회봉사Ⅰ(1)	여성과 사회(3) 사회복지상담(3) 특수아동의이해(3) *사회봉사Ⅱ(1)
심미적 인격 형성	음악심리학(3) 컴퓨터 음악의 이해 Ⅰ(2) *합창Ⅰ(2) *예배와 찬양Ⅰ(1)	음악치료기술(3) 미술을 통한 문화 읽기(2) 컴퓨터 음악의 이해 Ⅱ (2) *합창Ⅱ(2) *예배와 찬양Ⅱ(1)	음악치료학Ⅰ(3) 음악의 이해(2) *합창Ⅰ(2) *예배와 찬양Ⅰ(1)	음악치료학 Ⅱ(3) 아름다운 목소리(2) 찬송과 예배(2) *합창Ⅱ(2) *예배와 찬양Ⅱ(1)
정보융합과 창의적 소통능력 배양	실용영어 III(3) 이태리어(2) *독일어 I(2) *문화스토리텔링(3)	실용영어 Ⅳ(3) *독일어 Ⅱ(2) *영어스피치(2)	실용영어 I(3) *독일어 I(2) *문화스토리텔링(3)	실용영어 Ⅱ(3) *독일어 Ⅱ(2) *영어스피치(2)
외부지원 (과목수제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 (금융감독원) *과목수 제외		

<참고>

1. 과목명 앞에 * 표시는 매년 개설함 의미
2. 합창(음), 사회봉사(사상), 사회복지개론(사상)은 해당 학과 과목 개설시 공동수업으로 진행
3. 외부(금융감독원) 지원 과목은 과목수에서 제외
4. 주간 16-17과목, 야간 7-8과목 정도를 개설 예정

야간

영역	2021-1(7)	2021-2(7)	2022-1(7)	2022-2(7)
인문학적 인격형성	역사와 신학(3) 여성학(3) 소통을 통한 인간이해(3)	공적신앙과 기독교윤리(3) 인공지능시대의 인간이해(3)	문학의 세계(3) 종교와 과학(3) 기독교고전과 역사(3)	중세철학이야기(3) 생명과 생태(3) 기독교신학과 세계문화(3)
융합적 대(對) 사회적 인격 형성	*사회봉사Ⅰ(1)	기독교 사회복지론(3) *사회봉사Ⅱ(1)	*사회봉사Ⅰ(1)	*사회봉사Ⅱ(1)
심미적 인격 형성	교회음향의 실제(2)	한국음악의 이해(2)	*컴퓨터 음악의 이해 Ⅰ(2)	*컴퓨터 음악의 이해 Ⅱ (2)
정보융합과 창의적 소통능력 배양	실용영어 III(3) 영어스피치(2)	실용영어 Ⅳ(3) 학문적 글쓰기(2)	실용영어 I(3) 언어와 화법(2)	실용영어 II(3) 문화스토리텔링(3)

<참고>

1. 과목명 앞에 * 표시는 매년 개설됨을 의미
2. 야간의 경우 시간표에 따라 3학점 과목도 2학점으로 개설될 수 있음.
3. 주간 16-17과목, 야간 7-8과목 정도를 개설 예정

교양분야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핵심역량목표	하위역량	하위역량목표	선택 교과목	필수 교과목
사명·가치·실천형 인재 양성	기독교적 가치와 사명을 실천하는 MVP 인재	글로컬 리더십 역량	세계(Global)와 지역(Local)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구성원을 이끄는 능력	글로컬	세계와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경제와 세계, **미디어와 세계,(변경)** 기독교신학과 세계문화 Ⓢ **생명존중과 인권(변경)** Ⓜ 현대사회와 음악(2) Ⓒ 독일어Ⅰ,Ⅱ(각 2)	Ⓣ Ⓢ Ⓜ Ⓒ
				리더십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으로 두고 공동체의 발전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끄는 능력	Ⓣ 역사와 신학 Ⓢ Ⓜ Ⓒ **일반영어 Ⅰ, Ⅱ(변경)**	Ⓣ Ⓢ Ⓜ Ⓒ 기독교의이해(2)
		협력적 소통역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협력하여 소통하는 능력	공동체 의식	공동체와 구성원의 가치를 존중하며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	Ⓣ 기독교신앙의 역사, 기독교역사소설, **근대한국사 이해(변경)**, 생명과 생태 Ⓢ 기독교사회복지론, 사회봉사Ⅰ,Ⅱ(각 1) Ⓜ 합창Ⅰ,Ⅱ(각 2) Ⓒ 언어와 화법	Ⓣ 세계사와기독교 Ⓢ 사회봉사I,II,III,IV,V,VI(각1) Ⓜ Ⓒ
				의사소통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 **인간관계와 소통(변경)** Ⓢ 사회복지와 상담 Ⓜ **찬송가개론(2)(변경)**, 예배와 찬양Ⅰ,Ⅱ(2) Ⓒ 실용영어Ⅰ,Ⅱ,Ⅲ,Ⅳ	Ⓣ Ⓢ Ⓜ Ⓒ 대학영어 I,II(각2)
		자기주도적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기관리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성찰하는 능력	Ⓣ 인권과 윤리 Ⓢ 가정생활교육 Ⓜ Ⓒ	Ⓣ Ⓢ Ⓜ Ⓒ
				자기개발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독지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능력	Ⓣ 미래시대의 영성 Ⓢ 사회복지개론 Ⓜ Ⓒ 영어스피치(2)	Ⓣ Ⓢ Ⓜ 성서와함께 Ⓒ 진로지도 I,II(P/NP)
		감성적	기독지성인으로서의	문화적	다양한 문화를 기독교의	Ⓣ 문학의 세계, 영화와 서사, **기독교 문학 이해(변경),**	Ⓣ 희랍철학사

		역량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다른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소양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을 창출하는 능력	기독교와 문화 [S] 사회복지문화 다양성 [M] **<u>발성과 호흡(2)(변경)</u>**, **<u>국악과 한국문화(2)(변경)</u>** [C] 문화스토리텔링	[S] [M] [C]
				공감능력	기독교적 지성과 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T] 현대사회와 종교, 사회학 들여다보기, 인간심리이해, 여성학 [S] 여성과 사회, 특수아동의이해 [M] 음악의 이해(2) [C] 글로벌문화와 영어Ⅰ,Ⅱ,Ⅲ,Ⅳ(각 2)	[T] 인간과종교 [S] [M] [C]
		융합적 활용역량	유연한 사고와 자세로 지식, 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기독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능력	통합적 사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 정보, 기술을 수집, 분석, 통합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만드는 능력	[T] 중세철학이야기, 동양철학과 사상, 종교와 과학, 인공지능시대의 인간이해 [S] 사회복지상담과 홍보마케팅 [M] 음악 심리학, **<u>예술과 문화(2)(변경)</u>** [C] 학문적 글쓰기	[T] [S] [M] [C] 독서와작문(2)
				유연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의 요소를 열린 자세로 탐구하는 능력	[T] 공적 신앙과 기독교윤리 [S] [M] [C]	[T] [S] [M] [C]
		창조적해결 역량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고 만드는 능력	[T] 미래시대의 종교와 윤리,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 [S] 미디어리터러시와 사회복지상담 [M] 교회음향의 실제(2), 컴퓨터음악의 이해 Ⅰ,Ⅱ(각 2) [C] 디지털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Ⅰ,Ⅱ(각 2)	[T] [S] [M] [C]
				문제해결	전문성과 도전정신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T] 기독교고전과 역사, 생활과 법률, 청소년현장멘토링Ⅰ,Ⅱ [S] **<u>갈등해결과 회복적 정의(신규)</u>** [M] 음악치료기술, 음악치료학Ⅰ,Ⅱ [C]	[T] [S] [M] 그리스도인의삶 [C]

<참고>

1. 선택 교과목 관리학과 - [T] : 신학과, [S] : 사회복지상담학과, [M] : 음악학과, [C] : 공통,
   필수 교과목 개설학과 - [T] : 신학과, [S] : 사회복지상담학과, [M] : 음악학과 , [C] : 각 학과
2. 외부지원 과목 미포함(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
3. 학점은 기본 3학점이며 1학점이나 2학점은 과목명 옆에 ( )로 학점을 기재

교양(선택)분야 학기별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2023-2024학년도

핵심역량(6)	하위역량(12)	2023-1(16)_(2021-1 개설)	2023-2(15)_(2021-2 개설)	2024-1(15)_(2022-1 개설)	2024-2(16)_(2022-2 개설)
글로컬 리더십 역량	글로컬	Ⓣ **미디어와 세계(3)** Ⓢ **생명존중과 인권(3)** Ⓜ 현대사회와 음악(2) Ⓒ *독일어 Ⅰ(2)	Ⓣ Ⓢ Ⓜ Ⓒ *독일어 Ⅱ(2)	Ⓣ Ⓢ Ⓜ Ⓒ *독일어 Ⅰ(2)	Ⓣ 경제와 세계(3) Ⓢ Ⓜ Ⓒ *독일어 Ⅱ(2)
	리더십	Ⓣ Ⓢ Ⓜ Ⓒ	Ⓣ 역사와 신학(3) Ⓢ Ⓜ Ⓒ	Ⓣ Ⓢ Ⓜ Ⓒ	Ⓣ Ⓢ Ⓜ Ⓒ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의식	Ⓣ Ⓢ 기독교사회복지론(3), *사회봉사Ⅰ(1) Ⓜ *합창Ⅰ(2) Ⓒ	Ⓣ Ⓢ *사회봉사Ⅱ(1) Ⓜ *합창Ⅱ(2) Ⓒ	Ⓣ **근대한국사 이해(3)** Ⓢ *사회봉사Ⅰ(1) Ⓜ *합창Ⅰ(2) Ⓒ	Ⓣ 기독교신앙의 역사(3) Ⓢ *사회봉사Ⅱ(1) Ⓜ *합창Ⅱ(2) Ⓒ
	의사소통	Ⓣ Ⓢ Ⓜ *예배와 찬양Ⅰ(1) Ⓒ 실용영어 Ⅲ(3)	Ⓣ Ⓢ Ⓜ *예배와 찬양Ⅱ(1) Ⓒ 실용영어 Ⅳ(3)	Ⓣ Ⓢ Ⓜ *예배와 찬양Ⅰ(1) Ⓒ 실용영어 Ⅰ(3)	Ⓣ Ⓢ 사회복지와 상담(3) Ⓜ **찬송가개론(2),** *예배와 찬양Ⅱ(1) Ⓒ 실용영어 Ⅱ(3)
자기 주도적 역량	자기관리	Ⓣ Ⓢ Ⓜ Ⓒ	Ⓣ Ⓢ 가정생활교육(3) Ⓜ Ⓒ	Ⓣ Ⓢ Ⓜ Ⓒ	Ⓣ Ⓢ Ⓜ Ⓒ
	자기개발	Ⓣ 미래시대의 영성(3) Ⓢ Ⓜ Ⓒ	Ⓣ Ⓢ Ⓜ Ⓒ *영어스피치(2)	Ⓣ Ⓢ Ⓜ Ⓒ	Ⓣ Ⓢ Ⓜ Ⓒ *영어스피치(2)

감성적 역량	문화적 소양	Ⓣ 영화와 서사(3) Ⓢ 사회복지문화 다양성(3) Ⓜ Ⓒ *문화스토리텔링(3)	Ⓣ **기독교 문학 이해(3)** Ⓢ Ⓜ Ⓒ	Ⓣ 기독교와 문화(3) Ⓢ Ⓜ Ⓒ *문화스토리텔링(3)	Ⓣ Ⓢ Ⓜ **발성과 호흡(2)** Ⓒ
	공감능력	Ⓣ Ⓢ Ⓜ Ⓒ	Ⓣ 사회학 들여다보기(3) Ⓢ Ⓜ Ⓒ	Ⓣ 인간심리이해(3) Ⓢ Ⓜ 음악의 이해(2) Ⓒ	Ⓣ 현대 사회와 종교(3) Ⓢ 여성과 사회(3), 특수아동의이해(3) Ⓜ Ⓒ
융합적 활용 역량	통합적 사고	Ⓣ Ⓢ Ⓜ 음악심리학(3) Ⓒ	Ⓣ Ⓢ Ⓜ **예술과 문화(2)** Ⓒ	Ⓣ 사회복지상담과 홍보마케팅(3) Ⓢ Ⓜ Ⓒ	Ⓣ Ⓢ Ⓜ Ⓒ
	유연성	Ⓣ Ⓢ Ⓜ Ⓒ	Ⓣ Ⓢ Ⓜ Ⓒ	Ⓣ Ⓢ Ⓜ Ⓒ	Ⓣ Ⓢ Ⓜ Ⓒ
창조적 해결 역량	창의성	Ⓣ Ⓢ Ⓜ 컴퓨터 음악의 이해Ⅰ(2) Ⓒ	Ⓣ 기후위기시대의 교회(3) Ⓢ Ⓜ 컴퓨터 음악의 이해Ⅱ(2) Ⓒ	Ⓣ 미래시대의 종교와 윤리(3) Ⓢ 미디어리터러시와 사회복지상담(3) Ⓜ Ⓒ	Ⓣ Ⓢ Ⓜ Ⓒ
	문제해결	Ⓣ *청소년 현장멘토링Ⅰ(3,P/NP)) Ⓢ Ⓜ Ⓒ	Ⓣ *청소년 현장멘토링Ⅱ(3,P/NP)) Ⓢ Ⓜ 음악치료기술(3) Ⓒ	Ⓣ *청소년 현장멘토링Ⅰ(3,P/NP)) Ⓢ Ⓜ 음악치료학Ⅰ(3) Ⓒ	Ⓣ *청소년 현장멘토링Ⅱ(3,P/NP)) Ⓢ Ⓜ 음악치료학 Ⅱ(3) Ⓒ
외부지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금융감독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금융감독원)

<참고>

1. 과목명 앞에 * 표시는 매년 개설함 의미
2. 합창(음), 사회봉사(사상), 사회복지개론(사상)은 해당 학과 과목 개설시 공동수업으로 진행
3. 외부(금융감독원) 지원 과목은 개설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과목수에서 제외
4. 신학과(야간) 폐과로 교양과목 미개설

신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교육목표	핵심역량	내용	전공과목
교회 사역 전문가 양성	기독교사역 전문 역량 강화	* 기독교 가치관(세계관) 정립 * 기독교 윤리 정립 * 기독교 예전 교육 및 훈련 * 기독교 성인(인물) 탐구를 통한 목회관 정립 * 기독교 경건(영성) 교육 및 훈련 * 성서의 형성 역사 및 내용 이해 * 성서학의 제 이론과 실제 습득 * 기독교공동체의 역사 이해 * 기독교신학의 형성 역사 이해 * 세계사와 기독교의 관계 이해 * 동양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비교 이해 * 한국교회사 이해 * 기독교 신학의 이해 * 신학을 위한 언어 습득	구약통독(필수), 신약통독(필수), 신학총론(필수), 구약성서이해(필수), 신약성서이해(필수), 영성생활입문, 수도원 운동과 영성, 기독교사상사, 한국교회인물사, 종교개혁인물사, 십계명과 윤리, 주기도와 윤리, 종교개혁자의 윤리, 조직신학개관, 조직신학세미나, 개혁신학개관, 히브리어(원-공통), 오경, 구약원전(원-공통),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사복음서, 신약원전강독(원-공통)(3), 헬라어(원-공통), 신약해석의 실제, 바울서신, 누가문서, 신약배경사, 공동서신, 신약성서의 주제들, 선교학개론, 성서와 선교, 교회와 선교신학, 선교운동의 역사, 고중세교회사, 한국교회사입문, 기독교와 순교, 기독교공동체의 역사, 예배의 역사, 기독교상담(사상-공통), 영어신학강독1~2, 독어신학강독1~2, 라틴어(원-공통), 라틴어강독(원-공통), 아모스원전강독(원-공통), 창세기원전강독(원-공통)
지역 교회 사역 지원	학교와 현장의 연계 역량 강화	* 현장목회 소개를 통한 목회 방향 설정 * 현장목회 인턴십을 통한 목회 영성 고양 * 교회학교 현장 실습을 통한 목회 훈련 및 교회교육 지원 * 교회 예배 모델 발굴과 지원 *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의 신학과 목회의 역할과 적용점 모색	실천신학(필수), 예배와 교회학교, 기독교교육실제와 교육목회, 기독교신학과 한국교회, 기독교교육현장과 영유아교육, 기독교교육현장과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설교(이+실), 설교작성법, 전도의 실제
기독교 문화사역자 양성	기독교문화사역 역량 강화	* 기독교 문화 이해 * 기독교 신학과 문화의 관계 정립 * 한국사회 안에서의 기독교 문화의 역사 탐구 * 세계 문화 안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모색 * 한국 문화 안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모색	기독교 문헌과 신앙, 기독교신학과 현대문화, 기독교신학과 근대문화, 타문화 선교전략, 한국문화와 영성, 기독교 고전과 영성, 아시아종교와 영성, 유럽수도원탐방연구(원-공통), 성서지리학(원-공통), 세계교회탐방연구(원-공통)
지역 특수성에 부합한 사역자 양성	지역특화적 목회 역량 강화	* 농촌과 도시에서의 신학과 목회의 역할과 활용방안 모색 * 생태 및 생명 목회 모델 발굴과 훈련 * 생명과 평등, 평화, 인권 제고를 위한 신학과목회의 역할과 적용점 모색 *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신학의 현장화 모색	기독교생명평화교육, 생태영성의 실천,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원-공통), 선교사 열전

신학과 주간 교육과정표

(필수는 201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선택은 전체 학년 적용)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2분반) 2 대학영어 I(2분반) 2 실천평가 I P/NP	세계사와 기독교 3 대학영어 II(2분반) 2 진로지도 I P/NP 실천평가 II P/NP	희랍철학사 3 실천평가 III P/NP	인간과 종교 3 실천평가IV P/NP
	전공	구약통독 3 대학생활 I P/NP	신약통독 3 대학생활 II P/NP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실천평가 V P/NP	실천평가 VI P/NP	진로지도 II P/NP 실천평가 VII P/NP	실천평가 VIII P/NP
	전공	신학총론(이론파트) 3	구약성서이해 3	신약성서이해 3	실천신학 3 (실천파트팀티칭)
	개설학점	교양 필수: 17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영역	전공	과 목 명			
			1학기(2022-1)	**2학기(2022-2)**		
전공선택	성서신학	구약	히브리어(원-공통)(4) 성서지리학(원-공통)(3)	아모스원전강독(원-공통)(3)		
		신약	사복음서(3)	헬라어(원-공통)(4)		
	이론신학	교회사	기독교문헌과 신앙(3) 세계교회탐방연구(3)(원-공통)	기독교사상사(3)		
		조직신학	기독교신학과 현대문화(3)	기독교신학과 근대문화(3)		
		기독교윤리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실제와 교육목회(3)			
		영성학	한국문화와 영성(3)	영성생활의 입문(3)		
		선교학	성서와 선교(3)	전도의 실제(3)		
		설교학		설교작성법(3)		
		예배학	예배의 역사(3)			
		목회상담학		기독교상담(사상-공통)(3)		
	신학일반		영어신학강독1(2) 기독교신학과 한국교회(3) 라틴어강독(원-공통)(2)	영어신학강독2(2) 라틴어(원-공통)(2)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원-공통,3)		
	과목수		13	11		

* (원-공통)은 신대원과 공동으로 개설, (사상-공통)은 사회복지상담학과와 공동으로 개설되는 과목임.
* 선택과목은 기본이 3학점이나 야간의 경우 시간표에 따라 2학점으로 개설될 수 있음.

신학과 야간 교육과정표

(필수는 201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선택은 전체 학년 적용)

필수		1 ~ 2학년			
		1학기(2022-1)	2학기(2022-2)	3학기(2023-1)	4학기(2023-2)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 2 대학영어I 2 실천평가I P/NP (1학년 1학기)	세계사와 기독교 3 대학영어II 2 진로지도 I P/NP 실천평가II P/NP (1학년 2학기)	희랍철학사 3 실천평가III P/NP (2학년 1학기)	인간과 종교 3 실천평가IV P/NP (2학년 2학기)
	전공	구약통독 3 대학생활 I P/NP (1학년 1학기)	신약통독 3 대학생활 II P/NP (1학년 2학기)		
		3 ~ 4학년			
		1학기(2022-1)	2학기(2022-2)	3학기(2023-1)	4학기(2023-2)
	교양	실천평가 V P/NP (3학년 1학기)	실천평가 VI P/NP (3학년 2학기)	진로지도 II P/NP 실천평가 VII P/NP (4학년 1학기)	실천평가 VIII P/NP (4학년 2학기)
	전공	신학총론(이론파트) 3	구약성서이해 3	신약성서이해 3	실천신학 3 (실천파트팀티칭)
	개설학점	교양 필수: 17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영역	전공	과 목 명			
			1학기(2022-1)	2학기(2022-2)	1학기(2023-1)	2학기(2023-2)
	성서신학	구약	시가서(3)			
		신약	누가문서(3)			
	이론신학	교회사	한국교회인물사(3)	기독교와 순교(3)		
		조직신학	개혁신학개관(3)	기독교신학과 한국교회(3)		
		기독교윤리	주기도와 윤리(3)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현장과 영유아교육(3)		
		영성학	영성생활의 입문(3)			
		선교학	선교사 열전(3)	교회와 선교신학(3)		
		설교학				
		예배학	예배와 교회학교(3)	예배의 역사(3)		
		목회상담학				
	과목수		**8**	**5**		

* 선택과목은 기본이 3학점이나 야간의 경우 시간표에 따라 2학점으로 개설될 수 있음.

신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2023학번부터 적용(선택은 2023년도부터 적용)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핵심역량 목표	하위역량	하위역량 목표	교과목
기독교적 사명과 가치를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인재 양성	기독교적 사명과 가치를 실천하는 기독교사역 전문 인재	글로컬 리더십 역량	기독교의 제반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여, 세계교회와 지역교회를 변화·발전시키며, 기독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능력을 강화한다	글로컬	기독교 신학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세계교회와 지역교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신학총론,**조직신학입문(변경)**, **개혁신학입문(변경)**, 기독교신학과한국교회, 한국교회사입문, 예배의역사, 선교운동의역사, 기독교사상사, 고중세교회사, 신약성서의주제들
				리더십	세계교회와 지역교회의 변화·발전에 헌신하며, 교회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을 강화한다	교회와선교신학, 한국교회인물사, 종교개혁인물사, **교육목회방법론(변경)**
		협력적 소통 역량	기독교의 사명인 세계 복음화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한다	공동체의식	세상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수도원운동과영성, 기독교생명평화교육, 성서와선교, 기독교공동체의역사, 디아코니아입문(신규)
				의사소통	기독교적 신념과 생각을 확신 있게 전달하며 타인과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강화한다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원전강독, 신약원전강독, 영어신학강독Ⅰ,Ⅱ, 독어신학강독Ⅰ,Ⅱ, 라틴어, 라틴어강독, **선교,문화,커뮤니케이션(변경)**
		자기 주도적 역량	기독교 사역자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자기주도 능력을 강화한다	자기관리	교회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신념과 생각, 감정, 행동을 성찰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구약성서이해, 신약성서이해, 영성생활입문, 종교개혁자의윤리, 기독교와순교
				자기개발	기독교 사역 전문가로서의 진로와 사역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선교사열전, 설교작성법, 유럽수도원탐방, 성서지리학, 세계교회탐방
		감성적 역량	기독지성인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문화적소양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을 창출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구약통독, 신약통독, 기독교신학과현대문화, 기독교신학과근대문화, 기독교고전과영성, 신약배경사, 기독교문헌과신앙
				공감능력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아시아종교와영성, 기독교상담, **아시아종교와문화이해(신규)**
		융합적 활용 역량	기독교 사명과 가치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통합적사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만드는 능력을 강화한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사복음서, 누가문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세계화와 선교(변경)**
				유연성	인습의 틀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의 신념과 사상, 지식, 정보 등을 열린 자세로 탐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공적신앙과윤리)(변경), 사회생태윤리(변경), 지역신학과윤리(신규)**
		창조적 해결 역량	기독교 사명과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창의성	기독교에 관한 전문 지식과 사역기술들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와 실천방안을 창출하고 제시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실천신학(필), **조직신학과 교회현장(변경),** 신약해석의실제,**전도의 이론과 실제(변경),** 청소년설교, 예배와교회교육
				문제해결	사역의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기독교교육현장과영유아교육, 기독교교육현장과아동청소년교육, 농어촌선교현장과생명목회, 생태영성의실천

신학과 주간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2023학번부터 적용(선택은 2023년도부터 적용)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 2 대학영어 I 2 실천평가 I P/NP	세계사와 기독교 3 대학영어 II 2 진로지도 I P/NP 실천평가 II P/NP	희랍철학사 3 실천평가 III P/NP	인간과 종교 3 실천평가IV P/NP
	전공	구약통독 3 대학생활 I P/NP	신약통독 3 대학생활 II P/NP		신학총론(이론파트) 3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실천평가 V P/NP	실천평가 VI P/NP	진로지도 II P/NP 실천평가 VII P/NP	실천평가 VIII P/NP
	전공	구약성서이해 3	신약성서이해 3	실천신학 3 (실천파트팀티칭)	
	개설학점	교양 필수: 17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영역	전공	과 목 명			
			1학기(2023-1)	2학기(2023-2)	3학기(2024-1)	4학기(2024-2)
전공선택	성서신학	구약	역사서(3) 히브리어(원-공통)(4)	예언서(3)	히브리어(원-공통)(4) 성서지리학(원-공통)(3)	시가서(3) 구약원전강독(원-공통)(3)
		신약	성서지리학(원-공통)(3) 공동서신(3)	바울서신(3) 헬라어(원-공통)(4)	사복음서(3)	헬라어(원-공통)(4)
	이론신학	교회사	한국교회사입문(3)	종교개혁인물사(3)	기독교문헌과 신앙(3) 세계교회탐방연구(3)(원-공통)	기독교사상사(3)
		조직신학	조직신학입문(변경)	조직신학과 교회현장(3)(변경)	기독교신학과 현대문화(3)	기독교신학과 근대문화(3)
		기독교윤리	공적신앙과 윤리(3)(변경)	지역신학과 윤리(3)(신규)		사회생태윤리(3)(변경)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현장과 영유아교육(3)		교육목회 방법론(3)(변경)	기독교교육현장과 아동청소년교육(3)
		영성학	생태영성의 실천(3) 기독교고전과 영성(3)	수도원 운동과 영성(3)	한국문화와 영성(3)	영성생활의 입문(3)
		선교학	세계화와 선교(3)(변경)	선교,문화,커뮤니케이션(변경)	아시아종교와 문화이해(3)(신규)	전도의 이론과 실제(3)(변경)
		예배설교학			예배의 역사(3)	
		목회상담학		기독교상담(사상-공통)(3)		기독교상담(사상-공통)(3)
	신학일반		독어신학강독1(2) 라틴어강독(원-공통)(2)	독어신학강독2(2) 라틴어(원-공통)(2)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원-공통,3)	영어신학강독1(2) 기독교신학과 한국교회(3) 라틴어강독(원-공통)(2)	영어신학강독2(2) 라틴어(원-공통)(2)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원-공통,3)
	과목수		13	12	13	13

* 전공선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학과 야간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필수		1 ~ 2학년			
		1학기(2023-1)	2학기(2023-2)	3학기(2024-1)	4학기(2024-2)
	교양				
	전공				
		3 ~ 4학년			
		1학기(2023-1)	2학기(2023-2)	3학기(2024-1)	4학기(2024-2)
	교양	진로지도 II P/NP 실천평가 VII P/NP (4학년 1학기)	실천평가 VIII P/NP (4학년 2학기)		
	전공	신약성서이해 3	실천신학 3 (실천파트팀티칭)		
	개설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영역	전공	과 목 명			
			1학기(2023-1)	2학기(2023-2)	3학기(2024-1)	4학기(2024-2)
	성서신학	구약	예언서(3)			
		신약		공동서신(3)		
	이론신학	교회사	기독교사상사(3)	기독교공동체역사(3)		
		조직신학	기독교신학과 현대문화(3)	기독교신학과 근대문화(3)		
		기독교윤리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현장과 아동청소년교육(3)		
		영성학	기독교고전과 영성(3)	생태영성의 실천(3)		
		선교학	선교운동의 역사(3)	성서와 선교(3)		
		설교학	청소년설교(이+실)(3)			
		예배학		예배의 역사(3)		
		목회상담학	기독교상담(3)			
	과목수		7	7		

* 전공선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학과 야간 폐과로 2024학년도부터 미개설

사회복지상담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교육목표	핵심역량	내용	과목
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 향상	실무현장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및 상담 실무역량	* 실천 역량을 위한 실습 강화 * 적성에 맞은 진로 발견과 지도 * 분야별 특화된 교육 * 복지와 상담의 융합 교육	(상담실습 Ⅰ), (상담실습 Ⅱ), (진로지도 Ⅰ), (진로지도 Ⅱ),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정책론, 집단상담, 학습이론과 상담,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위기 상담, 노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이해론, 성상담, 상담면접법의 원리, (상담과 코칭)
전문 자격증을 갖춘 실천가 양성	전문가 자격 및 실천 경험 역량	* 사회복지사 1급 시험대비 강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대비 강화 * 상담심리 지도사 자격준비 강화 * 건강가정사 자격 준비 강화	사회복지세미나 Ⅰ, 사회복지세미나 Ⅱ, 청소년상담세미나Ⅰ, 청소년 상담세미나 Ⅱ , 상담심리학, 사회복지개론, 진로상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지역사회복지론, 심리측정 및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분석상담,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이상심리, 가족치료,
기독교 영성을 실천현장에 실현하는 역량 향상	기독교 상담복지 실천 역량	* 기독교 영성 함양 * 상담실천 현장에서 영성 함양 * 사회복지현장에서 영성 함양 * 기독교사회복지 역량 강화	기독교상담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과 네트웍 역량을 향상	Case management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가 역량	* 지역사회 자원동원 역량 함양 * 사례관리 역량 함양 * 네트워크 역량 함양 * 지역사회 문제 발굴 역량 함양	사례관리론,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과정표

(필수는 201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선택은 전체 학년 적용)

구분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대학영어 I 2 실천평가 I P/NP 사회봉사 I(실) 1(P/NP)	독서와 작문 2 대학영어 II 2 실천평가 II P/NP 사회봉사 II(실) 1(P/NP) 진로지도 I P/NP	실천평가 III P/NP 사회봉사 III(실) 1(P/NP)	실천평가 IV P/NP 사회봉사 IV(실) 1(P/NP)
	소계	**5학점**	**5학점**	**1학점**	**1학점**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3 대학생활 I P/NP	발달심리 3 대학생활 II P/NP	사회복지실천론 3	기독교상담 3
	소계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전공 선택	상담			청소년상담의 이론과실제 3 진로상담 3	심리측정 및 평가 3
	사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3
	소계		3학점	9학점	6학점
총계		***8학점***	***11학점***	***13학점***	***10학점***

구 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	교양	실천평가 V P/NP 사회봉사 V(실) 1(P/NP)	실천평가 VI P/NP 사회봉사 VI(실) 1(P/NP)	실천평가 VII P/NP 진로지도 P/NP	실천평가 VIII P/NP
	소계	**1학점**	**1학점**	**0학점**	**0학점**
	전공	사회복지행정론 3	이상심리학 3	사회복지현장실습(실) (2분반) 3(3)	집단 상담(이+실) 3
	소계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전공 선택	상담	정신분석상담 3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상담 실습 I(실) 3 청소년 상담 세미나 I 3	상담실습 II(실) 3 청소년 상담 세미나II 3	학습이론과 상담 3
	사복	사회복지조사론(이+실) 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1	사회복지세미나 I 3	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세미나 II 3
	소계	9학점	10학점	9학점	9학점
총계		***13학점***	***12학점***	***12학점***	***12학점***

전공선택	구분	1년		2년	
		1학기(2022-1)	2학기(2022-2)	3학기(2023-1)	4학기(2023-2)
	복지	가족복지론 3 아동복지론 3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이+실) 3 사회복지자료분석론(이+실) 3 사례관리론 3		
	상담	상담과 코칭 3	위기상담 3 청소년수련 활동론 3		
	소계	12학점	12학점		

사회복지상담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2023학번부터 적용(선택은 2023년도부터 적용)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핵심역량 목표	하위역량	하위역량 목표	교과목
기독교적 사명과 가치를 실천하고 글로컬 현장의 이해에 기반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이끄는 사회복지와 상담을 융합한 전문가 양성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상담전문가	글로컬 리더십 역량	세계(Global)와 지역(Local)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구성원을 이끄는 능력	글로컬	세계와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지역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청소년활동론(변경)** **다문화상담(신규)**
				리더십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으로 두고 공동체의 발전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끄는 능력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아동복지론, 청소년이해론, 기독교상담
		협력적 소통 역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협력하여 소통하는 능력	공동체 의식	공동체와 구성원의 가치를 존중하며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	사회복지실천론, 장애인복지론, 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의사소통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건강사회복지(변경)** 상담면접법의 원리,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자기 주도적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기관리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성찰하는 능력	가족복지론, 발달심리
				자기개발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독지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능력	사회복지개론, 진로상담, 학습이론과상담, 진로지도Ⅰ,Ⅱ,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감성적 역량	기독지성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다른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문화적 소양	다양한 문화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을 창출하는 능력	사례관리론, **상담현장실습Ⅰ,Ⅱ(변경)**
				공감능력	기독교적 지성과 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의료사회복지(신규),** 청소년상담이론과 실제
		융합적 활용 역량	유연한 사고와 자세로 지식, 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기독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능력	통합적 사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 정보, 기술을 수집, 분석, 통합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만드는 능력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심리측정및평가, 정신분석상담 **중독심리학(변경)**
				유연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의 요소를 열린 자세로 탐구하는 능력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세미나Ⅰ,Ⅱ, 이상심리
		창조적 해결 역량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고 만드는 능력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학교사회사업론, 청소년상담세미나Ⅰ,Ⅱ
				문제해결	전문성과 도전정신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정복지론, 위기상담, 상담과코칭

사회복지상담학과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2023학번부터 적용(선택은 2023년도부터 적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대학영어 I 2 실천평가I P/NP 사회봉사 I (실) (1,P/NP)	독서와 작문 2 대학영어 II 2 실천평가 II P/NP 사회봉사II(실) (1,P/NP) 진로지도 I P/NP	실천평가III P/NP 사회봉사III(실) (1,,P/NP)	실천평가 IV P/NP 사회봉사IV(실)(1,P/NP)	실천평가V P/NP 사회봉사V(실) (1,P/NP)	실천평가 VI P/NP 사회봉사VI(실)1 (1,P/NP)	실천평가 VII P/NP 진로지도 P/NP	실천평가 VIII P/NP
	소계	5학점	5학점	1학점	1학점	1학점	1학점	0학점	0학점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3 대학생활I P/NP	발달심리 3 대학생활 II P/NP	사회복지실천론 3	기독교상담 3	사회복지행정론 3	이상심리학 3	사회복지현장실습(실)(2분반) 3(3)	집단 상담(이+실) 3
	소계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전공선택	상담			청소년상담의 이론과실제 3 진로상담 3	심리측정 및 평가 3 **다문화 상담** 3	정신분석상담 3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상담현장실습 I**(실) 3 청소년상담세미나 I 3	**상담현장실습 II**(실) 3 청소년상담세미나II 3	학습이론과 상담 3
	사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조사론(이+실) 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 사회복지현장실습의이해 1	사회복지세미나 I 3	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세미나II 3
	소계		3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10학점	9학점	9학점
총계		*8학점*	*11학점*	*13학점*	*13학점*	*13학점*	*14학점*	*12학점*	*12학점*

전공선택	구분	1년		2년	
		2023-1	2023-2	2024-1	2024-2
	복지	가족복지론 3 아동복지론 3 **정신건강사회복지** 3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이+실) 3 사회복지자료분석론(이+실) 3 사례관리론 3	교정복지론 3 **청소년활동론** 3	노인복지론 3 학교사회사업론 3 장애인복지론 3
	상담	상담심리학 3	위기상담 3 **의료사회복지** 3	상담면접법의 원리 (이+실) 3 상담과 코칭 3	청소년 이해론 3 **중독심리학** 3
	소계	12학점	15학점	12학점	15학점

* 전공선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음악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2학년도)

교육목표	핵심역량	내용	과목
교회음악 지도자 양성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독교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 기독교 가치관 정립과 교회 음악의 이해 * 기독교 예전과 관련된 음악 교육 * 기독교 음악의 핵심이 되는 합창음악의 이해와 연주 * 교회음악의 역사와 중요 작품들의 이해 * 현대의 교회 음악과 다양한 연주 형태의 실제와 연주능력 강화	교회음악의 이해, 예배와 음악, 합창ⅠⅡⅢⅣⅤⅥⅦⅧ, 찬송가 반주법ⅠⅡ, 음악사ⅠⅡⅢⅣ, CCM 반주법ⅠⅡ, 클래스 오르간ⅠⅡⅢⅣ, 오르간 반주법ⅠⅡ, 뮤지컬워크숍ⅠⅡⅢⅣⅤⅥⅦⅧ, 챔버콰이어ⅠⅡⅢⅣⅤⅥⅦⅧ, 가스펠콰이어ⅠⅡⅢⅣⅤⅥⅦⅧ, 현대예배음악
전문 음악인 양성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한 이론과 실기 교육, 전공분야의 심화 교육과 이를 교회 사역 및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실습을 강화한다.	* 클래식음악과 실용음악을 아우르는 전문교육 * 전공에 따른 전문 심화 교육 * 일대일 전공심화 레슨의 강화 * 무대 연주의 실습 강화 * 음악지도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강화 *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전문 교육 *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 과목 개설 * 음악교육의 기본이 되는 피아노 연주 교육	음악통론ⅠⅡ, 실용음악통론ⅠⅡ, 화성학ⅠⅡ, 전공실기ⅠⅡⅢⅣⅤⅥⅦⅧ, 연주실습ⅠⅡⅢⅣⅤⅥⅦⅧ, 시창청음ⅠⅡ, 음악사ⅢⅣ, 피아노 교수법, 불어 딕션과 가곡, 독어 딕션과 가곡, 이태리어 딕션과 가곡, 영어 딕션과 가곡, 오페라 클래스ⅠⅡ, 성악 문헌ⅠⅡ, 피아노 문헌ⅠⅡ, 오르간 문헌ⅠⅡ, 크로스오버, 가창과 지휘, 지휘법ⅠⅡ, 피아노 반주법ⅠⅡ, 음악교육론, 클래스피아노(기초)ⅠⅡ, 클래스피아노(고급)ⅠⅡ, 월드뮤직, 전공화성학ⅠⅡ, 건반화성ⅠⅡ, 대위법, 순수대위법, 자유대위법, 음악형식과 분석
현대사회의 공연문화를 주도하는 실용음악인 양성	현대사회의 공연문화를 주도하며 음악학과와 관련기관의 선순환적인 지원을 통해 실용음악 전문연주인을 양성한다	* 실용음악 중심교육의 강화 * 미디어와 미디를 이용한 심화 교육 * 앙상블 수업을 강화하여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주 형태에 순발력있게 적응하는 연주인 양성 * 공연 전문단체와의 산학협력 * 현장중심 지역음악 산업과의 연대 강화	재즈피아노랩&미디ⅠⅡ, 즉흥연주기법ⅠⅡ, 재즈화성학 ⅠⅡ, 재즈역사ⅠⅡ, 피아노앙상블, 오디오 엔지니어링ⅠⅡ, 실용음악 앙상블ⅠⅡⅢⅣ, 고급실용앙상블ⅠⅡⅢⅣ, 실용음악 작편곡ⅠⅡ, 고급실용음악 이론ⅠⅡ, 현대음악이론, 현대작곡기법, 현대음악분석,

음악학과 교육과정표

필수 교육과정- 클래식 음악 전공

* 2022학년도부터 전학년 적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2분반) 2 대학영어Ⅰ(2분반) 2 실천평가Ⅰ P/NP	대학영어Ⅱ(2분반) 2 실천평가Ⅱ P/NP	성서와 함께 2 실천평가 Ⅲ P/NP	실천평가Ⅳ P/NP	그리스도인의 삶 2 실천평가 Ⅴ P/NP	실천평가 Ⅵ P/NP	실천평가 Ⅶ P/NP	실천평가 Ⅷ P/NP
전공	전공실기Ⅰ 2 실 음악통론Ⅰ 2 이 연주실습Ⅰ P/NP 실 합창Ⅰ 2 실 대학생활Ⅰ P/NP 실	전공실기Ⅱ 2 실 음악통론Ⅱ 2 이 연주실습Ⅱ P/NP 실 교회음악의 이해 2 이 합창Ⅱ 2 실 대학생활Ⅱ P/NP 실	전공실기Ⅲ 2 실 화성학Ⅰ 2 이 연주실습Ⅲ 1(2) 실 시창 청음Ⅰ 2 이+실 (2분반) 합창Ⅲ 2 실	전공실기Ⅳ 2 실 화성학Ⅱ 2 이 연주실습Ⅳ 1(2) 실 시창 청음Ⅱ 2 이+실 (2분반) 합창Ⅳ 2 실	전공실기Ⅴ 2 실 연주실습Ⅴ 1(2) 실 합창Ⅴ 2 실	전공실기Ⅵ 2 실 연주실습Ⅵ 1(2) 실 예배와 음악 2 이 합창Ⅵ 2 실	전공실기Ⅶ 2 실 연주실습Ⅶ P/NP 실	전공실기Ⅷ 2 실 연주실습Ⅷ P/NP 실
학점	교양 필수: 12학점, 전공필수: 48학점							

필수 교육과정- 실용음악 전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 2 대학영어Ⅰ(2분반) 2 실천평가Ⅰ P/NP	대학영어 Ⅱ(2분반) 2 실천평가 Ⅱ P/NP **진로지도 Ⅰ P/NP**	성서와 함께 2 실천평가 Ⅲ P/NP	실천평가Ⅳ P/NP	그리스도인의 삶 2 실천평가 Ⅴ P/NP	실천평가 Ⅵ P/NP	실천평가 Ⅶ P/NP **진로지도 Ⅱ P/NP**	실천평가 Ⅷ P/NP
전공	전공실기Ⅰ 2 실 실용음악통론Ⅰ 2 이 연주실습Ⅰ P/NP 실 합창Ⅰ 2 실 대학생활I P/NP 실	전공실기Ⅱ 2 실 실용음악통론Ⅱ 2 이 연주실습Ⅱ P/NP 실 교회음악의 이해 2 이 합창Ⅱ 2 실 대학생활Ⅱ P/NP 실	전공실기Ⅲ 2 실 즉흥연주기법Ⅰ 2 이 연주실습Ⅲ 1(2) 실 시창 청음Ⅰ 2 이+실 (2분반) 합창Ⅲ 2 실	전공실기Ⅳ 2 실 즉흥연주기법Ⅱ 2 이 연주실습Ⅳ 1(2) 실 시창 청음Ⅱ 2 이+실 (2분반) 합창Ⅳ 2 실	전공실기Ⅴ 2 실 연주실습Ⅴ 1(2) 실 합창Ⅴ 2 실	전공실기Ⅵ 2 실 연주실습Ⅵ 1(2) 실 예배와 음악 2 이 합창Ⅵ 2 실	전공실기Ⅶ 2 실 연주실습Ⅶ P/NP 실	전공실기Ⅷ 2 실 연주실습Ⅷ P/NP 실
학점	교양 필수: 12학점, 전공필수: 48학점							

전공선택 교육과정

	영역	전공	과목명											
			1~2학년											
			짝수년 1학기			**짝수년** 2학기			**홀수년** 1학기			**홀수년** 2학기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전공선택	클래식	피아노							피아노반주법Ⅰ	이+실	2	피아노반주법Ⅱ	이+실	2
		성악	불어딕션과 가곡	이+실	2	영어딕션과 가곡	이+실	2	독어딕션과 가곡	이+실	2	이태리어딕션과 가곡	이+실	2
		오르간							찬송가반주법Ⅰ	이+실	2	찬송가반주법Ⅱ	이+실	2
		작곡	순수대위법Ⅰ	이	2	자유대위법Ⅱ	이	2	전공화성학Ⅰ	이	2	전공화성학Ⅱ	이	2
	실용	공통							재즈역사Ⅰ	이	2	재즈역사Ⅱ	이	2
		앙상블	실용음악앙상블Ⅰ(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Ⅲ(2학년)	실 실	1(2) 1(2)	실용음악앙상블Ⅱ(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Ⅳ(2학년)	실 실	1(2) 1(2)	실용음악앙상블Ⅰ(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Ⅲ(2학년)	실 실	1(2) 1(2)	실용음악앙상블Ⅱ(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Ⅳ(2학년)	실 실	1(2) 1(2)
	공통	–	클래스피아노(기초)Ⅰ (1,2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기초)Ⅱ (1,2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기초)Ⅰ (1,2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기초)Ⅱ (1,2학년)	실	1(2)
			재즈피아노랩&미디Ⅰ 음악감상	이+실 이	2 2	재즈피아노랩&미디Ⅱ 악기론	이+실 이	2 2	음악사Ⅰ	이	2	음악사Ⅱ	이	2
			클래스오르간Ⅰ	실	1(2)	클래스오르간Ⅱ	실	1(2)	클래스오르간Ⅲ	실	1(2)	클래스오르간Ⅳ	실	1(2)
			실용음악 작편곡Ⅰ	이	2	실용음악 작편곡Ⅱ	이	2	오디오엔지니어링Ⅰ	이	2	오디오엔지니어링Ⅱ	이	2
		전학년 공동	뮤지컬워크숍Ⅰ(1학년) 뮤지컬워크숍 Ⅲ(2학년) 가스펠콰이어Ⅰ(1학년) 가스펠콰이어Ⅲ(2학년) 핸드벨콰이어Ⅰ(1학년) 핸드벨콰이어Ⅲ(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뮤지컬 워크숍Ⅱ(1학년) 뮤지컬 워크숍Ⅳ(2학년) 가스펠콰이어Ⅱ(1학년) 가스펠콰이어Ⅳ(2학년) 챔버콰이어Ⅱ(1학년) 챔버콰이어Ⅳ(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뮤지컬 워크숍Ⅰ(1학년) 뮤지컬 워크숍Ⅲ(2학년) 가스펠콰이어Ⅰ(1학년) 가스펠콰이어Ⅲ(2학년) 챔버콰이어Ⅰ(1학년) 챔버콰이어Ⅲ(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뮤지컬 워크숍Ⅱ(1학년) 뮤지컬 워크숍Ⅳ(2학년) 가스펠콰이어Ⅱ(1학년) 가스펠콰이어Ⅳ(2학년) 챔버콰이어Ⅱ(1학년) 챔버콰이어Ⅳ(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 1학년 실용음악앙상블 I,II 은 학생수가 많으므로 2개 분반으로 개설.**

전공선택 교육과정

	영역	전공	과목명											
			3~4학년											
			짝수년 1학기			**짝수년** 2학기			**홀수년** 1학기			**홀수년** 2학기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전공선택	클래식	피아노	피아노문헌Ⅰ	이	2	피아노문헌Ⅱ	이	2	피아노교수법	이+실	2	피아노 앙상블	실	2
		성악	오페라클래스Ⅰ	이+실	2	오페라클래스Ⅱ	이+실	2	성악문헌Ⅰ	이	2	성악문헌Ⅱ	이	2
		오르간	오르간문헌Ⅰ	이	2	오르간문헌Ⅱ	이	2	오르간반주법Ⅰ	이+실	2	오르간반주법Ⅱ	이+실	2
		작곡	현대음악분석Ⅰ	이	2	현대음악분석Ⅱ	이	2	현대작곡기법Ⅰ	이	2	현대작곡기법Ⅱ	이	2
	실용	공통	고급실용음악이론Ⅰ	이+실	2	고급실용음악이론Ⅱ	이+실	2	재즈화성학Ⅰ	이	2	재즈화성학Ⅱ	이	2
		앙상블	고급실용앙상블Ⅰ(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Ⅲ(4학년)	실 실	2 2	고급실용앙상블Ⅱ(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Ⅳ(4학년)	실 실	2 2	고급실용앙상블Ⅰ(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Ⅲ(4학년)	실 실	2 2	고급실용앙상블Ⅱ(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Ⅳ(4학년)	실 실	2 2
	공통	–	클래스피아노(고급)Ⅰ(3,4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고급)Ⅱ(3,4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고급)Ⅰ(3,4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고급)Ⅱ(3,4학년)	실	1(2)
			음악사Ⅲ	이	2	음악사Ⅳ	이	2	지휘법Ⅰ	이+실	2	지휘법Ⅱ	이+실	2
			음악형식과 분석	이	2	현대음악이론	이	2	대위법Ⅰ	이	2	대위법Ⅱ	이	2
			크로스오버 (4학년)	이+실	1				크로스오버 (4학년)	이+실	1			
			재즈피아노랩&미디Ⅰ CCM 반주법Ⅰ	이+실 이+실	2 2	재즈피아노랩&미디Ⅱ CCM 반주법Ⅱ	이+실 이+실	2 2	건반화성Ⅰ	이	2	건반화성Ⅱ	이	2
			현대예배음악	이	2	음악교육론	이	2	월드뮤직	이	2	가창과 지휘	이	2
		전학년 공동	합창 Ⅶ(4학년) 뮤지컬 워크숍Ⅴ(3학년) 뮤지컬 워크숍Ⅶ(4학년) 가스펠콰이어Ⅴ(3학년) 가스펠콰이어Ⅶ(4학년) 챔버콰이어Ⅴ(3학년) 챔버콰이어Ⅶ(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합창 Ⅷ(4학년) 뮤지컬 워크숍Ⅵ(3학년) 뮤지컬 워크숍Ⅷ(4학년) 가스펠콰이어Ⅵ(3학년) 가스펠콰이어Ⅷ(4학년) 챔버콰이어Ⅵ(3학년) 챔버콰이어Ⅷ(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합창 Ⅶ(4학년) 뮤지컬 워크숍Ⅴ(3학년) 뮤지컬 워크숍Ⅶ(4학년) 가스펠콰이어Ⅴ(3학년) 가스펠콰이어Ⅶ(4학년) 챔버콰이어Ⅴ(3학년) 챔버콰이어Ⅶ(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합창 Ⅷ(4학년) 뮤지컬 워크숍Ⅵ(3학년) 뮤지컬 워크숍Ⅷ(4학년) 가스펠콰이어Ⅵ(3학년) 가스펠콰이어Ⅷ(4학년) 챔버콰이어Ⅵ(3학년) 챔버콰이어Ⅷ(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음악학과 전공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2023학년도)

2023학번부터 적용(선택은 2023년도부터 적용)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핵심역량 목표	하위역량	하위역량 목표	교과목
사명(Mission), 가치(Value), 실천(Practice)형 음악인 양성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창의적인 음악인	글로벌 리더십 역량	세계(Global)와 지역(Local)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하고 책임있는 교회음악 리더로서 현대 찬양의 세계화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키운다	글로컬	세계와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음악사I~IV, 재즈역사I,II 월드뮤직
				리더십	연주단체의 발전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끄는 능력	가창과 지휘, 지휘법I,II
		앙상블을 통한 상호 협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맴버들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서로의 연주를 경청하고 협력하여 소통하는 능력	**앙상블**	연주단체와 구성원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	합창I~Ⅷ, 피아노앙상블, 챔버콰이어I~VIII
				Inter-Play (상호작용)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가스펠콰이어 Ⅰ~Ⅷ, 피아노반주법Ⅰ Ⅱ, 실용음악앙상블 Ⅰ~Ⅳ, 고급실용앙상블 Ⅰ~Ⅳ
		자기주도적 역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수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자기관리	음악인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성찰하는 능력	연주실습 I, II, III, IV, V, VI, VII, VIII
				자기개발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주기술을 배양하는 능력	**기초음악이론I.II(변경)** 피아노 문헌I,II 오페라클래스I,II 오르간문헌 I,II 성악문헌I,II 재즈화성학I,II, 화성학I,II 음악형식과 분석, 대위법I,II, 건반화성I,II, 현대음악이론, 고급실용음악이론I,II 영어딕션과 가곡, 불어딕션과 가곡, 독어딕션과 가곡, 이태리어딕션과 가곡, 전공실기I~Ⅷ
		감성적 역량	생활음악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다른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문화적 소양	다양한 문화를 생활음악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을 창출하는 능력	음악감상, 마스터클래스
				공감능력	예술인의 지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교회음악개론(변경)**, **경배와찬양(변경)**, 시창청음I.II
		융합적 활용 역량	융합을 통한 음악교육으로 유연성과 통합적사고력 능력이 요구되는 멀티 음악인의 능력	통합적 사고	다양한 음악의 지식, 정보, 기술을 수집, 분석하여 현대음악 의 기초를 만드는 능력	현대예배음악, **예배와오르간실습 I,II(변경)**, 악기론, **무대음향I,II(변경)**, 찬송가반주법I,II, 피아노교수법, CCM 반주법I,II, 건반화성I,II
				유연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의 음악을 열린 자세로 연주하는 능력	클래스피아노(기초)I,II, 클래스피아노(고급)I,II, 크로스오버, 클래스오르간 I, II, III, IV
		창조적 해결 역량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성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를 토대로 자신만의 느낌과 연주력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능력	**재즈피아노랩I,II(변경)**, 실용음악 작편곡I, II, 즉흥연주기법I,II
				문제해결	전문성과 도전정신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	뮤지컬워크숍 I~Ⅷ, 연주실습 I~Ⅷ

음악학과 개설 예정 교육과정표

필수 교육과정- 클래식 음악 전공

2023학번부터 적용(선택은 2023년도부터 적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2분반) 2 대학영어Ⅰ(2분반) 2 실천평가Ⅰ P/NP	대학영어Ⅱ(2분반) 2 실천평가Ⅱ P/NP **진로지도 Ⅰ P/NP**	성서와 함께 2 실천평가 Ⅲ P/NP	실천평가Ⅳ P/NP	그리스도인의 삶 2 실천평가 Ⅴ P/NP	실천평가 Ⅵ P/NP	실천평가 Ⅶ P/NP **진로지도 Ⅱ P/NP**	실천평가 Ⅷ P/NP
전공	전공실기Ⅰ 2 실 **기초음악이론Ⅰ** 2 이 연주실습Ⅰ P/NP 실 합창Ⅰ 2 실 대학생활Ⅰ P/NP 실	전공실기Ⅱ 2 실 **기초음악이론Ⅱ** 2 이 연주실습Ⅱ P/NP 실 **교회음악개론** 2 이 합창Ⅱ 2 실 대학생활Ⅱ P/NP 실	전공실기Ⅲ 2 실 화성학Ⅰ 2 이 연주실습Ⅲ 1(2) 실 시창 청음Ⅰ(2분반) 2 이+실 합창Ⅲ 2 실	전공실기Ⅳ 2 실 화성학Ⅱ 2 이 연주실습Ⅳ 1(2) 실 시창 청음Ⅱ(2분반) 2 이+실 합창Ⅳ 2 실	전공실기Ⅴ 2 실 연주실습Ⅴ 1(2) 실 합창Ⅴ 2 실	전공실기Ⅵ 2 실 연주실습Ⅵ 1(2) 실 **경배와 찬양** 2 이+실 합창Ⅵ 2 실	전공실기Ⅶ 2 실 연주실습Ⅶ P/NP 실	전공실기Ⅷ 2 실 연주실습Ⅷ P/NP 실
학점	교양 필수: 12학점, 전공필수: 48학점							

필수 교육과정- 실용음악 전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기독교의 이해 2 독서와 작문 2 대학영어Ⅰ(2분반) 2 실천평가Ⅰ P/NP	대학영어 Ⅱ(2분반) 2 실천평가 Ⅱ P/NP **진로지도 Ⅰ P/NP**	성서와 함께 2 실천평가 Ⅲ P/NP	실천평가Ⅳ P/NP	그리스도인의 삶 2 실천평가 Ⅴ P/NP	실천평가 Ⅵ P/NP	실천평가 Ⅶ P/NP **진로지도 Ⅱ P/NP**	실천평가 Ⅷ P/NP
전공	전공실기Ⅰ 2 실 **기초음악이론Ⅰ** 2 이 연주실습Ⅰ P/NP 실 합창Ⅰ 2 실 대학생활Ⅰ P/NP 실	전공실기Ⅱ 2 실 **기초음악이론Ⅱ** 2 이 연주실습Ⅱ P/NP 실 교회음악개론 2 이 합창Ⅱ 2 실 대학생활Ⅱ P/NP 실	전공실기Ⅲ 2 실 즉흥연주기법Ⅰ 2 이 연주실습Ⅲ 1(2) 실 시창 청음Ⅰ(2분반) 2 이+실 합창Ⅲ 2 실	전공실기Ⅳ 2 실 즉흥연주기법Ⅱ 2 이 연주실습Ⅳ 1(2) 실 시창청음Ⅱ(2분반) 2 이+실 합창Ⅳ 2 실	전공실기Ⅴ 2 실 연주실습Ⅴ 1(2) 실 합창Ⅴ 2 실	전공실기Ⅵ 2 실 연주실습Ⅵ 1(2) 실 **경배와 찬양** 2 이+실 합창Ⅵ 2 실	전공실기Ⅶ 2 실 연주실습Ⅶ P/NP 실	전공실기Ⅷ 2 실 연주실습Ⅷ P/NP 실
학점	교양 필수: 12학점, 전공필수: 48학점							

전공선택 교육과정

전공선택	영역	전공	과목명											
			1~2학년											
			짝수년 1학기			**짝수년** 2학기			**홀수년** 1학기			**홀수년** 2학기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클래식	피아노							피아노반주법Ⅰ	이+실	2	피아노반주법Ⅱ	이+실	2
		성악	불어딕션과 가곡	이+실	2	영어딕션과 가곡	이+실	2	독어딕션과 가곡	이+실	2	이태리어딕션과 가곡	이+실	2
		오르간							찬송가반주법Ⅰ	이+실	2	찬송가반주법Ⅱ	이+실	2
		작곡	순수대위법Ⅰ	이	2	자유대위법Ⅱ	이	2	전공화성학Ⅰ	이	2	전공화성학Ⅱ	이	2
	실용	공통							재즈역사Ⅰ	이	2	재즈역사Ⅱ	이	2
		앙상블	실용음악앙상블Ⅰ(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Ⅲ(2학년)	실 실	1(2) 1(2)	실용음악앙상블Ⅱ(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Ⅳ(2학년)	실 실	1(2) 1(2)	실용음악앙상블Ⅰ(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Ⅲ(2학년)	실 실	1(2) 1(2)	실용음악앙상블Ⅱ(1학년_2분반) 실용음악앙상블Ⅳ(2학년)	실 실	1(2) 1(2)
	공통	–	클래스피아노(기초)Ⅰ (1,2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기초)Ⅱ (1,2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기초)Ⅰ (1,2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기초)Ⅱ (1,2학년)	실	1(2)
			재즈피아노랩Ⅰ 음악감상	이+실 이	2 2	재즈피아노랩Ⅱ 악기론	이+실 이	2 2	음악사Ⅰ	이	2	음악사Ⅱ	이	2
			클래스오르간Ⅰ	실	1(2)	클래스오르간Ⅱ	실	1(2)	클래스오르간Ⅲ	실	1(2)	클래스오르간Ⅳ	실	1(2)
			실용음악 작편곡Ⅰ	이	2	실용음악 작편곡Ⅱ	이	2	**무대음향 Ⅰ**	이	2	**무대음향 Ⅱ**	이	2
		전학년 공동	뮤지컬워크숍Ⅰ(1학년) 뮤지컬워크숍Ⅲ(2학년) 가스펠콰이어Ⅰ(1학년) 가스펠콰이어Ⅲ(2학년) 챔버콰이어Ⅰ(1학년) 챔버콰이어Ⅲ(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뮤지컬 워크숍Ⅱ(1학년) 뮤지컬 워크숍Ⅳ(2학년) 가스펠콰이어Ⅱ(1학년) 가스펠콰이어Ⅳ(2학년) 챔버콰이어Ⅱ(1학년) 챔버콰이어Ⅳ(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뮤지컬 워크숍Ⅰ(1학년) 뮤지컬 워크숍Ⅲ(2학년) 가스펠콰이어Ⅰ(1학년) 가스펠콰이어Ⅲ(2학년) 챔버콰이어Ⅰ(1학년) 챔버콰이어Ⅲ(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뮤지컬 워크숍Ⅱ(1학년) 뮤지컬 워크숍Ⅳ(2학년) 가스펠콰이어Ⅱ(1학년) 가스펠콰이어Ⅳ(2학년) 챔버콰이어Ⅱ(1학년) 챔버콰이어Ⅳ(2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1(2) 1(2) 1(2) 1(2) 1 1

*** 1학년 실용음악앙상블 I,II 은 학생수가 많으므로 2개 분반으로 개설.**

전공선택 교육과정

전공선택	영역	전공	과목명											
			3~4학년											
			짝수년 1학기			**짝수년** 2학기			**홀수년** 1학기			**홀수년** 2학기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과목명	구분	학점(시수)
	클래식	피아노	피아노문헌Ⅰ	이	2	피아노문헌Ⅱ	이	2	피아노교수법	이+실	2	피아노 앙상블	실	2
		성악	오페라클래스Ⅰ	이+실	2	오페라클래스Ⅱ	이+실	2	성악문헌Ⅰ	이	2	성악문헌Ⅱ	이	2
		오르간	오르간문헌Ⅰ	이	2	오르간문헌Ⅱ	이	2	**예배와오르간실습Ⅰ**	이+실	2	**예배와오르간실습Ⅱ**	이+실	2
		작곡	현대음악분석Ⅰ	이	2	현대음악분석Ⅱ	이	2	현대작곡기법Ⅰ	이	2	현대작곡기법Ⅱ	이	2
	실용	공통	고급실용음악이론Ⅰ	이+실	2	고급실용음악이론Ⅱ	이+실	2	재즈화성학Ⅰ	이	2	재즈화성학Ⅱ	이	2
		앙상블	고급실용앙상블Ⅰ(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Ⅲ(4학년)	실 실	2 2	고급실용앙상블Ⅱ(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Ⅳ(4학년)	실 실	2 2	고급실용앙상블Ⅰ(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Ⅲ(4학년)	실 실	2 2	고급실용앙상블Ⅱ(3학년) 고급실용앙상블Ⅳ(4학년)	실 실	2 2
	공통	–	클래스피아노(고급)Ⅰ(3,4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고급)Ⅱ(3,4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고급)Ⅰ(3,4학년)	실	1(2)	클래스피아노(고급)Ⅱ(3,4학년)	실	1(2)
			음악사Ⅲ	이	2	음악사Ⅳ	이	2	지휘법Ⅰ	이+실	2	지휘법Ⅱ	이+실	2
			음악형식과 분석	이	2	현대음악이론	이	2	대위법Ⅰ	이	2	대위법Ⅱ	이	2
			크로스오버 (4학년)	이+실	1				크로스오버 (4학년)	이+실	1			
			재즈피아노랩Ⅰ CCM 반주법Ⅰ	이+실 이+실	2 2	재즈피아노랩Ⅱ CCM 반주법Ⅱ	이+실 이+실	2 2	건반화성Ⅰ	이	2	건반화성Ⅱ	이	2
			현대예배음악	이	2	음악교육론	이	2	월드뮤직	이	2	가창과 지휘	실	2
		전학년 공통	합창 Ⅶ(4학년) 뮤지컬 워크숍Ⅴ(3학년) 뮤지컬 워크숍Ⅶ(4학년) 가스펠콰이어Ⅴ(3학년) 가스펠콰이어Ⅶ(4학년) 챔버콰이어Ⅴ(3학년) 챔버콰이어Ⅶ(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합창 Ⅷ(4학년) 뮤지컬 워크숍Ⅵ(3학년) 뮤지컬 워크숍Ⅷ(4학년) 가스펠콰이어Ⅵ(3학년) 가스펠콰이어Ⅷ(4학년) 챔버콰이어Ⅵ(3학년) 챔버콰이어Ⅷ(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합창 Ⅶ(4학년) 뮤지컬 워크숍Ⅴ(3학년) 뮤지컬 워크숍Ⅶ(4학년) 가스펠콰이어Ⅴ(3학년) 가스펠콰이어Ⅶ(4학년) 챔버콰이어Ⅴ(3학년) 챔버콰이어Ⅶ(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합창 Ⅷ(4학년) 뮤지컬 워크숍Ⅵ(3학년) 뮤지컬 워크숍Ⅷ(4학년) 가스펠콰이어Ⅵ(3학년) 가스펠콰이어Ⅷ(4학년) 챔버콰이어Ⅵ(3학년) 챔버콰이어Ⅷ(4학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2 1(2) 1(2) 1(2) 1(2) 1 1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육과정표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과목		구약학개론 세계교회사 조직신학개론 히브리어 영성훈련 경건회I 신학생활I 목회실습I: 교회교육의 실습	신약학개론 현대신학개론 기독교교육학 헬라어 경건회II 신학생활II 목회실습II: 교회행정과 리더십	신약석의방법론 종교개혁사 영성학 경건회III 목회실습III: 헌법과 교회 안 현장실습	구약석의방법론 설교학개론 기독교윤리학 경건회IV 목회실습IV: 교회 밖 현장실습(사회봉사)	예배학개론 목회상담학개론 경건회V 목회실습V: 설교의 실제	선교신학 교회음악 경건회VI 목회실습VI: 예배의 실제 교회행정학/그리스도론(제외)
선택과목	구약	구약과 고대근동/이스라엘 종교와 예언/구약신학/이스라엘 역사/지혜문학 연구/오경 연구/예언서 연구/사무엘상 원전강독/아모스 원전강독/구약성서연구					
	신약	신약성서 배경사/신약원전강독/신약과 설교/신약과 교회/신약과 윤리/신약과 유대사상/신약신학/공관복음신학/요한신학/바울신학/신약성서연구(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행전,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골로새서, 목회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신약성서연구					
	역사	교부신학/어거스틴신학/중세스콜라주의 신학/중세 신비주의신학/중세 수도원운동/종교개혁문서연구/종교개혁 급진주의/경건주의 역사/기독교 교리사/기독교 신조사/미국 교회사/근세교회사/일치운동의 역사/현대교회사/기독교사회주의 역사/역사신학개론/기독교 신비주의 역사/교회론 변천사/정통과 이단/순교의 역사/한국 교회사/한국교회 인물사/호남교회사					
	조직	근대신학세미나/현대신학세미나/개혁신학/한국신학/조직신학방법론/신론/그리스도론/성령론/삼위일체론/창조론/인간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기독교와 과학/생태신학/비교종교학/기독교와 한국사상					
	윤리	기독교윤리사상사/윤리신학자 연구/현대철학과 기독교윤리/인권의 신학과 윤리/성서와 현대생활/생명윤리실천/정치윤리/경제윤리					
	선교	본훼퍼 신학연구/교회일치운동-에큐메니즘/선교사훈련(학부/신대원선택)/선교현장실습/성만찬과 선교/디아코니아 선교/사회봉사와선교/전도의 실제					
	영성	영성의 이론과 실제/영성훈련의 실제/영성지도의 이론과 실제					
	예배	개신교예배					
	설교	설교의 실제/설교와 준비/설교 작성법/설교의 역사/현대설교론/교회력과 설교					
	상담	상담 면접의 이론과 실제/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성격심리와 치료/교회현장과 정신병리/상담연구법과 심리검사/상담이론과 실제/위기와 치유상담/집단상담의 실제/목회상담과 성					
	교육	대학/청년과 기독교교육(기독교대학과 청년교육)/소그룹운영과 성서교육/기독교교육과 자기이해/교육신학/기독교교육방법론					
	일반	어학	<교회와 문화서사 I, II(송인동)>, 선교한국어 I, II 영어신학강독 I, II, 독어신학강독 I, II, 라틴어, 라틴어강독, Mission English I, II 합창 I, II, 컴퓨터실습				
		팀티칭	여성과 목회(2년에 한번 개설)/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강성열)//성서와 다원화목회(팀티칭)/기독교교파이해(팀티칭)//이슬람 신앙과 문화(팀티칭)/수도원 운동의 역사와 영성(팀티칭)/목회상담 실습(팀티칭)				
		현장연구	성서지리학/종교개혁지현장연구(팀티칭)				
		특별	어거스틴연구/신대원 교류과목				
		일반	철학적 신학/신학적 해석학/문화신학/논리학 기독교 사회복지학(기독교와 사회복지)/목회 글쓰기/목회 화법 교회와 정보, 정보기술의 이해 I, II, 정보와 미디어실습 I, II 논문작성법(2, P/NP), 졸업논문 다문화선교의 실제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서영성학과 영성지도 전공 교과목표

학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1 학기		
영성학(영성지도)	기도 신학 Theology of Prayer	3	최승기	영성 형성과 관상적 경청 Spiritual Formation & Contemplative Listening	3	미정	영성사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3	미정	기독교 역사와 개혁 영성/신학 Reformed Spirituality/Theology	3	미정
	그룹 영성지도 Group Spiritual Direction	3	박신향	개인 영성지도 Individual Spiritual Direction	3	미정	영적 분별 입문 Fundamentals of Spiritual Discernment	3	미정	영성지도 수퍼비전 Supervision in Spiritual Direction	3	미정
인접학	성서와 영성 Biblical Spirituality	3	미정	신학적 인간 이해와 구원론 Anthropology & Soteriology	3	미정	심리학적 인간 이해와 상담 이론 Psychological Anthropology & Counseling Theory	3	미정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서주해학과 교과목표

학년 / 구분	2021/22년						2022/23년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기		
성서학	율법서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Torah and Sermons)	3	서재덕	전기예언서(역사서)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Former Prophets and Sermons)	3	미정	후기예언서(예언서)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Latter Prophets and Sermons)	3	미정	성문서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Writings and Sermons)	3	미정
	복음서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Gospels and Sermons)	3	최흥진	바울서신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Pauline Epistles and Sermons)	3	미정	공동서신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General Epistles and Sermons)	3	미정	사도행전 주해와 설교 (Exegesis of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Sermons)	3	미정
설교	인물·절기 설교 (Sermons about Bible Characters and the Church Year	2	조용현	설교 코칭 (Sermon Coaching)	2	미정	설교 전달론 (Sermon and Communication)	2	미정	교부·종교개혁가·현대설교자 설교 연구 (Sermons about Church Fathers, Protestant Reformers, and Modern Preachers)	2	미정

신학대학원 야간 교육과정표

<table>
<tr><th rowspan="2">년
구분</th><th colspan="2">2021/2022년</th><th colspan="2">2022/2023년</th><th colspan="2">2023/2024년</th></tr>
<tr><th>2 학 기</th><th>1 학 기</th><th>2 학 기</th><th>1 학 기</th><th>2 학 기</th><th>1 학 기</th></tr>
<tr><td>필수</td><td>구약학개관
세계교회사
조직신학개론
경건회 I</td><td>신약학개관
현대신학개론
기독교교육학
경건회 II</td><td>신약석의방법론
종교개혁사
영성학
경건회 III</td><td>구약석의방법론
설교학개론
기독교윤리학
경건회 IV</td><td>예배학개론
목회상담학개론
헬라어
경건회 V</td><td>선교신학
교회음악
히브리어
경건회 VI</td></tr>
<tr><td rowspan="12">선택
과목</td><td>구약</td><td colspan="5">이스라엘 역사, 구약신학</td></tr>
<tr><td>신약</td><td colspan="5">신약신학, 공관복음</td></tr>
<tr><td>역사</td><td colspan="5">중세신학연구, 근세교회사</td></tr>
<tr><td>조직</td><td colspan="5">비교종교학, 개혁교회와 신학</td></tr>
<tr><td>윤리</td><td colspan="5">기독교윤리사상사</td></tr>
<tr><td>선교</td><td colspan="5">에큐메닉스</td></tr>
<tr><td>예배</td><td colspan="5">예배의 실제-목회실습6 (주간 1학점 2시수->야간 2학점 2시수)</td></tr>
<tr><td>설교</td><td colspan="5">설교의 실제-목회실습5</td></tr>
<tr><td>상담</td><td colspan="5">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td></tr>
<tr><td>교육</td><td colspan="5">교육목회</td></tr>
<tr><td>영성</td><td colspan="5">영성의 이론과 실제</td></tr>
<tr><td colspan="3">2021년 1학기
목회실습 I, 목회실습 II
목회실습 III, 목회실습 IV</td><td colspan="3">주간(1학점 2시수) 필수 ->야간(2학점 2시수) 선택</td></tr>
<tr><td colspan="6">*영성훈련: 1학년 필수, 학기 중 혹은 계절학기</td></tr>
</table>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표

1.석사과정(Th.M.)

구분	전공명	과 목 명
성서신학	구 약 학	구약신학 세미나/구약원전/지혜문서 연구/묵시문학 연구/이스라엘 종교사 연구/예언서 주석/역사서 주석/오경 주석
	신 약 학	신약원서강독/중간사 연구/신약신학/공관복음신학/누가신학/요한신학/바울신학/로마서연구/고린도전후서 연구
이론신학	역사신학	교회사연구방법론/고대신학연구/영지주의연구/반이단신학자연구/중세수도원 운동 연구/중세신비주의 연구/후기중세신학연구/신앙고백의 역사 연구/종교개혁사연구/근세교회사연구/현대교회사연구/아시아교회사 연구/한국교회사 연구/호남교회사 연구/기독교 순교사 연구
	조직신학	현대신학 세미나/근대신학 세미나/개혁신학 세미나/한국신학 세미나/현대 미국신학 세미나/현대 독일신학 세미나/현대신학과 현대과학 세미나/동, 서양 신비주의 세미나/과정신학 세미나/신학체계론/주제별 세미나(신론/그리스도론/성령론/삼위일체론/창조론/인간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신정론 세미나/현대신학자 세미나(바르트/틸리히/몰트만/판넨베르크의 신학)존 칼빈의 신학
		현대철학적 신학연구/신학적 윤리/종말론연구/신학적해석학
	기독교 윤리학	성서윤리/신학윤리/기독교사회윤리/세계종교윤리/인권과 법윤리/생명윤리
실천신학	예배와 설교	성례적 신학/교회력과 성서일과/예배와 예전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설교자연구/설교형태론/설교의 역사 연구/수사학과 설교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교육과 발달이론/기독교교육 과정론/다문화사회와 기독교교육/여성신학과 기독교교육/기독교교육학자연구/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목회상담학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현대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목회상담 실습(사례분석)/위기개입이론과 목회상담/결혼과 가족치료/성격이론과 치료/정신병리와 목회상담/정신분석과 목회상담/집단상담의 실제/연구지도(1학점)
	선교 신학	하나님의 선교/세계교회와 선교/현대선교신학/선교현장연구(Th.D.와 연계)/데이비드 보쉬의 선교신학/선교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 영성학	기독교 영성사/기도의 신학/영성훈련의 전통과 다양성/종교체험의 다양성/영성과 심리학/영성지도와 감독/영적 식별과 선택
	공통과목	

* 신학석사과정: 기독교철학, 실천신학공통 과목은 들어오지 않음

2. 박사과정(Th. D.)

가. 성서신학

전 공	구 약 학	신 약 학
과 목 명	구약과 고대근동 종교, 구약신학 방법론, 성서 아람어, 예언신학 연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구약성서와 한국문화, 구약신학의 주제별 연구, 성서고고학 세미나, 시편 주석, 오경 연구, 외경과 위경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신학,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 구약과 묵시문학	신약원전연구, 신약학세미나, 신약신학연구, 역사적 예수 연구, 누가연구, 요한연구, 바울연구, 구약과 신약 연구, 유대교연구, 영지주의연구 공관복음연구, 마태복음연구, 마가복음연구, 누가문서연구, 요한복음연구, 바울서신연구, 히브리서연구, 공동서신연구, 요한계시록연구

나. 이론신학

전공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과목명	역사연구방법론 고대교부신학사상사 고대교회 신조형성사 기독교 이단사 연구 초기기독교 신비주의 연구 어거스틴 연구 디오니시우스 신학 연구 동방교회사 연구 수도원운동사 연구 중세신학사상사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 연구 아퀴나스 신학 연구 에크하르트 신학 연구 교황과 공의회 역사연구 스콜라주의 신학연구 기독교 인문주의 연구 유럽 역사와 기독교연구 동유럽 기독교 역사 마르틴 루터의 신학 요한 칼빈의 신학 종교개혁 논쟁문서 연구 종교개혁 급진주의 연구 영국 종교개혁사 연구 근세 기독교사 연구 계몽주의 신학연구 경건주의 신학연구 미국교회사 연구 현대기독교사 연구 에큐메니칼 운동사 연구 아시아 교회사 연구 한국교회사 연구 호남교회사 연구 기독교 선교사 기독교 교파 연구 한국 교회사 연구방법론 한국기독교 영성사 연구 한국 기독교 신학사 연구	현대신학 세미나 근대신학 세미나 개혁신학 세미나 한국신학 세미나 현대 미국신학 세미나 현대 독일신학 세미나 신학체계론 신론 세미나 그리스도론 세미나 성령론 세미나 삼위일체론 세미나 창조론 세미나 인간론 세미나구원론 세미나 교회론 세미나 종말론 세미나 신정론 세미나 바르트의 신학 틸리히의 신학 몰트만의 신학 판넨베르크의 신학 존 칼빈의 신학	기독교윤리 방법론, 종교개혁자의 윤리, 최근기독교윤리동향, 교회와 국가 세미나, 인권과 법윤리 세미나, 윤리신학자 연구, 세계종교윤리세미나

다. 실천신학

전공	예배와 설교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과목명	예배신학 세미나, 성찬성례전 세미나, 세례 성례전 세미나, 성직임명과 안수(Ordination), 예배의 기원 연구 세미나, 예배의 역사와 신학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설교신학 세미나, 고대설교 세미나, 현대설교 세미나, 강해설교세미나, 서사설교 세미나, 분석설교 세미나, 한국교회와 설교 세미나	기독교성인교육론, 사회화와 기독교교육론, 목회자 자기성찰교육, 신학과 기독교교육, 성서교육방법론, 기독교교육과 의사소통	목회상담 연구, 개인감독지도, 집단감독지도, 집단상담, 결혼과 가족상담의 실제, 목회상담 실습, 목회상담연구 방법론, 정신분석치료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청소년상담과 목회상담, 임상목회, 치유목회상담 세미나, 현대심리치료 인물연구

전공	선교신학	기독교영성학	공통과목
과목명	복음주의 선교신학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에큐메니칼 운동사 민족통일과 한국교회 제3세계 선교신학 선교현장연구(Th. M.과 연계) 선교와 복음의 상황화 성서와 선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사회선교	기독교 영성학 방법론 세미나 칼뱅과 루터의 영성 세니만 수도원 운동과 영성 연구 신비주의와 신비가들의 영성 연구 이냐시오 영성과 칼 라너의 신학 세미나 영적 성숙과 발달 심리학 세미나 한국교회의 영성 연구 동방교회의 영성 연구 팔라마스의 그레고리영성 연구 아빌라에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 영성 세미나 영성과 문화연구 생태영성 연구 영성지도와 감독 리더십과 영성연구	

대학원 신학박사(목회학전공)

I. 현장연구 : 9-12학점

* 목회를 위한 성지탐방(2+3)
* 종교개혁사상과 종교개혁지 탐방(2+3)
* 해외 선교현장 답사(1+2)
* 건강한 목회와 성숙한 교회(이론 3, 실천 3)
* 한국교회역사와 현장 탐방(2+1)

II. 정규수업

(1) 성서신학

* 성지탐방(2+3) 성서지리학+신구약 중간사(외경)
* 설교를 위한 오경연구, 시편 주석, 대예언서 주석, 소예언서주석
* 설교를 위한 복음서 연구, 사도행전 연구, 바울서신 연구, 공동서신 연구

(2)실천신학

* 건강한 교회 세미나(3, 인텐시브), 선교현장연구(3)
* 목회상담(3), 교회교육(3), 목회자 건강과 영성(3)
* 설교 세미나(2), 예배 연구(2), 사회복지(2)

(3)이론신학

* 한국교회역사와 탐방(2+1),
* 종교개혁신학과 종교개혁 현장 연구(2+3)
* 세계 종교 이해(2) / 생태환경과 생명목회(3) / 목회와 윤리(3)
* 미래목회연구(1+1+1 특강)
* 건강한 교회 세미나(1+1+1), 목회와 신학 특강(1), 개인지도(3)
* 목회자 초청 세미나(1+1)

(4) 과목 개설상황

10-1: 차종순(교회사), 김병모(신약), 최승기(영성)
10-2: 오현선(교육), 김진영(상담), 김동선(선교)
11-1: 종교개혁신학과 종교개혁 현장연구(홍지훈), 신재식(생태환경과 생명목회), 김금용(설교)
11-2: 강성렬(구약), 최흥진(신약), 김충환(예배)

호남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육과정표

학년	1,2학년 통합
필수	**과 목 명**
	상담가의 자기분석,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발달심리학/성격심리학
	상담면접의 원리와 실제,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개인상담 수퍼비전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상담과 영성지도/상담연구방법론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정신병리학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상담과 신학(T.T)
	기독교상담 프로그램개발, 논문연구지도(1학점)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교육과정표

학기	과목		학점	구분	비고
1학기	전공실기 I		3	전공필수	
	고등음악이론		2	전공필수 (실용음악 및 발성교정 제외)	
	실용음악이론 I		2	실용음악필수	
	발성교정이론 개요		2	발성교정필수	
	교회음악세미나		2	전공필수	
	부실기 I		1	전공선택	
	전공별 앙상블	피아노 - 피아노 앙상블 I	1	전공선택	
		오르간 - 오르간 앙상블 I			
		성 악 - 성 악 앙상블 I			
		관현악 - 관현악 앙상블 I			
		실용음악 - 실용음악 앙상블 I			
			총 9학점		
2학기	전공실기 II		3	전공필수	
	전공관련 과목 I	교회음악 - 찬송가학	2	전공필수	
		피 아 노 - 피아노 문헌			
		반 주 - 반주문헌 및 세미나 I (가곡문헌)			
		오 르 간 - 오르간 문헌			
		성 악 - 19세기 예술가곡연구			
		발성교정 - 발성교정 이론 및 실습 I			
		합 창 - 합창음악 문헌연구			
		관 현 악 - 관현악 문헌 및 세미나 I			
		실용음악 - 실용음악이론II			
	교회음악반주법		1	전공필수 (발성교정 제외)	실용 클레식 필수
	음성검사 이론		1	발성교정필수	
	현대음악 이론 및 분석 -- (2)		2	전공선택 (실용음악제외)	
	실용음악 앙상블II		2	실용음악선택	
	발성교정이론 종합		2	발성교정선택	
	부실기II		1	전공선택	
			총 9학점		
3학기	전공실기III		3	전공필수	
	전공관련 과목 II	교회음악 - 교회음악문헌	2	전공필수	
		피 아 노 - 피아노연주법 및 세미나 I			
		반 주 - 반주문헌 및 세미나II (오페라문헌)			
		오 르 간 - 오르간연주법 및 세미나 I			
		성 악 - 20세기 예술가곡 연구			
		발성교정 - 발성교정 이론 및 실습 II			
		합 창 - 관현악 지휘법			
		관 현 악 - 관현악 문헌 및 세미나 II			
		실용음악 - 실용 작 편곡 I			
	음악사와 문헌 I		2	전공필수 (실용음악 및 발성교정 제외)	
	즉흥연주기법		2	실용음악필수	
	음성검사 실습		2	발성교정필수	
	부실기 III		1	전공선택	
	전공별 앙상블	피아노 - 피아노 앙상블II	1	전공선택	
		오르간 - 오르간 앙상블II			
		성 악 - 성 악 앙상블II			
		관현악 - 관현악 앙상블II			
		실용음악 - 실용음악 앙상블III			
			총 9학점		
4학기	전공실기IV		3	전공필수	
	음악사와 문헌II		2	전공필수 (실용음악 및 발성교정 제외)	
	실용음악이론IV		2	실용음악필수	
	발성교정 임상		2	발성교정필수	
	졸업연주·논문 (두 과목 중 선택)		pass		
	전공관련 과목III	교회음악 - 예배와 교회음악	2	전공선택	
		피 아 노 - 피아노연주법 및 세미나II			
		반 주 - 반주문헌 및 세미나III (기악문헌)			
		오 르 간 - 오르간연주법 및 세미나II			
		성 악 - 딕션 및 연주법			
		발성교정 - 발성교정 이론 및 실습 III			
		합 창 - 합창음악 세미나			
		관 현 악 - 관현악 문헌 및 세미나 III			
	전공별 앙상블	실용음악 - 실용음악 앙상블IV	2	전공선택	
			총 7학점		
개설 학점 누계 : 34학점			전공 필수 25학점		
			전공 선택 9학점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과정표

구분	교과목	교과목(영문)	학점	시간
전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3	3
전공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alfare	3	3
전공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alfare	3	3
전공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alfare and Practice	3	3
전공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3	3
전공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alfare Adminstration	3	3
전공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ork Field Practicum	3	3
전공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3	3
전공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alfare and Law	3	3
전공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in Social Walfare	3	3
전공	선교와 사회복지	Missions and Social Walfare	3	3
전공	갈등조정심리와 사회복지실천	Conflict Mediation Psychology and Social Work Practice	3	3
전공	회복적 정의와 사회복지실천	Restorative Justice and Social Work Practice	3	3
전공	회복적 서클과 사회복지실천	Restorative Circle and Social Work Practice	3	3
전공	비폭력 대화와 사회복지실천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Social Work Practice	3	3
전공	교정복지론	Correctional Social Work	3	3

음악학과 실기 과제곡

피아노 전공실기 과제곡

학 년	학기	과 제 곡
1	1	1) Scale (장, 단 24조) 2) J. S. Bach 작품 중 1곡 3) 자유곡
	2	1) Arpeggio (장, 단 24조) 2) J. S. Bach 작품 중 1곡 3) 자유곡
2	1	1) Beethoven Sonata 제외한 고전 Sonata 전 악장 2) Beethoven Sonata 제외한 고전 Sonata 1악장과 자유곡 (1. 2. 번 중 택 1,)
	2	1) Beethoven Sonata 전 악장 2) Beethoven Sonata 1악장과 자유곡 (1. 2. 번 중 택 1)
3	1	1) Chopin : Etude 중 1곡 2) 자유곡
	2	1) 낭만 Sonata 전 악장 2) 낭만 Sonata 한 악장과 자유곡 (1. 2. 번 중 택 1)
4	1	1) 근대, 현대 Sonata 전 악장 2) 근대, 현대 Piece (Etude 또는 Sonata(한 악장)포함) 와 자유곡 (1. 2. 번 중 택 1)
	2	1) 졸업연주곡 (모든 자유곡) 졸업연주 2주 전에 오디션

1. 본 대학 입시곡은 과제곡으로 선택할 수 없다.
2. 매 학기 과제곡은 8분 이상으로 한다.
3. 졸업연주곡의 연주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며, 과제곡과 W.R곡과의 중복도 가능하다.
4. W.R은 2,3학년 전학생의 참여로 매학기 실시하며, 그 곡은 과제곡과 중복되어도 된다.
5. ① 자유곡은 시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중복 할 수 없다.
   ② 자유곡으로는 Piece, Etude, Sonata 나 Concerto의 경우 한 악장을 택할 수 있다.
6. 과제곡 중 1악장은 First movt.를 뜻하며 한 악장은 전 악장 중 어느 한 악장을 뜻한다.
7. 편입생은 Scale, Arpeggio 시험은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실시한다.
8. 정기연주회 곡은 자유곡으로 하며 실기과제곡과 중복 할 수 있고 전공별연주회 곡과는 중복 할 수 없다.

성악 전공실기 과제곡

학 년	과 제 곡
1	1, 2학기당 자유곡 3곡 시 험 1. 위 곡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1곡 2. 나머지 곡 중에서 시험 시 추첨한 1곡
2	1, 2학기당 자유곡 3곡 시 험 1. 위 곡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1곡 2. 나머지 곡 중에서 시험 시 추첨한 1곡
3	1, 2학기당 자유곡 3곡 시 험 1. 위곡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1곡 2. 나머지 곡 중에서 시험 시 추첨한 1곡
4	1학기는 3학년과 동일 2학기는 졸업 연주

◆ **선곡에 관한 규정**

1. 졸업 연주곡을 제외한 총 25곡 - 1학년 (1,2학기) 6곡, 2학년 (1,2학기) 6곡, 3학년 (1,2학기) 6곡,
   4학년 (1학기) 3곡, W.R(2,3 학년 매학기 실시) 4곡-에는 다음곡이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유곡은 지도교수 지도하에 자유 선택한다.
   가. 이태리 가곡 3곡 이상 나. 독일 가곡 3곡 이상
   다. 프랑스 가곡 2곡 이상 라. 영미 가곡 2곡 이상
   마. 한국가곡 1곡 이상 바. OPERA ARIA 1곡 이상
   사. ORATORIO ARIA 1곡 이상
   * OPERA ARIA, ORATORIO ARIA는 3,4학년에서만 선택이 가하며, Recitativo를 포함한다.
   * 가곡의 나라 구분은 원보의 가사에 의한다.(작곡자 국적이 아님)

2. 이태리어, 독어, 프랑스어, 영어, 라틴어를 제외한 나머지 곡은 번역가사로 연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험곡 제출 시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졸업 연주곡은 (4학년 2학기) 지도교수 지도하에 자유 선곡하며 이전 시험곡 및 W.R곡의 중복도 가함,

4. W.R곡 (2,3학년에 한하여 매학기 실시)과 실기 시험곡의 중복을 피한다.

5. 모든 선곡에서 본 대학 입시곡은 선택할 수 없다.

오르간 전공실기 과제곡

학 년	학기	과 제 곡
1	1	1) J.S.Bach a)Acht Kleine Präludien und Fugen 中1곡 b)Orgelbüchlein 中 1곡 2) 찬 송 가 : 다,사,바장조 中 추첨된 2곡
	2	1) J.S.Bach : Sübler(BWV645-650)Choräle, 18Choräle(BWV651-668) 기타 Choräle곡 中 1곡 2) Baroque시대작품 中 1곡 3) 찬 송 가 : 내림나, 라, 가장조 中 추첨된 2곡
2	1	1) 낭만시대 소품 中 1곡 2) Baroque시대 작품 中 1곡 3) 찬 송 가 : 내림마, 내림가 中 추첨된 2곡
	2	1) D. Buxtehude 작품 中 1 곡 2) 고전,낭만시대 작품 中 1곡 3) 찬 송 가 : 내림라, 마, 기타 단조 中 추첨된 2곡
3	1	1) J.S.Bach 작품 中 1곡 2) 낭만시대 작품 中 1 곡
	2	1) J.S.Bach 작품 中 1곡 2) 근대, 현대작품 中 1곡
4	1	1) J.S.Bach 작품 中 1곡 2) 낭만, 근대, 현대작품 中 1곡
	2	졸 업 연 주 회 (자 유 곡)

1. 모든 곡은 전 악장을 원칙으로 한다.
2. 매학기 실기시험 시간은 8분 이상으로 한다.
3. 졸업연주곡은 연주시간 10분 이상으로 하며, 시험곡과 W.R곡과 중복이 가능하다.
4. W.R 곡 (2, 3학년에 한하여 매학기 실시)과 그 학기 시험곡은 중복 할 수 없으며 전공별 연주회 곡과는 중복하여 연주할 수 있다.
5. 이전 실기시험곡은 모든 연주회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한번 연주회에서 연주되었던 곡은 다른 연주회 재연주가 불가능하다.
6. 정기연주회 곡은 자유곡으로 하며 실기시험 곡과 중복할 수 있고 전공별 연주회 곡과는 중복할 수 없다.

작곡 전공실기 과제곡

학년	학기	과 제 곡 (학기당 3작품 중 2작품 제출)
1	1	① 세도막 형식에 의한 피아노곡 (필수) ② 예술가곡 ③ 교회음악 독창곡
	2	① Rondo 형식에 의한 현악4중주 (필수) ② 겹세도막 형식에 의한 피아노곡 ③ 코랄 4부합창곡
2	1	① 변주곡 형식에 의한 피아노곡 (5변주 이상, 필수) ② 예술가곡 ③ 찬송가 관현악편곡
	2	① Sonata 형식에 의한 피아노곡 (필수) ② 일반합창곡 (혼성4부) ③ 성가합창곡 (혼성4부)
3	1	① Fugue 목관4중주 (필수) ② 실내악 반주붙인 예술가곡 ③ 성가합창곡을 관현악편곡
	2	① 무조음악 (3개 악기 이상, 필수) ② 국악기를 포함한 실내악곡 (4개 내외의 악기사용) ③ 관현악반주 붙은 성가합창곡
4	1	① 모음곡 (3개 악기 이상, 5개의 조곡 이상, 필수) ② 졸업 작품 준비 (자유곡, 5분 이상)
	2	① 졸업 작품 완성, 연주 및 제출

1. 과제곡 제출일은 매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2. 필히 지도교수 확인 사인 포함
3. 편곡은 기존의 작품이나 자신의 작품 모두 가능

실용음악 전공실기 (드 럼)

			과 제 곡
1	1	중간	1) Snare Drum Solo - One Of kind with M.N. 2) Play along with Blues MR
		이론	Blues 중 택 1
		기말	자유곡 1곡
	2	중간	1) Drum Set Solo Advanced Funk Solo #1 2) Play along with Medium Swing MR with Brushes
		이론	Rhythm Changes 중 택 1
		기말	자유곡 1곡
2	1	중간	1) Drum Set Solo 'Blue 7' by Max Roach with M.N. 2) Play along with Funk MR
		이론	3/4 스탠다드 곡들 중 택 1
		기말	자유곡 1곡
	2	중간	1) Drum Set Solo 'Seven Steps to Heaven' by Tony Williams with M.N. 2) Play along with Bebop MR
		이론	Up Tempo 곡들 중 택 1 - B.P.M. 220 이상
		기말	자유곡 1곡
3	1	중간	1) Drum Set Solo 'Crescent' by Elvin Jones with M.N. 2) Play along with Odd Time (7/8) MR
		이론	4/4 스탠다드 곡을 5/4 또는 7/4 로 편곡해서 연주
		기말	자유곡 1곡
	2	중간	1) Drum Set Solo 'Reflections' Roy Haynes with M.N. 2) Play along with Latin MR
		이론	Latin 곡들 중 택 1 (Bossa-Nova 제외)
		기말	자유곡 1곡
4	1	중간	지정곡 - Fusion Jazz 곡들 중 택 1
		기말	자유곡 1곡
	2	졸업연주	

- 모든 곡을 암보를 원칙으로 한다. (미 암보는 점수의 50%를 적용)
- 중간/기말고사 연주 시 드럼 외의 악기솔로는 블루스는 2-3코러스, 일반적인 스탠다드는 1-2코러스로 제한한다.
- 드럼 솔로 시 드러머의 폼을 도와주는 코드나 섹션(Kick)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용음악 전공실기 (베이스)

		과 제 곡			
1	1	중간	지정곡	Jaco Pastorius (핑거펑크 스타일)	
		이론	스케일	Major Scales	2옥타브 상행, 하행
			시퀀스	Major Scales 상행/하행(2줄사용) 13/31, 14/41, 15/51, 16/61, 17/71, 135/531 상행/하행(3줄사용) 1357/7531	2옥타브 상행, 하행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드럼과 한곡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음
	2	중간	지정곡	Marcus Miller (슬랩스타일)	Victor Wooten 가능, 그 외 슬랩 가능
		이론	스케일	Major Modes (7개)	2옥타브 상행, 하행
			시퀀스	Major Modes (7개) 상행/하행(2줄사용) 13/31, 14/41, 15/51, 16/61, 17/71	2옥타브 상행, 하행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2	1	중간	자유곡	Standard Jazz Transcription-1 (카피한 베이스악보 제출)	학생 카피 능력정도 표기 (%)
		이론	스케일	Natural, Harmonic, Jazz minor Scales	2옥타브 상행, 하행
			시퀀스	Natural, Harmonic, Jazz minor Scales 상행/하행(2줄사용) 13/31, 14/41, 15/51, 16/61, 17/71, 135/531 상행/하행(3줄사용) 1357/7531	2옥타브 상행, 하행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드럼과 한곡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음
	2	중간	지정곡	Rhythm Change Transcription-2 (카피한 베이스악보 제출)	학생 카피 능력정도 표기 (%)
		이론	스케일	Major, Dominant Bebop Scale	2옥타브 하행
			시퀀스	(Major, Minor, Diminish, Augment, Sus) Inversion 기본 Inversion/ Top Note Inversion	2옥타브 상행, 하행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드럼과 한곡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음
3	1	중간	지정곡	Latin + Swing만 가능	Latin + Swing만 가능
		이론	스케일	Jazz minor Modes (7개)	2옥타브 상행, 하행
			시퀀스	Jazz minor modes (상행/하행) 1243/4321, 1321/3123, 1231/3213	2옥타브 상행, 하행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드럼과 한곡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음
	2	중간	지정곡	Up tempo Swing(템포 200이상) Melody, Solo, Walking 포함	
		이론	스케일	Half Whole Diminish, Altered, Lydian b7, Mixo b9b13, Wholetone Scale	2옥타브 상행, 하행
			시퀀스	7th Chord Arpeggio (Maj7, Maj#11, Maj6, Maj#5, min7, mM7, m6, m7b5, 7sus4, alt, aug7, 7b5)	상행, 하행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드럼과 한곡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음
4	1	중간	지정곡	Chalie Parker (Bebop Style)	
		기말	자유곡	지도교수 확인 후 곡목 제출	드럼과 한곡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음
	2	졸업연주			

- 지정곡은 중간고사 기간에 봅니다.
- 이론시험은 (스케일과 시퀀스) 중간고사 2주후 봅니다.
- 베이스 드럼 전공이 다른 파트 세션을 많이 함으로 드럼 전공과 한번에 채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도 시험 가능)
- 자유곡은 기말시험 기간에 봅니다.
- 4현 베이스로 테스트 합니다. (5-6현 베이스 소지자는 EADG 4줄로 연주합니다.)
- 실기시험 곡목제출 시 전공교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 기본스케일(5점) / Mode (5점 : 1점 X 실수)
- 시퀀스(상행+하행 : Ckey) : (10점 : 3점 X 실수, 4회 실수 : 0점)

실용음악 전공실기 (보컬)

			과 제 곡
1	1	이론	① 조표 읽기 12 key (Major, minor) ☞ 5점 ② Interval 시창청음 ☞ 15점
		중간	재해석 된 한국 가요 or Jazz Standard 1곡 ☞ 40점
		기말	자유곡 ☞ 40점
	2	이론	① Bob Stoloff 교재 리듬 가창 ☞ 10점 ② Chromatic 가창 (Ascending and descending) ☞ 10점
		중간	재해석 된 외국 팝 or Jazz Standard 1곡 ☞ 40점
		기말	자유곡 ☞ 40점
2	1	이론	① Triad Chords 시창청음 (Major, Minor, Augment, Diminished) ☞ 10점 ② 동요 계명창 ☞ 10점
		중간	자유곡 (편곡 필히 요함) ☞ 40점
		기말	자유곡 ☞ 40점
	2	이론	① Pentatonic & Blues Scale 가창 ☞ 10점 ② Blues Licks 가창 ☞ 10점
		중간	자유곡 (편곡 필히 요함) ☞ 40점
		기말	자유곡 ☞ 40점
3	1	이론	① Minor Scales 가창 (Natural, Harmonic, Melodic) ☞ 5점 ② 7th Chords 시창청음 (Major7, Minor7, Dominant7, Minor7b5, Diminished7) ☞ 15점
		중간	Jazz Standard 1곡 ☞ 40점
		기말	자유곡 ☞ 40점
	2	이론	① Modal Scales 연주 및 가창 (Ionian, Dorian, Phrygian, Lydian, Mixolydian, Aeolian, Locrian) ☞ 20점
		중간	Jazz Standard 1곡 ☞ 40점
		기말	자유곡 ☞ 40점
4	1	중간	자유곡 (편곡 필히 요함) ☞ 40점
		기말	자작곡 ☞ 60점
	2	졸업연주	

☆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암보를 원칙으로 한다.
☆ Chords, Scales 은 첫 음과 발음을 자유롭게 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가창한다.
☆ 동요 가창은 지정된 조성으로 계명창 한다.
☆ 중간, 기말시험은 악기 솔로를 간소화하며, 코러스는 3명 이하로 제한한다.

실용음악 전공실기 (실용음악 관악기)

			과 제 곡
1	1	중간	Blues 1곡 (F 또는 Bb key) 입시곡제외 (1Head-1Bassline-5Solo) *40점
		이론	12 Major & minor Triad & Major scale *20점
		기말	자유곡 *40점
	2	중간	Funk,Pop,Smooth Jazz Style *40점
		이론	Maj Chord Solo (Eric Mariental Ver.) *20점
		기말	자유곡 *40점
2	1	중간	Jazz Standard 1곡 (본인 Solo 포함) *40점
		이론	Natural,Har,Mel,Dor,Phry,Loc Scale *20점
		기말	자유곡 *40점
	2	중간	Latin (Samba, Bossa Nova) 中 1곡 (본인 Solo 포함) *40점
		이론	Penta-Tonic (Maj,min) & Blues Scale *20점
		기말	자유곡 *40점
3	1	중간	Rhythm Change (템포200이상) *40점
		이론	Autumn Leaves Head 8마디 12키 & Chord tone Arpegio
		기말	자유곡 *40점
	2	중간	Charlie Parker Omnibook 中 1곡 *40점
		이론	Diminished Scale (Half-Whole, Whole-Half) *20점
		기말	자유곡 *40점
4	1	중간	So What, Impression 중 1곡 (편곡과 본인솔로 포함) *40점
		기말	자작곡 *60점
	2	졸업연주	

*모든시험은 암보로 진행한다.
*세션들의 솔로는 금지한다. (Traiding제외)
*편입생은 1학기(1학년 과정) / 2학기(2학년 과정)에서 임의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실용음악 전공실기 (재즈피아노)

		과 제 곡	
1	1	중간	Ragtime 중 1곡 (메트로눔 2&4)
		이론	Harmonic minor & Melodic (jazz) minor -5점 II -V -I , 왼손voice, 오른손scale -5점 Danny Boy 분석, 연주 -5점 Funk Riff 1 -10 중 2개 -5점
		기말	자유곡 1곡
	2	중간	Blues for Ronda, Hamp's Blues, Bluesology, Straight no chaser (Kenny barron), Hey Now(감점) 중 한곡
		이론	7 modes - 5점 I-VI-II-V swing, bossa (rhythm & solo)혼자서 연주 - 10점 Funk Riff 11-20 중 2개 - 5점
		기말	자유곡 1곡
2	1	중간	jazz ballad 1곡 voice위주 (solo piano연주 3분이상)
		이론	minor II V I 왼손-voice, 오른손-scale 1) II locrian, V7 mixo b9,b13 -5점 2) II loc#2, V7alt -5점 II-V-I comping voice A,B (5 notes 이상) -5점 Funf Riff 21-25 중 2개 -5점
		기말	자유곡 1곡
	2	중간	bebop곡 중 1곡 (4분이상, improvise 포함)
		이론	Autumn leaves 8마디 12key 양손 comping 5점 Autumn leaves 8마디 12key (head + solo) 10점 Funk Riff 26-30 중 2개 - 5점
		기말	자유곡 1곡
3	1	중간	Reharmonize 및 편곡 (solo piano연주, intro, ending 포함, CCM ,동요중 선택)
		이론	Diminish scale (온반, 반온) 5점 Comping1 (Smoke gets 1chorus)- 10점 Comping2 (All the things 1chorus)- 5점
		기말	자유곡 1곡
	2	중간	지정곡 자작곡 1곡 연주(세션 무제한, improvise 포함)악보 제출
		이론	지정된 standards 20곡 중 당일 랜덤으로 2곡 연주
		기말	자유곡 자작곡 1곡 연주(세션 무제한, improvise 포함)악보 제출
4	1	중간	지정곡 Trio 구성으로 편곡한 standard 1 곡 연주(5분 이상)악보 제출
		기말	자유곡 Trio 구성으로 편곡한 자작곡 1곡 연주 (5분 이상)악보 제출
	2	졸업연주	

재즈피아노 - 3학년 2학기 Standard 20곡	
☑ All The Things You Are	☐ Night And Day
☑ The Day's Of Wine And Roses	☐ Misty
☑ Beautiful Love	☐ It don't mean a thing
☑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 Take The A train
☑ There Is No Greater Love	☐ Alone Together
☑ Have You Met Miss Jones	☐ In a sentimental mood
☑ On Green Dolphin Street	☐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 Some Day My Prince Will Come	☐ Black Orpheus
☑ ST. Thomas	☐ Autumn Leaves
☑ Wave	☐ Cantaloupe Island

20곡 중 ☑10곡이 3-2학기 기말 실기 시험 Standard 곡입니다.
나머지 10곡은 실제 시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도록 권유하는 곡입니다.

3-2학기 / 4-1학기 실용 작 · 편곡 - Standard 10곡	
☑ Blue Bossa	☑ Fly Me To The Moon
☑ Take the "A" train	☑ Autumn Leaves
☑ Black Orpheus	☑ Summer Time
☑ All Blues	☑ Watermelon Man
☑ All Of Me	☑ Cantaloupe Island

실용음악 전공실기 (실용음악 작·편곡)

		과 제 곡	
1	1	이론	① Major7, Minor7, Dominant7, minor b5, Diminish7 ② POP & CCM 中 1곡 Solo Piano 연주 (3분 이상)
		중간	지정곡 : Trio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로 불포함 (장르불문 Real Time Recording)
		기말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 포함 (4분 이상)
	2	이론	① 7modes - 왼손: chord / 오른손: Scale ② Pop Chord 초견 (반주형식)
		중간	지정곡 : Ragtime 中 1곡
		기말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 포함 (4분 이상)
2	1	이론	Ⅱ-Ⅴ-Ⅰ (왼손: Voice / 오른손: Scale)
		중간	선택한 곡 편곡 : Horn & Brass Section 위주, 라이브 연주 선택 (4분 이상)
		기말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 포함 (4분 이상)
	2	이론	① Harmonic minor, Melodic minor Scale ② Ⅰ-Ⅵ-Ⅱ-Ⅴ 12key - Swing & Bossa Nova (반주형식)
		중간	선택한 곡 편곡 : 오케스트라 편곡 / 라이브 연주 선택 (4분 이상)
		기말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 포함 (4분 이상)
3	1	이론	① Altered Scale, Diminish scale (온-반, 반-온) ② Funk Riff & Montuno Rhythm 3개씩 (총 6개 연주)
		중간	지정곡 - Jazz Ballad 1곡 - Solo Piano 연주 (Voice 위주로 3분 이상 연주)
		기말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 포함 (5분 이상)
	2	이론	지정된 Standard 10곡 中 당일 랜덤으로 1곡 연주 (Solo 1 Chorus 이상 포함)
		중간	작곡 1곡 : 라이브 연주 포함 (5분 이상)
		기말	작곡 1곡 ; 영상과 함께 (5분 이상)
4	1	이론	지정된 Standard 10곡 中 당일 랜덤으로 1곡 연주 (Solo 1 Chorus 이상 포함)
		중간	자작곡 : 밴드로 연주 (Trio 이상)
		기말	작곡 1곡 : 영상과 함께 (5분 이상)
	2	졸업연주	

실용음악 전공실기 (기 타)

		과 제 곡	
1	1	이론	① Major scale from any key(2 octaves) ② 7 Mode(C Major any string) ③ IIm7-V7-IM7 and IIm7b5-V7-Im7 chord(Root Position)
		중간	지정곡 Emotive ballad(Guthrie Govan) ,Sleepwalk(Larry Carlton)
		기말	자유곡 1곡
	2	이론	① Natural Minor scale from any key(2 octave) ② 7 Mode(C Major two octave any string) ③ IIm7-V7-IM7 and IIm7b5-V7-Im7 chord(Drop2 middle set)
		중간	지정곡(택1) Blues Force(Larry Carlton) , Affirmation(Geoge Benson)
		기말	자유곡 1곡
2	1	이론	① Harmonic minor scale from any key(2 octaves) ② 7 Mode(any key) ③ IIm7-V7-IM7 and IIm7b5-V7-Im7 chord(Drop2 top set)
		중간	지정곡(택1) Cannonball shuffle(Robben Ford) , Sapphire blues(Larry Carlton)
		기말	자유곡 1곡
	2	이론	① Melodic minor scale from any key(2 octave) ② 7 Mode(2 octave any key) ③ IIm7-V7-IM7 and IIm7b5-V7-Im7 chord(Drop3 lower set)
		중간	지정곡(택1) Revelation(Yellowjackets) , Remember when(Guthrie Govan)
		기말	자유곡 1곡
3	1	이론	① Whole tone & diminished scale(2 octaves) ② IIm7-V7-IM7 and IIm7b5-V7-Im7 chord(Drop3 top set) ③ 코드웍 Jazz realbook 중 택1
		중간	지정곡 Realbook에서 1곡(본인 솔로 2chorus 포함)
		기말	자유곡 1곡
	2	이론	① Lydian b7, Altered, Locrian ♮9 scale from any key(2 octaves) ② IIm7-V7-IM7 and IIm7b5-V7-Im7 chord(Drop2,3 any set) ③ 코드웍 Jazz realbook 중 택1
		중간	지정곡 Chalie Parker Bepop style 중 1곡(본인 솔로 2chorus 포함)
		기말	자유곡 1곡
4	1	중간	지정곡 : 자작곡
		기말	자유곡 1곡
	2	졸업연주	

대학 교과목 해설

교양교육과정 (교양선택 과목)

1) 인간과 예술

- **음악감상과 비평 (Appreciation & Review of Music)**

  우리 삶에 기쁜 마음과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부터 다룸으로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찬송가학 (Hymnology)**

  찬송가의 본질과 의미, 역사와 분류, 사용 등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찬송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예배와 개인예배에서 찬송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 **교회음악개론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교회음악의 개괄적 이해와 적용에 대한 지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예배와 교회음악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미래 팀사역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습득한다.

- **기독교와 문학 (Christianity and Literature)**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기독교 문학의 이해를 돕고 그 결과 목회자의 문학 교양을 증진시킨다.

- **합창 Ⅰ,Ⅱ (Chorus Ⅰ,Ⅱ)**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창음악을 연구하며, 그 중 대표적인 작품 (Major Choral Work)을 선정하여, 한해에 한번 정기연주회로 발표함으로써 연주의 기본 문제들을 습득하고 연구한 합창 음악을 교회에 적용한다.

- **영화와 서사 (Movie and Narrative)**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통해 서사를 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신학생들에게 대중문화의 코드를 접하고 해독함으로써 인간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아름다운 목소리 (Vocalogy)**

  첫째 발성 기관의 구조에 대한 이해, 둘째 발성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셋째 음성기관의 관리 및 각종 기법을 학습한다.

- **음악치료학 I,II (Music Therapy I,II)**

  음악치료학은 다양한 임상영역에서 음악의 치료적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적용 방법 등을 다루는 과목으로, 음악치료학 I을 통해 배운 음악치료의 정의, 음악이 치료로 사용되어 온 발달 과정, 이론적 근거와 원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대상자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임상 현장에 음악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음악심리학 I,II (Psycology of Music I,II)**

  소리의 발생과 전파, 지각과 인지과정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지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인간과 종교

- **종교와 과학 (Religion and Science)**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서 종교와 과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둘이 오늘날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한다.

-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and Culture)**

  기독교 신앙과 문화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 **종교와 예술 (Religion and Arts)**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창작의 시작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교와 예술의 접점은 미술사에서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특히 근대이전의 회화, 건축의 대부분이 종교적 주제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미학적, 현상학적 측면에서 예술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와 예술현상이 갖는 외적 · 내적인 관계를 통찰해 봄으로써 인간/정신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

- **기독교와 세계종교 (Christianity & world's religion)**

기독교와 현대 세계 종교의 사회학적 상황과, 다양한 종교현상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성경인물스토리텔링 (The Storytelling of Characters in the Bible)**

  성경속의 인물들을 탐구하고 그 인물들에 대해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하여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기른다.

- **현대인과 기독교 (The Moderns and Christianity)**

  현대의 이해와 여기에 부합하여 변모하는 현대인의 종교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기본적 전제들에 대한 비교연구들, 그리고 한국사회의 병리현상과 그 대안을 위한 교회의 변혁을 탐구함을 이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 **종교철학 (Comparative Religion)**

  신학이 본인이 신봉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그 종교와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종교학은 역사 속에 나타난 종교 표현, 의례, 현상 등을 취사선택해서 고찰함으로 종교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반면 종교철학은 종교현상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을 파헤치고 종교 교리의 일관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 **비교종교학 (Comparative Religion)**

  비교종교학은 세계의 여러 종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종교학의 한 분야로, 세계의 여러 종교들 속에 공통적인 사실들과 상이점을 추출하여 그것을 비교, 검토하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밝힘으로써, 특히 대한민국의 종교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교회음악사 (History of Korean Church Music)**

  한국인 스스로가 만든 교회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3) 인간과 사회문화

- **여성학개론 (Introduction Women Study)**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을 인식하기 위한 대학 교양교육의 기본학습임

-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회학적 개념과 중요이해를 강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현상을

하나의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연관한 것으로 보게 하는 종합적 시각을 갖추도록 강의한다.

-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개념, 정의 분야, 방법 등의 다양한 영역을 학습한다.

- **다문화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우리나라 다문화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대안을 찾는다.

-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학습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한다.

- **생활과 체육 (Sport for all)**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한다.

- **문화스토리텔링 (Cultural Storytelling)**

  "문화 스토리텔링" 과목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삶의 공간의 문화를 확인하고 그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하기의 기본 요소들을 익히게 된다. 학습자들은 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발전시키는 연습을 하며 좋은 이야기가 공유되고 전파되는 방식을 익혀 삶의 공간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바람직한 문화의 촉진자가 되도록 한다.

- **커뮤니케이션 기법 (Communication Skills)**

  일상생활의 스피치부터 문화예술사로서의 대중 강의 및 인터뷰와 프리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제기법을 교육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를 양성한다.

4) 인간과 과학

- **교회와 멀티미디어 활용 (Church and Multimedia Application)**

  포토샵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드로잉을 위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도가 범용적이다. 따라서 기본 구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활용법을 습득하여 교회 포스터 및 주보를 만드는데 그 목표로 한다.

- **정보와 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홈페이지 구축에 가장 기본인 HTML을 습득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교회 정보화에 이바지 한다.

- **컴퓨터실습 Ⅰ,Ⅱ (Computer Practice Ⅰ,Ⅱ)**

  Computer를 보다 유용한 정보 처리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 작성법을 응용하고, 정보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컴퓨터 통신을 습득한다.

- **생명과 생태 (Life and Ecology)**

  생명과 생태계가 위기에 빠진 오늘 날, 생태적 신앙을 지향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생명과 생태를 이해하며 실천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태적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며, 둘째 생태위기의 구체적인 현실과 자료를 연구한다. 셋째, 성경의 생태적 가르침과 생명과 생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며 탐구한다.

- **현대세계와 과학기술 (Introduction of science & technology)**

  현대세계에서 과학기술이 점유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과학기술의 기본원리를 학습시켜, 현대사회 일원으로서 기초 소양과 자질을 배양시킨다.

5) 인간과 사유

- **인권과 윤리 (Human Rights and Ethics)**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 삶을 지향하는 개인적인 나와 이러한 삶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관계를 인권을 주제로 함께 논의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한 조항씩 읽어가며 그 조항 속에 숨겨진 인권과 윤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인권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간다.

- **논리학 (Introduction to Logic)**

  학문의 기초인 논리, 논술의 의의 및 기초를 배우며 신대원 논술을 준비한다.

-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Pedagogy)**

  교직수강자에게 교육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제 분야를 파악하게 하고, 한국의 교육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의 활동에 필요로 하는 교육심리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특성, 학습에 대한 인지적, 행동주의적 접근방법과 학습동기, 기억과 망각 및 파지, 전이에 관한 이론, 그리고 상담기법과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인간심리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본 강의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을 탐구한다.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신역동적, 성향적, 인본주의적, 행동주의적, 인지적 관점 등을 고찰한다. 또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갖는다.

- **특수아동의이해 (Educating Exceptional Child)**

  첫째, 특수아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특수아의 정의와 분류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특수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할 수 있다. 넷째, 특수아들을 위한 상담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6) 인간과 언어

- **이태리어 (Italian)**

  기초 문법을 중심으로 어문의 기본구조를 접함으로써 성악 학문의 주요 기초인 이태리 가곡, 아리아 및 오페라 전곡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대학영어 III,IV (College English III,IV)**

  대학영어 II의 수준을 마친 이들이 8천어 수준의 고빈도 기본어휘를 형태관계와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익힘으로써 어휘력을 늘리며, 이해와 표현에 핵심이 되는 구문들을 심화학습하고, 영어 텍스트 구성의 일반원리를 적용하여 기본적인(high beginning or low intermediate level) 영어 텍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영어 개요(outlines) 작성함으로써 전문정보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영어를 더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 **실용영어 I,II,III,IV (Practical English I,II,III,IV)**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영어표현을 익히고 활용하는데 역점을 둔다.

- **독일어 I,II (German I,II)**

독일어의 발음과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게 하여 간단한 문장을 읽고 회화를 습득케 한다.

- **문학개론 (Introduction to Literature)**

  문학에 대한 정의, 문학의 장르와 이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동시에 문학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 상징, 알레고리, 문체, 플롯, 메타포에 대한 간략한 지식을 습득한다.

- **언어와 화법 (Language and Speech)**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만큼 갈등도 다양하게 표출된다. 갈등의 조정과 협상, 설득을 위해 말하기의 기법이 필요하다. 특히 신학생들은 설교를 염두에 두고 언어와 말하기에 대한 이해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 **학문적 글쓰기 (Academic Writing)**

  <독서와 작문>에서 익힌 이론과 실제를 전제하고, 본격적으로 서평, 보고서, 소논문 등 학문적인 글을 쓰는 훈련에 집중한다.

- **영어스피치 (Speaking in English Made Easy)**

  “영어스피치” 과정은 학습자의 영어 기본 능력을 길러 영어로 쉬운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영어로 설득적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어 성서를 활용하여 영어 전도 말하기와 같은 표현력을 기른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 **영어회화 Ⅰ,Ⅱ,Ⅲ,Ⅳ (English Conversation Ⅰ,Ⅱ,Ⅲ,Ⅳ)**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develop basic English conversational skills.

7) 인간과 세계

- **교회와 사회 (Church and Society)**

  다원화 시회 속 반(反)기독교적 정서 등,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사회의 소통”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경제와 세계 (Economy and the World)**

  교양인이 알아야 할 경제와 경영의 기본개념을 강의하고, 성경적 기업관과 직업관, 재물관을 갖게 한다.

• 언어와 미디어 (Language & Media)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언어와 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디어에 나타난 언어현상과 문법구조를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고양하고자 한다.

• 법과 정의 (Law and Justice)

실정법인 세상의 법과 정의의 개념정립을 하고, 특히 사회규범과 종교적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비교 검토하며,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한 법과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8) 인간과 역사

• 기독교고전과 역사 (Christian Classics and History)

기독교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에 있어서 기독교 고전을 탐독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교회사 속의 고전 작품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어거스틴의 「고백론」,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스페너의 「경건한 소망」등의 기독교 고전 읽기를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를 개괄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 기독교신앙의 역사 (History of Christian Faith)

성서시대부터 교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신앙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성서의 형성과정의 역사와 성서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온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괄한다.

• 한국사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개개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역사가의 바른 선택으로 이루어진 역사야말로 진정한 역사라 할 것이다. 우리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함과 아울러 우리 지역사와도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폭넓은 한국사가 될 것이다.

• 동양사상사 (The History of East Asian Thoughts)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중심으로 인도의 힌두교와 동남아시아의 불교사상, 이슬람 사상들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선교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폭넓고 교양 있는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한다.

• 서양사의이해 (Interpretations of Western History)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더 잘 이해하여, 나의 받은바 소명을 잘 이루어나가는 역사

관을 올바로 형성한다.

- **한국풍속사 (History of Korean manners and customs)**

  민속은 조상들의 지혜와 생각을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마당을 열어준다. 아울러 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여성의 삶 또한 살펴본다면 더욱 이해의 폭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역사와신학 (History and Theology)**

  본 과목에서는 역사와 신학의 상관성과 역사속에서 이룩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구를 기초로 구체적 역사적 사건을 두고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역사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신학함의 훈련을 또한 그 목표로 한다.

신학과

1. 교양필수과목

- **기독교의이해 (Understanding the Christianity)**

  신학에 처음 입문한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와 타 학문과의 상호 관계성을 폭넓게 함으로 포괄적 학문 자세로 기독교에 접근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독서와작문 (Reading & Writing for the College Students)**

  남의 글을 읽고 저자의 생각, 견해, 주장을 이해는 것과 내 생각, 견해, 주장을 글로 표현해서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모든 학문 활동의 필수적인 토대이다. 이 강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로 짧은 글을 쓰는 훈련에 집중한다.

- **대학영어 I , II (College English I , II)**

  본 강의는 신학을 위한 대학영어로 신학적 영어 독해가 가능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통하여 보다 깊은 신학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세계문화사 (The History of World Culture)**

  글로벌 시대를 사는 현대인으로서 세계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본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을 기른다.

- **철학개론 (Introduction to Philosophy)**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자유 관념을 연구하며, 학문으로 고대 희랍 철학에서부터 중세철학, 근세철학,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제반 이론을 개론적으로 연구하여 학문의 기초로서의 철학을 이해케 한다.

- **인간과 종교 (Human and Religion)**

  대한민국의 종교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공필수과목

- **구약통독 (Reading the Old Testament)**

  구약신학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로서 구약성서를 통독하는 입문과정이다.

- **신약통독 (Reading the New Testament)**

  성서개론과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성서내용을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한다. 체계 있는 신학 연구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교회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교역자에게 필요한 성서 이해를 추구한다.

- **구약성서이해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구약성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구비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구약학의 주요 분야들을 차례로 공부하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각 책들의 중심 내용과 신학을 아울러 정리한다.

- **신약성서이해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의 역사적 배경, 비평학을 공부하여 신약성서를 개론적으로 이해한다.

- **신학총론 (Theology)**

  기독교 신학 역사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탐구한다.

3. 전공선택과목

- 구약

- **창세기연구 (A Study of Genesis)**

  창세기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해설을 통한 창세기의 고유한 메시지를 연구하며, 신약문맥과 경건적 연관성 및 오늘날 현대 과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세기가 의미하는 적합성과 연속성 및 단절성을 탐구한다. 역사 비평적 방법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본문 해석 문제들과 고대 근동 종교와 그 문헌들과의 비교검토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루어진다.

- **성서와 한문 (Bible and Chinese Writing)**

  개역번역의 한문투의 문장이해를 위해 기초적인 한문부터 연구한다.

- **역사서연구 (A Study on the Book of I & II Kings)**

  구약역사서 부분을 사관에 따라 개괄한다.

- **레위기연구 (Study on Leviticus)**

  레위기를 연구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와 신약과의 관련을 밝힌다.

- **히브리어 (Hebrew Grammar)**

  알파벳을 포함한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배움으로서 구약,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성서지리학 (Biblical Geography)**

  성서지리를 공부하고,여름에 성지를 답사하여 성서지리와 문화에 따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무엘상원전강독 (Samuel: Readings in the Hebrew Bible)**

  히브리어 문법에 기초하여 구약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함으로써 구약 원문을 주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신약

- **신약성서배경사 (The Backgrounds of N.T.)**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신구약중간시대의 이해와 사상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 **사도행전 (The Acts)**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익혀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봉사에 유익을 얻는다.

- **바울서신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 중에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저자, 연대, 일반적인 서론을 취급하고 바울 신학의 교의 및 교회론의 제반문제와 각 권의 내용을 분해하여 연구한다.

- **공동서신 (The General Epistles)**

  공동서신의 문서상 성격, 신학등 개론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본문을 석의하여 오늘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게 한다.

- **헬라어 (Greek)**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 대한 기초문법을 습득하여 신약원전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 **신약원전강독 (Reading New Testament in Greek)**

  헬라어 기초 문법지식을 토대로 헬라어 성서 원문을 스스로 해석 및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 **성서지리학 (Biblical Geography)**

성서지리를 공부하고,여름에 성지를 답사하여 성서지리와 문화에 따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약성서주제들 (The Subjects of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에 나타난 신앙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조직신학

- **근대신학개관 (An Introduction to Modern Theology)**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근대신학의 중심주제들과 신학논쟁들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또한 새롭게 주어진 신학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 **현대신학개관 (Modern Theology)**
  18세기 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신학사상의 큰 흐름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쉬라이에마허에서 시작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키르케코르 이후에 나타난 신 정통주의의 변증법적 신학자들 및 몰트만 이르기까지에 광범위한 신학사상을 소개한다.

-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개혁교회와 신학의 특징을 연구하며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요리문답서인 제네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비교 연구한다.

- **조직신학세미나 (A Seminar on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의 주요 교리와 주제를 공부하는 세미나로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령론을 다룬다. 이 수업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오늘 날 세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성경에 나타난 성령 이해, 역사속에서 발전된 성령론, 그리고 참된 성령운동과 신학의 방향을 살펴본다.

- **조직신학개관 (Systematic Theology)**
  신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배운다.

- **신학방법론 (A Study of Theological Method)**

이 강의는 조직신학 서론(prolegomena)에 관한 것이다. 신학이 무엇이며, 신학의 기능은 무엇이며, 신학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룬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심"(Deus dixit)에 의존하기에 계시(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성서에 기록되었기에 성서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성서에 근거해서 신학해야함을 배운다. 이와 관계해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는 믿음의 문제(신앙론)를 다룬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신학해야함을 배운다. 신학방법론과 관계해서 루터, 칼뱅, 바르트, 틸리히, 몰트만의 신학방법론을 함께 연구한다.

- 기독교윤리

- **신학과 윤리 (Theology and Ethics)**

  본 교과목은 개혁교회의 신학적 전통에 근거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의 의미를 역사적이며 실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독교공동체역사 (A History of Christian Communities)**

  초대교회는 공동체였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이다. 이 본문은 역사속에서 교회가 본래의 모습, 또는 본질을 회복하려 할 때 중요한 성서적 역사적 전거가 되어 있다. 이 전제 아래, 기독교 역사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국내외 기독교 공동체들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 **성서와 윤리 (Bible and Ethics)**

  성경과 윤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곧 윤리적인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수많은 물음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제기 된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찾아 답을 해보고자 한다.

- **신앙과 윤리 (Faith and Ethics)**

  신앙과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신앙의 적용을 위한 윤리적인 여러 이슈들과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들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

- 기독교교육

- **기독교영/유아교육 (Christian Young Children Education)**

기독교 관점에서 영유아교육의 기초, 발달적 특성, 환경구성, 교사 자질과 역할 등을 살피고 교회교육에서의 실제들을 다루는 것이 본 강의 목표이다.

- **기독교아동/청소년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아동과 청소년의 제 특성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문화와 교육 현장 속에서 아동. 청소년 교육목회 사역자로서의 교육적 자질을 구비케 함에 있다.

- **기독교생명/평화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peace and life)**
  생명과 평화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이론을 이해하고, 그 기본 원리들을 실제 교육목회에 적용하여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교회교육의실제 (Practice of Church Education)**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서교육의 제 방법론과 실제를 익혀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도력을 배양함에 있다.

- **기독교교육개론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신학적 기초를 고찰하고 다양한 그 기초적 이론을 개관한다.

- 교회사

- **한국교회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Church History)**
  한국 선교와 토착의 과정을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살피고 한국 민족교회 형성과정을 살핀다.

- **기독교사상사 (History of Christian Thoughts)**
  기독교가 발전함에 따라 사상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신앙이 기초를 이루었다. 본교과목은 기독교 사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선조들의 신앙과 사상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독교문헌과신앙 (Christian Literatures and Faith)**
  본 강의는 초대로부터 중세와 근대까지 이르는 교회사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문헌들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초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종교성에 대한 이해는 특히 신비주의 전통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신비주의자들의 문헌들의 읽기를 통하여 기독교를 보다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종교개혁인물사 (The Reformers in the 16th Century)**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여러 인물들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고, 개혁자들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개혁이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돕는다.

- **종교개혁지탐방연구 (Research on Reformation Cities)**

  종교개혁지 현장 방문을 통해,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한국교회이단분파사 (A History of Heresies and Sects in Korean Church)**

  한국교회사에 나타나는 이단분파의 생성과 전개, 소멸에 대한 역사를 사회, 정치, 문화,종교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한 통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한국기독교 역사관 확립을 목표로 한다.

- **기독교와순교 (Martyrdom in Christianity)**

  본 과목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순교'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모색해 본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생명의 존속'의 역사의 두 축으로 '순교'의 담론들을 분석하여 현재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본받음'을 찾고자 한다.

- 선교학

- **성서와선교 (The Bible and Mission)**

  성서적 바탕 위에서 오늘날 선교와 교회 현장을 살펴보고 실천적인 선교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선교와타문화 (Mission and Non-Christian Culture)**

  선교와 타문화 과목을 통해 선교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

- **교회와선교 (Church and Mission)**

  21세기 문화적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관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둔다.

- **성서적 선교신학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선교를 성서적 토대위에서 전검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선교관과 교회론을 정립하는데 있다.

• **교회와 선교신학 (Church and Mission Theology)**

본 과목을 통해 21세기 현대 교회에가 처한 위기상황들을 살펴보고, 21세기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탐구한다.

• **타문화선교전략 (Cross-Cultural Mission Strategy)**

이 과목은 타문화 선교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탐색하며, 선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선교 전략과 정책들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다.

• **전도의 실제 (The practice of Evangelism)**

현대 교회의 가장 어렵고 시급한 복음 전도의 학문적 접근과 이론들을 연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도 전략들을 탐구하는데 있다.

• **현대선교와 교회 (Contemporary Mission and church)**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탐구하고 그들의 교회론을 선교학적으로 연구함으로 교회론의 지평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설교학

• **청소년설교 (Preaching for Youth)**

청소년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이론들을 연구하고, 연구된 이론에 근거하여 설교를 작성, 구현해봄을 목표로 한다.

• **설교작성법 (Sermon from Text)**

본 과목은 설교자가 주어진 본문으로부터 한 편의 설교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즉 학생들은 본 과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실제 설교 현장에 있는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의 설교 형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을 훈련한다.

- 예배학

• **예배와교회학교 (Christian Worship and Sunday School)**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예배와 교회학교와의 관계 및 올바른 적용한다.

• **예배의역사 (The History of Liturgy)**

예배의 역사를 통해 그 의미와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 영성학

- **영성생활의입문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Life)**

  본 강좌는 영성생활의 핵심인 기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별히 각 개인 뿐 아니라 공동의 기도 생활을 개발하는데 본 강좌의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각 개인은 자기에게 적절한 기도 형태를 발견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과 제자도의 삶을 사는 방식들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 **한국문화와 영성 (Korean Culture and Spiritual)**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시아의 동양영성과 이와 관련된 한국 종교문화의 영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교회와 사회관계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더욱 의미 있게 섬기며 사역하는 모습이 요청된다. 특히 한국종교문화 속의 구원관과 치유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효과적 복음 선교를 명확히 한다.

- **생태영성의 실천 (The Practice of Eco-spirituality)**

  생태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독교 신앙과 생태적 삶으로 응답하기를 지향한다. 본 과목이 끝나면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발급하는 "기독교환경지도자" 자격증과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 드린다.

- **유럽수도원현장탐방연구 (Research on the Monastery in Europe)**

  유럽의 수도원들을 탐방함으로써 1. 수도원 영성을 몸으로 느끼고 2. 현 한국교회의 영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3. 수도원 영성들과 유럽 문화와의 관계를 맛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목회상담학

- **목회상담심리학 (Astrol Counseling Psychology)**

  목회상담의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상담의 기술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며 정신 장애에 대해 이해한다.

- **기독교상담학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기독상담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기독상담의 상황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들과 그에 대한 상담방법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여 상담의 기본 기술을 습득한다.

- 신학일반

- **영어신학강독 Ⅰ,Ⅱ (Reading Theological Texts in English Ⅰ,Ⅱ)**

  신학 영어 독해력을 위한 훈련과 병행하여, 신학 연구의 제반 지식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 **독어원서강독 Ⅰ,Ⅱ (Reading Theological Texts in German Ⅰ,Ⅱ)**

  현대 독일의 신학서나 논문집 중에서 주요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강독하며, 동시 독일어 고급 문법의 습득과 독해력 향상에 특히 비중을 둔다.

- **라틴어(Latin)**

  라틴어 문법 및 구문론을 배워 라틴어 문헌을 읽기 위한 것이다.

- **라틴어강독(Reading in Latin)**

  라틴어로 된 초대, 중세 기독교 문헌들을 읽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회복지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며, 사회복지학의 연구 및 실천방법, 사회복지 실천의 미시적 분야와 거시적 분야, 사회복지 실천방법론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동향을 이해한다.

- **사회복지 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 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기초 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기초 철학과 가치, 통합적 시각, 사회복지 실천 관계론 및 과정론, 사회복지 실천 대상별 실천모델, 사례관리 등을 검토한다.

- **사회복지 행정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공적 및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조직과 이들의 연계체계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요원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현장 실습(Practical Placement)**

  사회복지 실습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학문에 대한 깊이를 다진다. 다양한 사회사업 실습 기관에서 실무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사례)을 강의실에서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임상 사회복지에 대한 학문적 깊이와 실무경험에 도움을 준다.

2. 사회복지 선택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인간발달과 행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태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인류적, 생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인간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임상 사회복지방법의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발견하는데 기초가 된다.

-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Skills and Technig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 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을 통해 실천기술, 기법, 지침을 실천 대상에게 적용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 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과 사회복지 정책의 출현배경에 관한 사회복지정책 이론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 내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알아보고, 그 분석틀에 의거해 현행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아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을 학습하여 아동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의 이해를 도모한다.

- **사회복지 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조사방법의 기본원리인 과학성과 논리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실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사회복지적 개입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특별히 사회복지 조사의 개념과 기초이론, 조사결계의 이론, 유형, 방법, 자료수집의 방법, 자료의처리와 분석 등에 관한 기법을 습득한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복지이론의 체계화를 위한지식의 산출과 사회복지의 효과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다.

-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노화의 제 측면에 관련된 이론의 검토를 통해 노화가 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노인 문제를 이해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및 실천방법에 대해 배움으로써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 가치와 목적 및 일반 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 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분야별 법 내용들을 학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되어지는가를 이해함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

- **자원봉사론(Volunteerism)**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학생들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적인 준비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Social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원조 기술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킨다.

- **아동발달 (Child Development)**

  발달심리 이론에 근거하여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특성을 인지, 성격, 사회발달 등의 세부영역별로 이해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기제를 다룬다.

- **가정생활교육 (Family Life Education)**

  가정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론과 실제들을 습득하고, 다양한 가족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여성과 사회(Women and Society)**

  현대사회 여성의 변화가 심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 및 제 기능의 변화는 지체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수준이 미약한바, 여성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능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문제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천영역의 현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특히, 장애에 접근하는 시각을 포함한 가치와 이념, 장애문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의 가치, 이론, 기술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애인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로서 실천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교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School)**

  학교사회사업의 개념을 알고 그에 따른 이론적 체계와 실제 프로그램 습득을 본 강의 목표로 둔다.

- **가족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Families)**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문제 등에 관해 학습하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 현황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가족복지 서비스 대상,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치료적 접근 등을 교육한다.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ork)**

  사회복지학은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 있어서 과학적 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조사(연구)자료를 분석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현상을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습한다.

- **프로그램개발및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계획을 준비하며 구체적 목표세우기와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평가모형 등을 배움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 기르고 현장의 능력있는 실무자가 되도록 한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Social welfare Morality & Philosophy)**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논점에 관해 논의한다. 윤리강령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상황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각 사회복지 주체들의 가치관의 이해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학생들 각자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적합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 분야의 질환을 이해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익힌다.

- **가족치료 (Family therapy)**

  전통적인 가족치료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며, 임상경험과 실제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전반적인 면을 고루 갖춘 전문상담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 **교회사회복지론(Church social work)**

  교회사회복지론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성서에서 나타난 기독교 사상과 사회복지 각 영역별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복지발달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을 알아보며, 기독교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부하게 된다.

- **건강가정현장실습(Healthy Families Practice)**

  건강가정 현장실습은 건강가정 관련 이론 공부를 마친 학생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실습하여 보는 과목이다. 현장에 있는 건강가정사들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여 봄으로서 건강가정사로서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직접 서비스 대상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다양한 가족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급변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실천 기법인 사례관리의 이론적 이해 및 적용 방안을 습득하도록 한다

- **교정복지론(Correction Social Work)**

  교정복지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 후에 행형 제도와 교정제도를 학습하며, 교정제도와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관련성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교정복지의 실천방법을 학습한다.

- **인지심리와 사회복지실천(Cognitive psychology and Social Work Practice)**

  인간마음의 작동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응용학문적 실천을 학습한다.

3. 상담 필수과목

- **발달심리 (Developmental Psychology)**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담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독교 상담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은 심리치유, 내적치유, 영성치유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육으로 다양한 문제와 긴박한 상담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고 전인적 치유능력을 겸비한 기독교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상심리 (Abnormal Psychology)**

  이상행동을 분류 소개하여 불안장애, 정서장애, 정신분열증 및 성격장애 등의 증후와 원인들을 다룸으로써 그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을 알고 이상심리 및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을 돕는다.

-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집단상담의 기본원리와 특징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를 둔 여러 유형의 상담에 대해서 익히고 집단 상담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상담실습과 자신의 감정인식과 더불어 가치관 태도 신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한다. 또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예민성을 증가시키고 집단상담의 효과를 관찰하고 경험하도록 한다.

4. 상담 선택과목

-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심리학의 정의와 이론들을 살펴보고 실제 상담의 내용, 과정, 영역과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최근의 상담심리 동향을 알고 현대 상담자로서 필요한 상담이론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Theory & Practice of counseling for Youth)**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대한 발달상의 특징과 이 시기의 적응 문제를 살펴보고 이것을 해결하기위한 상담이론, 실제적인 기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 **정신분석 (Psychoanalysis)**

  정신분석의 기본 이론과 기법을 배워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내적 갈등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여 정신분석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활용하여 기독상담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는데 있다.

-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산업과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적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증가,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의 취업기회 감소, 급격히 확장되고 점차 복잡해지는 일의 세계, 직업 요구조건의 변화 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 상담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며 진로상담의 이해, 상담의 이해,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진로의사결정 이론, 진로정보제공활동, 진로심리검사 등 진로상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 **상담연구법의 기초 (Foundation of Counseling Research)**

  상담실습자들이 상담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역동의 진단 상담목표와 전략 상담기법 상담효과와 미래의 과제 대안 등에 대한 토론 및 평가를 지도한다.

- **중독상담 (The addiction Counselling)**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최근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파악, 중독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자기이해를 목표로 한다.

- **심리측정및평가 (Psychological Testing and Evaluation)**

  임상현장 또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심리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익힌다.

- **상담면접원리 (Principles of Counseling)**

  상담의 면접원리와 상담면접의 주요방법을 이해하고, 상담면접의 각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기법과 기술등을 익힌다. 더불어 주요기법과 기술들은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게 한다.

- **성상담 (Sexual Counseling)**

  인간의 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소양을 함양하며, 성교육, 성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지식, 태도,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 **위기상담 (Crisis Counselling)**

  현대인들은 위태롭고 위험한 일들을 빈번하게 겪으면서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본 강의의 목표는 자살, 이혼, 폭력, 중독, 상실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 위기 상황에 대한 접근에 대해 효율적인 개입의 전략을 학습한다.

- **상담현장실습(Practice of Counseling)**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주요개념을 학습한 내용을 상담현장에서 내담자 경험을 통하여 상담전문성을 익힌다. 또한 교회와 상담기관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 **학습심리학(learning psychology)**

  학습 과정에 관한 가설(假說)을 세우고 이를 실험에 의하여 검증(檢證)하는 일을 시도(試圖)하는 심리학의 한 영역으로서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의 학습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기법을 학습한다.

- **청소년이해론(Introduction to Youth Science)**

  인간학적으로나 생애학적으로 볼 때 일정한 인간의 성장과정 중 한 기간을 보내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철학적, 심리적 논의 그리고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와 청소년학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는다.

- **청소년 수련 활동론(Youth Activity Program)**

  청소년의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실천방법을 학습한다.

신학대학원 교과목 해설

구 약 학

- **구약원전 강독(Readings in the Hebrew Bible)**

  히브리어 문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히브리어 문법에 기초하여 구약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주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 **구약학 개관(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성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구비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구약학의 주요 분야들을 차례로 공부하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각 책들의 중심 내용과 신학을 아울러 정리한다.

- **예언서(The Prophets)**

  구약 예언의 본질을 이스라엘 종교사의 기본 틀에서 규명함과 동시에 예언서 해석의 역사와 고대 근동 지역의 예언 현상을 살피고 예언 운동의 기본 특징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언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검토 연구하는 한편으로 예언서를 주석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본 과목의 목적으로 한다.

- **구약과 고대 근동(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구약성서의 배경을 이루는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와 종교 및 문화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으로 구약성서와 고대 근동 문헌들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본문 비교 중심으로 연구하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신 약 학

- **누가복음 (The Gospel of Luke)**

  선수과목: 신약학개관, 초급 헬라어

  이 교과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익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약성서 해석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법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에 복음해석에 중요한 방법인 문학 역사비평을 배운다.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 누가복음을 실제로 해석함으로써 복음서 해석을 실습하게 되고 아울러 누가복음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배우게 된다. 강의 방법은 강의와 전체 토론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법을 먼저 배우고, 다음으로는 문학

-역사비평에 의한 누가복음 일부 본문 해석의 예를 강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조별 연구를 통하여 연구한 누가복음의 해석을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고찰해 본다.

- **비유연구 (Interpreting the Parables)**

  선수과목: 신약학개관, 초급 헬라어

  비유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독특한 메시지를 자장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러한 비유를 살펴봄으로써 예수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비유를 해석해 가는 중에 비유의 해석법도 익히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비유 해석에 많이 쓰이는 해석법을 정리하고 그런 다양한 해석법에 의해 비유들을 해석해 본다. 수업은 강의를 통해 비유 해석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 비유 해석법을 배운다. 그리고, 역시 강의와 전체 토의를 통해 몇 개의 비유를 다 같이 해석해 본다. 그 다음에는 조별로 주어진 비유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통해 비유의 메시지들을 파악한다.

- **신약성서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선수과목: 신약학개관, 초급 헬라어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신약신학은 교의학과도 다르고 신약성서 해석학과도 다르다. 그래서 신약신학은 특정 본문의 해석을 넘어서 신약성서 저자들이 자신의 책을 통해 보여주는 주요 가르침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들이 혹은 각 책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신약성서 27권의 책을 다 각각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저자별로 묶어서 그 저자들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수업 내용은 신약신학이란 학문이 발전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공관복음의 신학, 요한의 신학, 바울의 신학, 그리고 다른 책들의 신학들도 간략히 살펴본다. 수업 방법은 신약신학의 개괄적 내용을 강의와 전체 토의를 통해 익히고, 신약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조별 연구와 발표, 그리고 토의를 통해 고찰한다.

- **교리서신 (Doctrinal Epistle)**

  바울서신중 교리서신을 이해하여 바울의 3원론의 핵심을 이해한다. 3원론은 인간의 죄와 의인, 성화사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 **신약성서주석의 실제 (Practice of New Testament Exegesis)**

  설교의 기초가 되는 주석방법론을 익히고, 그에따라 실제로 주석하는 과정을 실습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발표한다.

- **헬라어(Greek)**

  신약성서의 원어를 이해하여 신약성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다.

- **신약학 개관(Introduction to the N. T. Studies)**

  신약 각 문서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과 연구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므로 신약문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 **요한복음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서의 제반 연구과정과 요한의 중심사상들을 소개함으로 요한복음서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있다.

- **신약성서 원전강독 (Reading the New Testament in Greek)**

  헬라어 기초문법을 토대로 헬라어 원문을 스스로 해석 및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역 사 신 학

- **종교개혁사 (History of the 16th. Century Reformation)**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과 종교개혁 신학사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종교개혁 운동의 배경과 종교개혁 이전 개혁자들의 사상을 살펴보고 6가지의 종교개혁운동의 역사와 사상을 다룬다. 루터, 쯔빙글리, 칼빈, 영국종교개혁, 급진종교개혁, 카톨릭 종교개혁운동이다.

- **중세신학연구 (Medieval Christian Theology)**

  590년 그레고리 교황의 즉위 이후 중세에로의 전환기 신학과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등등 신학자들의 사상을 원문분석을 통하여 연구하는 과목이다.

- **역사신학개론 (Proseminar on Historical Theology)**

  교회사 연구방법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교회사를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세, 현대로 나누고 각각 영역별 연구방법론을 강의한 후 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10가지의 연구주제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훈련을 받는다.

- **근세교회사 (History of the Modern Church)**

  종교개혁 이후 17-8세기 정통주의, 계몽주의, 경건주의 시대의 신학과 역사를 논하
  고 19-20세기 교회사의 중요주제와 신학사상의 흐름을 살펴본다.

- **고대기독교 사상 (History of Thought of the Early Church)**

  초대 기독교 형성에 사상적 영향을 끼친 중간기 시절의 유대주의를 살피고, 기독교 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친 희랍의 신화와 종교적 영향력을 살핀다. 그 다음으로 희랍철학가운데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초기 기독교 사상 형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초기 기독교 사상 형성을 주제별로, 교회와 국가, 교회와 예배, 교회와 박해, 이단과 정통,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을 다룬다.

- **교회사 개관(Introduction to Church History)**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사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초대교회사 부분에서는 사도시대, 사도후기시대, 교부시대, 각종 교리논쟁을 다룬다. 중세교회사는 3부분으로 나누어, 초기중세에서는 어거스틴과 그레고리 대왕을 다루고, 중기중세에서는 샬레마뉴가 세운 신성로마제국의 설립과 교회와 정치의 상관관계, 평신도 서임권 논쟁, 그리고 사고백제도의 발달에 대하여 살핀다. 후기중세에서는 스콜라 신학의 흐름, 십자군 전쟁, 후기유명론의 구원을 다룬다. 종교개혁에서는 루터파, 개혁교회파, 성공회 그리고 재세례파, 신령주의자, 반 삼위일체파를 다룬다. 현대교회사에서는 정통주의 신학과 이를 거부하는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운동과 현대의 선교운동을 다룬다.

- **라틴어 (Latin)**

  기독교 신학은 터툴리안(Tertullian)이후 라틴어로 신학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어거스틴에 의하여 체계가 수립되고, 중세 1,000년과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신학은 라틴어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라틴어는 신학연구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신학적 깊이를 더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필히 익혀야 할 어학이다. 또한 라틴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라틴 언어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서 서구 선진신학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통로이다. 동시에 영어를 뿌리부터 통달시켜 주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다. Wheelock 이 지은 교과서 가운데 기본 문법편을 제1과에서 30과까지 교실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40과까지는 개인이 독학으로 공부한다.

- **라틴어 강독(Readings in Latin)**

  라틴어 기본문법을 터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라틴어 원서를 읽는데,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는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격년제로 읽는다. 이 강독을 통하여 라틴어 원서읽는 능력이 습득함으로써 혼자서 라틴어 신학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강독시간을 통하여 기본문법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로 유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도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조 직 신 학

- **현대신학 (Modren Theology)**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현재까지의 신학사상의 큰 흐름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I. Kant 이후 Moltmann의 신학의 주요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나는 것이 목적이다.

- **교회론 (Ecclesiology)**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과 표지, 중세 카톨릭의 교회론,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과, 한국교회의 미래적 발전을 위한 사회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최신신학 (Contemporary Theology)**

  최근 현대신학의 흐름들인 신 죽음의 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과정신학, 생태학적 신학, 여성신학 등을 다룬다. 각 신학 사조의 출발점이 되었던 문제의식과 각각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서, 현대상황속에서 신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

- **기독교와 과학 (Christianity and Scienc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기독교와 과학이 초대, 중세, 현대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학적인 발전이 신학과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부함으로, 현대 과학문명 속에서 신학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얻는다.

기독교교육학

- **기독교교육학(Christian Education)**

  신학적 통전성과 교육적 효율성을 담지한 교육목회(Educational Ministry)를 계획, 설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고히 한다.

- **기독교 대학/청년교육(Christian Young Adult Education)**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청년을 이해하고 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학을 학습한다.

- **기독교 성인/노인교육(Christian Adult/Senior Educaton)**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성인과 노인을 이해하고 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학을 학습한다.

- **소그룹운영과 성서교육(Small Group Education)**

  소그룹운영방식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성서교육을 위한 적용을 시도한다.

- **기독교교육신학(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의 간학문적 대화를 통해 신앙교육의 신학적 근거를 이해하고 목회계획을 수립하도

록 지원한다.

- **기독교성례교육(Christian Education and Liturgy)**

  교육목회를 위한 성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례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 **여성과 목회(Women and Ministry)**

  생명목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교회여성의 목회적 지원을 위한 목회방안을 탐색한다.

기독교윤리학

- **기독교윤리사상사 (The History of Christian Ethical Thoughts)**

  18세기까지의 기독교윤리사상사를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각 시대의 주요한 기독교윤리사상가들의 도덕적 결단 과정에 대한 견해와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일관성있게 정리하여, 윤리 사상의 발전 과정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대기독교윤리사상 (Contemporary Christian Ethical Thoughts)**

  19, 20세기의 기독교윤리 사상에 있어 주요한 신학자들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알브레히트 리츨, 월터 라우센부쉬 등의 19세기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죤 요더 등을 위시한 미국의 신학자들과 자끄 엘룰, 투르쯔 렌토르프 등의 유럽의 윤리 학자들 및 레오나르두 보프, 구스따뽀 구띠에레즈 등의 제 삼 세계 신학자들의 윤리사상이 연구될 것이다.

- **기독교정치윤리 (Christian Political Ethics)**

  기독교 정치윤리에 대한 현대의 견해를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전체적으로 샬롬의 정치학이라는 주제 하에 기독교정치윤리의 입장이 조망될 것이다. 먼저는 성서와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의 샬롬의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서가 말하는 샬롬의 구원관을 이사야서를 중심하여 전개한다. 이러한 샬롬의 구원관에 따른 샬롬의 정치학을 현대신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 **한국개신교신학 (Korean Protestant Theology)**

  20세기의 한국의 개신교 신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예장의 보수주의 기장의 진보주의 및 감리교의 토착화신학이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될 것이다. 다음으로 21세기의 한국개신교 신학에 대한 전망을 통해 본 교단 통합신학이 나아갈 길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한국개신교신학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논문들을 선별 검토함으로써 한국신학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는 것도 본 강의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 **기독교적 학문연구 (Christian Research of Learning)**

  일반학문과 신학과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본 강의 목적이다. 지역의 여러 학문 분야의 교수들을 초빙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와 신학과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려 한다. 인문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의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등 여러 방면의 학문에 대한 이해와 그 학문에 대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이해를 고찰함으로써 신학적 전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이다.

선 교 학

- **농어촌목회 (Rural and Fishery Ministry)**

  농어촌교회에서 목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농어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총회 농어촌부와 지역 노회의 농어촌 선교 담당자 및 현재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함께 대화함으로서, 농어촌 목회를 위한 계획이 보다 신학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총회, 노회와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선교신학 (Introduction to Theology of Mission)**

  현대선교신학이 어떻게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이를 위해 선교신학의 위치, 선교의 역사,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비교, 하나님의 선교, 한국교회의 선교, 민족통일과 북한선교 등에 관해 논의한다.

- **에큐메닉스 (Ecumenics)**

  에큐메니칼 운동의 큰 주제인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교회됨의 의미를 개혁교회신학의 빛안에서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교회의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하나로 보며, 이 둘을 연결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예 배 학

- **예배학 (Christian Worship)**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무리들이 그의 명령대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별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 예배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은 그 본질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과목에서는 예배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하여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 **예배의 실제 (Practice of Worships)**

  선수과목: 담당교수로부터 1학년 2학기에 예배학을 이수한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정은 예배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예배의 현장을 직접 집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일반예배에서부터 장례예배까지 직접 집례함으로써 목회현장에서 직접 대하게 되는 예배의 다양성을 경험토록 하는 것에 또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목은 강의중심이 아닌 실습중심으로 하며 교수는 해당된 예배의 의의와 필요한 점들을 설명하여준다. 학생들은 중요한 예배 신학적인 요소를 담은 예배순서를 연구작성하여 그 예배를 직접 집례하면서 예배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한다.

- **칼빈의 성찬 성례전 (Calvin's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성찬 성례전은 세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영속되도록 그 분의 교회에 주신 성례전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성찬 성례전은 초대교회로부터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의 예전은 다락방의 예전이라 부르는 성찬 성례전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 성례전은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그리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각 교파간의 성찬 성례전에 대한 차이점 또한 명확히 설명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 본 과목에서는 장로교회의 근원이 되는 칼빈의 성찬성례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찬 성례전의 성서적 고찰 및 역사적 이해를 함께 살펴본다.

목회신학

- **목회실습 I-VI (Practicum for Ministry)**

  목회실습은 모든 신대원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개설되는 과목으로서, 목회에 필요한 영성을 개발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교역의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목회상담학 (Pastoral Care & Counseling)**

  목회 상담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상담기법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와 이론의 습득을 통하여 현대 기독교인들을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목회자를 훈련한다.

- **성격심리와 치료(Personality Theories and Therapy)**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자들의 저술을 연구하고 강의함으로 목회현장에서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위기와 치유상담 (Crisis and Therapeutic Counseling)**

목회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목회자 또는 사모로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목양의 관점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습과 훈련,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한다.

- **목회상담과 성(Pastoral Counseling and Sexuality)**

  성에 대한 건강한 관점과 의식을 고양하여 목회자로서 신앙과 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더 나아가 건전하고 전인적인 성과 신체,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수립한다.

- **목회상담실습 (Practicum of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의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목회현장과 각종 위기의 현장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평가, 감독, 훈련을 통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상담가가 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한 훈련을 한다. 다양한 목회상담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실제적 상담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자기-평가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상담의 상황을 연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연구, 실습, 감독, 평가의 과정을 밟아서 진행한다.

기독교철학

- **역사와 신학 (History and Theology)**

  역사와 시간 문제는 20세기 신학의 중심 테마이다. 어거스틴의 역사, 시간, 신학 이후로 그 동안의 역사, 시간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20세기에 종말론과 연결되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게 된다.

- **해석학 연구 (Study on Hermeneutics)**

  신학생이면 성서 해석에 관심을 갖는다. 성서 해석은 여러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다. 그리고 바울 이론에 근거해야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른 해석학사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바울 이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알레고리한 해석, 문자적해석, 역사비평적 해석, 양식, 편집비평, 구조주의 비평 문학, 사회 비평에 이르기 까지 이론을 먼저 배우고, 거기에 따른 적용을 실행하게 된다.

- **현대 기독교 철학 (Modern Christian Philosophy)**

  현대 신학과 현대 기독교 철학은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 현대 기독교 철학도 현대 철학과의 깊은 관련속에서 전개된다. 현대 신학도 현대 철학과의 깊은 관련속에 있다. 현대 기독교 철학자들 중에서 중심되는 몇 주요 사상가들을 연구하므로 진행된다. Kierkeggard, Heidegger, Levinas, Ricoeur, Bultman, Pannerbergw Jangel등을 주로 연구한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 철학의 테마를 주로 역사와 언어, 그리고 해석학등이다. 역사와 시간 이론을 그리고 언어를 그리고 철학적, 신학적, 성서 해석학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다.

- **포스트 모더니즘과 철학과 신학 (Philosophy and Theology in Post Modernism)**

  21세기를 지칭하여 포스트 모던시대라 칭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규명해야할 것이다. 무엇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지? 왜 포스트 모더니즘과 교회와의 관계규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철학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연구하게 된다. 그 주요인물로는 Nietzsche Heidegger Derrida, Tracy, Thiselton 등을 연구하게 된다.

- **현대철학 (Modern Philosophy)**

  현대철학에 대한 소개 없이 현대 신학이나 현대 기독교 철학을 올바로 알 수 없다. 현대 철학의 흐름도 크게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포스트 모더니즘, 영기 분석철학, 무소주의, 역사철학, 실용주의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추구할 것이다. 주요 인물로는 Kierkeggard, Nietzsche, Husserlt, Heidegger, Gadamer, Hebermas, Derrida, Ricoeur Wittgenstein, Rorty, Kuhn 등이다.

어 학

- **독어신학강독 I (Theological Reading in German I)**

  독일어로 된 신학사상들을 강독함으로써 신학적 지평을 넓힌다

- **독어신학 강독 II (Reading of Germany Theology II)**

  신앙의 훈련과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배움의 터전인 신학대학교에서 독어로 기록된 문헌들을 대하므로 신학연구에 도움이 되게 한다. 특별히 개방화시대에 영어뿐만 아니라 유럽 권의 언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본 과목에서는 독어로 된 신학의 원서들을 접하여 학문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독일어로 된 신학 대사전인 TRE 등에서 본문을 선택하여 수업에서 접하도록 한다.

- **영어신학강독 I , II (Theological Readings in English I , II)**

  영어로 쓰인 다양한 신학원서들을 읽어 나감으로 원어해독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회음악

- **합창 I / II (Symphonic Choir I / II)**

  교회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합창작품 (Major Choral Work)을 선정하여 훈련, 연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이를 연주함으로써 무대예술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데 있다.

- **교회음악 (Church Music)**

  학년제한 없음(학부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자 모두)

  교회음악의 종류를 목적별로 이해하며 예배와 음악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특별히 예배음악의 각 요소가 예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며, 성가대 운영 및 찬송가의 발달과정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며 복음성가의 유래와 장, 단점을 이해하며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행사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교회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한다.

상담대학원 교과목 해설

- **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일반상담학으로서 다양한 상담이론과 실제를 개괄적으로 배우게 된다. 각 이론의 인간이해및 성격이론, 상담목표, 상담과정, 상담기법 등을 접함으로 목회상담가로서 가져야할 상담학적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 **상담가의 자기분석(Analysis of Counselors' Selfhood)**

  기독교 상담가가 되기 위한 자기 인식과 자기 발견을 추구한다. 자신에 대한 다양한 국면들을 성장, 성격형성, 직업의 선택 등의 개인사를 탐구하여 상담자가 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훈련한다.

-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인간 삶의 제 차원 즉,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 신앙적 차원을 발달 및 역동 심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위해 프로이드, 피아제, 에릭슨, 콜버그, 애들러, 올포트, 파울러 등 대표적 발달심리학자들의 사상과 통찰을 분석, 고찰한다.

- **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Interview)**

  상담면접의 기초로서 면접의 주요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상담면접에서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기법을 익힌다. 상담면접의 실습은 교수의 강의와 시범 그리고 실제 role-play 통한 활동경험 세 가지 학습형태로 진행된다.

- **정신분석학과 자아심리학 (Psychoanalysis and Ego Psychology)**

  정신분석학의 탄생을 통하여 현대의 심리치료와 목회상담 운동이 시작되었다. 현대 정신분석학과 해석학의 발달을 가져온 S. 프로이트의 기본 저작들과 그의 뒤를 이은 자아심리학자들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기

독교 상담의 중요한 학문적인 기초와 실제 치료와 상담에 활용하고자 한다.

-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Family Counseling)**

  가족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의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내담자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보웬,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이론, 미누친의 구조 가족치료이론, MRI의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중심적 가족치료 이론 등을 공부하고 실제로는 가족 상담에서 필요한 상담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Object Relation Theories and Self-Psychology)**

  현대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 이후 다양한 관점과 특징들을 가진 학파들로 분화 발전되어 왔다. 영국의 M. 클라인을 필두로 R. 페어버언, D. 위니캇트 등의 임상가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대상관계이론이 가지고 있는 주요관점과 주제 및 이론들을 연구하여 통합적 연구, 기독교 상담에의 적용 등을 통하여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에 있다.

-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집단상담 이론의 주요개념과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론에 기초한 집단상담의 실습은 집단과정의 주요단계인 시작의 단계, 과도적 단계, 작업단계, 종결단계 등을 집단경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 **개인감독지도 (Personal supervision)**

  개인상담사례의 원리와 주요방법을 익히고 개인상담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들을 목회와 신앙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서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함양시켜 간다.

-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인간 행동과 심리의 병리현상에 대한 이해는 목회와 기독교 상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상행동과 심리의 바탕이 되는 정신 병리를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을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Spiritual Discipline)**

  영성생활-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 **상담과 영성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목회상담과 영적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각적으로 살핌으로 목회상담에서 영성의 중요성과 목회상담과 영적지도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영적지도에 있어서 신학적 심리학적 전제들, 영적지도의 내용, 전제,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관계, 영적 어둠과 우울증의 문제, 내면의 자유

와 영성식별의 문제들을 다룬다.

- **기독상담 프로그램개발 (Program Development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여 실제 목회상담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제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그 상담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원 교과목 해설

<구약학>

- **이스라엘 고대사(History of Israel)**
  초기 이스라엘 국가 형성과정을 최근 의학설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 **지혜문서(Wisdom Literature)**
  지혜문서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개별 책 중에서 본문을 선택하여 주석 한다. 현대 여러 학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살펴가면서 실제주석에 임하며, 구약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또한 연구한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용해 본다.

- **구약원전(Readings in the Hebrew Bible)**
  히브리어 문법에 기초하여 구약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고 주석할 수 있게 한다.

- **이스라엘 종교사 연구(History of the Israelite Religion)**
  구약성서에 묘사된 규범적인 야훼 신앙과는 별도로 이스라엘 일반 대중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혼합주의 내지는 민간종교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규명함과 아울러 야훼 신앙의 기원과 본질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성문서 주석(The Writings Exegesis)**
  구약의 시편을 중심으로 기본 학설을 연구한 뒤 성서본문을 주석 한다. 주석에는 해당책의 주석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함이 가장 적절한가를 살펴본다.

- **예언서 주석(The Prophets Exegesis)**

  예언서의 각 책을 주석 한다.

- **구약 신학 세미나(Seminar on the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성서 해석의 역사와 다양한 방법론들을 살피고 구약신학의 최근 동향을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배우고 익힘으로써 구약성서 전체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으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묵시문학연구(Apocalyptic Literature)**

  주전 200년 무렵에 본격화된 구약 묵시문학의 기원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다니엘서를 비롯한 외경의 다양한 묵시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 신학적인 의미를 밝힘과 아울러, 그것이 신약시대의 묵시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신약학>

- **바울신학(The Pauline Theology)**

  하나님의 의를 옳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의 주된 사상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울의 죄 사상, 의인 사상, 성화 사상을 이해하여 성서의 근본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 **공관복음(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 해석법과 주요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깊은 공관복음에 대한 이해를 얻고 또한 공관복음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해석 원리를 살펴본 후, 저자 중심 해석법에 속하는 양식비평, 편집비평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본문 중심해석법인 이야기 비평, 그리고 독자 중심 해석법인 독자반응비평을 고찰해 본다. 다음으로는 공관복음에 속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요 가르침을 연구한다. 여기서는 세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들을 주로 살펴본다. 주로 예수에 대한 가르침, 교회와 제자 직분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본다. 수업방법은 주로 학생들의 발제와 토의를 중심으로 한다.

- **신약원전강독(Reading the New Testament in Greek)**

  헬라어 원문을 해석 및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신학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요한신학(The Gospel of John)**

  요한의 중심사상을 소개하고 다른 복음서의 중심사상과 비교 연구함으로 요한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킨다.

- **신약 배경사(The Backgrounds of N.T.)**

  신약성서는 정경화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정경에 들지 못한 많은 작품들이 신약성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외경과 위경들이다. 외경과 위경의 이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 이해, 사회계층, 종교사상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신약성서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교의학적 연구와는 달리 신약성서 저자들이 자신이 기록한 책을 통해 보여 주는 주요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들이 혹은 각 책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단, 한 책이 가르치는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그 책에 나타난 주요 주제에 대한 교훈을 주로 살펴본다. 아울러 신약성서 27권의 책을 다 따로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별로 혹은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그 가르침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수업내용은 신약신학이란 학문이 발전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신약성서의 주요 주제들을 학생들이 위의 방법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함께 토의 하며 찾아 나간다.

<역사신학>

- **영지주의연구(Studies on Gnosticism)**

  서양교회사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단과 희랍적 배경을 가진 이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이다. 영지주의는 희랍의 철학,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마술, 유대교의 윤리, 기독교의 구원론,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적인 색채마저 혼합되어 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많은 추종자를 모았으며, 정통 기독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지속적인 이단이었다. 영지주의를 반대하였던 교부들의 원문을 통하여 영지주의를 살펴봄으로써 교리신학의 기초를 다지려고 한다.

- **반이단신학자연구(Studies on Anti-heretical Fathers)**

  고대 교부가운데에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노력한 세 사람의 교부를 공부한다. 이레니우스(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그리고 오리겐(Origen)의 사상과 업적을 그들의 주 저서를 통하여 연구한다. 그리하여 이레니우스의『이단논박』(Adversus Haereses) 터툴리안의『육체의부활에관하여』(De Resurrectione Carnisi) 그리고『프락세아스논박』(Ad Praxeam) 오리겐의『제일원리』(De Principiis)등을 원문으로 공부한다. 이 공부를 통하여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으로 발전하는 고대신학의 주류를 살필 수 있다.

- **교회사 연구방법론(Methodology of Church History)**

  교회사 연구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일반 역사 방법론을 연구하게 하고 교회사 방법론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교회사 연구의 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사 연구(Studies on History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사 가운데 인물이나 중요한 운동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세미나이다.

- **한국교회사(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선교사적 사관, 민족주의 사관, 실증주의 사관 등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렇지만, 종래의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한 중앙사를 전체적으로 꿰뚫는 통사적 방법론에 의존하여 왔다. 본 과목에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등과 비교하여 교회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한국학 연구가 교회사연구와 병행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이라는 사회에 교회가 들어와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 **후기중세신학연구(Studies on Late Mediaeval Theology)**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중세 후기 스콜라주의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사상을 탐구하는 세미나이다.

<조직신학>

- **신정론 연구 (Theodicy and eastern & western mysticism)**

  신. 그 이후를 거론하는 이 시대에 현대 mysticism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를 위해서 고대 신비주의와 타종교 신비주의를 근간으로 이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 **현대 기독론 세미나(Modern Christology Seminar)**

  현대 기독세미나는 현대의 여러 신학자들의 다양한 기독론을 배워 보다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그리고 적합한 기독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성서에 나타난 기독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론의 역사를 살펴보고 더불어 오늘의 생태계와 우주적 관점에서 기독론을 조명한다. 지금까지 기독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형이상학적 기독론에서 역사적 기독론으로 그리고 우주적 기독론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바 이를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독론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한다.

- **신학체계론 (Theological Systematolog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체계론을 살펴봄으로 오늘의 시점에서 신학체계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 **성령론 세미나(Pneumatology Seminar)**

  성령론에 관한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과 함께 현대 여러 신학자들의 성령론을 연구하므로 성령론이

새로운 시대의 신학의 새 패러다임임을, 더불어 21세기의 영적 상황을 살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 **현대신학세미나(Seminar of Modern Theology Seminar)**

  Schleiermacher에서부터 Pannenber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학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대신학과 자연과학세미나(Seminar on Contemporary Theology and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의 성취와 신학의 현대적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신학세미나(Korean Theology Seminar)**

  한국신학사상의 역사와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한국신학의 연구를 준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과정신학세미나(Process Theology Seminar)**

  과정신학 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힌다

- **교회론(Ecclesiology)**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과 표지, 중세 카톨릭의 교회론,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과, 한국 교회의 미래적 발전을 위한 사회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신학과 과학의 대화**

  신학과 과학의 일반적 특징을 과학철학과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며,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과학의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가를 갈릴레오로부터,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현대과학까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현대신학이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관을 신학 작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신학적 주제들, 특별히 신론, 인간론, 기독론, 창조론 등이 어떻게 다시 재검토되고 재구성되는가를 고찰한다. 근대신학세미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이 서구사회에 어떤 문화적 충격을 주었으며, 신학에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전통적인 신학 주제들을 다시 해석했는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이 세미나는 신학적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학제간 연구방식을 통해서 계몽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철학과 과학과 종교 모두를 동시에 검토한다.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조들을 받아들이면서 신학과 철학이 갖게 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응들을 살핀다. 이신론과 자연신학 그리고 칸트, 헤겔, 슐라이에르마허 등의 신학을 주 대상으로 한다.

- **근대신학세미나(Seminar of Modern Theology Seminar)**

Schleiermacher에서부터 Pannenber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학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학적해석학 (Theological Hermeneutics)**

  신학적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을 위한 기초분과로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신학적 해석학은 철학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학과의 연관하에 연구되어야 한다.

- **종말론연구 (Study on Eschatology)**

  종말론에 대한 연구는 성서적 종말론 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종말론 사상까지 전반적인 종말론사를 배울 수 있다. 묵시사상과, 현재종말론, 미래종말론, 초대교회의 재림의 지연 문제, 하나님 나라 사상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현대 철학적 신학연구 (Study on the Christian Theology in Modern)**

  현대 철학적 신학 연구는 철학적 신학 사상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사상가들 뿐 아니라 현대 신학 사상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기독교윤리학>

- **결혼과 성윤리 세미나 (Seminar on Ethics of Sexuality and Marriage)**

  인간은 성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 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의미와 성의 표현으로서의 결혼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 등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경제와 기업윤리 세미나 (Seminar on Economics and Business Ethics)**

  경제의 구조, 체제, 목적과 기업과 관련된 조직, 기술, 거래, 활동, 목적 등을 살피는 가운데 공정하고 합목적의 경제와 기업의 모형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모색한다.

- **정치와 법윤리 세미나 (Seminar on Ethics of Politick and Rights)**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치의 행위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실증적 법규범의 기본 구조와 윤리적 의미를 탐구한다. 특히 기독교적 정치윤리의 본질과 이의 법제도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 **신학적 윤리(Theological Ethics)**

  학과 윤리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기독교 윤리학은 이성에 기초하는 일반 윤리학과는 달리, 신앙과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 우리는 신학적 윤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현대 신학자들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 **기독교 사회윤리 세미나(The Seminar of Christian Social Ethics)**

  기독교 사회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과 그것의 실제적 적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에른스트트뢸취, 깁슨윈터 등의 이론을 근간으로 방법론을 전개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논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 **성서윤리세미나(The Seminar of Biblical Ethics)**

  신약과 구약의 윤리적 흐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각각에 대한 윤리적인 논점과 신약에서의 예수와 바울의 윤리 및 공동서신에 나타난 윤리적 이슈들이 검토되어질 것이다. 특히 각 성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서의 특징들이 점검됨과 동시, 성서에 나타난 윤리적 다양성들이 논의될 것이다.

- **철학적 윤리(Philosophical Ethics)**

  서구철학사에 나타난 주요한 윤리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한 윤리철학자들의 사상이 시대별로 연구될 것이다.

- **종교사회학 세미나(The Seminar of Religious Sociology)**

  종교사회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날 종교의 중심문제를 검토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결과를 연구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먼저는 종교사회학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구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종교 및 기독교의 기능, 오늘의 한국교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 한국의 사회사적 입장에서 본 한국 신학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교회의 단면을 이해하고자한다.

- **종교와 윤리교육(Religion and Ethical Education)**

  교회의 도덕과 윤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오늘의 목회 현장에서 윤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의 초점으로 삼는다. 윤리교육의 이론적인 토대와, 그를 근거로 한 윤리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 **생태신학과 윤리(Ecotheology and Ethics)**

  자연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 등 오늘의 지구는 생태적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전 피조물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오늘의 기독교신학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JPIC, 생태신학(ecotheology), 생태윤리(ecoethics), 생태정치학(ecopolitics),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샬롬(shalom)의구현, 우주적구원(cosmicsalvation)등의 논제들이 검토될 것이다.

- **생명윤리(Bioethics)**

  오늘의 생명의료윤리학에서의 논의들을 생명신학(The Theology of Life)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생명

과 죽음의 의미, 기독교의 구원으로서의 영생에 대한 고찰, 생명신학에의 전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비춰본 대체의학(alternate medicine)의 문제, 안락사, 인공유산, 인간복제, 기타 유전공학적인 논의들에 대한 현대적 이슈 등을 이 부분에서 다루려고 한다.

<예배학>

- **예배의 신학(Theology of Worship)**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과 동시에 이에 관한 신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배에 대해 역사적, 신학적으로 연구 고찰한다.

- **초대교회예배(Worship in the early Church)**

  초기기독교예배가 지니고 있던 역사적 유산과 기도와 찬송의 초기 형태와 오늘날까지 중시되는 말씀사역, 세례와 성찬을 고찰연구 한다.

- **복음적 예배연구(Study of Evangelical Worship)**

  복음적 예배에 관한 신학적,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복음적 예배를 발견하고, 이에 따르는 예배의 원칙, 예배의식 등을 발견하도록 연구한다.

- **교회력과 성서일과(Church Year and Lectionary)**

  교회의 절기와 성서일과에 대한 역사적 형성과 그 내용을 고찰, 연구한다.

- **성례전 연구 I (Study of Sacrament)**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던 성례전을 연구 및 고찰한다. 특별히 이 과목에서는 세례를 고찰한다.

- **세례 성례전 연구(Study of Sacrament of Baptism)**

  세례성례전은 초대교회로부터 초대 교인들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었다. 또한 종교개혁의 논쟁가운데에서도 지속되어온 성례전이다. 이러한 세례성례전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고찰 연구한다.

- **성찬 성례전 연구(Study of Sacrament of Lord's Supper)**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성찬 성례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준다. 이러한 성찬 성례전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고찰 연구한다.

- **예배와 음악(Worship and Music)**

  교회예배에서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음악은 예배에서 예배자를 예배행위로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여준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예배에 나타난 음악의 위치에 관해 고찰, 연구한다.

- **예배의 재구성 (The Reconstruction of Worship)**

  예배 역사를 통하여 예배순서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현대교회에 이를 적용함에 대해 연구한다.

- **예전의 역사 (The History of Liturgy)**

  각 시대, 지역과 교파에 따르는 예전의 변천을 연구한다.

- **장로교 예배(Presbyterian Worship)**

  장로교 예배의 본질과 그 역사, 내용에 대해 연구 고찰한다.

- **설교 작성법(From Text to Sermon)**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설교 작성을 배우고, 성경으로 부터 오늘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설교자의 언어로 바꿀 것인지를 배우고, 설교 작성을 위해 본문 분석과 청중분석방법을 습득한다. 또한"들려지는"설교를 위해 어떤 설교형식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해진 설교본문을 통해 설교를 작성하여 실제로 전달하는 단계까지 체험케 한다.

- **설교자 연구(Study on Preacher)**

  설교의 대가들의 설교세계를 연구하고, 그들의 설교를 실제로 구현해봄으로서 걸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 **수사학과 설교(Rhetoric and Preaching)**

  기독교설교의 중요한 한 축인 전달방법의 증진을 위하여 수사학과 설교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찰한다.

- **설교와 커뮤니케이션(Preaching and Communication)**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반드시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설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과목은 설교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그 원리들을 연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설교의 역사 연구(Study on History of Preaching)**
  세계의 강단을 움직였던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설교를 연구함으로 세계 설교의 역사를 이해한다.

<기독교교육학>

- **기독교교육과 발달이론(Christian Education and Development Theories)**
  기독교육학과 심리학의 간학문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발달이론가의 이론을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간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의 이해를 확장한다.

- **기독교교육과 다문화사회(Christian Education and Multiculturalism)**
  다문화사회의 변동에 대한 기독인의 관점을 형성하고 다문화사회를 향한 교회의 응답을 목회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 **기독교교육과 여성신학(Christian Education and Feminist Theology)**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젠더평등성을 이루기 위해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을 학습한다.

- **기독교교육학자연구(Study for Christian Education Scholars)**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기독교교육의 학자를 연구한다.

- **기독교교육과정론(Christian Education and Curriculum)**
  교육과정론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학습자의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교육과정을 구성해 본다.

- **기독교성인교육론(Christian Adult Education)**
  목회현장의 다수인 성인을 학습주체로 인정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면서 목회를 교육목회의 관점에서 바라도록 안내한다.

- **기독교교육과 사회화(Christian Education and Socialization)**
  신앙공동체와 사회, 복음과 사회, 기독교교육과 사회적 관계를 살피고 기독교교육의 사회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안내한다.

- **목회자 자기성찰교육(Study for Pastor's Self Reflection)**
  목회자의 자기 내적 성찰을 돕는 과정으로 다양한 간학문적 시도를 통해 건강한 목회자의 내면을 갖도록

안내한다.

- **기독교교육과 신학(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ies)**
  다양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그 배경이 되는 신학을 학습함으로써 목회와 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성서교육방법론(Christian Education and Bible Study)**
  목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성서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 **기독교교육과 의사소통(Christia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목회자 혹은 기독교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체화하도록 돕는다.

<목회 상담학>

-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Family Counseling)**
  가족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의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내담자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보웬,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이론, 미누친의 구조 가족치료이론, MRI의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중심적 가족치료 이론 등을 공부하고 실제로는 가족 상담에서 필요한 상담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성격이론과 발달심리 (Personality Theory & Developmental Psychology)**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신체, 지능, 사고, 성격, 사회성, 도덕성 등의 인간 모든 특성의 변화양상과 과정을 교육한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8가지 발달 단계 등을 중점으로 교육함으로 내담자의 발달로 통해 나타난 심리적 상태를 상담자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 **정신분석과정과 목회상담 (Psychoanalytic & Pastoral Counseling)**
  최근 서구에서 발달한 정신분석과정과 심리치료, 후기 프로이드 학파와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이론을 소개함으로 목회 상담 및 깊이 있는 목회사역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정신분석과정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활용하여 목회 사역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현대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of Psychotherapies)**
  정신분석학, 현대의 심리학 이론, 심리치료와 상담에 기반이 된 이론들을 개괄적으로 연구하여 상담가로서 목회자로서 인격 개발과 사회 생활 및 신앙생활의 갈등 및 혼란을 바르게 하는 치유사역을 훈련하고

개발한다. Freud, Jung, Adler, Horney, Erikson, Maslow, Rogers, Perls, Skinner, Bandura, Allport, Glasser, Ellis등의 현대 심리치료 이론의 흐름과 실제적인 적용을 모색한다.

- **결혼과 가족치료(Marriage & Family Therapy)**

  정신 분석적, 다세대적, 경험주의적, 구조적, 의사소통, 전략적, 행동주의, 해결 중심적 단기가족치료 등 가족치료 이론들을 통해 역기능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운다.

- **목회상담실습 (Practicum of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의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목회 현장과 각종 위기 현장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평가, 감독, 훈련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목회상담가가 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목회상담이론을 배운 것을 기초로 실제 상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자기평가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 상담 상황에서 치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감독, 평가, 실습 및 연구과정을 통하여 진행한다.

- **개인 및 집단감독(Individual & Group Supervision)**

  임상실습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감독을 통해 상담치료를 분석, 평가, 보완하도록 한다.

- **정신병리학 연구(Seminar on Psychopathology)**

  인간 행동과 심리의 병리현상에 대한 이해는 목회와 기독교 상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상행동과 심리의 바탕이 되는 정신 병리를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을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편람(DSM-IV)를 기반으로 각종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

- **위기 개입이론과 목회상담(Crisis Intervention Theories and Pastoral Counseling)**

  목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 개입이론을 연구며 목회상담과 목회적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훈련한다.

- **집단상담 실습(Practicum of Group Counseling and Therapies)**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과 치유를 목표로 한다.

- **공동체훈련(Group Training)**

  감수성, 인간관계, 내적치유, 인성개발, 가족치료등 공동체훈련을 매 학기 후 실시한다.

- **상담감독실습 (Practicum of Counseling Supervision)**

  목회상담학의 이론을 통하여 얻은 기법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적 상담을 실행하면서 감독을 받는 과정이다.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의 축어록분석, 상담진행에 대한 평가, 상담관계에 관한 세미나 등을 바탕으로 상담의 실제를 훈련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 **치유상담세미나 (Seminar of Therapeutic Counseling)**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문헌, 현장학습, 이론적인 연구, 면담기법 등을 연구하는 세미나로서 현대교회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치유의 기법 등을 현대목회상담 이론과 실제의 바탕에서 훈련, 학습한다.

- **대상관계이론과 정신치유 (Object Relation Theories and Psychotherapy)**

  후기 프로이드학파의 정신분석적 전통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현대적 정신분석기법인 대상관계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치유의 방법들을 연구한다. 특히, 전이와 역전이, 표상과 상징화, 내성적 동일시와 투사적 동일시 등의 이론들을 집중 연구함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신치유 및 상담의 기량을 연마한다.

- **종교와 심리학의 주요인물연구 (Major Figures in Religion and Psychology)**

  종교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종교현상과 신앙행위에 대한 심리학적인 고찰을 한 심리학자들 (프로이드, 올포트, 융, 에릭슨, 제임스 등)의 저작과 생애를 연구함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신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습득한다. 신학과 과학의 역동적 관계, 종교현상과 인간이해, 회심 등이 다룰 수 있는 주요주제이다.

- **상담방법론 세미나 (Seminar of Methodology of Counseling)**

  현대 상담학의 이론들을 배경으로 하여 치유와 상담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론과 문화이해 연구를 주요과제로 삼는다. 서구의 문화적 토양에서 온 상담방법론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함으로 바람직한 상담학을 구축하며 연구하는 실험적인 세미나이다.

- **후기프로이드 학파 연구 (Exploration of Post-Freudian Schools of Psychoanalysis)**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많은 프로이드학파의 학자들의 계보와 그들의 학술적, 심리학적인 특징들을 연구함으로 해석학, 철학, 신학, 문학, 심리학 등의 깊은 영향을 탐구하며, 정신치유 및 상담의 기법과 철학 등의 의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불란서의 정신분석학파, 영국의 클라인과 위니캇트, 에고심리학, 셀프심리학 등의 문헌들을 읽고 연구한다.

- **한국문화와 목회상담 (Pastoral Counseling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Culture)**

  서구의 문화와 철학적 토양에서 발전된 각종 상담과 정신치유 이론을 연구한 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와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인의 심성과 종교, 한국인의 문화의 특징 등을 조사, 분석하며, 민족적인 정서와 토양에 맞는 상담학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실험적 세미나이다.

<선교신학>

-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신학(David Bosch's Theology of Mission)**

  핸드릭 크레머 이후 선교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보쉬의 신학을 Transforming Mission(1991)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 아울러 보쉬의 신학을 통해 선교의 종말론적교회론적구원론적 성격을 규명하여,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가 말하는 의미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선교가 현대신학 특히 실천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한 다음,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교회의 바람직한 선교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과목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본 성만찬 신학이 민족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 **선교와 상황화(Mission and Contextualization)**

  1970년 이후 등장한 복음의 상황화 문제를 통하여, 복음과 문화의 문제를 보다 깊이다룬다. 지금까지 나온 토착화(indigenization)와 문화화(inculturation)를 넘어 상황 화를 말함으로서, 선교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떠해야하는가를 질문한다. 또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상황 앞에서, 세계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국교회는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나누면서 이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 **에큐메닉스(Ecumenics)**

  1910년에 딘버러대회 이후 전개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에큐메닉칼운동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가를 서구교회, 남미교회, 아프리카교회, 아시아교회등에서 찾아보고,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선교방향을 찾아보는 과목으로, 전체주제는"선교와 일치"(missionandunity)로 요약할 수 있다.

- **에큐메니칼 운동사 (History of Ecumenical Movetmpment)**

  하나님의 집인 세계를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윌리엄 케리부터 현대에 이르는 에큐메니칼 운동사를 통해 알아본다. 특히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신학을 연구분석하여 한국교회의 '하나 됨'과 '교회 됨'을 위한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 **현대선교신학(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오늘날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선교의 다양한 파라다임을 연구하여 한국교회에 맞는 새로운 선교방향을 찾아보는 과목으로, 특별히 에큐메니칼 선교신학과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일차적인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선교신학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본다.

- **선교현장연구(Foreign Mission: A Case Study Approach)**

  한국교회의 선교현실을 평가해 본다면 선교신학-선교교육-선교현장 사이에 심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선교현장 안에서 선교신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2)왜 선교현장에서는 선교신학이 왜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가를, (3)선교신학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등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에 세워진 모스크 장로회 신학대학의 선교활동은 한국교회, 특히 통합측 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매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영성신학>

- **토마스 머튼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Thomas Merton)**

  20세기의 대표적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의 생애와 영성을 고찰한다. 토마스 머튼의 영성이 현대 기독교 영성의 발달에 주는 영향력은 무엇이며 현대인의 영성생활에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기도의 이해와 실제 (The Practice of Contemplative Prayer)**

  관상기도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심리학적 이해를 고찰한다. 관상기도의 실제를 위한 지침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실제적으로 기도를 실습한다.

- **영성과 기도 (Spirituality and Prayer)**

  신구약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기도의 경험들과 관점을 고찰하여 성서적 기도의 신학과 그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성서적 기도이해를 어떻게 현대의 목회와 영성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 **영성과 역사 (Spirituality and History)**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영성과 역사의 변증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 **영적지도 (spiritual Direction)**

  영적지도의 신학적 심리학적 전제들과 영적지도의 내용과 영적지도의 기본적인 기술을 다룬다. 기독교 전통에서의 영성식별의 신학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다양한 영적 체험에 대한 식별을 연구한다.

- **개혁교회의 영성 (Reformed Spirituality)**

  개혁교회 전통에서 어떻게 영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핀다. 다른 기독교 전통의 영성과 개혁교회 영성을 비교하여 개혁교회영성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개혁교회전통에서의 하나님체험의 문제와 기도, 영적지도, 거룩한 독서와 성경공부, 제자도와 같은 개혁교회 영성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연구한다.

- **한국 기독교 영성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한국 기독교 영성의 뿌리, 역사와 특징을 고찰한다.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세종과 이현필의 영성이 한국 기독교 영성의 발전과 기독교 영성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그들의 영성을 21세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비평적으로 수용하고 발전 시켜나갈 것인지를 살핀다.

- **기독교 영성학 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학문(또는 신학)의 분야로서 기독교 영성을 다룰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한다. 학문의 분야로서의 기독교 영성의 범위와 방법론을 다룬다.

- **신비주의 연구 (Mysticism)**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의 역사와 신학을 고찰한다.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한다.

- **기도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Prayer)**

  기독교 명상을 통한 내적치유/심리치유와 변화(transformation)의 과정을 다룬다. 기도의 심리학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치유와 변화를 위한 기독교 명상의 실제를 배운다.

공동선택

- **신학적 해석학(Theological Hermeneutics)**

  해석학의 역사를 배운다. 규범해석학(문헌해석학, 법률해석학, 성서해석학)의 발
  달과 안디옥학파와 알렉산드리아학파로 나누어 발달해온 성서해석학 역사를 배운다. 그리고 역사비평학과 양식비평, 편집비평, 구조주의적 비평 그리고 최근의 문학비평(이야기비평, 수사학적 비평, 문학-사회비평)까지 해석학사를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신학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신학적 해석학을 연구한다.

그 학자로 Schleiermacher, Bultmann,Fuchs, Ebeling, Jngel, Pannenberg등이 있다. 신학적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대표적 이론가로 Ricoeur를 연구하게 된다.

- **포스트모더니즘연구(Study on Postmodernism)**

  이미 우리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살고 있다. 건축양식이나 예술(음악, 영화, 미술)양식의 변천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역사적, 윤리적 가치관 변화에 대해 올바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킹(천체물리학자, 영국)은 2030년대에 지금과 다른 인종이 이 지구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복제인간으로 새로운 정체성 필요성과 가치관 확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신학도 새로운 학문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교회도 21세기 선교와 봉사 그리고 케리그마 선포를 올바로 담당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철학적 신학(Philosophical Theology)**

  신학은 철학과의 대립과 상호 밀접성 속에서 발전해 왔다. 신학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 철학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철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도 철학의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기초로 철학적 신학을 연구하게 된다. 그 대표적 사상가로 Augustinus, K.Barth, R.Bultmann, W. Pannenberg, E.Jngel 그리고 P.Ricoeur등의 학자를 배우게 된다.

교회음악대학원 교과목 해설

- **고등음악이론 (Advanced Music Theory)**

  고등음악이론 수업은 대학원에서 필요한 음악이론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초부터 고급이론에 이르기까지 음악사적인 고찰과 주요작품을 통해 분석, 연구하여 전통음악에 대한전문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있다.

- **관현악 지휘법 (Orchestra Conducting Technique)**

  합창지휘자로서 갖추어야 될 Applied Musicianship과 관현악 지휘의 기본적인 지식인 악기론, Musical Terms, Phrase Analysis, Score Reading등을 Baton Technique과 더불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연구에 필요한 Rehearsal Techniques, 템포변화,다양한 Musical Styl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

- **교회음악세미나 (Seminar in Church Music)**

  예배와 음악과의 관계, 성가대 운영의 문제, 찬송가에 대한 문제, 오르간 및 교회력에 대한 문제, 복음성가에 대한 문제 및 교회음악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해결해 나아간다.

- **전공실기 Ⅰ·Ⅱ·Ⅲ·Ⅳ (Individual Instruction Major Study Ⅰ·Ⅱ·Ⅲ·Ⅳ)**

  개인지도를 통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를 배우며 중요 작품들의 연주훈련을 쌓는다.

- **현대음악이론 및 분석 (20th Century Music Theory Analysis)**

  20세기의 음악은 여러 종류의 새로운 경향, 새로운 기법, 새로운 음향 그리고 이러한기법, 음향등을 위한 탐구와 실험의 음악이다. 후기 낭만시대의 조성의 붕괴로부터 20세기 전반기의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음계와 화성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분석과 감상을 통해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확립시킨다.

- **음악사와 문헌 Ⅰ·Ⅱ (Music History & Literature Ⅰ·Ⅱ)**

  중세-Ren-Baroque시대와 (한학기)전고전주의에서 현대까지의 음악사의 맥락을 통해 주요 음악사조와 장르, 악곡, 음악가들과 그들의 문헌을 다룸.

- **오르간문헌 (Organ Literature)**

  오르간 작곡가의 작품과 생애를 실질적인 음악감상과 토론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오르간 문헌의 변천과 발전을 이해하는데 있다.

- **부실기 Ⅰ·Ⅱ·Ⅲ(Electives in Minor Instruments Ⅰ·Ⅱ·Ⅲ)**

  전공실기와 상이(相異)한 전공의 음악수업을 통하여 교육의 폭을 넓히고 전공실기를 보조하는 부수적 수업을 통하여 전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 **딕션 및 연주법 (Diction & Performance Practice)**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영어, 러시아어의 올바른 딕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음악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대에서의 자세와 곡에 따른 올바른 Acting을 연구한다.

- **무대실습 Ⅰ,Ⅱ (Opera Workshop Ⅰ,Ⅱ)**

  무대세트, 조명, 의상, 분장, 소도구 및 연출 등의 공연 무대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실습함으로써 오페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교육한다.

- **반주문헌 및 세미나 Ⅰ(가곡문헌) (Accompanying Literature & Seminar 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의 가곡들을 다루며, 연주상의 문제점과 Balance 등을 연구한다.

- **반주문헌 및 세미나 Ⅱ(오페라 문헌) (Accompanying Literature & Seminar Ⅱ)**

  반주 문헌 및 세미나 Ⅰ의 연속으로 여러 오페라 작품들을 연구한다.

- **반주문헌 및 세미나 Ⅲ(기악 반주 문헌) (Accompanying Literature & Seminar Ⅲ)**

  기악 앙상블 작품들에 대하여 관악 및 현악 악기의 특성에 따른 음색의 조화와 음량 조절 및 테크닉 등을 정리한다.

- **성악 앙상블 Ⅰ,Ⅱ (Vocal Ensemble Ⅰ,Ⅱ)**

  성가곡 및 Opera Aria의 중창곡들을 레파토리로 선정하여 성악에 기초적인 발성 및 딕션을 바탕으로 잘 조화된 아름다운 중창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배와 교회음악 (Church Music and Worship)**

  예배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전적인 예배와 비예전적인 예배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전도와 교육 등 각종 행사에의 적절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르간 앙상블 Ⅰ,Ⅱ (Organ Ensemble Ⅰ,Ⅱ)**

  다른 악기와의 연주를 통하여 음색 조절과 배합 능력을 습득하고 오르간 독주 이외에 앙상블 연주에 요

구되는 다양한 테크닉을 훈련하다.

- **오르간 연주법 및 세미나 Ⅰ,Ⅱ (Organ Performance practice Seminar Ⅰ,Ⅱ)**
  작곡가별, 시대별로 연주와 세미나를 통하여 오르간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 습득한다.

- **오페라 전곡 연구 (Research Opera Full) Score**
  한 배역을 선정하여 음악적으로 연주 가능토록 오페라 Full Score를 연구함으로써 Recitative, Aria, 중창, 합창들의 다양한 음악적, 극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표현능력을 높인다.

- **찬송가학 (Hymnology)**
  찬송가의 변천과정, 분류, 비평 등에 관해 깊이 연구함으로써 찬송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예배와 행사에서 찬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피아노 문헌 (Piano Literature)**
  시대별로 피아노 음악의 역사와 발달사를 배우며, 주요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을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각 작곡가의 음악적 특징을 깊고 광범위하게 연구 비교한다.

- **피아노 앙상블 Ⅰ,Ⅱ (Piano Ensemble Ⅰ,Ⅱ)**
  두 명 이상의 연주자가 중주를 통하여 앙상블을 지도하며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며 조화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 **피아노 연주법 및 세미나 Ⅰ,Ⅱ(Piano Performance Practice and Seminar Ⅰ,Ⅱ)**
  시대별로 음악의 특성에 따른 연주법을 알아보고 각 작곡가의 음악적 스타일에 맞는 피아노 연주법을 연구 조사할 뿐 아니라, 과제 곡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 **합창음악 문헌 연구 (Chorus Literature Study)**
  르네상스 시대의 합창음악에서 20세기 현대합창음악까지의 합창음악발달사 및 합창 음악작곡가들의 생애 및 음악특징, 합창작품의 스타일 그리고 대표적인 합창작품 들을 작품의 감상 및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하여 합창 및 합창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있다.

- **합창음악 세미나 (Seminar in Choral Music)**
  합창의기본적인 지도법과 리허설 테크닉, 합창발성, 발음(라틴어, 독일어, 영어 등)합창단의 운영방업, 합창소리 만들기 등 합창음악에 있어서 지휘자가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훈련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9세기 예술가곡 연구 (Survey of 19th century Art Songs)**

  19세기 대표 작곡가와 대표적 가곡들을 연구 및 연주를 함으로써 시대성이 갖는 공통적인 색채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각의 작곡가가 갖는 독창성에 의한 하나의 완전한 가곡을 연주토록 한다.

- **20세기 예술가곡 연구 (Survey of 20th Century Art Songs)**

  20세기 가곡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의 가곡 흐름을 알고(변화와 통일성), 대표 작곡가와 그들의 가곡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느낌의 가곡들을 연주함으로써 20세기 가곡의 독특한 특성을 교육한다.

- **교회음악문헌 (Church Music Literature)**

  시대별, 작곡자별, 악기별로 주요 교회음악 레파토리를 연구함으로 각종 예배와 행사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실용음악이론 Ⅰ·Ⅱ (Theory Jazz & Contemporary Ⅰ·Ⅱ)**

  100년이 넘게 발전해 온 재즈는 이제 서양 대중음악의 주류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 발전과정에서 형성. 축적된 이론적, 실제적 토대를 이해,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현악 앙상블 Ⅰ·Ⅱ (Orchestral Music Ensemble Ⅰ·Ⅱ)**

  관현악을 구성되어 있는 악기군의 소리를 듣고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관현악 곡들을 연주함으로 실전 연주 테크닉과 협동심을 기른다.

- **실용음악 앙상블 Ⅰ·Ⅱ·Ⅲ·Ⅳ (Practical Music Ensemble Ⅰ·Ⅱ·Ⅲ·Ⅳ)**

  실전 연주를 통한 앙상블 수업을 진행하며 재즈클럽 및 여러 공연에서의 다양한 활동, 전공 강사들과의 합동 콘서트 등으로 밴드 운영 및 리더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들을 배운다. 또한 피아노의 화성적인 편곡을 비롯해 리듬과 형식을 바꾸어 합주함으로써 창의적인 연주능력을 개발하며 재즈 이외 가스펠, 팝, 가요 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함께 연주 하는 능력을 키운다.

- **관현악 문헌 및 세미나 Ⅰ·Ⅱ·Ⅲ (Orchestral Music Literature & Seminar Ⅰ·Ⅱ·Ⅲ)**

  관현악의 발달에 따른 대표적 작곡가와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감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문헌을 익히며 또한 관련된 작품들을 습득하고 연구한다.

- **실용음악 작·편곡 Ⅰ·Ⅱ (Practical Music Compose and Arrange Ⅰ·Ⅱ)**

각 악기 파트들의 특성을 융합하여 보다 창조적인 음악을 만들며 실용음악에서의 여러 장르 음악을 편곡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 **교회음악 반주법 (Church Music Accompanying)**

  정통 화성법을 기반으로 화성구조를 분석, 이해하며 Pop & Jazz 이론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반주법을 우며 열린 예배의 흐름에 적합한 반주자 양성과 Electric band에서 건반 악기의 편성, 편곡을 연구한다.

- **즉흥연주기법 (Improvisation Technique)**

  재즈는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은 곡을 연주하지만 매번 똑같이 연주하지 않는다. 이처럼 재즈가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은 즉흥 연주(Improvisation) 때문이다.

  이러한 즉흥 연주의 기법을 익히고 연구함으로써 실전에서의 연주 테크닉을 기른다.

사회복지대학원 교과목 해설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인간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성장 및 발달과 변화에 관한 이론을 학습 하고 개인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한다.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의 태동과 역사 및 현대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복지 사회의 실현과 완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조사론**

  과학적인 사회복지조사연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요를 학습하고, 사회복지연구과정의 연구단계를 이해하여, 실제 조사연구 통계와 분석을 시행함으로 연구자로서 전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현대 사회복지실천의 장이 되는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지역사회복지 의미와 발달과정, 지역사회실천의 모형 그리고 원칙과 과정,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실천론**

  전문가로써의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할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형과 실천적 이론 등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 내 생성된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행정, 운영과정과 행정구조의 이론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개입모델과 방법론적인 기술을 사회복지현장(사회복지기관)에서 적용,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론의 실제를 직접경험 하도록 하여 전문소양을 배우는 신천과정이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주요 사회복지실천이론의 학습과 실제적인 실천방법 및 기술(Skill)에 대해 익히고 각 영역별 실천가로써의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괄적 정의와 연혁 및 진행과정과 각 복지유형별 특별법에 대해 이론적 학습을 시행하고, 각 국가별 사회복지법의 변천에 대해 이해한다.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복지학 실천을 위한 자료검색과 분석방법을 학습하여 논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논찬할 능력을 갖추며 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에 대비하고 학술적 자질을 향상한다.

- **선교와사회복지**

  글로벌사회 인식과 더불어 세계 재난국가에 대한 도움과 선교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학습을 진행하고, 나아가 선교와 사회복지의 합치적 이론을 이해한다.

- **기독교상담과사회복지**

  기독교리적 사회복지접근으로 제도화되고 관료제화되어가는 사회복지현장의 현실 앞에서 인간이 중심인 사회복지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필요성을 깨닫고, 상담학적 해석과 이해 및 실천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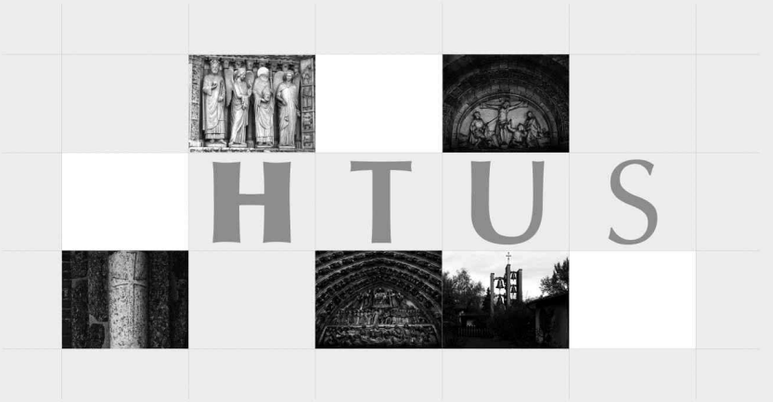

박물관 규정

호남신학대학교 박물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재)

본 박물관은 호남신학대학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박물관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 역사 자료, 지역 근대 문화 역사
자료, 민속 문화 자료 등을 발굴, 조사, 연구하고,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교육과 학술연구는 물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유물·유적의 조사·수집·연구
2. 자료의 정리·보존과 전시
3. 학술연구·발표와 연구지 발간
4. 기타 박물관의 설치목적에 수반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 (구성)

박물관에는 관장과 상임연구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학예사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명)

①관장과 상임연구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학예사는 국가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이 가운데 시험과 면접을 거쳐 임용하며필요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으로 확충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의 경우는 박물관 업무와 관련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실무를 거친 이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박물관의 분야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물관 업무를 돕는 연구원은 본 대학교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임무, 보수, 증명서 발급 등)

①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관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연구원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학예, 사무, 기금유치를 관장한다.

③학예사는 학예, 교육, 등록 분야를 담당한다.

④연구원은 박물관 업무를 돕고, 연구용역의 분야별 과제를 담당한다.

⑤연구용역 연구원 임용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용역 과제수행에 따른 자체 조달 재원에서 충당한다.

⑥연구원에게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 (설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관장과 상임연구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겸한다.

② 위원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기본 운영계획
2. 박물관 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폐
3. 박물관 예산과 결산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은 상임연구원장이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제 4 장 소장품 수집과 관리

제11조 (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발굴과 수집자료
2. 구입자료
3. 수증자료
4. 위탁자료
5. 기타

제12조 (소장품 관리방법)

① 박물관의 소장품은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박물관 업무 수행상 관장이 판단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소장품의 창고나 진열장을 개폐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상임연구원장 입회 하에 행한다.

③소장품은 년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

①박물관의 임직원이나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출품 또는 반출한 소장품이 파괴, 훼손, 망실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출품 또는 반출을 받은 당사자나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과 예산)

박물관의 재원은 본 대학교 교비의 예산지원금액, 국내·외의 연구·장학기관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결산과 사업보고)

관장은 박물관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박물관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세칙을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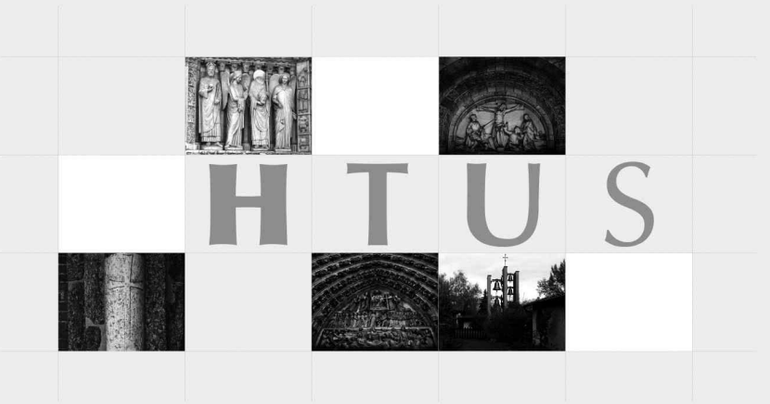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학생 실천 규정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신학대학(학부) 학생실천 규정

제1조 (실천처)

학생들의 경건훈련 및 교회 실천지도를 위하여 실천처를 둔다.

제2조 (예배규정)

①모든 학생은 경건예배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②신학과 입학생은 실천학점을 8학기 중 6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③신학과 2학년 편입생은 실천학점을 6학기 중 5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④신학과 3학년 편입생은 실천학점을 4학기 중 3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⑤음악학과 입학생은 실천학점을 8학기 중 6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⑥음악학과 3학년 편입생은 실천학점을 4학기 중 3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⑦사회복지상담학과 입학생은 실천학점을 8학기 중 6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⑧음악학과 3학년 편입생은 실천학점을 4학기 중 3학기 이상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⑨신앙사경회도 정규 경건예배로 간주한다.

제3조 (예배출석)

모든 학생은 경건훈련을 위하여 실천처의 예배안내에 따라 교내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참석)

모든 학생은 수업이나 학교 행사기간(사경회)동안 결석 또는 불참하고 개인기도 집회참석, 집회 인도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전도집회)

모든학생 단체가 학교나 학생단체의 이름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한 3일전에 실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속지방의 개척 허가를 얻은 교회 개척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활동범위)

학생단체가 교내.외에서 집회하고자 할 때는 본 대학의 이상과 주장에 따라 행해야 하며 이단 교파 및 사회를 문란케 하는 집회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7조 (실천학점)

본 실천처에서는 효율적인 경건훈련과 교회 실천지도를 위해 실천 학점제를 설치하는 바이다.

제8조 (실천학점의 평가)

실천학점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 따라 실천처에 의해서 주어지며, 교무처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성적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실천처에서는 각 학생의 경건회 출석도와 교회 실천상태를 종합하여 실천학점의 성적을 Pass 와 Non-Pass로 한다.

모든 학생의 경건회 출석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경건회결석횟수		비 고
	주간부	야간부	
Pass	5회 까지	3회 까지	개정 96. 3. 5
Non-Pass	6회 이상	4회 이상	

①신앙사경회 중의 각 집회의 결석은 경건회 1 회의 결석으로 처리된다.

②신학과 야간부는 신앙사경회 중 저녁 집회의 참석만을 의무로 한다.

③군입대의 경우는 입대전까지의 결석횟수에 따라 성적이 평가된다.

④경건회 출석카드 제출에 있어서 대신 제출하거나 이를 수락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유기정학처벌을 받으며 양자 모두 Non-Pass 학점으로 처리한다.

⑤지각 3회 시 결석 1회로 한다.

⑥타당한 이유없이 경건회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 결석으로 간주한다.

⑦신학과 주간부는 주 3회 주간 경건회 참석을 의무로 한다.

⑧신학과 야간부는 주 1회 야간 경건회 참석을 의무로 한다.

⑨음악학과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주 1회 경건회 참석을 의무로 한다.

제9조 (경건회 출석제외사항)

다음의 경우는 경건회 출석에서 제외된다.

①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불참경우(통지서 사본 및 사유서 제출)

②학교의 공적인 일로 불참한 경우(사유서 제출)

③가족의 애경사(본인결혼, 가족상) 및 질병으로 인한 불참(관계서류 및 진단서, 사유서 제출)

④교육 및 견학으로 인한 불참(공문사본 및 사유서 제출)

⑤기타 공적인 사유로 인한 불참(사유서 제출)

⑥경건회 결석 사유서는 결석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도서지방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악천후로 인하여 경건회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건회 결석사유서와 함께 경건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 (목회실천조사카드의 제출)

①모든 학생은 목회실천조사카드를 소속 당회장의 확인을 받아 1학기에는 5월말까지 2학기에는 11월 말까지 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회실천조사카드를 약속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 실천학점을 경건회 출석평가에 관계없이 Non-Pass로 처리한다)

제11조 (실천학점 성적에 의한 수혜제제)

Non-Pass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모든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주의사항)

교회에서 실천하는 학생이 봉사하는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학칙 제4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3조 (출석확인)

해당 학기 내 출석사항은 본인이 실천처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해당학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 되면 실천처의 출결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정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지침의 개정)

본 규정은 교수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개정시행) 1996년 3월 5일

②(개정시행) 1997년 3월 3일

③(개정시행) 1999년 3월 2일

④(개정시행) 2020년 3월 2일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학대학원 학생실천규정

제1조 (실천처)

학생들의 경건훈련 및 교회 실천지도를 위하여 실천처를 둔다.

제2조 (예배규정)

①모든 학생은 예배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②신대원 학생은 실천학점을 필수로 Pass하여야 졸업한다.

③신앙사경회도 정규 경건예배로 간주한다.

제3조 (예배출석)

모든 학생은 경건훈련을 위하여 실천처의 예배안내에 따라 교내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참석)

모든 학생은 수업이나 학교 행사기간(사경회)동안 결석 또는 불참하고 개인기도 집회참석, 집회 인도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전도집회)

모든 학생 단체가 학교나 학생단체의 이름으로 전도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한 3일전에 실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속지방의 개척 허가를 얻은 교회 개척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활동범위)

학생단체가 교내. 외에서 집회하고자 할 때는 본 대학의 이상과 주장에 따라 행해야 하며 이단 교파 및 사회를 문란케 하는 집회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실천학점)

①본 실천처에서는 효율적인 경건훈련과 교회 실천지도를 위해 실천 학점제를 설치하는 바 이다. 이에 신학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1학점의 “목회실천”을 실천학점으로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②개인적인 사정으로 6학기 만에 졸업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 실천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건회 참여 횟수를 전 학기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실천학점의 평가)

실천학점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 따라 실천처에 의해서 주어지며, 교무처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성적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실천처에서는 각 학생의 경건회 출석도와 교회 실천상태 및 목회실습과목 성적을 종합하여 실천학점의 성적을 평가 한다.

모든 학생의 경건회출석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경건회결석횟수		비 고
	주간부	야간부	
Pass	5회 까지	3회 까지	개정 96. 3. 5
Non-Pass	6회 이상	4회 이상	

①신앙사경회 중 각 집회의 결석은 경건회 1 회의 결석으로

②신학대학원 야간부는 신앙사경회 중 화요일 저녁 집회의 참석을 의무로 한다.

③경건회 출석카드 제출에 있어서 대신 제출하거나 이를 수락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유기정학처벌을 받으며 양자 모두 “Non-Pass” 학점으로 처리한다.

④지각 3회 시 결석 1회로 한다.

⑤타당한 이유 없이 경건회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 결석으로 간주한다.

⑥신학대학원 주간부는 주 3회 주간 경건회 참석을 의무로 한다.

⑦신학대학원 야간부는 주 1회 야간 경건회 참서을 의무로 한다.

제9조 (경건회 출석제외사항)

다음의 경우는 경건회 출석에서 제외된다.

①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불참경우 (통지서 사본 및 사유서 제출)

②학교의 공적인 일로 불참한 경우 (사유서 제출)

③가족의 애경사(본인결혼 및 가족상) 및 질병으로 인한 불참 (관계서류 및 진단서, 사유서 제출)

④교육 및 견학으로 인한 불참 (공문사본 및 사유서 제출)

⑤기타 공적인 사유로 인한 불참 (사유서 제출)

⑥경건회 결석 사유서는 반드시 경건회 결석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도서지방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악천후로 인하여 경건회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건회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경건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제10조 (목회실천조사카드의 제출)

①모든 학생은 목회실천조사카드에 교회의 직인 확인을 받아 1학기에는 5월말까지 2학기에는 11월 말까지 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회실천조사카드를 기한 내에 제출 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 실천학점을 경건회 출석평가에 관계없이 “Non-Pass”로 처리한다.)

제11조 (실천학점 성적에 의한 수혜제제)

Non-Pass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모든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주의사항)

교회에서 실천하는 학생이 봉사하는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칙 제4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3조 (출석확인)

해당 학기 내 출석사항은 본인이 실천처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해당학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 되면 실천처의 출결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정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지침의 개정)

본 규정은 교수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개정시행) 1996년 3월 5일

②(개정시행) 1997년 3월 3일

③(개정시행) 1999년 3월 2일

④(개정시행) 2020년 3월 2일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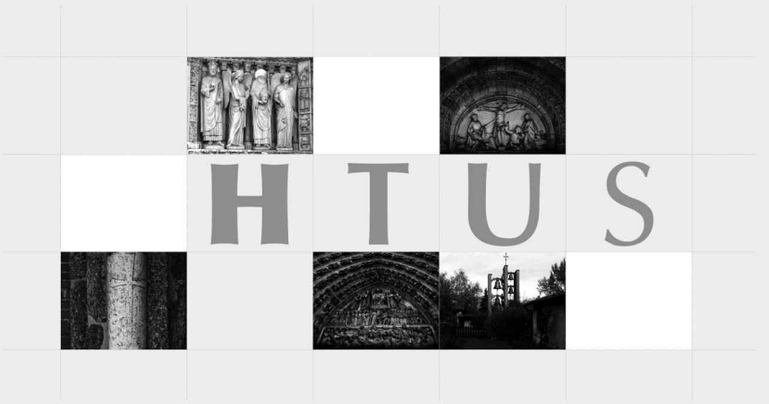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학생생활

- 학생증 발급
- 학생 신상카드
- 증명서 발급
- 학생후생
- 부직알선
- 게시물, 광고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 농어촌학자금 대출

학생증 발급

1) 준수사항

①입학절차를 완료한 직후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학생증은 졸업 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③학생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시험, 수강, 도서관 출입, 기타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학생증은 절대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학생 신분을 밝히는 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⑤졸업, 휴학, 재적 등으로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은 학생증을 학생처에 필히 반납하여야 한다.

2) 발급절차

①신규발급(신입생에 한함)

㉮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당일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급된 학생증은 학생처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②재발급

㉮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에 분실 사유서와 재발급 수수료,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같이 제출한다. (단, 복학생은 학생증 발급 신청서만 제출한다.)

㉯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는 학생처에서 하며 재발급된 학생증은 학생처에서 교부한다.

학생 신상카드

1) 신입생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학생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오리엔테이션 당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신상카드는 재학 중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학 중 주소의 변경, 기타 학생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상카드 정정 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 발급

1) 추천서: 학생이 취업, 장학, 유학, 연수, 진학을 위하여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영문의 추천서를 발급한다.

학생후생

1)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후생을 위하여 학생처에 다음과 같은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①보건진료소 운영(비상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②분실물 보관센터(각종 분실물 신고 및 보관)

부직알선(아르바이트)

1) 목적
사회 경험을 통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자립정신을 함양하며 학비 조달과 아울러 학교와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안내(추천)절차
①재학기간 동안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매 학기 중 지정된 공고기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신청서는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에 단체로 접수시키며 결과를 확인하여 개인에게 통보 한다.
③아르바이트 은행 및 타 업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의뢰하면 학생처에서는 접수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희망 분야 기능별로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신청한 학생이 다수일 경우에는 각 학과 학년 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추천한다.
⑤추천받은 학생이 학생처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학생을 추천한다.
⑥부직현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학생과 교체하거나 재추천하지 않는다.
⑦아르바이트 희망 중 같은 조건일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추천한다.
⑧4학년 학생의 경우 동계방학 기간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게시물과 광고

1) 모든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처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게시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하며, 게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3) 출처불명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생처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4) 인쇄물의 제작과 배포는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생처의 허가를 받은 후 행한다.
5) 광고사항은 예배시간 30분전까지 예배 진행위원의 협조를 얻어 광고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1.사업목적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대책마련으로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2.지원기간

일반대학 최대 8학기(4년제)

3.지급방법

전체 국가장학금을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4.지원자격

소득 8분위 이하 저속득층 대학생에게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을 지급

5.지원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구분	성적.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만점의 80점이상 성적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만점의 70점 이내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6.지원금액

소득분위	1학기	2학기	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1분위(차상위포함)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2분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3분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4분위	143만원	143만원	286만원
5분위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7. 다자녀장학

1)기본내용: 다자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자녀 기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2)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21세 이하 1~2학년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3) 지원사항: 연간 52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 대상자는 유형 1과 동일)

3~8분위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학년을 확대할 예정 임

* 국가장학 유형1과는 중복수혜 불가

학자금 대출

1. 대출상품

1)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①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②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③생활비대출: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2)일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대출)

①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②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

③생활비대출: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2. 대출금리

1) 든든학자금

매학기 재단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금리)

2) 일반학자금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 협의하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3. 준비단계

1) 공인인증서 준비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신청 준비

2)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4. 신청자격

1)공통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

2)든든학자금: 만 35세 이하의 대학 학부생

3)일반학자금: 만 55세 이하의 대학원생

5. 대출금지급

1)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

2) 생활비대출금은 대출자 본인 계좌로 지급

3) 기등록자 대출은 신입생군에 한하며, 재학생은 특별추천을 통해 간능(1회에 한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대출)

1. 사업개요

1)사업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지원대상: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대상자선정

1) 지원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본인자격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추천자

3. 상환방법

1)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납부기한: 매월 27일 까지

3) 상환개시일

* 2월 졸업자: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국가근로 장학

1. 국가근로 근무 기간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2. 선발기준

1)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점(평점평균 1.88이상)이상자

2) 순위: 1순위 소득분위 1~4분위 이내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분위 5~6분위 이내인자

3순위 소득분위 7~8분위 이내인자

※ 학생 선발 우선순위를 소득분위별로 단순화(장학재단에서 자동심사 됨)

3. 선발절차

· 학생 신청- 소득분위 및 성적확인-신청 학생 중 대학 추천 및 근로지 선정배정- 지원금 지급

4. 신청 대상자: 대학부 재학생
5. 신청기간: 해당기간(일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학생 메뉴얼 확인 필수

7. 서류 제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확인

8. 근로시간

1) 학기 중 1주에 20시간, 월별 최대 80시간 (방학중)주당 최대40시간 (학기당 450시간 기준)

9. 장학금액

1) 교외 및 전공산업체 시간당 9,500원

2) 교내 시간당 8,000원

3) 지급일: 매월 10일

10. 선발결과: 소득순위 결과발표 후 개인별로 문자 전송
11. 오리엔테이션: 추후 공지(개인별로 문자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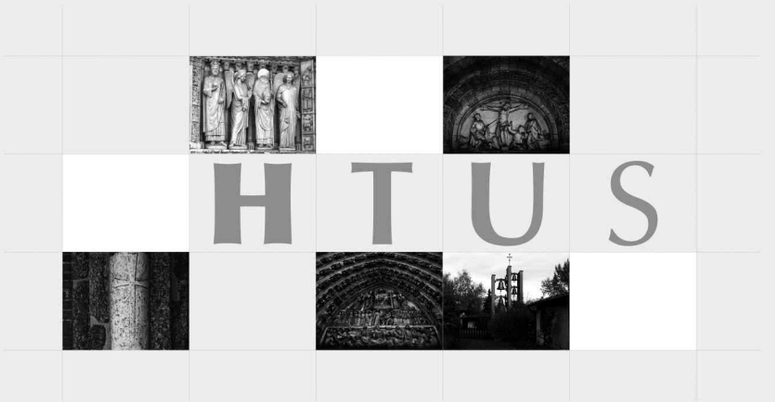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병사

학생병무 안내

학사 및 군종장교 입영안내

학생 병사 업무 안내

1) 징병검사 연기 및 입영연기

병역의무로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 및 군대입대를 연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연기대상: 재학생인 학생으로서 4년제 대학 24세 이내에 6학기제 대학원은 27세 이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

②징병검사: 재학 중인 학생은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연기절차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졸업 시 까지 입영을 연기함 (재학생 본인은 연기원을 출원하지 않음)

㉯입학 전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재학여부 미확인으로 입영 통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럴 때에는 재학증명서를 본적지 구, 시, 읍, 동, 면에 제출하면 연기가 된다.

④군 입영 연기 비 대상 사유

㉮휴학한 자(재적, 퇴학)

㉯재학중 유급 또는 정학 등으로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입영 희망 출원자 및 입영 기피자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자

㉲병역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2)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

본적과 다른 구, 시, 군 거주지 중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시, 구, 군에 징병검사 개시 30일전에 징병 검사원(주민등록 초본1통, 거주지 징병검사)을 제출한다.

3) 본적지 변동

재학 중 본적지가 변동이 있는 학생은 호적초본 1매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적변동자 처리

휴학, 제적, 퇴학 등으로 학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5) 입영원 안내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구, 시, 읍, 동, 면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를 결정하게 된다.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를 자세히 알아본 후 휴학수속 할 것)

6) 민방위 훈련 대상자 편성제외 신고(20세~40세)

매 학년초 개강 후 2주 이내에 본관 1층 교학처에서 재학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 동에 제출하면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된다.

학사 및 군종장교 입영안내

1) 군종장교

①대상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의 신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자로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28세까지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②구비서류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성직취득보증서 1부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을 필히 기입할 것)각 2부

㉱병적증명서 1부(18세 이하 징병적령 미달자 제외)

㉲재학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소정양식) 4부

㉴반명함판 사진 6매 (탈모상반신 3개월 이내 촬영)

③원서 교부 및 접수처

학교에서 일괄교부 접수함

④응시연월일

매년 5~6월경 모집

⑤시험과목

국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영어, 면접, 신체검사(국군수도병원)

⑥합격자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병적관리 되며 징병검사 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정의 이수과정을 거쳐 목사자격을 취득한 후 군종장교(중위)로 임관된다.(단, 국방부령 제402호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합당치 않은 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⑦기타

군종장교 후보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적

㉯성명변경 및 생년월일 정정

㉰거주지 이동

㉱퇴학, 정학, 휴학, 재적 시(즉시 현역병으로 입영됨)

㉲실습파송지의 변동, 실습근무의 불이행 또는 휴직, 교직에서의 퇴직 또는 복직

※ ㉮, ㉯, ㉰ 항은 본인이 학생처에 신고, ㉲항은 학교 및 교단에서 통보

2) 학사장교

①지원자격

㉮4년제 대학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성적 전 학기 B학점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인 자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하지 아니한 자

②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각 대학 학군단 및 지방 병무청 민원실 모병계

③선발

㉮1차 선발

서류전형: 대입학력고사(50%), 대학 전 학년 성적(30%), 체력 검정 (20%), 면접

㉯2차 선발

신체검사

④교육 및 복무기간

교육 12주, 의무복무기간(임관 후 3년)

⑤특전

㉮12주 교육 후 육군소위로 임관

㉯군복무간 복지혜택(급여, 면세품, 의료보험)

3) 타군 지원

①공군, 해군, 국군 기술병: 각 지방 병무청 모병관실

(광주, 전남: 062-223-3911)

②의무경찰: 도경 또는 각 경찰서 작전과 문의

(군종과: 02-748-5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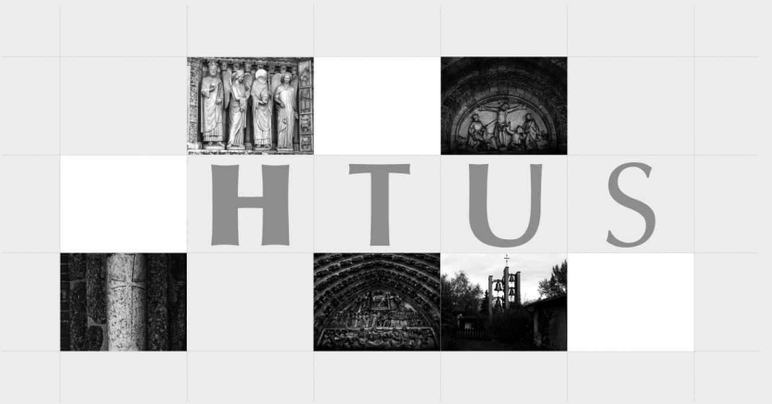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장학

장학위원회 규정

장학금지급 규정

장학규정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호남신학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②위원은 학생처장, 신대원장, 신학과장, 음악학과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신대원장이 대리한다.

제4조 (회무와 회계사무처리)

①장학위원회 회무와 업무처리는 학생처장이 한다.

②장학위원회 회계처리는 경리과장이 하고 사무처장이 감독한다.

제5조 (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하며 개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장학 종류 및 선발기준)

본 위원회가 선정하는 장학생의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장학금지급 규정

제1조 (재정)

본교 학칙 제10장 52조(총장은 장학규정에 관한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 학부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에게 한하며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학위원회)

장학금수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본교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신입생 장학금: 매 학년도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시 결정한 장학금은 학기 중 휴학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복학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학 시 결정한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3.0)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계속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입생 장학금은 학부(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와 대학원(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 학부(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신입생 장학금

㉠본교에서 적용하는 수능 성적 등급에서 3등급 이상인 자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한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목회자 및 교직원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 때, 장학금 지급액은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한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성경경시대회 1등을 한 자가 본교 신학과에 입학할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성경경시대회 2등을 한 자가 본교 신학과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학부(음악학과) 신입생 장학금

㉠본교에서 실시하는 호신콩쿠르 입상자 중 총장상을 수상한 자가 본교 음악학과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호신콩쿠르 고등부 각 부분 1등을 한 자가 본교 음악학과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입학 시 성적 1등을 한 자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목회자 및 교직원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 때, 장학금 지급액은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한다.

다. 신학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신학대학원 신입생 장학금은 신학대학원 신학과 주간 과정(정시, 특별전형)과 신학과 야간 과정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모든 과정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주간과정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호신 동문 장학금: 호신 동문 장학금은 동문회에서 본교 학부 과정 졸업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신학대학원 신학과 주간과 야간 과정에 해당하며, 지급 금액은 동문회 모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입학 성적 장학금: 입학 성적 장학금은 신학대학원 신학과 주간 과정의 정시와 특별전형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입학 정원 대비 신학대학원 입학사정 통과 학생 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아래 표에 명기된 숫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다.

구 분	1-15명	16-30명	31명 이상
정 시	1명(1등 장학금)	2명(1, 2등 장학금)	3명(1, 2, 3등 장학금)
특별전형	1명		

입학 성적 장학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신대원 주간 정시 입학 성적 1등을 한 자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신대원 주간 정시 입학 성적 2등을 한 자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신대원 주간 정시 입학 성적 3등을 한 자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

금으로 지급한다.

단, 성경고사 구약 80점 이상, 신약 80점 이상, 총점 160점 이상인 자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4) 신대원 주간 특별전형 성적 우수 장학금은 입학 성적 1등을 한 자에게 지급하며,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하여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졸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본교 학부 당해연도 졸업자로서 졸업 성적 우수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졸업 성적 우수자는 다음과 같다. 졸업사정 기준으로 하여 신학과는 1-5등, 사회복지상담학과는 1-3등이며, 편입생도 해당한다.

㉤본교 출신 장학금: 본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등록 후 첫 학기 입학금을 면제한다.

라.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본교 출신 장학금(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본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등록 후 첫 학기 입학금을 면제하며 등록금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본교 출신 장학금(교회음악대학원): 본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매학기 1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타교 출신 장학금: 타교 출신으로 신학대학원을 제외한 본교 대학원에 입학시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첫 학기 9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입학장학금이 중복 될 경우 큰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성적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5(B+)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단, 학부의 경우 계절학기 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서 제외하며 최소이수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학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 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서 제외하며 1, 2학년은 수강신청학점이 16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고 3학년은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 평균평점 및 총점이 동점자 일 경우

㉠다 학점 자를 우선으로 한다.

㉡학점이 같을 경우 나이가 어린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학점과 생년월일이 같을 경우 학번이 늦은 자에게 우선권을 둔다.

㉣학부 성적장학금은 성적사정 해당 학기 등록 인원수에 비례하여 학년별로 지급한다. 지급 비율은 각 과정(신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별 등록인원의 15%이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주 간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6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신학대학원(주간, 야간)의 성적장학금은 성적사정 해당 학기 등록 인원수에 비례하여 학년별로 지급한다. 지급 비율은 등록인원의 10%이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주 간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75%	등록금의 50%	90만원	80만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야 간	100만원	50만원						

③공로 장학금: 공로 장학금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한다.

④근로 장학금: 근로 장학생은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약간 명에 대하여 재정 형편에 따라 교내의 필요한 노무에 종사케 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보조한다.

- 근로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1개의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비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근로연한을 연속 2회(2학기)를 넘지 못한다. (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장학위원장과 담당부서장의 허락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보훈장학금: 보훈자녀 중 직전학기 성적이 법적 기준 이상인 자에게 재학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반액을 지급하며 신입생은 입학금의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본인이 보훈자인 경우는 입학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지급 한다.)

⑥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총액과 관계없이 가계곤란 생활비지원 장학금으로 처리하며, 지정 및 추천으로 지급한다.(단, 교회지정장학금은 5%의 교내장학금을 매칭하여 지급한다.)

⑦직계자녀장학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C+) 이상인 자 에게 수업료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⑧교역자자녀 장학금: 교역자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5(C+) 이상인 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⑨특별 장학금: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⑩수급자 장학금: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2.0(c) 이상, 실천평가 Pass인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⑪복지장학금: 교내 복지시설 수익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선별하여 지급한다. 이때, 장학 대상자는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학 생활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복지포인트장학금: 학생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일원으로 참여자에게 학기말에 복지포인트장학금을 복지장학금(학부) 재원으로 지급한다.

⑬학생회활동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은 학생회활동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매 학기에 직전학기성적 평균평점 2.0(C)이상, 실천평가 Pass인 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중복수혜에 관한 원칙)

①학비감면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②교외, 근로, 공로, 복지, 매칭펀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성적장학금과 신입생 장학금이 중복 될 경우 큰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성적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제6조 (지급대상)

장학생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따른다.

①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직전학기 실천학점을 “Pass"한 자

②재학 중 징계사유가 없는 자

③장학금 지급신청자 및 구비서류 제출자

④지도교수 및 장학위원 추천자

제7조 (지급신청)

장학금 신청은 지급대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학기별로 하며 공고한 기간 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에 제출하며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보훈장학금: 주민등록등본 1통, 보훈대상 증명서 1통

②교역자자녀 장학금: 주민등록등본 1통, 노회장 발행 교역자 및 전도사 시무증명서 1통

③수급자 장학금: 주민등록등본 1통, 수급자 증명 1통

제8조 (지급방법)

학비감면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없으며 해당 학기 납입고지서에 고지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을 필한 후의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장학업무 처리절차)

①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은 종강 2주일 전에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공고한 마감일 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③학과별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장학금 지급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에 상정 심의 확정한다.

④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인정은 장학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교무처의 성적 사정으로 확정된 성적을 인정한다.

제10조 (지급 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 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1조 (자격의 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생이 될 수 없다. 다만,①,②,③ 항의 해당자 중 이중수혜자가 아니면 지급할 수 있으며, ④,⑤항은 학기가 경과되기 전에는 장학생이 될 수 없다.

①재입학

②편입학

③복학

④면학분위기를 해침으로 학칙에 의거 처벌을 받은 자

⑤기타 학칙위반으로 학칙에 의거 처벌받은 자

⑥실천과 규정 제6호에 의해 직전학기 실천학점을 “Pass" 하지 못한 자

⑦선정된 장학생이 공고된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학금 수혜 수속을 필하지 아니하면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장학생의 교체)

①제11조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②휴학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③근로학생이 학생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맡은 일에 소홀했을 경우

④기타 사유로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제13조 (장학금 재원)

학생처장이 장학업무를 위해 필요로 할 때에 사무처는 장학금 가용재원을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세칙)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개정시행)본 규정은 197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시행)1984년 2월 1일

③(개정시행)1985년 7월 4일

④(개정시행)1989년 3월 1일

⑤(개정시행)1993년11월 29일

⑥(개정시행)1998년 8월 14일

⑦(개정시행)1999년 1월 15일

⑧(개정시행)2001년 5월 30일

⑨(개정시행)2003년12월 03일
⑩(개정시행)2012년 3월 12일
⑪(개정시행)2013년 4월 16일
⑫(개정시행)2017년 3월 1일
⑬(개정시행)2017년 7월 12일
⑭(개정시행)2020년 9월 21일
⑮(개정시행)2021년 12월 9일
⑯(개정시행)2022년 12월 7일

국가 근로 장학금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국가 근로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국가근로 장학금이란 국가가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 및 근로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의 제고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 장학금을 말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시하는 국가근로장학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자격) 제3조가 정한 대상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국가가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수자(이중수혜 및 등록금 감면대상자 신청가능)에 한한다.

제 5 조 (선발방법)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취득한 자로 지원자 중 선발한다. 본 제도의 수혜대상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생으로서 선발기준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국가근로 운영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급기준,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 및 지급시기는 지원이 결정될 경우 국가가 정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간에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지급방법) 장학금은 장학생이 먼저 근로시간을 완수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8 조 (공고) 학생지원처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정보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공고한다.

제 9 조 (업무관장) 국가 근로 장학금의 관리와 운영은 장학전담 부서인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제 10조 (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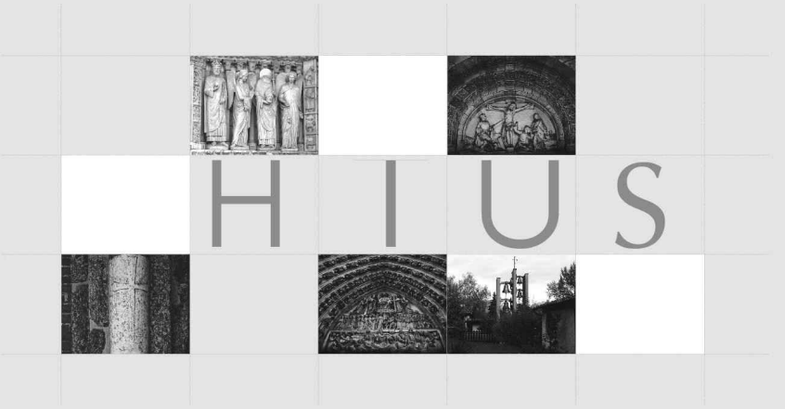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운영규정

도서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2조 (명칭)

본 도서관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제3조 (직무)

1. 본 도서관은 본 대학 학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 등의 연구, 교육활동 및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나.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다.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라.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

2.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제68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직원의 배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도서관장)

1.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관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업무분장)

1. 사서과는 수서계, 정리계로 나누며, 수서는 서무에 관한 사항, 자료의 선정, 구입, 수증 및 교환 등을 담당하고, 정리계는 자료의 분류, 목록 등 자료정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열람과는 대출계, 참고자료계로 나누며, 대출계는 대출 및 반납, 장서의 관리 보존, 열람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참고자료계는 참고봉사, 정기간행물 구독 및 열람, 제본, 수선, 자료의 색인 목록 등을 담당한다.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7조 (설치)

도서관의 기본정책 수립 및 합리적인 운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

3.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도서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4장 운영

제12조 (예산 및 결산)

1. 도서관의 예산은 본 대학교 예산 중 경상비에서 책정된 교비와 그 밖의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한다.
2. 예산집행 및 사업보고서는 매 학년 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도서관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자료의 선정 및 구입)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료

제14조 (자료의 소장)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본도서 수는 [별표 2]에 따른 학생 1인당 70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납본)

교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그 발행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부설기관 간행물 및 교내 발간물 2부.
2. 석·박사 학위논문 각 3부 (학위논문 이용허락서 포함)
3. 기타 대학 안내 및 홍보 자료 2부

제5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6조 (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자료(전자책 포함)
2 참고자료(사전/연감/편람등)
3. 학위논문
4. 정기간행물
5. 비도서자료
6. 전자매체자료

제17조 (자료의 수집)

도서관의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4. 납본자료
5 관리전환 자료

제18조 (자료의 등록)

1. 구입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과 등 교내 각 기관의 예산과 연구비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집된 자료는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바코드, 청구기호 레이블 등의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이 불가능한 오손 ·훼손된 자료
2. 정기 장서점검 2회 이상 소재불명된 자료
3. 미등록 연속간행물
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제6장 열람 및 대출

제20조 (개관 및 휴관)

도서관 열람실,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학 기 중		방 학 중	
	월-금	토	월-금	토
자료실(3,4층)	09:00-22:00	휴 관	09:00-17:00	휴 관
제 1열람실	06:00-24:00	06:00-18:00	06:00-24:00	06:00-18:00
제 2열람실	06:00-24:00	휴 관	휴 관	휴 관
제 3열람실	06:00-24:00	06:00-18:00	06:00-24:00	06:00-18:00

1. 일요일, 국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개교기념일은 휴관한다.
2. 임시휴관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받아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열람 및 대출자격)

본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본교 교직원, 시간강사 이상, 조교
2. 졸업생과 목회자가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열람만 가능하며, 정기 관외 대출을 원할 때는 절차를 밟아 본 도서관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제22조 (도서대출증 발급절차)

1.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기 위해서는 입학 및 편입 시 학생처에서 학생증(도서 대출카드)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휴학 중인 자는 별도의 도서대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3. 학생증(도서대출 카드)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23조 (열람 및 대출절차)

본 도서관의 도서열람 및 대출은 학생증(도서대출 카드)을 대출대에 제시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도서의 대출한도)

도서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분	소속	대출권수	대출기간	갱신횟수 및 기간
학부	사회복지상담학과 신학과 음악학과	5권	14일	1회(14일)
석사과정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10권	20일	1회(20일)
	교회음악대학원 일반대학원	15권	30일	1회(30일)
박사과정	대학원박사	20권	60일	1회(60일)
기타	평생교육원 도서회원 시간강사(겸임) 비정년트랙(전임) 교수 직원	3권 3권 10권 20권 50권 20권	14일 14일 30일 60일 90일 60일	1회(14일) 1회(14일) 1회(30일) 1회(60일) 1회(90일) 1회(60일)

일일대출	대출기간	대출연장(갱신)	대출가능권수	비고
논문	7일	1회(7일)	5권	모든 과정에 해당함

제25조 (대출 제한도서)

다음 도서는 관외 대출 할 수 없다. 다만,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게 최신호에 한해 관외대출을 허용한다.

1. 귀중도서
2. 지정도서
3. 참고도서
4. 정기간행물 및 신문
5. 비도서
6. 업무관련 도서

제26조 (대출-비치도서)

연구실 및 사무실에 도서관 장서를 비치 할 때는 도서비치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치 도서에 대하여는 당해 책임자가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서의 비치 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도서관에서 도서의 점검 또는 보관상 필요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반납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를 지참하여 도서관 대출대에서 연기절차를 밟거나 웹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28조 (자료실 이용 수칙)

열람실에서는 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도덕을 지켜야 한다 .

1. 대출된 도서의 어느 부분에 연필, 펜 등으로 줄을 그어서는 안 되며 각장을 접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 도서에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한다.
2. 정숙과 청결

3. 도서관의 비품 애용

4. 열람실 및 자료실 출입시 소지품(가방등)은 반드시 보관함에 넣고 출입한다.

5. 기타 관장이 지시한 사항 및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제29조 (대출증 분실로 인한 책임)

도서대출 카드의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분실자가 지며, 이상의 규정에 순응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과 이용에 따른 권리도 박탈당한다.

제7장 제재

제30조 (변상)

1.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도서 현품대납과 정리비 1,000원을 지불하고, 연체 규정 적용을 받는다.

2. 현금으로 변상하고자 할 때에는 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리비 1,000원을 지불하고, 연체 규정 적용을 받는다.

3. 구입불가인 경우 구입가에서 발행연도에 따라 시중가의 4 ~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연체 규정 적용을 받는다.

제31조 (휴직, 퇴직 및 휴학, 퇴학 시 절차)

교직원의 휴직, 퇴직 또는 재학생의 휴학, 퇴학 시 각 담당부서에서는 대출도서를 반납한 후 모든 절차를 마친다.

제32조 (대출도서의 반납)

대출된 도서는 반납기일 전이라도 도서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장서 전체점검기간(필요시)

2. 교직원의 휴 ·정직, 퇴직시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나 유학시

3. 학생의 휴학, 제적, 졸업시

제33조 (자료의 대출중지)

1.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거나,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1항 자료의 대출중지 및 근로봉사 기간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3. 휴학시에는 대출이 중지된다.

4. 도서관 자료를 무단반출, 훼손, 오손하거나 시설·물품을 훼손, 파괴, 절도 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도서무단반출 : 365일

나. 도서파손 : 30일

다. 연체 시 연체 권수 당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라. 시가의 2배 변상(실수나 고의 불문)

마. 도서관 게시판 공고

제34조 (위반자의 처리)

본 규정의 위반자는 재학생, 제적생의 경우 일체의 증명서 교부 및 발급이 중지되며, 장학금 지급 추천 보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사정명단에서 제외된다.

제8장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

제35조 (발전계획의 수립)

1.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가.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나.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2.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가.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나. 대학도서관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다.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라.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바.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 (연도별 계획의 수립)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 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장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 교육·훈련

제37조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운영 세칙과 미비한 점은 관장의 지시에 의해 정한다.
2.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안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안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안은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안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안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안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안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배치인원	산출기준	비고
기본인력	사서 3명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	재학생수: 학부생+대학원생

[별표 2] 도서자료 기준

구분	최소 장서수	최소 연간 증가책수	비 고
도서 자료	학생 1명당 70권 이상	재학생 1명당 2권	도서자료: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로 전자책 포함 기본도서: 등록된 도서자료 총수 연간증가책수: 해당 학년도에 구입한 자료

[별표 3] 도서관 층별안내

구 분	층 별 안 내
1층	휴게공간 (다이닝다데오)
2층	제 1, 2, 3 열람실, 음악자료실
3층	대출실, 정리실, 전자정보실, 명성목회자료 준비실, 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실, 교수지정도서코너, 그룹스터디실&신문실, 목회자료실, 대학원자료실
4층	신학자료실, 일반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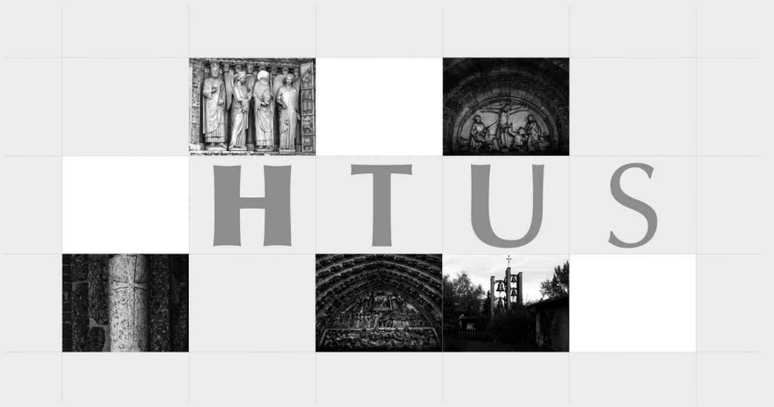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생활관

사생회 회칙

호남신학대학교 사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 사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설치 목적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 14장 제 66조 1항에 따라 신학생들
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학교는 경건과 학문생활의 도장으로서 기숙사를 본 대학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설치)

본 회의 사무소는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내에 둔다.

제2장 사생의 자격 및 획득과 상실(권리와 의무)

제4조

1) 본 대학생으로 입사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 및 입사비를 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와 사생회는 이를 심사하여 입사를 결정한다.

2) 본 회의 회원(정식 더부살이 포함)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회비는 입사금과 함께 내도록 한다.)

4) 본 대학이 정하는 경건 평점에 미달되거나 학칙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는 사생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학은 그에 대해 입사를 제재하거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5조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지도위원회: 총장, 사무처장, 생활관장 3인에 의해서 구성되며 학생대표인 사생회장, 총무와 함께 기숙사의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고, 사생회비의 운영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 매 학기말 1주전 소집공고를 내고 사생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운영 위원들을 선출 하고 호실 배정의 방법 및 식비를 결정하는 등 사생 전체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시총회: 학기 중 사생회장이나 회원 1/5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1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소집할 수 있으되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운영위원회: 사생회장 1인, 총무 6인 감사 4인으로 구성되어 사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승인을 얻어 식비의 집행을 맡음과 동시에 매달의 결산을 학교에 보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6조

본 회는 기숙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안건 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된다.

1) 사생회장: 기숙사 생활 3학기 이상 등록된 학부 및 신대원생 중에서 선출하며 사생회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되어 모든 일을 통솔한다.［단, 본교 학부 출신으로서 신대원에 입학한 자는 전등록을 인정함］

2) 총무: 기숙사 생활 2학기 이상 등록된 학부 및 신대원생 중 수석총무 1인(남), 수석총무 1인(여), 식권담당총무 1인(남), 관리총무 4인(남2 여2인)을 사생회장이 임명한다. 사생회장을 보좌하며 기숙사의 관리 및 식비 운영 및 재정을 관리한다. (단 학부는 2학기 이상으로 한다.)

3) 감사: 기숙사 생활 2학기 이상 등록된 자 중에서 4인을 선출하며 매달의 결산을 감사한다.

4) 사생회장, 수석총무(남,여)는 공로장학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5장 선거 및 임원

제7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단, 1차 투표 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 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선정하여 사생회원들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시 보궐 선거를 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재정운영

제9조

사생회 회원들은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1) 기숙사 입사비: 사생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며 지도위원회와 사생회장의 결의에 의거 입사비를 책정, 집행하며, 사생회 총회 시 입사비의 사용내역을 학교의 협조 하에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한다.

2) 사생회비: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회원들에 한해 납부되는 회비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해 일정액을 회비로 걷기로 한다.

3) 식비: 사생회원들의 숙식을 위해 식당이 운영되며 식당 운영상의 재정확보를 위해 사생회원 및 일반 학우들에게 소정의 식비를 받도록 한다. 또한 식당의 재정운영은 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생회 자치로 한다. 식비의 집행은 주식과 부식비용에만 한하며 운영위원회는 매월 결산 보고서를 감사의 날인을 받아 지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4) 기숙사비 반환: 입사비 반환은 개학 후 2주안에 반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입사 후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입사비를 반환 받을 수 없다.

제 7장 준수 사항

제10조

알차고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사생회원 각자는 시간을 지키고 경건을 위한 모임에 필히 참석하여 기타 여러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만하며 번번히 이를 어길 경우에는 대학(사생회)의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만 한다.

1) 식사시간: 식사는 정한 시간에 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 이외에는 배식을 받지 못한다.

2) 귀사시간 및 취침시간: 수요일과 주일은 오후 12시까지, 그 외의 날은 11시까지 귀사 하여야 하며 귀사치 못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 양식에 따라 외박 허가원을 제출하여 사생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새벽기도회: 모든 사생회원들은 새벽 6시에 있는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003년 1학기부터 새벽 경건회 7회 결석 시 바로 퇴사 조치되며 다음 학기에 기숙사에 입사 할 수 없다.)

※ 위 ( )사항은 생활관 규칙이므로 사생회에서 개정 할 수 없다.

4) 더부살이: 더부살이로 등록한 회원도 사생회원의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부살이도 사생회의 모든 회칙 및 생활관 규칙을 준수 해야한다. 더부살이 등록은 기숙사에 배정된 인원이 다 찬 후에 각 호실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더부살이비는 사생회와 호실장 회에서 정하는 액수의 금액을 더부살이 비로 사생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사생회 예산에 편입해 집행한다.

5) 호실 경건회: 매주 한 날을 정하여 호실장의 인도하에 자유로이 경건회를 가진다.

6) 전열기구의 사용: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의 사용은 절대금지하며 기타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물질(건)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7) 위생: 일반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자에게는 수시로 격리나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각각 청결과 위생에 힘써야 한다.

8) 기물파손: 사내의 기물을 고의로 또는 지나친 부주의로 파손한 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외인기숙: 사생회원 외에는 사생회장의 허락 없이 누구도 기숙할 수 없다. 허락 없이 기숙을 허용하다 발각 될 시 그 호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10) 신학생의 품위에 맞는 언어와 행동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기숙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한다.

11) 임기가 끝난 사생회 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관예우를 받지 못한다.

제8장 부 칙

1) 본회의 회칙을 개정,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발의는 사생회장 또는 사생회원 1/3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학생활동

대학학생활동

- 총학생회 조직표
- 총학생회 회칙
-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 신학과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 음악학과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 총여학우회 선거시행세칙
-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학대학원 학생활동

- 신학대학원 원우회 조직표
-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 원우회 선거시행세칙
- 호신선교센터 정관(신학대학원)
- 호신선교센터 정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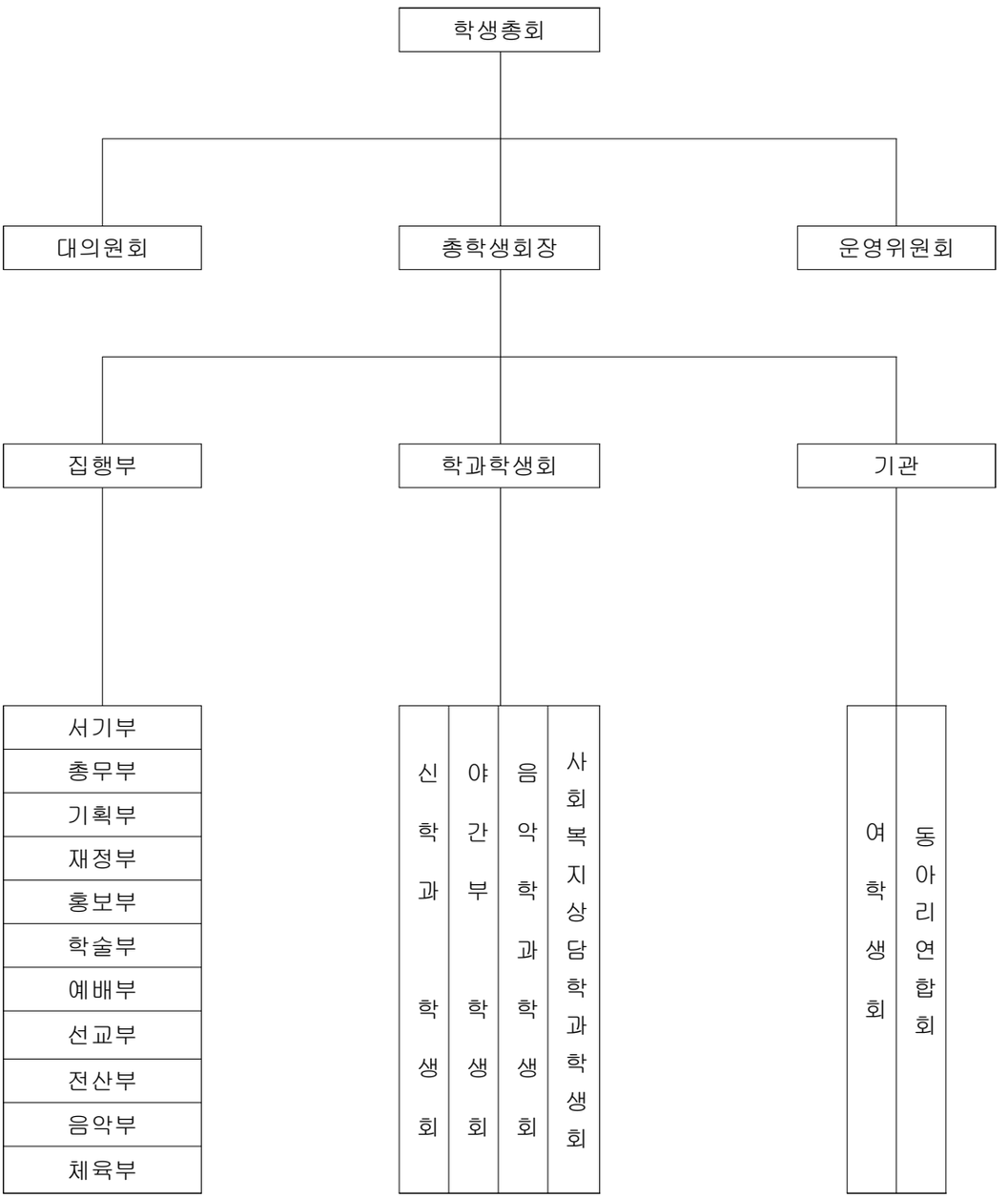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학과학생회
기관
서기부
총무부
기획부
재정부
홍보부
학술부
예배부
선교부
전산부
음악부
체육부
신학과 학생회
야간부 학생회
음악학과 학생회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경건과 학문을 통한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며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 미납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키로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하여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학교 당국의 관계위원회에서의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서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회원도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집행부, 신학과 학생회, 야간부 학생회, 음악학과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 호신선교센터로 구성되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자격은 1장 제5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학생총회는 학생 회칙의 개정 및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 (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2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총회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결)

학생총회는 주간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시총회는 1/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14조 (지위)

대의원 총회는 본 회의 심의 및 의결기구이다.

제15조 (구성)

1) 대의원은 각 과 학년별 1인으로 구성한다. 단 각 학년에서 재선거를 통하여 연임될 수 있다.

2) 의장과 총무, 서기를 둔다.

제16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사전 동의권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3)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4) 학생회비 심의 및 의결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6) 본 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권

(단, 감사는 총회 3일전에 완료하고 세부사항은 대의원 감사세칙에 따른다)

7) 총학생회장 탄핵 요구권

제17조 (임기)

1) 1학년은 3월부터 다음년도 상반기(3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2) 2, 3, 4학년은 상반기 정기총회 다음 일로부터 다음연도 상반기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의)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총학생회 정기총회 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의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3이상 또는 총학생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최초의 회의는 전 학년도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 유고시 총무/서기 순으로 권한 대행한다.)

4) 대의원은 총학생회장 선출 전 14일 이내에 선출하며, 총학생회장 선출 후 20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한다.

5) 대의원회 의결은 그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9조 (지위 및 책임)

1)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 활동과 학습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다.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 당국의 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대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학생대표도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업무와 지위를 대행한다.

제20조 (임기 및 자격)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익년 12월말까지 1년으로 하며, 본 대학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단, 야간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본 대학 4학기 등록을 필하고 야간부에서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21조 (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야간 부회장 입후보자는 공동 입후보하지 아니하고 회원의 직접 선출로 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2) 집행부 각 부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3) 집행부 각 부장 해임권

4) 본 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대위원회에 제출한다.

5) 본 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6) 대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본 회의 집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제5장 집행부

제23조 (지위 및 권한)

1) 집행부는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2) 집행부는 임기 만기일 한 달 전부터 차기 집행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제24조 (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서기, 각 부로 구성한다. (단, 각 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활동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는 제반 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서기부: 본 회의 제반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총무부: (주 · 야 각 1인) 본 회의 모든 행사를 운영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일련의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부: 본 회의 행사 기획을 담당한다.

•재정부: 본 회의 경리를 담당한다.

•홍보부: 본 회의 모든 대내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학술부: 본 회의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예배부: 본 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성과 경건 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선교부: 본 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음악부: 본 회의 음악 선교 및 교회 음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체육부: 본 회의 학내외 체육을 담당한다.

•전산부: 본 회의 전산분야를 담당한다.

•대외협력: 본 회의 학내에 기관의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제6장 학과학생회

제25조 (구성)

본 회는 신학과 학생회, 야간부 학생회, 음악학과 학생회,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로 구분한다.

1) 신학과 학생회는 내규에 의거 구성한다.

2) 야간부 학생회는 내규에 의거 구성한다.

3) 음악학과 학생회는 내규에 의거 구성한다.

4)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는 내규에 의거 구성한다.

제7장 총여학생회

제26조 (구성)

본 회에 등록된 모든 여학생으로 구성하며 제반사항은 여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1) 여학생회가 출범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역할은 총학생회가 전담한다.

제8장 동아리 연합회

제27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하며 각 동아리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28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선출하며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1) 동아리의 등록 예산집행 및 동아리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2) 동아리의 활동계획서, 예산안, 활동보고서를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0조 (회칙)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31조 (구성)

본회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야간부회장, 총여학생회장,음악학과 학생회장, 신학과 학생회장, 방송국장,학보사 국장, 동아리 연합회장, 호신선교센터회장, 사회복지상담학과회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구성은 의장과 총무, 서기를 둔다.(단,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각 기관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기관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의결하여 분쟁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반영토록 한다.(단, 분쟁기관의 대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2/3이상 출석과 2/3이상 의결 정족수로 의결한다.

(의결권 제외자는 재적 및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33조 (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월부터 다음 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당해 기관장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34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학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10장 호신선교센터

제35조 (구성)

본회에 등록된 모든 학생으로 구성하며 제반 사항은 호신선교센터 정관에 따른다.

제11장 재 정

제36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헌금, 학교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되고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전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제2기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 편성시, 총학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의원 예·결산 심의 전날까지 각 기관은 총학과 협의한 후, 예산 평성을 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받는다.

2) 학보사·방송국은 직접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는다.(단, 원우회 대의원 임원 참석하에서 하고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부 대의원회에 위임한다.)

3)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통고 하고, 30일 이내에 본 회에 보고한다.

4)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5) 예산수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시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출납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40조 (결산감사)

1) 결산감사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2) 결산안은 총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3) 대의원회는 결산감사 내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41조 (감사)

본 회는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매 학기 대의원회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장 선거

제42조 (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43조 (선거시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11월 둘째주간에 실시한다.

제4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고 학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과 학년 주간1명, 야간 1명, 음과1명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기총회 전 10일 이내에 선출하고 4월부터 시작하여 3월말로 종료된다.)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위원회에 위원장, 총무, 서기를 둔다. (단, 2000년 9월에 선출된 자들 중 1학년과 3학년은 2002년 3월로, 2학년은 2001년 3월로 임기를 마친 후 자동 삭제된다.)

제45조 (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대의원회 의장 궐위시 잔임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6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3장 회칙 개정

제47조 (발의 요건)

1) 집행부의 발의

2) 대의원 총회의 1/2이상의 발의

3) 회원의 1/3이상의 발의

제48조 (의결 공포)

1) 모든 발의는 한 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집행부 발의는 대의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부결 시에는 정확한 사유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의결된 사항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신학과 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경건과 학문을 통한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며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치)

본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단, 회비 미납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학교 당국의 관계위원회에서의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서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징계와 관련된 경우 해당 회원도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7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 (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자격을 제 1장 제 5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9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2) 학생총회는 학생 회칙의 개정 및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0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신학과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감사보고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3) 학생총회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의결)

학생총회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시총회는 1/30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신학과 학생회장 및 신학과 부 학생회장

제13조 (지위 및 책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활동과 학습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은 학생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 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대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학생대표로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와 지위를 대행한다.

제14조 (정·부 학생회장 대행)

정·부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부의 각 부장이 따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 (임기 및 자격)

학생회장과 부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으로 하며, 본 대학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16조 (신분보장)

정·부 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장은 학생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부의 각 부장은 추천하여 대의원이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3) 집행부 각 부장 해임권을 갖는다.

4) 본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본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6) 대의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본회의 집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18조 (지위 및 권한)

1) 집행부는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2) 집행부는 임기 만기일 한 달 전 부터 자기 집행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제19조 (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서기, 각 부로 구성한다.(단, 각 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활동 보고서와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3) 집행부는 제반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총무부: 본회의 모든 행사를 운영하 고 각종 회의 개최 및 일련의 사무를 담당한다.

· 서기부: 본회의 제반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 기획부: 본회의 행사기획을 담당한다.

· 재정부: 본회의 경리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부: 학교 대·내외 협력을 담당한다.

· 홍보부: 본회의 모든 대내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 예배부: 본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성과 경견 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선교부: 본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체육부: 본회의 학내 체육을 담당한다.

제 5장 재정

제20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헌금, 학교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 전항의 회비는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제 2기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22조 (예산 편성 및 심의)

1) 예산 편성 시, 총학생회 보조금에 대해서, 대의원 예·결산 심의 전날까지 신학과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받는다.

2)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신학과 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수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정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예산집행)

예산 집행시 영수증을 첨부하고 각 기구에는 화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 (결산감사)

1) 결산감사는 제 1기와 제 2기로 구분한다.

2) 결산 안은 신학과의 회의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25조 (감사)

본회는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매 학기 대의원회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선거

제26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비밀·직접·평등선거로 한다.

제27조 (선거 시기)

신학과 정·부회장선거는 11월 셋째 주간에 실시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고학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년 1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 (보궐선거)

정·부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 궐위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0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장 회칙개정

제31조 (발의 요건)

1) 신학과 학생회의 발의

2) 회원의 1/3이상 발의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경건과 학문을 통한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며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단, 회비 미납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분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목적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하여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학교 당국의 관계위원회에서의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서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회원도 자기를 위하여 변론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집행부, 신학과 학생회, 야간부 학생회, 음악학과학생회, 총여학생회,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호신선교센터로 구성되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사회복지상담학과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학생총회는 회원자격을 1장 5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

2) 학생총회는 학생 회칙의 개정 및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 (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2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전체 대의원의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의결) 학생총회는 주간 제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임시총회는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4조 (지위 및 책임)

1)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 활동과 학습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의 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대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학생대표도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와 지위를 대행한다.

제15조 (임기 및 자격)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2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으로 하며, 본 대학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16조 (신분보장)

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7조

1) 학생회장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부 각 부장은 추천하여 대의원이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3) 집행부 각 부장 해임권을 갖는다.

4) 본 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본 회의 예산집행을 결재한다.

6) 대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본 회의 집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18조 (지위및권한)

1) 집행부는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2) 집행부는 임기 만기일 한달 전부터 자기 집행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

제19조 (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서기, 각 부로 구성한다. (단, 각 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활동 보고서와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3) 집행부는 제반 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서기: 본 회의 제반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 총무: 본 회의 모든 행사를 운영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일련의 사무를 담당한다.
- 회계: 본 회의 정리를 담당한다.
- 홍보부장: 본 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성과 경건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음악부장: 본 회의 음악선교 및 교회음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체육부장: 본 회의 학내·외 체육을 담당한다.
- 사회부장: 본회의 모든 규율 분야를 담당한다.
- 봉사부장: 봉사분야를 담당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헌금, 학교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되고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제2기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22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편성 시, 총학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의원 예·결산 심의 전날까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총학과 협의한 후, 예산편성을 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받는다.

2)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사회복지상담학과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수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정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예산 집행)

예산의 집행 시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출납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 (결산감사)

1) 결산감사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결산안은 사회복지상담학과의 회의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25조 (감사)

본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매 학기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선 거

제26조 (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27조 (선거시기)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장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부학생화장 선거는 11월 셋째 주간에 실시한다.

제28조

1)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고 학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과 학년 1명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보궐선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30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장 회칙개정

제31조 (발의 요건)

1) 집행부의 발의

2) 대의원 총회의 1/2 이상의 발의

3) 회원의 1/3이상의 발의

제32조 (의결공포)

1) 모든 발의는 한 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집행부 발의는 대의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단, 부결 시에는 정확한 사유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의결된 사항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음악학과 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경건과 학문을 통한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며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단, 회비 미납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분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하여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에서의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서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회원도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구성)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집행부, 신학과학생회, 야간부학생회,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음악학과학생회, 총여학우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호신선교센터로 구성되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음악학과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학생총회는 회원자격을 1장 5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

2) 학생총회는 학생 회칙의 개정 및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 (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음악학과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2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전체 대의원의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총회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9단, 전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결)

학생총회는 주간 제적 과반수 이사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임시총회는 1/3 이사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음악학과 학생회장 및 음악학과 부학생회장

제14조 (지위 및 책임)

1)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 활동과 학습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의 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대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학생대표도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와 지위를 대행한다.

제15조 (임기 및 자격)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2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으로 하며, 본 대학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16조 (신분보장)

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부 각 부장은 추천하여 대의원이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3) 집행부 각 부장 해임권을 갖는다.

4) 본 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본 회의 예산집행을 결재한다.

6) 대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본 회의 집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18조 (지위및권한)

1) 집행부는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2) 집행부는 임기 만기일 한 달 전부터 자기 집행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

제19조 (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서기, 각 부로 구성한다. (단, 각 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활동 보고서와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3) 집행부는 제반 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서기: 본 회의 제반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 총무: 본 회의 모든 행사를 운영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일련의 사무를 담당한다.

- 회계: 본 회의 정리를 담당한다.
- 홍보부장: 본 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영성과 경건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음악부장: 본 회의 음악선교 및 교회음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체육부장: 본 회의 학내·외 체육을 담당한다.
- 사회부장: 본회의 모든 규율 분야를 담당한다.
- 봉사부장: 봉사분야를 담당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헌금, 학교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되고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제2기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22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편성 시, 총학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의원 예·결산 심의 전날까지 음악학과는 총학과 협의한 후, 예산편성을 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받는다.

2)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음악학과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수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정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시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 (결산감사)

1) 결산감사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2) 결산안은 음악학과 회의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25조 (감사)

본 회는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매 학기 대의원회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선 거

제26조 (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27조 (선거시기)

음악학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선거는 11월 셋째 주간에 실시한다.

제28조

1)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고 학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과 학년 1명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보궐선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궐위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

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30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장 회칙개정

제31조 (발의요건)

1) 집행부의 발의

2) 대의원 총회의 1/2 이상의 발의

3) 회원의 1/3이상의 발의

제32조 (의결공포)

1) 모든 발의는 한 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집행부 발의는 대의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단, 부결 시에는 정확한 사유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의결된 사항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호남 신학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과 성서적 인간 해방 전통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사업에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민중, 민족적인 영성을 개발하고 한반도의 정서에 맞는 신학을 정립한다. 신학 대학의 발전과 교회와 민족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신학 대학의 민중적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호남 신학대학교 동아리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 함양과 자율적 자치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동아리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호남 신학대학교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교회와 민족,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호남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각 동아리 회원으로 하며 부칙 2장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각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연합회 회원이 되며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회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 단체는 대표자 총회에서 장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사업 및 결의 사항에 적극 복무한다.

제6조 (회의 구성)

본 회의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 총회, 동아리 연합회의 사무국을 구성한다.

제7조 (가입)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합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1년의 준회원 기간을 거친 후에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대학 발전의 일을 수행한다.

2.동아리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실시한다.

3.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각 동아리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4.각 동아리에 활동하는 회원들의 자질 함양과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한다.

5.동아리에 대한 문제 조정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회원이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대표자 총회

제9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대표자 총회는 동아리 연합회 임원과 각 동아리 임원단으로 구성한다. 단 각 동아리 임원단은 3명으로 한다.

제11조 (의장)

본 회의 의장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제12조 (임무 및 권한)

대표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1.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의결권

2.사업 계획 및 결과의 심의 및 동의권

3.예산 심의 승인권 및 결산안 심의권

4.본 회의 결의, 사무 및 기타 사업에 관한 감사권

5.연합회장 선출권

6.기타 대표자 총회를 필요로 한 사항

제13조 (소집)

대표자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사무국의 소집 요구 시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기구설치)

1.대표자 총회는 연합회장, 총무, 서기, 회계 및 분과장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2.대표자 총회는 업무상 필요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특별 기구는 임무 완료시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제12조 1항은 재적 대표자 과반수이상 출석과 대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2,3,4,5,6항은 출석 대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3장 대표자 회의

제16조 (지위)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평상시 의결기구이다.

제17조 (구성)

동아리 임원과 각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된다.

제18조 (의장)

본 회의 의장은 동아리 연합회 의장으로 한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매 학기 사업 계획 및 결산안을 심의 확정

기타 대표자 회의를 필요로 할 사항

제20조 (소집)

학기 중 필요로 할 시에 회장이 직접 소집한다.

제4장 동아리 연합회장

제21조

(지)위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대표자 총회와 대표자 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을 관장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연합회 및 동아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관해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 여타 기구와 의사를 개진한다.

2.연합회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대표자 총회에 제출한다.

3.대표자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한 사업 이외에 인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대표자 총회 및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주관한다.

5.대표자 총회 및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된 사항 중 연합회 회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6.개정된 회칙은 7일 이내에 공고한다.

7.연합회 회장은 사무국을 구성한다.

제5장 사무국

제23조 (지위)

사무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4조 (구성)

사무국은 연합회장, 총무, 서기 및 회계,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대표자 총회, 회의에서 결의된 사업을 진행한다.

2.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결의를 집행한다.

제26조 (각 부서 및 기능)

사무국은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총무: 동아리 연합회 사무를 관장하며 연합 회장 출장 시 권한을 대행한다.

2.서기: 동아리 연합회 제반업무를 관여한다.

3.회계: 서무, 경리 및 동아리 연합회 경비에 대한 사무를 한다.

4.각 분과장:

가. 학술 분과장: 학술분과 각 동아리의 제반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한다.

나. 교육 분과장: 교육분과 각 동아리의 제반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한다.

다. 홍보 분과장: 홍보분과 각 동아리의 제반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한다.

라. 편집 분과장: 동아리 소개와 연합회의 행사 등을 동·연 회보를 통해 편찬하는 일을 한다.

제6장 제정

제27조 (경비)

1.동아리연합회의 제정은 총학생회의 보조금, 각 동아리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2.동아리연합회의 제정관리는 회계가 하되 인출 및 진행은 연합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1.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 한다.

2.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되 각 학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진행한다.

제29조 (예산)

예산은 사무국이 동아리 연합회의 각 기구 및 사업계획 항목별로 편성한다.

제30조 (결산)

결산은 동아리 연합회 사무국에서 일괄 작성하여 대표자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31조 (발의)

회칙 개정 발의 요구권은 다음과 같다.

1.재적 동아리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발의

2.사무국의 발의

제32조 (의결공고)

발의시 연합회장은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대표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연합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8장 선거

제33조 (연합회장, 총무 입후보 자격)

4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로 동아리 활동인자로 한다.

제34조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 전원으로 하며 연합회장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

제35조 (선거 및 선출시기)

연합회장 및 사무국 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1월 중 연압회장을 선출한다.

제36조 (보궐선거)

동아리 연합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무국 주관으로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한다.

제37조 (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한다.

제37조 (기타)

선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선거시해 시책에 의한다.

부 칙

제1장 선거 세칙

제1조 (회장, 총무)

회장의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권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점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동아리 회원 20이상의 추천서

2.재학 증명서

3.사진 3매 또한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기관 만료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2조 (서기, 회계)

1인의 추천과 1인의 동의를 얻어 입후보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제2장 상 벌(재정지원)

제3조

각 동아리의 사업계획과 예산 계획서를 제출 시 동아리 연합회 임역원과 동의하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하고 회비미납 동아리는 제외된다.

제4조

대표자 총회나 회의 때 월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 학기 내 사업 계획을 50%이상 실행하지 않는 동아리는 징계대상으로 간주한다.

제5조

동아리 회칙을 어길 경우나 동아리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경우 최소 1주,

최대 1달 동안의 모든 대내외적인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다.(대표자회의를 통하여 확정 공고한다.)

사례: 대표자회의 불참과 회비미납을 합하여 4번 이상 어길 경우, 동아리방 사용규칙을 3번 이상 범칙할 경우, 이 외에 동아리 연합회로 건의가 들어올 경우 동아리 연합회에서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동아리 연합회와 동아리 대표자 총회 및 임시 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아리 연합 회장은 이를 학생처로 인계할 수 있다.

제7조

학기 내 회비 미납 동아리는 다음 학기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한다.

제3장 동아리방 사용규칙

제8조

각 동아리는 오후 10:30시 이전에 소등한다. 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 작업할 수 있다.

제9조

동아리방 안에서는 숙박 및 취사를 절대 할 수 없다.

제10조

동아리방에 본교생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11조

각 동아리의 정기 모임이 아닌 일반 모임일 경우 타 동아리를 위해 가급적 고성을 삼가 한다.

제12조

전열 기구 및 이불, 취사도구는 절대 반입해서는 않된다.

제13조

도난방지를 위해 동아리방의 귀중품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학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학기중 사용되는 동아리방열쇄는 동아리 기간이 끝나면 각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에게 반납하고 동아리연합회장은 모든 열쇄를 수거하여 학교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동아리실은 동아리연합회장과 학교 관계자가 함께 관리 점검한다.

제16조

동아리연합회장과 학교 관계자가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수시로 각 동아리방에 들어 갈 수 있다.

제4장 회 비

제17조

각 동아리는 매달 대표자회의 참석 시 동아리 회비로 5,000원을 낸다.

부 칙

동아리 신규 재등록 최소 인원수는 10명으로 한다.

지도교수는 해당학기에 나오시는 모든 교수님으로 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선거는 11월에 진행하며, 지원자가 없을 시 제비뽑기를 진행하여 선출한다.

동아리 사업지원금은 8:2로 한다. 동아리 연합회 8, 동아리2의 비율로 한다.

매달 동아리 사업비 감사를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매달 진행되는 감사에 3번 이상 참여하지 않을 시 동아리 재등록을 제재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조 (선거권)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생회 회원에게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2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명감이 투철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 4학기 등록을 필하고 입학 후부터 선거전까지 전체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단,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제외한다)

(단, 야간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본 대학 야간부에서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선거 직전 실천 평가가 “Pass" 인 자

제3조 (방법)

정·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 (입후보등록)

1)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야간 부회장 입후보는 선거권자 30인 이상 추천서)

②총장의 추천서

③재학증명서

④성적증명서

⑤사진 5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접수 기간 만료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5조 (선거운동)

1)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의견 발표회를 주, 야간 각 1회 갖게 된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입후보자는 협의하여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의 결정 하에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한다.

제7조 (투표)

1) 선거권자는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8조 (개표)

개표는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당선)

1)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재투표하며, 재투표 시에도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학과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제1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에 한해서 선거권을 갖는다.

제2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명감이 투철하며, 주체성이 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 3학기 등록을 필하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 (방법)

신학과 학생회장,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 (입후보 등록)

1) 신학과 학생회 정, 부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한다.

①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

②재학증명서 1통

③성적 증명서 1통

④사진 3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 기간 만료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5조 (선거운동)

1) 위원회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의견 발표회를 각 1회 갖게 된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정될 경우, 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의 결정 하에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7조 (투표)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위원, 참관인 외는 출입을 금한다.

제8조 (개표)

개표는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당선)

1)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하며, 재투표 시에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3) 단독 출마일 경우 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제1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에 한해서 선거권을 갖는다.

제2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명감이 투철하며, 주체성이 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 3학기 등록을 필하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 (방법)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장,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 (입후보 등록)

1)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한다.

①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

②재학증명서 1통

③성적 증명서 1통

④사진 3매

2)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 기간 만료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5조 (선거운동)

1) 위원회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의견 발표회를 각 1회 갖게된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의 결정하에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7조 (투표)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위원, 참관인 외는 출입을 금한다.

제8조 (개표)

개표는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당선)

1)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하며, 재투표시에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3) 단독 출마일 경우 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음악학과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제1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에 한해서 선거권을 갖는다.

제2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명감이 투철하며, 주체성이 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 3학기 등록을 필하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 (방법)

음악학과 학생회장,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 (입후보 등록)

1) 음악학과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한다.

①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

②재학증명서 1통

③성적 증명서 1통

④사진 3매

2)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 기간 만료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5조 (선거운동)

1) 위원회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의견 발표회를 각 1회 갖게 된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의 결정하에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7조 (투표)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위원, 참관인 외는 출입을 금한다.

제8조 (개표)

개표는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당선)

1)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하며, 재투표시에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3) 단독 출마일 경우 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총여학우회 선거 시행규칙

제1조 (선거권)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제2조 (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체성이 강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4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 (방법)

총여학우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공고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한다.

제4조 (입후보등록)

1) 총여학우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 공고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한다.

①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서

②재학증명서

③사진3매

2) 선거 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격을 심사하여 서류기간 만료후 48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5조 (선거운동)

1)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후 입후보자의 합동 의견 발표회를 각 1회 갖게 된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의 결정 하에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7조 (투표)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 위원, 참관인 외는 출입을 금한다.

제8조 (개표)

기표는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당선)

1)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재투표하며, 재투표시에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일 경우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시킨다.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체의 정의)

단체란 본 대학교의 학생회부서 산하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2)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3) 설립목적이 타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낙을 받을 것.

제4조 (등록절차)

1) 단체로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 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지도교수 취임승낙서(소정양식)

③회칙 ④임원 및 회원명단

⑤활동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2) 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①단체 재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회칙

③임원 및 회원명단 ④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소정양식)

⑤신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⑥이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지도교수의 의견서

제5조 (승인)

제4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단체로 인정된다.

제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단,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도교수)

1)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2) 지도교수는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3)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 수리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1)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의 활동)

1)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모든 행사는 제10조에 의한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팜플렛,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쇄 배포하여야 한다.

4) 단체는 각 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회허가원 제출)

1) 단체가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단체대표가 집회(행사) 허가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허가원은 집회 또는 행사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의 정기집회는 단체등록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집회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단체의 자격상실)

1) 단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의결로 그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본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③본교의 학생회 운영규정 및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⑤지도교수 사임서가 수리된 이후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⑥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 할 수 있다.

3)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 사유서와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이 정하는 설립요건에 미흡한 현존 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이 규정은 198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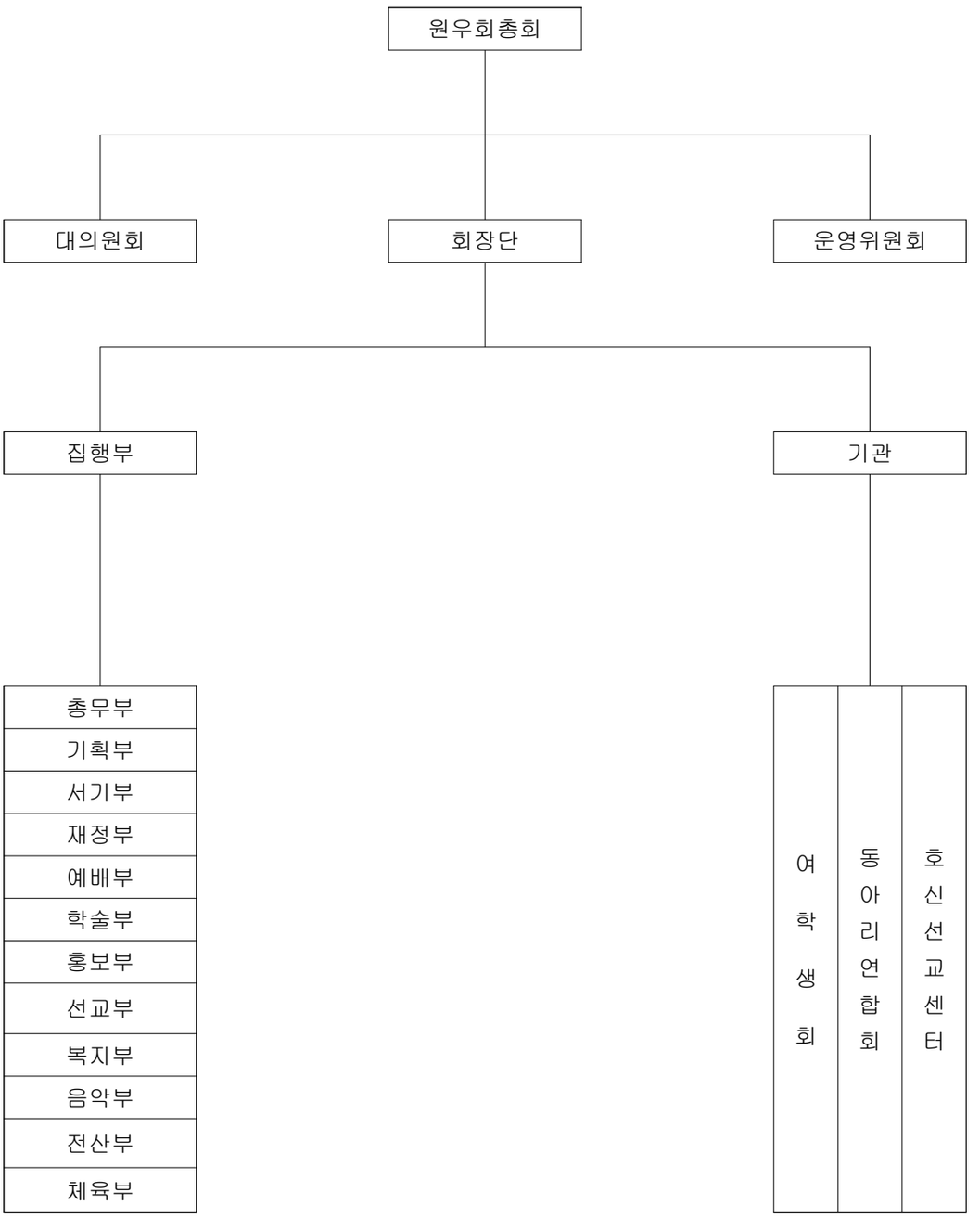

전 문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성서적 신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입각한 교역자로 양성되기 위하여, 신학을 바르고 깊게 연구하고, 교역자로서의 지도력과 인격을 도야하며, 신학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 시대가 원하는 참다운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최상의 여건과 민주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모두는 학생 자치기구인 원우회를 건설하였다. 원우회는 경건과 학문을 통한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정신과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이루는데 그 존립의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 원우회는 회원 모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고, 회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치역량을 필요로 하는 학생자치기구임을 선언하고, 이에 원우회 회칙을 수립한다.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호남신학대학교 학칙 제7장 45조에 의거하여 학생활동을 위한 본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신학대학원의 자치와 본 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단, 회비 미납 시 전 1항의 권리 중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을 박탈하며 회원 활동의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원우회 지급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우회 복지와 관련된 이용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우회 자체에서 수납한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하여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기구의 구성)

1)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한 학생 자치의 실현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를 두고 그 산하로 원우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여학생회, 호신선교센터로 구성되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

립성을 갖는다.

2)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학생자치 기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될 수 있다.

제7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

1) 본 회의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회장이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회원도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③학생 신분 및 본회 활동에 대한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④기타 본회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관한 사항

제2장 총 회

제8조 (지위)

본 회의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구성)

본 회의 총회의 회원 자격은 제1장 제4조에 의거하며, 총회는 본 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

2) 본 회의 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4)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5) 원우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①회장단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갖는다.

②탄핵안은 총회를 통해 재적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단, 의장 탄핵 안건 시 탄핵 대상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본 회의 대의원 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직을 수행 한다.

제12조 (회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종강 전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이나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결)

1) 본 회의 총회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1/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단 탄핵 안건의 경우는 전 제11조 5항 2호에 따라 의결한다.

제3장 원우회

제14조 (지위)

원우회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집행기구로서 학생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제15조 (구성)

원우회는 원우회장과 부회장 및 집행부로 구성하며 원우회산하 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호신선교센터 및 자치기구를 둔다.

제16조 (회장단의 지위 및 책임)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집행부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 활동과 학습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 당국의 회의 요청에 의해서 대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회원 대표도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업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 한다.

제17조 (회장단의 임기 및 자격)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학기 총회로부터 익년 2학기 정기총회까지 1년으로 하며, 회장의 궐위에 따른 직무 대행 및 탄핵 결정에 의하여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자격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18조 (회장단의 신분보장)

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9조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원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부 각 부장의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4) 본 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5)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안할 수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본 회의 집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6) 인계인수서를 작성(일반회계기준)하여 대의원에 1부 제출한다.

제20조 (회장단의 인수인계)

회장단의 인수인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수인계 기간은 7월까지 한다.

2)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모든 원우회 업무의 책임은 전임 회장에게 있다.

3) 재정의 인수인계는 7월까지 한다.

제21조 (집행부의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제22조 (집행부의 구성)

집행부는 총무, 정책, 서기, 재정 각 국과 부서로 구성한다. (단, 각 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집행부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본 회의 활동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는 제반 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총무: 본회의 모든 행사를 운영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회장단과 집행부의 업무를 조율 한다.

②서기: 본 회의 기록 및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과 사무를 담당한다.

③재정: 본 회의 경리를 담당한다.

④기획국장: 본 회의 기획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내외적인 모든 행사의 계획을 수립 한다.

- 협력부장(구 학술부장): 교내기관 및 대외 기관과 사업적 협력을 담당한다.
- 홍보부장: 모든 대내외적인 홍보를 담당 한다.

⑤실천국장(구 선교부장): 본회의 예배를 주관하고 경건훈련에 관련된 기관과 협조를 담당한다.

- 예배부장: 예배 기획 전반의 업무를 담당 한다.
- 음악부장: 찬양팀을 운영하고, 음악과 관련 된 사항을 담당한다.

⑥복지국장: 본 회의 복지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교내 주차 관리를 담당한다.

- 체육부장: 학내외 체육대회 개최 건의 및 체육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 미디어부장: 전산 및 멀티미디어 환경 분야를 담당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지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칭한다.)는 본 회의 운영 및 자문기구이다.

제24조 (구성)

운영위는 원우회 회장단, 대의원의장, 각 학년 대표, 여학생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호신선교센터 회장으로 구성된다.(단, 의장은 운영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나 인명을 포함 할 수 있다.)

제25조 (의장)

원우회 회장이 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의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 운영위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1인이 임시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6조 (회의)

운영위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성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갖는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회의 통일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원우회운영 및 사업전반에 관한 토의 및 심의를 한다.

4) (기관쟁의 조정) 원우회 소속 각 기관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조정을 해야 하며, 이 사항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기록은 원우회에서 관리하며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제27조 (권한)

1) 대의원회의 결산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중 4인을 선출하여 감사 하도록 한다. (단, 대의원은 감사위원에서 제외한다.)

3) 감사일시는 정기 감사종료 후 익일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5장 대의원회

제28조 (지위)

대의원 총회는 본 회의 심의 및 의결 기구이다.

제29조 (구성 및 선출)

1) 대의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된 대표 3인으로 한다.

2) 대의원은 3월 개강 후 2주 안에 각 학년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인원결원 시 상시 선출 할 수 있다.)

3) 의장과 총무, 서기를 둔다.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30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사전 동의권

2)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3)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권

4) 원우회비 심의 및 의결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단, 심의는 총회 7일 전에 완료한다).

6) 원우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권(단, 감사는 총회 7일 전에 완료하고 대의원회 요구시 2회 이하의 중간 감사를 할 수 있다).

7) 집행부의 각 부장 인준동의권

8) 회장 탄핵 요구권

9) 학교 당국 관계자, 회장 및 임원의 출석 요구권

10) 학교 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권

11) 원우회 인계인수서 확인(일반회계기준에 따른 작성)하여 고정자산 등의 유동을 확보한다.

제31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월에서 다음해 대의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단, 의장의 임기는 2학년 2학기 초에서 3학년 2학기 말로 한다.).

제32조 (회의)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원우회 정기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의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3이상 또는 원우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최초의 회의는 전 학년도 의장이 소집한다.

4) 대의원회 의장 선출은 대의원회 구성 후 5일 이내로 한다.

5) 대의원회 의결은 그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동아리 연합회

제33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하여 각 동아리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34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선출하여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1) 동아리의 등록, 예산 집행,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2) 동아리의 활동계획서, 예산안, 활동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36조 (회칙)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제7장 여학우회

제37조 (지위)

여학우회는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들의 대표 기구이다.

제38조 (구성)

여학우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로 한다.

제39조 (회장 및 선거)

여학우회 회장은 여학우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여학생회를 대표한다.

제40조 (임무)

여학우회는 여학우들의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1조 (회칙)

여학우회는 여학우들의 자치 활동 및 업무에 따른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

제8장 호신선교 센터

제42조 (구성)

호신선교센터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대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3조 (목적)

본 호신선교센터는 선교를 위하여 국내외의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돕는 것을 한다.

제44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교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호신선교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장 재 정

제45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원우회비, 헌금, 학교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원우회비 중에서 방송국에 1인당 1천원을 지급한다.

제46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년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전 항의 회계년도는 제 2기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제47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집행부가 본 회의 각 기구별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심의한 후 대의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각 기관은 총회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에서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회장에게 통고하고 3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한다.

3)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예산 수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예산집행)

1) 예산의 집행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출납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우회에서 수납하여 반드시 학교 당국에 통보하고 인출 및 집행은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본 대학교 공식 어플인 “열가지”를 통한 그 수익금은 선교비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한다.

4) 원우회, 총학생회 공동명의 통장을 사용 하여 “열가지” 수익금을 관리한다.

제49조 (결산감사)

1) 결산 감사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2) 결산안은 본 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의 감사를 받는다.

(단, 각 기관은 총회 14일전까지 결산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대의원회는 결산 감사 내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

본 회는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매학기 대의원회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선 거

제51조 (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로 한다.

제52조 (선거시기)

회장, 부회장 선거는 5월 2째주까지 실시한다.

제53조 (선거관리위원회)

1) 본 회의 선거관리 위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고 학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우회장선거에 관하여는 3월 마지막 주에 원우회장이 공고 한다. 단, 각 학년별 3명을선출하되, 4월 첫 주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완료되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1달간 일하다가 선거에 관한 업무를 종결하고, 1년간 상시기구로 존속한다.

제54조 (보궐선거)

1) 회장, 부회장 궐위시 그 잔임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부터 15일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대의원 의장 궐위시 그 잔임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부터 7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55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56조 (발의요건)

1) 집행부의 발의

2) 대의원 총회 1/2이상의 발의

3) 회원의 1/3이상의 발의

제57조 (의결공포)

발의시 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한 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정기총회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고 3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개정일)

최초 제정일은 1996년 9월 5일이다.

제1차 개정일은 1998년 4월 1일이다.

제2차 개정일은 1999년 3월25일이다.

제3차 개정일은 1999년 9월 8일이다.

제4차 개정일은 2000년 4월 4일이다.

제5차 개정일은 2000년 9월20일이다.

제6차 개정일은 2001년 6월 7일이다.

제7차 개정일은 2001년 11월28일이다.

제8차 개정일은 2003년 6월11일이다.

제9차 개정일은 2003년 11월27일이다.

제10차 개정일은 2004년 6월 3일이다.

제11차 개정일은 2005년 6월 1일이다.

제12차 개정일은 2006년 5월 30일이다.

제13차 개정일은 2006년 11월 29일이다.

제14차 개정일은 2008년 6월 4일이다.

제15차 개정일은 2008년 11월 26일이다.

제16차 개정일은 2011년 11월 30일이다.

제17차 개정일은 2014년 3월19일이다.

제18차 개정일은 2014년 9월3일이다.

원우회 선거 시행 세칙

제1조 (선거권)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원우회 회원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2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명감이 투철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 3학기를 등록한 자로 한다.

3) 선거 직전 실천 평가에서 “패스”한 자

제3조 (방법)

정·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 (입후보 등록)

1)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서명

나.총장과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서

다.재학증명서 1통

라.성적증명서 1통

마.사진 5매(반명함판)

위 가·나 항에 관하여 중복 추천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접수 만료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공고한다.

제5조 (선거운동)

1)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정견 발표회를 1회, 합동 공청회를 1회 실시한다.

2)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입후보자는 협의하여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의 결정 하에 위원장이 투표일 14일 이내에 이를 공고한다.

제7조 (투표)

1) 선거권자는 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8조 (개표)

개표는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9조 (당선)

1) 선관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이를 공고한다.

2) 입후보자가 한 조일 경우, 원우회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2/3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 입후보자가 두 조 이상일 때, 최다 득표자로 그 차가 10표 이상일 때 당선으로 한다.

4) 입후보자가 한 조일 경우, 재선거시에 원우회 회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5) 입후보자가 두 조 이상일 때, 재선거 시에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측이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재선거)

1) 제9조 2)항, 3)항에 의거하여 당선이 되지 아니할 때는 투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이미 등록되어진 후보에 한해서 재투표를 실시한다.

3) 입후보자가 두 조 이상일 때, 1, 2위간에 득표자가 같거나, 10표 이상 차이가 없을 시, 10표 이상 차이가 없는 1, 2위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1조 (부칙)

원우회 선거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단 이 경우에 선거에 관한 모든 시행세칙과 내규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공고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장로회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주체적인 여성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진리 탐구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우들로 하며, 원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제3장 회장단 및 임원

제6조 (회장단 및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장단 및 임원을 둔다(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각 1인).

제7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를 총괄하며 원우회 운영위원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본 회의 제반 사업을 관장한다.

4) 회 계: 본 회의 제정에 관련된 서류, 통장, 현금을 관리한다.

5) 서 기: 본 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과 제반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한다.

제9조 (신분보장)

정·부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소집)

1) 정기총회: 총회는 매년 5월, 11월 중에 하되 정족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2) 임시총회: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역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예. 결산 인준

②회칙 수정

③매학기 사업보고 및 승인

2)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의결한다.

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재정지출 결의 및 소요 자금의 수입

③총회와 전체 회의에 부의할 사항

제5장 선 거

제12조 (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13조 (후보자격)

1) 정 · 부회장의 입후보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2) 정 · 부회장의 입후보자는 원우회 선거세칙에 준한다.

제14조 (선출방법)

정 · 부회장의 선출은 원우회 선거세칙에 준하여 선출한다.

제15조 (보궐선거)

회장, 부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 (당선 및 공고)

여학우 총회에서 공표하고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보조금과 기타후원금으로 한다.

제19조 (예산 집행 및 재정관리)

예산의 집행은 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회계가 하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20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칙발의)

회원의 1/3 이상의 발의, 또는 회장단 및 임원의 1/2 이상의 발의로 한다.

제22조 (회칙공고)

발의 시 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한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정기총회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23조 (공포)

3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24조 (통상관례)

그 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5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정기총회 통과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오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개정일)

제1차 개정일은 2007년 3월 2일이다.

제2차 개정일은 2010년 5월 26일이다.

제3차 개정일은 2012년 5월 30일이다.

호신선교센터정관(신학대학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호신선교센터' 라 칭한다. (이하 본 센터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센터의 위치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내(양림동 108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국내외의 모든 선교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해외선교 자원의 발굴, 훈련, 파송 및 후원을 한다.
2) 국내교회 개척 및 미자립 교회 지원을 한다.
3) 국내 · 외 선교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4) 선교에 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센터의 회원은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의무)

본 센터의 회원은 회칙을 준행하며 회비의 납부와 본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권리)

본 센터의 회원은 본 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8조 (조직)

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회, 운영위원회, 외부후원위원회, 감사위원회, 집행부 등 5기구를 둔다.

제1항 지도위원회: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지도위원 3인 이하로 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대표 6인과 호신선교센터 회장과 전임회장, 제3장 5항의 6부서장으로 한다. 단, 학생대표는 각 학년에서 선정된 선교에 열정을 가진 2인으로 한다.(호신선교센터 회장은 이하 회장으로 한다.)

제3항 외부후원위원회: 후원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다수의 이사로 한다.

제4항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원우회 대의원으로 한다.

제5항 집행부: 집행부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다음의 6부서장을 둔다. 즉, 국내부장, 해외부장, 교육부장, 정보부장, 재정부장, 서기부장으로 하고, 각 부서에는 차장 1인을 둔다.

제 9조 (임기)

본 센터 회장과 각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본 센터의 각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 지도위원회: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제반 운영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제3항 외부후원위원회: 본 센터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제4항 감사위원회: 본 센터의 재정집행을 감사한다.

제5항 집행부

①회　　장 - 본 센터의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②국내부장 - 국내선교의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선교지망생을 선발하여 교육부에 위탁한다.

③국외부장 - 해외선교의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선교 후보생 선발 및 견습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한다.

④교육부장 - 선교지망생과 견습선교사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⑤정보부장 - 선교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며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⑥재정부장 - 본 센터의 재정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⑦서기부장 - 본회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사항 일체를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제1항 운영위원회: 매년 3월과 9월 중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정기총회: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임시총회: 회장이나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소집한다.

제4항 집행부회의: 회장의 필요시 소집한다.

제5항 보고회: 년 2회 이상 원우회 정기총회 또는 서면으로 활동결과보고를 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 (운영자금)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은 회원회비와 후원회의 후원금과 특별헌금,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13조 (회비납부)

본 센터의 회비는 매 학기에 만원을 등록금과 함께 원우회 회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6장　회장 및 임원선출

제14조 (선거방법)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명)

집행부의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집행부의 자격)

본 센터의 회원으로서 선교적 사명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7조 (시행세칙)

본 정관 각 조항의 시행세칙은 본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18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본 센터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 및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호신선교센터정관(학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호신선교센터' 라 칭한다. (이하 본 센터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센터의 위치는 호남신학대학교 내(양림동 108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국내외의 모든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위한 연구 및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해외선교 자원의 발굴, 훈련, 파송 및 후원을 한다.

2.국내·외 선교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3.선교에 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센터의 회원은 호남신학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의무)

본 센터의 회원은 회칙을 준행하며 회비의 납부와 본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권리)

본 센터의 회원은 본 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무

제8조 (조직)

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회, 운영위원회, 외부후원위원회, 감사위원회, 집행부 등 5기구를 둔다.

제1항 지도위원회: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지도위원 3인 이하로 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학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각기관의 기관장 5인(총학생회장, 야간부, 음악과회장, 여성부, 대위원장)과 선교의 열정을 가진 호신선교센터 임원 5인(회장, 총무, 회계·서기, 국내선교부장, 해외선교부장)으로 구성된다.

(호신선교센터 회장은 이하 회장으로 한다.)

제3항 외부후원위원회: 후원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다수의 이사로 한다.

제4항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학부 대의원으로 한다.

제5항 집행부: 집행부의 구성은 회장, 총무, 회계·서기로 구성한다. 부서는 국내선교부와 해외선교부를 둔다. 각 부서에는 차장 1인을 둔다.

제9조 (임기)

본 센터 회장과 각 학년 위원과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임무)

본 센터의 각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 지도위원회: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제반 운영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제3항 외부후원위원회: 본 센터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제4항 감사위원회: 본 센터의 재정집행을 감사한다.

제5항 집 행 부

①회 장 - 본 센터를 대표하며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의 의장이 된다. 학부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로 한다.

②총 무 - 본 센터의 모든 실무를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학부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로 한다.

③회계 · 서기 - 본 센터의 기록 및 문서와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국내선교부장 - 본 센터의 국내 선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며, 부서 내의 회의 진행, 행정, 연구, 개발, 실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⑤해외선교부장 - 본 센터의 해외 선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며, 부서 내의 회의 진행, 행정, 연구, 개발, 실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제1항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총회: 매년 1학기 종강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임시총회: 회장이나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소집한다.

제4항 집행부회의: 회장의 필요시 소집한다.

제5항 보고회: 년 2회 학부 정기총회 시 서면으로 활동결과보고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 (운영자금)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은 회원회비와 헌신예배,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 (회비납부)

본 센터의 회비는 매 학기에 만원을 등록금과 함께 총학생회 회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14조 (센터재정 사용에 대한 내규)

제1항 지출

1.순수 지원금은 수입의 70%로 한다.

1)순수 선교 지원금의 75%는 해외 선교부의 지원금으로, 순수지원금의 25%는 국내 선교부의 지원금으로 한다.

2)해외 선교부의 지원금 중 견습선교사를 위한 지원금(준비비 포함)으로 사용하고 견습선교사가 없는 학기에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나, 다음 학기 선교지원금으로 합산하여 집행한다.

3)견습 선교사의 매달 지원금은 6만원을 하한선으로 한다.

2.센터 운영비는 수입의 25%로 한다.

3.예비비는 회비의 5%로 한다.

4.재정사용에 대한 원칙은 위 사항과 같지만, 학기별상황에 따른 센터 집행부의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

제 6 장 회장 및 임원선출

제15조 (선거방법)

회장과 총무는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명)

집행부의 각 부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집행부의 자격)

본 센터의 회원으로서 선교적 사명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8조 (집행부의 권한)

집행부의 자격은 제 1장 3조(목적)를 위한 모든 사업 추진과 재정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제 7 장 부 칙

제19조 (시행세칙)

본 정관 각 조항의 시행세칙은 본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20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본 센터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 및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3조 정관개정(2차 개정)

2003년 4월 3일 개정하다.

제24조 정관개정(3차 개정)

2004년 11월 24일 개정하다.

제25조 정관개정(4차 개정)

2005년 3월 23일 개정하다.

제26조 정관개정(5차 개정)

2006년 3월 23일 학부 정관으로 개정하다

2023 호남신학대학교요람

발행인_ 총　　장 최 흥 진

편집인_ 기획처장 조 용 현

발행처_ 호남신학대학교 기획실

발행일_ 2023년 4월

수정일_ 2023년 4월 01일

“

호남신학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만큼
국가와 사회,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HTUS 호남신학대학교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61672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
전화 062-650-1552 팩스 062-675-1552